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2024. 7.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목 차

1. 심사 의안 ····· 1

2. 심사 일정 ·····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2

가. 구성경위 ····· 2

나. 활동경과 ····· 2

다. 회의경과 ····· 3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5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8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8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 9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9

나.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9

다.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 14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54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55

5. 종합의견 ····· 56

6. 첨부자료 ····· 60

<참고자료 1>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부 록> 대법관(노경필) 후보자 서면답변서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 7.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1. 심사 의안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2. 심사 일정

가. 임명동의안 제출: 2024. 7. 5.

나. 임명동의안 회부: 2024. 7. 8.

다. 상정 및 청문 일자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7. 16.) 상정

제2차 위원회(2024. 7. 22.) 인사청문회

제5차 위원회(2024. 7. 26.)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가. 구성경위

○ 2024. 7. 5.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4. 7. 8. 동 동의안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같은 달 9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가 있었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7인): 박범계, 허 영, 김기표, 김남근, 박희승, 백혜련, 주철현 위원
- 국민의힘 소속(5인):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조배숙, 주진우 위원
- 비교섭단체(1인): 박은정 위원

○ 같은 달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박범계 위원(더불어민주당)
- 간 사: 허 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상범 위원(국민의힘)

나. 활동경과

○ 활동기간: 2024. 7. 5. ~ 7. 26. (22일 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2024. 7. 5. ~ 7. 15. (11일 간)

- 제1차 위원회(2024. 7. 16.)

○ 인사청문회 실시

- 제2차 위원회(2024. 7. 22.)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제5차 위원회(2024. 7. 26.)

다. 회의경과

○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함.

○ 7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함.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 7월 22일 제2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 위원장의 인사와 대법관 후보자 노경필의 선서 및 모두발언에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로 7분)를 실시하고,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로 7분)를 실시한 후,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위원별로 5분)를 실시함.

○ 7월 26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한 심사경과보고서(안)대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경과

차수	일 시	의사일정	심사경과	장 소
1차	2024. 7. 16.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4.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5.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6.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선임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 간사 선임 - 더불어민주당 허 영 위원 -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차	2024. 7. 22. 10:00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위원장 인사말 ○ 대법관 후보자(노경필) 선서 및 모두발언 ○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 7분) -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 7분) -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5분) ○ 대법관 후보자(노경필) 마무리 발언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5차	2024. 7. 26. 09:00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1) 교섭단체별 요구 현황

(단위: 건)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008	606	282	120

(2) 대상기관별 요구·제출 현황

(기관명 수, 단위: 건)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1	감사원	8	6	-	2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2	강남구청	2	-	-	2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	강원랜드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	1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5	경기대학교	4	-	4	-	- 해당사항 없음
6	경기도청	9	2	3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7	경찰청	59	37	22	-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6조제3항 - 형실효법 제6조
8	고용노동부	13	13	-	-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	1	1	- 공수처법 제17조 - 정보공개법 제9조
10	공무원연금공단	9	4	2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11	관세청	25(31)	27	4	-	- 비소관 사항
12	광주광역시청	9	4	5	-	- 해당자료 부존재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3	교육부	41	30	4	7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4	국가인권위원회	5	5	-	-	
15	국민건강보험공단	33	6	2	25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6	국민권익위원회	11	11	-	-	
17	국민연금공단	9	-	3	6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8	국방부	10(3)	3	-	-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19	국세청	90	90	-	-	
20	국토교통부	30	-	4	26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21	근로복지공단	1	1	-	-	
22	금융감독원	25(20)	-	17	3	- 금융실명법 제4조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23	금융위원회	2(4)	-	4	-	- 해당자료 부존재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4	금융정보분석원	1(-)	-	-	-	- 금융위원회에서 답변제출
25	노무법인 C&L ESG 센터	3	3	-	-	
26	농림축산식품부	7	-	3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27	대법원	394	394	-	-	
28	대한변호사협회	1	1	-	-	
29	대한적십자사	6	5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0	도로교통공단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1	동아대학교	4(-)	-	-	-	
32	법무부	58	9	38	1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우려
33	병무청	9(16)	15	-	1	- 국방부 소관사항 부분이첩
34	보건복지부	1	1	-	-	
35	부산광역시청	7	4	-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6	서울대학교	4	4	-	-	
37	서울특별시청	9	-	-	9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8	서울특별시교육청	3	-	3	-	- 해당사항 없음
39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	1	2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40	외교부	5	1	-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1	인사혁신처	2	2	-	-	
42	전라남도청	4	1	-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3	주택도시보증공사	2	-	-	2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	12	2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5	충청남도청	2	2	-	-	
46	특허청	4	-	-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7	한국거래소	4	3	1	-	- 해당자료 부존재
48	한국고용정보원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9	한국도로공사	2	2	-	-	
50	한국은행	12(16)	10	3	3	- 해당자료 부존재
51	한국장학재단	4	1	-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52	한국주택금융공사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53	한국토지주택공사	3	-	-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54	행정안전부	37	24	13	-	- 해당자료 부존재
합 계		**1,008 (1,010)**	**734**	**141**	**135**	

※ ( )안의 숫자는 요구받은 기관에서 재분류하거나 이첩(타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받은 건수)된 자료의 건수로, 이를 토대로 제출·미제출 건수를 계산함.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서면질의서 561건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6인)	박범계	허 영	김남근
	박희승	백혜련	주철현
국민의힘(4인)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조배숙		
비교섭단체(1인)	박은정		

※ <부록> 대법관 후보자(노경필) 서면답변서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구두질의요지서 (7인)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4인)	허 영	김남근	백혜련
	주철현		
국민의힘(2인)	곽규택	박준태	
비교섭단체(1인)	박은정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

○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노경필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음.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나.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림.

○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크나큰 영광임. 제가 대법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엄정하게 검증받는 자리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음.

○ 저는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줄곧 재판업무만을 담당해 오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자 노력하였음.

○ 언제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단 하나의 쟁점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기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쟁점에 관하여 충실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부가 그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드리고자 노력하였음.

○ 이는 공정한 재판이 그 결론만이 아니라 절차에서도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흔히들 '판사가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음.

○ 또한 저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음. 어렵고 힘든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사건 처리를 회피하는 등으로 법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적도 없었다고 생각함.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들에게 그만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원하는 판결을 얻더라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제가 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재판에 임하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감히 추측해 봄.

○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연구관으로서의 5년, 고등법원에서 8년 등 전체 재직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보냈음. 이 기간 동안 저는 다양한 영역의 행정작용에서 벌어지는 행정청의 권한남용행위를 통제하고 법치행정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였고, 나아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 및 행정편 법원실무제요 집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소송 절차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왔음. 그리하여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라는 저에게는 과분한 평가까지 얻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음.

○ 저의 이런 경험과 지식은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고 그에 맞춰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도 높아진 현대 복지국가에서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아울러 저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하였음.

○ 학교법인이 대학 조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기간제와 파견제 근로를 반복하는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이 그 대학 조교를 계속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하여 그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법관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임.

○ 한편 저는 2년에 걸친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법원 구성원과 소탈하게 어울리면서 그들이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길지는 않았지만 사법행정에 직접 참여하였던 소중한 경험이었음.

○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가 이제까지 지켜 왔던 마음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며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음.

○ 최근 지적되고 있는 재판지연 문제에 관하여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재판을 하는 데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음.

○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대립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 오늘 이 자리도 성심을 다해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충고 역시 국민의 준엄한 가르침으로 새기도록 하겠음.

○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림.

다.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1)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신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텐데 후보자는 어떤 각오가 있는지?	○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 개개인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함.
○ 후보자는 1980년 5월 18일 광주고 재학 학생이었는데, 5·18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 제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중 발생하여 기억이 생생함. 너무 어려서 무서웠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참 아픈 기억이었고 독재에 항거한 시민운동이었다고 생각함.
○ 5·18 정신은 후보자께서 법관을 하시는 동안 어떤 가치로 녹아있고, 앞으로 대법관이 되면 민주화항쟁 정신을 법관으로서 어떻게 지켜나갈지?	○ 광주가 당시 소수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음. 소수자, 사회적 약자, 다수에 밀리는 부분들이 항상 배려되고 보호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생각함.
○ 후보자가 광주고법 부장판사일 때 피해자 합의, 가해자 사직 등의 이유로 국민 법감정과 어긋난 감형을 했음. 피해자 합의는 외국에서는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 사유로도 작용함. 적절한 감형 사유라고 생각하는지?	○ 형사 합의에 의한 진정한 반성과 합의, 피해자 의사는 우리 양형기준에서 감경사유로 삼고 있음. 저도 원칙적인 기준이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감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음. 말씀하신 사례들은 항소심에서 진지한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들이고 나머지 양형 감형 사유로 든 것은 하나의 참작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유에 불과한 것들이었음. 핵심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에 의한 피해자의 선처가 있었기에 감형이 됐던 것들임.
○ 합의 시도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없었는지,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다른 2차 가해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법관이 되면 일선 법관들에게도 성폭력 범죄를 판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지?	○ 충분히 경청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함.
○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 양형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후보자의 성인지감수성,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건이 있는데, 파기환송심이 후보자 판결보다 형량을 높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말씀하신 사건은 유무죄가 달라짐에 따라 형이 상향된 사건으로, 당시 합의부에서 양형에 대해 최대한 심리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데 대해 송구함.
○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는데 그 부분이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변경된 것인지?	○ 맞음.
○ 후보자가 수원고등법원에서 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항소이유로 사실오인만 지적했	○ 법리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대법원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데 후보자는 양형부당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하여 1심보다 중한 벌금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파기됨.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 아닌지?	판단을 존중함.
○ 검사의 주장이 불분명하다면 석명권을 행사해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문제이지, 왜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 잘못된 재판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결과적으로 최종 결론이 저의 판단이 어긋났다는 점에서는 송구하게 생각함.
○ 본 위원이 후보자에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는데,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양한 제언을 해주었고 인상 깊었음. 반면, 후보자에게 이태원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이고 추후 대법원에 사건화될 수 있어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하여 답변을 회피함. 이태원사건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인지?	○ 현재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앎.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이태원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조하게 답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듦. 구체적 사건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중용의 미덕이지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청문위원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질의를 할 때에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현해야 할 것임.	
○ 건국일에 대한 서면질의에서도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음. 대한민국 헌법에서 건국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음. 다만,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토와 국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확답을 못드린 것임.
○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대해서 이념적 반론이 있다고 해서 헌법을 부정하는 후보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음. 그것은 중용이 아니라고 생각함.	○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람.
○ 건국일에 대한 다른 위원의 질의에서, 헌법 전문에 명확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정쟁이라고 표현함. 헌법 규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 헌법 전문 규정은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함.
○ 기억에 남는 답변이 없음. 대법관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그 결과를 보고 국회의원들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관 임명에 있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정말 외압에 맞서 심지 굳게 판결할지 판단해	○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야 하는데, 대답이 그렇게 나오면 만약 정권에서 외압을 가했을 때 제대로 판단할지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 불신 정도가 높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어야 하고 우리 법원이 그런 점에 비해 제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강함. 후보자 답변을 보면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이지 법원이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변해가겠다는 기대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법관이 된다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잘 살펴보겠음.
○ 몇 개 사건에서 인권 문제 구현에 노력했는지 모르겠으나 사법개혁 이슈에 대해 답변하는 것 보면 후보자가 과연 국민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에 맞는 판례 법리의 변화나 재판 시스템 변경이 가능할지 의문임. 사법개혁을 담당할 후보자인지 의문임.	○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함.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재판에 임하겠음.
○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과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개혁할 의지도 충분히 갖고 있는지?	○ 사법행정은 절대로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법원의 무죄율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확인해봤는지?	○ 과거에 무죄율이 다소 높았던 것은 행정법규에 대해서 이중 처벌에 대해 이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서 이중 처벌 부분이 다 무죄화됐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때문이고 최근 몇 년간은 크게 변동이 없었던 걸로 확인했음.
○ 후보자도 과거 형사재판하시면서 무죄 많이 선고하였는지?	○ 잘 기억은 나지 않음.
○ 당사자들이 무죄 주장을 해도 별로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는 법관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모든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부분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함.
○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그런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법관들이 좀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 그러함.

2) 대법원의 구성·기능 및 사법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2-1) 대법원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미국에서는 법관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 일부는 지명, 일부는 선출한다고 들음.
○ 대한민국 법관 임명 시스템과 같다고 보는지?	○ 연방 판사에 대해서는 같다고 생각함. 일부 선출되는 주도 있다고 들음.
○ 근본적으로 주지사나 대통령은 선출직임.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에 불과한 사람들이 고위직인 법관의 전 인사권을 다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많이 떨어지고, 심판할 기회가 전혀 없음.	○ 법관 임명 절차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 나머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과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지? 이제는 과거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민주국가 부인할 수 없기에 법관 임명 시스템을 직접 선출하거나 직접 선출한 권력이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 이해는 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염려도 있다고 생각함.
○ 사법부 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법부 내·외부 모두로부터 독립이 지켜져야 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실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 추천에 대하여 수긍이 가능해야 하고, 필요하면 임명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해당 대법관의 임명 제청이 좌절되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각각 고유의 권한이 있으므로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봄.
○ 임명 거부의 예고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정치적인 사안이라서 답변하기 곤란함.
○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임. 대통령이 마치 내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임명하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함.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사법권 독립을 지켜주길 바람.	○ 알겠음.

(2-2) 사법정책·제도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재판지연 관련>	
○ 최근 재판 지연 문제,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이 많음.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들이 각각의 법률 쟁점, 증거능력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나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형사재판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 대법관이 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최근 형사재판에서 재판 지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 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또한 피고인들의 권리 보장 주장이 많아 관련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음. 피고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악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재판이 많이 지연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고 실제로도 피해가 큼. 특히 서민이나 어려운 분들일수록 경제적 피해나 사기 피해에 취약하고, 피해 시 법률 비용이 만만치 않고, 법적 구제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 구제를 기대하지 못하는 실정임. 재판 지연 문제는 관심 기울여야 함.	○ 알겠음.
○ 재판 지연 원인을 법원 내부에서 먼저 찾고 성찰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함. 최근 재판 지연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는 게 법원장 추천제인 바, 이 제도가 법원 내부의 민주성은 높이나	○ 최근 재판 지연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외적 요인 말고 내적 요인으로도 일가정 양립문제나 세대간 견해차이로 인한 업무 바라보는 견해차이도 있고, 법원장 추천제로 인한 사법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기투표처럼 됨.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 내부의 재판 지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정 약화문제도 있음.
○ 재판 지연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악의적 절차지연의 모습이 명백하다면 단호한 기각결정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재판지연 관련 통계를 보면, 민사 1심 첫 기일까지 소요기간이 140일, 민사 항소 첫 기일까지 203일로 7년만에 각각 23일, 69일이 증가함. 형사 1심은 40일, 형사 항소는 37일이 증가함. 또한 지난 10년간 장기미제 사건이 약 9배가 증가함. OECD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재판 기간이 10%가 지연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2% 증가함. 재판지연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판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지?	○ 지적하시는 말씀에 공감함.
○ 재판 지연은 첫째, 인사 평가가 형해화된 점, 둘째, 법원장추천제로 인해 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한 명령권을 상실한 점, 셋째, 고법부장제 폐지한 점 등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야기된 것임.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 유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 다른 해결방법이 아니라 제도의 수정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양형 관련>**	
○ 양형 관련 법원과 국민의 온도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은 숙명과도 같다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법관에게 양형이 제 경험에서도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음.
○ 후보자가 맡았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사례가 많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항소심에서 후보자가 판결한 형량보다 최종 형량이 높아진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제가 형사재판하면서 1심보다 감형한 사례도 있지만, 오히려 1심보다 형을 더 올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음.
○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국민관심이 높은 재판에서 가해자의 형량이 낮으면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로 정상참작감경제도가 꼽힘. 판사들마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해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지적하는 분들이 사건을 다 이해하고 정당하게 지적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음.
○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하는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형법 제 51조 등에 규정된 사항과 진지한 피해회복의 노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에 맞춰서 감경하고 있음.
○ 잘못을 반성한다는 기준이 법관의 주	○ 피고인의 반성은 주관적 사정으로 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성 관련 감경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실제로 피해회복이 됐는지 여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감경하지 않고 있음.
○ 교제폭력 가해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더 강하고 공고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떠한지?	○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어 거기에 대한 양형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음.
<수사 사법통제 관련>	
○ 대검찰청 D-NET(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저장해두는 서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 정확한 건수는 알고 있지 못함
○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지?	○ 이미징이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피압수대상이 아닌 나머지 정보까지 압수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피압수대상이 아닌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가 필요함.
○ 대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검찰이 반발함. 검찰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심리과정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재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고 있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있음.
○ 수사 주체가 압수를 직접 진행하고 압수된 정보를 직접 보관하다 보니,	○ 누가 관리할지, 어떻게 파기할지에 대한 절차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외부에서 통제·인지가 어려움. 디지털 증거의 관리주체를 법원 등 제3의 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생각함.
○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제도를 신설하고, 위법압수물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통제 제도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동의함.
○ 금융거래 관련 압수수색영장 발부시 법원의 제출명령 및 거래정보 제공이 허용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우려가 있음. 후보자의 견해는?	○ 금융정보등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계좌추적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
○ 금융회사는 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통보를 해야하는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통보 유예를 최대 1년간 허용하고 있어 계좌명의인이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하면, 유예조치도 필요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봄.
○ 현행법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시 그 사유 등을 계좌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나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계좌명의인이 압수수색의 사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금융거래에 대한 영장 사본을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지?	○ 알아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사후적으로 법원이 영장발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줘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에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위해 알려줘야 한다는 데 공감함.
○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 규칙으로 하려다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회의를 통해 검토하겠음.
○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를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검찰, 경찰, 공수처, 대한변협 등이 반대하고 있음.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를 대법원 규칙이 아닌 국회의 논의를 통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법원 내부에서도 국회 논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의 경우 법률로는 대통령거부권에 막혀서 시행되지 못할 것임. 대법원규칙으로 대면심리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제가 대법관이 되어서 대법관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법률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대법원규칙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를 포함하여 해당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 검찰 수사권에 대한 사법 통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법원이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 대법원은 공소권남용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것이 국민의 법	○ 앞으로 공소권남용의 문제에 대해 대법관이 되면 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감정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하겠음.
○ 특정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인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탄핵이 기각이 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기소나 압수수색에 있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함.
○ 검찰청 예규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고, 행정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은 대법원에서 함. 검찰청 예규에 따른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헌위법이 아닌지?	○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일반론적으로 예규에 따라 별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함.
○ 수사의 밀행성과 인권침해의 문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수사의 밀행성이 인권침해와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 앞설 수 있는지?	○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수사가 인권침해의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말씀하신 원칙들을 기준으로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람.	○ 유념하겠음.
○ 피의자 신문권의 본질은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임. 구속된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 구치소로 출장해서 조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피의자 신문권 행사가 적절히 행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형사사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됨.
<형사사법체계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범죄 대상은 부패와 경제범죄만인데,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 추후 대법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을 할 여지가 있고, 예단이 생길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곤란함.
○ 대법관이 임명되면 해당 사건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임.	○ 대법관이 된다면 해당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음.
○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기관인 공소처를 신설하고, 중대수사본부처,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 3개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공소처 법안이 발의됨. 범죄가 상당히 고도화되고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히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도 수사와 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이라고 보는지?	○ 모든 제도가 다 설계할 때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겠지만 막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애당초에 제도가 도입될 때 그러한 취지와 그런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통제가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닌지?	○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법원조직·운영 관련>	
○ 민사사건 등에 있어서도 전문화 되어가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재판 연구를 다양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분쟁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해사사건 전문법원	○ 위원님의 발언에 공감함. 다만, 설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없는 상태인데, 해사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사법원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해사법원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있지만, 부산에 설치되는 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지역, 업무 관장 범위 등은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음.
○ 일선 법원에서 기피신청을 통한 재판 지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근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기피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함부로 기각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음. 명백하게 재판 지연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기각하겠지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함.
○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 표현은 심리 불속행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건은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판결문 작성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대법원 사건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치한 판결 이유를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꼭 필요한 사건에서 제대로 된 심리라든지 판결문 작성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경력법관제도와 관련 7년 경력의 판사 임용을 하게 되면, 40대 초반의 법관들이 신규임용되어 법원의 노쇠화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법률적 소양이 있어도 재판 경험이	○ 우리나라는 합의부재판 비중이 높으므로, 신규 임용 법관의 연령이 높아지면 사법 효율화를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요건을 5년으로 낮추는 것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적을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가 있음. 경력법관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봄.
○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 폐지 등으로 인해 법관 인력의 양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능력 있는 법관의 퇴직이 잦아지고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한 개편 방안은?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로 법관들의 동기부여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음.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림.
○ 극단적으로는 6시 됐으니 집에 가야 되겠다고, 재판 중단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일임. 당사자들 모두 재판받으러 멀리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판사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자세라던지 직업윤리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부분도 있고, 젊은 세대와 의식도 많이 달라져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음. 다만 말씀대로 판사도 공직자로서 공직윤리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필요 있다고 생각함.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 불법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피해 구제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불법행위 하는 것이 낫다는 심정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는데, 재판 진행해보면 불법행위임이 명확히 드러나는데도 제때 피해구제 해주지 않고, 어차피 지금 배상하나 재판 다 끝나고 법원이 판정하는 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해도 똑같으니 피해구제를 질질	○ 최초 시도는 하도급법부터 시작해서 최근 공정거래법까지 굉장히 많은 법률에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끌기도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도 지금까지도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많이 도입함. 어떤 법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한 예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함.
○ 징벌적 배상액이 1.3배, 1.6배인 상황에서 이런 것이 대기업에 징벌적 효과, 소위 제재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손해배상이 대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님.
○ 1.3배, 1.6배인 징벌적 배상액이 대기업들에게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 법률상 여러 요건 참작해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에서 충실히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 생각함.
○ 경제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적어도 3배는 되어야 효과 갖는다고 하는데, 원칙을 1.3, 2.5 이런식으로 해버리니까 전혀 징벌적 효과가 없는 것임. 대법관이 되면 법원행정적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 잘 살펴보도록 하겠음.
○ 입증책임도 상당히 문제임.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증거 개시 제도나 독일	○ 각각 개별법률에서 자료제출 명령 등 기존의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 내용보다 훨씬 보완된 제도가 많이 도입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식의 전문 기술 조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후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 개선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실효성 있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음.
○ 판례 법리로써 극복할 수 있는 법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지?	○ 더 열심히 검토해 보겠음.
○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대법관의 의견을 묻고자 함. 대법원 상고심에서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 있는지?	○ 상고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영미권에서는 재판 개시 전에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현장 조사를 통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고 대법원도 관련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소송 과정에서 제조사와 소비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입증이 어려운 측면을 개선하고자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해 불평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충분히 공감함. 현재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함.
<기타 사항>	
○ 우리 사법시스템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대답하셨는데, 이런 평가는 법원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다 포함되는 것임. 우리나라 평	○ 사법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되고 있음. 다만 최근 여러 이유로 법원에 대한 실망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 지수가 높은 걸로 아는데 어떠한지?	
○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사건 처리율이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론, 공정한 결론에 대한 평가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세계에서 5위권 안에 들고 있음. 그런데 그냥 사법 신뢰가 낮다고 말씀하시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여론조사 나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법원이나 판사님들이 애써 노력한 성과들이 쉽게 묻히는 것 아닌지?	○ 경솔했던 것 같음.
○ 독일은 권한남용죄와 직위남용죄가 존재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직위남용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위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며,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
○ 적극적인 행정개혁을 하다가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준이 모호해 법리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범죄구성요건이나 이론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고 봄.
○ 행정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 문제를 우려해 적극행정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그런 지적이 있음은 알고 있음.
○ 집시법 관련 법원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봄. 집회 주최자의 폭력행위가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고, 엄격한 요건하에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해야 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적용해 주최자와 참가자를 전부 다 처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미국, 독일의 판례는 집회·시위에 있어 참여자가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구체적인 경우여야만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게 됨. 우리나라도 외국사례처럼 판례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충실히 심의하도록 하겠음.

(2-3) 수사·재판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형사재판의 토지관할 관련하여, 여러 군데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모든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아닌지?	○ 병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 형사소송법에서는 관할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병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피고인은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기각한 것을 알고 있는지?	○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음.
○ 피고인은 여러 군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병합해서 재판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대법원이 병합신청을 기각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일반적으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음. 다만,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1주일 내내 재판을 받는 사건들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건에 대해 날마다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가	○ 피고인으로서는 많은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답변하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능하다고 보는지?	것은 어려움.
○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사건 관련 병합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문제가 있었다고 봄. 향후 대법관이 된다면 무분별한 기소를 하거나,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배한 재판을 하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고 봄. 대법관은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유념하겠음.
○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피고인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동시 심판의 이익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일반적으로 동시에 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 항상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이 원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병합심리해서 동시에 심판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아닌지?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심판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더 적절한 것이 있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봄.
○ 이재명 대표의 경우 대법원이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병합신청을 기각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해당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했을 것으로 봄.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가 조작을 하는 데 자신의 지위 및 자신 계좌 등을 제공하고 투자자 유치등의 활동을 한 전주(錢主)의 경우에는 미필적	○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향후 해당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 범죄 일람표 중 289번 계좌가 활용되었고, 작전세력의 사무실 엑셀 파일에 그 계좌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임.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인데 향후 기소가 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람.	
○ 비공개소환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과 언급이 있는데, 후보자는 사건 피의자를 공개소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함.
○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출석을 최소화한다고 발언한 내용 기억나는지?	○ 언론을 통해 들은 적 있음.
○ 주요 사건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때 검찰총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소환조사가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불러서 해명한 것과 같음. 이러한 점들이 쌓여서 사법불신이 생기는 것임.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강단 있는 사법시스템 개혁	○ 수사기관의 일이고, 구체적 사안의 일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움.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사법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을 주문드림.	
○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관련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수사팀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봄. 후보자의 견해는?	○ 행정부 내부의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해명이 법률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지?	○ 형사소송법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수사절차에 관한 부분이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함.
○ 제3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조사했다면 지금까지의 형사소송법과 관행에 어긋난 것 아닌지?	○ 구체적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라 곤란함.
○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람조차 검찰 조사했는데, 현재 영부인이긴 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찰청 혹은 제3의 장소도 있었어서 사안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함.
○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과 관련하여 대북송금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인 특정 기사에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도됨. 그 후 수사기관의 회유, 협박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옥중에서 편지를 통해 탄원서가 제출됨. 그런데 1심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보니 진술탄핵 주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 판단유탈로 보임. 이 사안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 법관은 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므로 기록을 보지 못한 채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 더욱이 이 사건은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 진행 중으로 재판 개입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답변이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볼 수 있는지?	
○ 뉴스타파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윤석렬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영장 범위 외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보관한 점이 드러남. 검찰은 휴대전화 내용 전체 보존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함. 수사기관이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는 폐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위원님 말씀이 맞고, 대법원 판례가 있음.
○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의 부적절성 지적이 있음. 김만배, 신학림씨가 왜곡된 영상을 틀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친 사건인데, 영상 제작에 금품이 오고 간 것이 사건이 되어 배임수증재죄도 검찰은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고,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된 사안임. 구속영장 심문을 할 때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의견이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 수사권이 없었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담당 판사가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달리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금지함. 당시 장관이 지휘권을 내리는 것은 개인에게 내린 것인지 검찰총장에 대해	○ 직에 대해서 내린 것으로 보이며, 원론적으로 행정청의 명령은 명시적이든 또는 묵시적이든 철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내린 것인지? 만일 그 지휘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그 지위의 효력은 계속 유지한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2-4) 기타 사법부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들은 상급법원의 법관이 하급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상급법원 법관이 하급법원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인데 관련 사건이 다 무죄판결을 받았음. 해당 판결의 논리는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것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이 사건들은 하급심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이 자리에서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해당법관들이 재판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닌지?	○ 재판에 관여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 논쟁이 있어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적어도 법원 내부에서 징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 재판의 개입으로 보여진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삼가되어야 할 행위라고 봄.
○ 왜 이렇게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는 유독 우리 법원이 관대하다고 생각하는지?	○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최근에 양형 기준이 상향되면서 최근에는 실형도 많이 선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재벌 총수가 구속되게 되면 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다, 한국 경제에 어려워진다, 이런 것 때문에 집행유	○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경영인 개인의 비리와 회사의 가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예 하는지?	
○ 후보자께서도 재벌 총수도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당연함.
○ 재벌총수에 대한 처벌과 그 회사의 발전과는 인과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관들이 지나치게 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 그런 재판 담당한다면 유념하겠음.
○ 헌법 규정에 아무런 근거는 없는데 왜 대법관이 항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해오셨는지는 혹시 알고 있는지?	○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법관이 본질적으로 항상 독립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아마 위원장으로 관행적으로 호선이 되어 오지 않았나 추측함.
○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선관위에서 이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법관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것에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지?	○ 그렇게 되면 회피 내지는 제척 사유가 되어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
○ 법관이 가지는 중립적인 지위 때문에 관행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급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혹시 그런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평소에 생각은 안 해봤는지?	○ 비상임이다 보니까 다른 본래의 대법관 내지는 판사로서의 직분이 있어서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각급 선관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 그런 지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법관들께서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해서 너무 방임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입장이 어떠하신지?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걸 알고 있음.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희망함.
○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일부 언론 지적이 많았음.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는 이런 특정 단체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온 거라 보는지?	○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보여지는 우려 또는 의심될만한 행동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여러 인사, 중요보직에 대한 인사가 과거 성적이 아닌 특정 연구회 소속 인사였다는 것 아는지?	○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음.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같은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판사가 1년 6개월간 사전 심사만 했을 뿐 변론도 실시 안하고 있다가 병가를 핑계로 사표를 내는 등 정치적 논란 사안에 특정 연구회 출신이어서 비난이 더 큰 것을 아는지?	○ 언론에서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것 들은 적 있음.

3)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서면 답변에서 인사청탁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명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보자의 생각은?	○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는다면 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면 해당 물품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움.
○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명품을 수수한 경우 범죄 기수 시점은 받은 시점임. 향후 돌려주어도 이미 기수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가 사라지지 않음. 일반 사건 법리에 따른 후보자의 생각은?	○ 형사법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음.
○ 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고액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공직자 본인 재산과 배우자 재산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저나 저희 가족은 고액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일반론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탄핵 청문회에 대해 정치적 사건이라 말씀하기 곤란하다 생각하지만, 대법관으로서 분명한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청원과 권한쟁의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관으로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최근 탄핵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음.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정말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직에서 파면하는 것임.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국정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그리고 중대한 사유여야 하는 것 아닌지?	○ 그러함.
○ 정치권의 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단호하고 명쾌한 입장을 말씀 바람.	○ 탄핵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행위임.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을 때 이루어짐. 판사도 공직자이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정치적 진영이나 이념에 따라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판사와 검사의 직무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그 직무의 완전성, 무결성이 국민들로부터 누구보다도 요구되는 사안임.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인데, 이러한 형사사법을 직무로 삼는 판사와 검사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검사의 직무가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탄핵을 소추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지?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회에서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지?	○ 언론을 통해 보았지만 잘 기억나진 않음.
○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 형식의 청문회가 열릴 텐데 만약에 그 청문회에서 그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이라든지 그런 법관들에 대해서 증인 출석하라 이렇게 의결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 법령상의 의무라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탄핵 관련된 청문회가 열릴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판사님들도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관없는지?	○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움.
○ 통상적인 재판 절차상, 형사상 위험에 노출된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데,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이나 동기를 묻지 않고 바로 인정됨. 이는 본인의 묵비권이라는 형사상 대원칙이 있기 때문이고 위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 국회에서 증언할 때에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증인이 이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수차례 행사 여부 및 동기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형벌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증언거부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재판을 하면서, 증인을 400명 가량	○ 그런 적은 없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소환한 적이 있는지?	
○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증인이 너무 많은 경우, 재판장이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서 증인 수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환하는 절차를 취함. 재판에서 증인이 400명이나 신청된 경우,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신속한 재판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함.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부합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됨. 최근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유는 국회의 일방적인 독주로 다수결의 논리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었기 때문임.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을 훼손하고, 특검법은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음. 이에 대한 재의요구가 권한의 남용임?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람함. 다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헌법 원리에 어긋나서 헌법을 침해하는 남용행위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헌법상 언론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은지?	○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맞다고 생각함.
○ 언론인들의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이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 자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 침해가 있었는지는 잘 모름.
○ 지시권이 있는 상사가 명령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지? 따르지 않으면 항명 아닌지?	○ 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현재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음.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모후보가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공소취소를 청탁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소취소 청탁이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안을 듣기는 하였지만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함.
○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이 4년 6개월째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으로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함.
○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 선고를 한 1심 판사에 대해서, 박찬대의원은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고 하고, 민형배의원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판사 탄핵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 판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히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권력분립의 원칙상 중대한 헌법상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중에 대법관 신분으로 김만배씨와 8차례 만남을 가짐. 대법관으로서 면담 절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성에 의심이 될 상황은 조심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함.
○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에 의하면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배우자처럼 인정해야 된다는 것 아닌지?	
○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입법 작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삼권분립에 중대한 위배라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삼권분립은 헌법에서 정한 원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나,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 작용이라고 생각함.
○ 법령의 해석 작용도 원칙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사법이 입법을 추월하는 것이 아닌지? 대법관이 되면 원칙에 충실해 주셨으면 함.	○ 알겠음.
○ 1919년 ILO는 출범 1호 협약으로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규정함. 우리나라도 하루 8시간 근무가 근로기준법의 핵심 정신임. 최근 대법원이 주간 52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하루에 얼마를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존중함. 다만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해주신 취지를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4) 후보자의 개인신상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후보자께서는 91년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 23기 수료하셨음. 윤 대통령과 같은 동기인데, 사법 연수원에서 같은 반이었는지? 같은 학회를 하시거나 친분이 있었는지?	○ 같은 연수생이기 때문에 교류는 있었겠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음.
○ 사적으로 만나거나 교류한 적 있는지?	○ 10여년 전쯤에 서울 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한 번 정도 점심에 동기들 모임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 외에는 만나 뵌 적이 없음.
○ 10년치 자료만 낸 이유가 있는지?	○ 선례를 따라 했는데, 10년간 한다고 해서 10년을 했음. 원한다면 다 해드리겠음.
○ 10년만 검증받겠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뜻인지?	○ 저의 뜻이며, 선례에 따라 결정했을 뿐임.
○ 일반적 자료제출에 의해 10년의 제한을 두고 제출한 것은 후보자가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관례대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에 따라 동의한 것임. 그 이전의 것도 검증 대상이지만 자료의 보관기간이랄지 개인정보 보호문제 때문에 10년으로 해왔고, 10년 이상 전의 일이 언론의 의혹으로 불거지거나 알려지게 되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제출 용의 있는지?	○ 있음.
○ 2002년 후보자 배우자께서 개포동 주	○ 배우자와 어떻게 된건지 이야기했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공아파트 집으로 6개월 전입했다가 다시 이사했던데, 이것 관련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생각 안 난다고 했음. 지금도 그러한지?	니 어렴풋이 떠오르는 게 22년 전 일인데 순천지원 근무할 때임. 몇 년 뒤면 수도권 서울로 전출 예정되어 있어 어디서 거주할지 고려하며 배우자가 주소를 옮겼는데 6개월간 있으면서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 처신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무 것도 없이 돌아왔음.
○ 위장전입으로 실제 살지 않으면서 배우자만 주소를 옮긴 것은 인정하는지? 사과 의향 있는지?	○ 송구하게 생각함.
○ 주소 이전과 관련하여, 둘째 아들이 입학을 앞두고 있어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주소 이전을 했던 것은 아닌지?	○ 입학 전인 것은 맞지만, 입학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림.
○ 대법관 임기가 종료된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인지?	○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싶음.
○ 법원장 및 검사장 등은 퇴임 이후 변호사 등록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고위 법관이 퇴직한 경우에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을 통해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변호사협회에서 2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법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
○ 대법관 임기 만료 후 변호사 할 것인지?	○ 제 경험과 전문성이 활용되어 후학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양성에 도움되었으면 함. 퇴직하면 66세이고, 현재 변호사협회에서는 2년간 변호사를 받지 않고 있음. 68세가 넘어 변호사 활동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음.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바쁘신 중에도 사법부에 대한 애정으로 긴 시간 진심 어린 충고와 충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저의 부족함으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오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대법관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음.

○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진심 어린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법치주의 실현 등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고, 또한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림.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오늘 하루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음.

○ 후보자께서는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음. 이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임을 깊이 유념해 주기를 바람.

○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노경필 대법관후보자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림.

○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

○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

5. 종합의견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① 임명동의안 및 부속서류, ②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 ③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④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음.

첫째, 대법관으로 임용되려면,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고 4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이들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함.

둘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함.

셋째,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 등을 검증함.

넷째,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검증함.

○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청문위원들 질의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최근 이뤄진 검찰의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가 적법했는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법적인지, 우리나라의 건국일이 언제인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나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법관으로서의 소신이나 견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후보자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직장 상사에 의한 신입 여직원 성폭행 사건, 전 칠레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법감정에 대한 이해나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해당 항소심 판결을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던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였음.

반면,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법관 본연의 업무인 재판업무에 매진하였고,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5년, 고등법원에서 8년 등 전체 재직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보냈으며, 행정행위와 행정소송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논문을 집필하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음.

또한, 후보자는 학교법인이 대학조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를 반복한 사례에서 대학조교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고,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보아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후보자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으로 6개월간 위장전입했던 점 외에 법관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여 금품 관련 비위 등 신상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점이 후보자에게 발견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재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여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및 신뢰 제

고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자료

<참고자료 1>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부 록> 대법관(노경필) 서면답변서

참고자료 1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 범 계 (63년생, 대전 서구을) · 4선(19 · 20 · 21 · 22대)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제68대 법무부장관 · (전)서울 · 전주 · 대전 지방법원 판사 ·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회관 837호 784-6960 6788-6456 F)6788-6460

2024. 7. 9. 현재

더불어민주당	간 사		허 영(70년생,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21 · 22대)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과정 수료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회관 610호 784-1840 6788-7431 F)6788-7435
			김 기 표 (72년생, 경기 부천시을) · 초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전)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 (현)민주연구원 이사 **· (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관 324호 784-4840 6788-6061 F)6788-6065
			김 남 근 (63년생, 서울 성북구을) · 초선 · 서울대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전)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 · (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 (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회관 929호 784-2470 6788-6251 F)6788-6255
			박 희 승 (63년생,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 (전)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회관 519호 784-5031 6788-6161 F)6788-6165
			백 혜 련 (67년생, 경기 수원시을) · 3선((20 · 21 · 22대)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졸업 · (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회관 1004호 784-6130 6788-6566 F)6788-6570
			주 철 현 (59년생, 전남 여수시갑) · 재선(21 · 22대)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전)민선6기 여수시장 · (전)대검찰청 강력부장, 광주 · 창원 검사장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관 536호 784-6341 6788-7311 F)6788-7315
국민의힘	간 사		유 상 범 (66년생,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21 · 22대)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전)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736호 784-4760 6788-6811 F)6788-6815
			곽 규 택 (71년생, 부산 서구동구) · 초선 · 서울대 사법학 학사, 동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전)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현)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528호 784-5970 6788-6711 F)6788-6715
			박 준 태 (81년생, 비례대표) · 초선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전)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 (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320호 784-6430 6788-6176 F)6788-6180
			조 배 숙 (56년생, 비례대표) · 5선(16 · 17 · 18 · 20 · 22대) · 서울대 법학 학사, 동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전)서울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전)수원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 (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606호 784-5711 6788-6946 F)6788-6950
			주 진 우 (75년생,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전)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전)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 (전)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339호 784-9423 6788-7271 F)6788-7275
조국혁신당			박 은 정 (72년생, 비례대표) · 초선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 (전)법무부 감찰담당관 · (현)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517호 784-3080 6788-6551 F)6788-6555

참고자료 2

대법관(노경필 · 박영재 · 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024. 7.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대법관(노경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실시

2024. 7. 22.(월) 10:00

장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대법관(박영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실시

2024. 7. 24.(수) 10:00

장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대법관(이숙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실시

2024. 7. 25.(목) 10:00

장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5 운영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 보충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행한다.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있는 경우 신문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국가 안전보장 등)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5조(공직후보자 등의 보호)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마. 기타 인사청문회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경 서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및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각각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경비

인사청문회활동비 및 증인여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8 정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국회전자게시판에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은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인사청문회 방청

o 일반방청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붙임 1]

정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2024. 7. 16.(화)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4.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5.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6.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2차> 2024. 7. 22.(월) 10:00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3차> 2024. 7. 24.(수) 10:00	1.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4차> 2024. 7. 25.(목) 10:00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5차> 2024. 7. 26.(금) 09:00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청문회 당일에 채택하는 경우 미개최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 의사일정, 회의일시, 장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4. 7. 22.(월)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4년 7 월 17 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박 범 계

[붙임 3]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4. 7. 24.(수)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4년 7 월 17 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박 범 계

[붙임 4]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4. 7. 25.(목)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4년 7 월 17 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박 범 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

2024. 7.

대법관 후보자 노 경 필

- 목 차 -

《박범계 위원 서면질의》 ····· 3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

2. 후보자가 스스로 대법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 4

3. 대법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3가지와 그 이유 ····· 5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 7

5.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의미있거나 자랑스러운 판결 3건 및 그 이유 ····· 8

6.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아쉬운 판결 3건과 및 그 이유 ····· 10

7. 법관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11

8. 법관을 탄핵할만한 헌법, 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는지 ····· 12

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는 일부언론과 정치권의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13

10.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4

11. 민사본안 사건의 70%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음. 이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15

12.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갈등이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17

13. 정부가 시행령 마련 시 상위법의 입법(개정)취지를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18

14.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민간기업을 통한 피해 보상안(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9

15.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0

16.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 21

17.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2

18. 법왜곡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3

19.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4

20.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견해 ····· 25

21.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26

22. 성범죄 방지를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8

23.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9

24.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1

25.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2

26. 간통죄 폐지된 후에도 법원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과거의 관행대로 여전히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3

27. 대법원이 도입을 검토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4

28.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 등 과잉 발부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5

29.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적정한 사법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36

30. 특히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일부기각 등 적절한 통제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7

31.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형 조사기관들에 대하여 검찰, 경찰 수사와 같이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8

32.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9

33. 후보자가 받은 국외 교육훈련을 통해 사법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이 있는지 ····· 41

34.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소송이 있는지 ····· 42

3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세금을 누락하여 신고한 적이 있는지 ····· 43

36. 조희대 대법원장과 근무를 함께 하였거나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지 ····· 44

37.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적이 있는지와 그 이유는 ····· 45

38. 자녀의 재산축적 경위와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46

39.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또는 소득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47

40. 후보자가 5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의미있었던 사건 및 그 이유 ····· 48

41. 후보자의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시기 및 매매 경위, 손익 ····· 50

《허영 위원 서면질의》 ····· 53

1. 대법관의 위상과 역할은? ····· 53

2. 후보자께서 대법관에 임명되고자 하는 이유는? ····· 54

3. 대법관이 어떠한 위치라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55

4.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56

5. 후보자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57

6. 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와 후회되는 일 3가지는 무엇인가? · 58

7. 본인의 재판 중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 60

8. 대법관 퇴임 후 계획은? ····· 62

9. 법원의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와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63

10. 법원 개혁 우선순위 5건이 있다면? ····· 65

11. 상고심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는? ····· 67

12. 평생법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제도 도입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한 견해는? ····· 68

13.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69

14.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71

15.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있다면 이를 해소할 방법, 없다면 국민의 인식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73

16. 법원, 검찰 등 법조계의 기수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개선 방향은? 75

17.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원인과 해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6

18.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7

19. 법적 판단의 최종 권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과 헌재는 어떠한 관계이며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가? ····· 78

20.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와 여전히 양립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79

2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그 사유에 대한 견해는? ····· 81

22.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82

23. 사형제 존폐 및 사형 집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4

24.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5

25.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7

26. 사회적 약자를 위해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88

27.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1

28.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이라 보는가? · 92

29.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3

30.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94

31.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95

32.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정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6

3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97

34. 공판중심주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8

35. 대법원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9

36.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0

37. 조건부 구속 영장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1

38.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2

39. 법관회의 활성화를 통한 법원 내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법관회의를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회의결과 및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103

40. 법원의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 관점에서 노동법원, 환경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4

41.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파업이란 원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법원이 이를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6

42. 공익 소송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주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은? ···· 107

43. 후보자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 108

44.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수단 도입 등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9

45.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입장은? ····· 110

46.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판결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111

47.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며,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기각되고 있음. 증거와 정보의 구조적 편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실이나 결함,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 112

48.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제조사 책임 판례가 0건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13

49. 지난해 12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간을 넘어도 1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음. 극단적 초과 노동을 대법원이 허용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4

50.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권익위는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5

51. 전세 사기에 대해 과감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경법이 개정돼야 함.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반대해 개정이 무산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6

52.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맡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규모 축소·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7

53. 현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판결 연도와 사건의 범위가 아직 협소하며 접근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공적 자산인 판결문의 공개 확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8

5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노동계 지적과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재계 반응이 대립되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120

55. K-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21

56.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 중 어떤 견해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여기는지, 후보자의 견해는? ····· 122

57. 현재 검찰 구속수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123

58. 영장 발부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영장에도 항고제도를 도입해 수사기관이나 피의자가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125

59.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26

60.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127

61.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입장과 설치 시 법원 및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는? ····· 128

62. 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지 석달도 채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사면이 이뤄진 적이 있음.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는? ····· 129

63.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했음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수사범위를 넓힌 것과 관련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30

64. 후보자는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 있는지? ····· 131

65.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기각한 적이 있는지? ····· 132

66.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후보자 입장 - 대법원은 지난 '23.1월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주요 내용은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 등임. 이중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24년 상반기(1월~5월)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72.3%에 달해 사실상 3심제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아래 내용을 질의함 ····· 133

67. 가사소송의 증거능력 문제 - 일반적으로 민사/가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 몰래 녹음한 통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을 깨고, 위법한 녹음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음 - 위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민사/가사

소송에서도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조된 건은 아닌지, 작성자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출처를 신뢰할수 있는지, 위법한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해 엄격한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38

68. 후보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140

69. 사법부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 불신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줄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전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145

70. 기후위기 대응이 엄중해진 시기, 환경법 판결 등에서 사법부가 취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관련하여 사법부가 보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 146

71.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 뒤 법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가 잦아진데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지? ····· 147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 151

1.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 151

2.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 152

3.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입니까? ····· 153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법관은 누구입니까? ····· 154

5.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 155

6.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이 되고 싶으십니까? ····· 156

7. 법관과 대법관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7

8. 법관과 비교하여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9

9. 본인이 대법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60

10.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 161

11. 후배 법관들에게 반드시 읽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 162

12. 후보자는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63

13.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64

14.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가장 후회되는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 165

15.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166

16. 후보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67

17. 후보자는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68

18.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로 인해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정치 현실에서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69

19. 후보자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71

20. 법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172

21. 법원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173

22. 법원개혁으로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174

23. 사법행정기구를 비법관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 175

24.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176

25.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177

26.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178

27.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와 아쉽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79

28.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180

29.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181

30.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182

31. 정부에서 추진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183

3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역할 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각각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184

33.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185

34.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법부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86

35. 위와 같이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87

36.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88

37.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89

38.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90

39. 검사장,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 기업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91

40. 국민들은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굉장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음. 후보자님은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92

4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193

42.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194

43. 법조일원화로 인해 숙련된 변호사가 판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펌에 근무한 변호사에서 판사가 될 경우, 해당 로펌에서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95

44. 대법관이 된다면, 43번 우려를 해소하고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 196

45. 43번 우려가 가시화 될 경우, 사법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97

46.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98

47.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199

48.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

4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1

50. 법원에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해소되고 대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202

51.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증원에 동의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203

52. 51번 질문에 대해, 동의·비동의를 택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사법부에 대한 체계·근본적 고민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204

53. 현재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205

54. 대법원이 위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6

55.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법원의 다양성(성별, 나이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7

56.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8

57.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9

58. 검찰의 공소장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10

59. 일각에서는 공판개시 전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11

60. 기성세대가 일으킨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12

61.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213

62.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었을 경우, 타 국의 사례를 수용·비교하며 재판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 214

63. 후보자는 존엄사를 찬성/반대하는지? 찬성/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15

64. 각급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만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216

65.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특정 이념에 기반을 두어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 217

66.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218

67. 후보자는 현 대법관의 구성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구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220

68. 후보자는 사법부에 필요한 '외적 다양성'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221

69.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22

70.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위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3

7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4

72. 법관은 다른 어떠한 자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 하지만 각종 비리·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매우 경미한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25

73.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일부 법관 동료, 선·후배들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7

74. 후보자께서는 퇴임 후에 어떠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28

75.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9

7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 230

77. 모욕죄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처벌 대상의 행위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32

78.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33

79.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경 보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법관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인식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34

80.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수탁받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제32조) 법무부의 관장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6조제1항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과 제32조제1항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35

81. 행정 각부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 절차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 우려되고,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다음의 상급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에 둔 입법취지도 훼손된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따른 헌법 위반 여부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36

82.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가요? ····· 237

83.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238

8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39

85. 후보자에게 사회적 약자의 기준과 정의는 무엇인지요? ····· 240

86.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41

87.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 242

88.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43

89.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부실 판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허가제와 대법관의 증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안들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45

90. 동성결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47

91.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49

92. 하급심보다 상급심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50

93.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251

94.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경우 법관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52

95. 최근 법관들이 사회적 이슈 내지 법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개인 SNS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53

96.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의 정치 중립'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 중립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이며, 사법부의 정치 중립에 찬성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54

97.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 독립'의 취지, 목적, 방향,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255

98. 우리사회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대해 '특정이념'을 가진 법관들이라며 이들을 마치 일반 판사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57

9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58

100.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59

101.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이 잘못되었다고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260

102.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기소된 재판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1

103. 대부분 재판관이 무죄가 나옴에 따라,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2

104. 후보자는 법원이 밝힌 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에 속해있습니까? 속해있다면, 어디·누구에게로부터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 263

105.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여러 법관 엘리트들이 도운 조직적인 사건이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관들이 다수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징계는 불복소송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264

106.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 방향, 활동,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65

107.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66

108.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당 행위를 처벌할 '직권남용'이란 법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커다랗게 남겨놓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직권남용을 형식적 논리로 엄격히 해석하면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법왜곡죄'로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떠한 입장입니까? ····· 267

109. 위 107번의 직권남용의 판결로 인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 대부분이 무죄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8

110. 사법농단에 관여한 재판관이 퇴직 후, 로펌 등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9

111.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처리가 된 변희수 하사는 재입대를 희망하였습니다. 과거, 국내 한 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학내반발과 인신공격등으로 등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당사자들이 실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법의 판단과 결정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데 일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70

112. 해외 여러 국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오랜 사회적 논쟁과 많은 진통 속에서 얻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법과 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71

113.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명칭, 소득세 대상 여부 등 세법 개정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 암호화폐 시장의 산업발전과 국제 추세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문제제기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73

114. 2009년 야간집회시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내린바 있음. (2014년 한정위헌 판례中"'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중 '한정위헌' 결정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2009년에 진행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시위 헌법불합치 결정만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00시~06시까지만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법은 대법원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74

115. SK최태원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 따르면, 노태우의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을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음. 불법으로 승계된 범죄수익이 재산으로 인정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75

116.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비자금 등 불법 승계되어 형성된 수익을 환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76

117.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생략되기도 함. 민사/가사 사건에서도 제출된 증거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작성자에 의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77

118. 117번 주장과 관련, 법조인이자 재판관으로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278

119. 최근 5년간('19년~'23년)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약 4천건에 달한다고 함. 단순 오류의 경우 경정 대상이나, 판결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법원 신뢰도 저하 초래, 판결문 작성 여건 등을 점검해 제도/시스템적으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79

120. 판결문의 경정오류를 집계(통계화)시켜 공개하는 것이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적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281

121. 판결문의 경정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사유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동의한다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것입니까? ····· 282

122.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83

123.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권고결정을 위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위 재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84

124.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결에 대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85

125.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이 형해화 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86

12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판사 직권심판은 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 후보자는 위 직권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87

12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은 언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89

128.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수사기관의 수사로, 아동을 수사하는 과정에 보호자에게 즉각 알리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 수사로 보십니까? ····· 290

129.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애인과 아동에 대해 수감 중이지 않은 장애인 및 아동에 비해 그 권리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지? 제한할 수 있다면 일반 수감자

와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91

130.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92

131.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93

132.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94

133. 수사기관이 휴대폰, 노트북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95

134. 위 133번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96

135.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침해기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 자료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목록제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97

136.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에서 징벌적손해배액에 인정에 대해 보수적 입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할 정도의 위하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298

137.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

요? ····· 299

138. 포괄일죄 법리에 의하면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시효 계산은 마지막 범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검찰의 포괄일죄 주장을 일부만 인용한 것이 포괄일죄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300

139.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이 미국 등에서 판례 법리로 정립되어 있는데, 우리 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독 삼성 관련 사건에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른 특별한 논리들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301

140. 재벌총수 재판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3.5정찰제'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는 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302

141. 2016년 12월 사법정책연구원에서에 발표한 학술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법원의 불리한 보도를 취재 및 게재했다는 이유로 취재원 색출시도가 있었다고 함. 이와 같은 법원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03

142. 141번과 같은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04

143. 후보자는 이러한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입니까? ····· 305

144. 대법관이 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시도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 306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 ····· 309

1.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 309

2. 일본은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직역할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원 인사가 없거나 과반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바람직한 대법원 구성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10

3.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11

4. 특정 판결에 대해 해당 판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12

5. 손해배상 시효 범위를 3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 판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 대상이 된 판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13

6.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 314

7. 조일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16

8. 현 법관임용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17

9. 후보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관을 탄핵할만한 '헌법·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 319

10.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20

11. 과거 아우디,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증명이 어려운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법상 개별적 분쟁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도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21

1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검찰은 내부 규정을 들어 변호사의 발언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22

13.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고 편파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행 사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324

14. 대학교수, 변호사 등 일반 국민이 판결 정보, 특히 하급심판결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25

15.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327

16. (1) 재판헌법소원, (2) 변형결정의 기속력, (3)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련, (4) 관습법 등과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329

17.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30

18. 사법부에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331

19.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32

20.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상 평결에 구속력이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배심원의 평결을 판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33

21.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34

22. 전자소송 현황 및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35

23.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법관 기피신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36

24.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상고심 사건이 많습니다. 상고사건이 증가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37

25. 매년 증가하는 재판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재보다 몇 명(또는 몇 배)을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38

26.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도입되어야 할 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340

27. 장기미제사건의 신속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341

28.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42

29. 과거사 관련, 국가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해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인 6월을 적용하여 과거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43

30. 일부에서는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44

31. 후보자는 2014년 9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정규직 강사와 달리 비정규직 강사에게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서울고법 2013누51093)", 1심 판결을 취소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나아가 2012년 11월, "학교법인(대학교)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대학조교로 하여금 여러 해에 걸쳐 서로 다른 파견사업주들과 계약직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법인과 대학조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학조교는 이미 기간제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고(서울고법 2011누39419)", 1심 판결을 취소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에서 근로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니까? ····· 345

32. 후보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국토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법령이 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했고(수원고법 2021누1604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해 확정되었다. 최근 국회에서 시행령으로

법률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47

33. 후보자는 행정법 전문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21누65721)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이 재판부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최종심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48

《백혜련 위원 서면질의》 ····· 351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51

2. 대법관으로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과 원칙은? ····· 352

3.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했던 판결 중 가장 좋은 판결 5건과 가장 아쉬운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353

4. 검찰의 악의적 분리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의 법관 사건배당 예규에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사실심선고 이후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분리기소를 재배당 사유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356

5. 중대비위를 저지른 판검사, 기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르고 퇴직을 했음에도 변호사법 8조상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적용에 협회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58

6. 초범, 반성, 음주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범죄자 형량 감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직접적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이 감형 요소에 포함된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

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359

7.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습공탁으로 인해 가해자가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음. 공탁이 감경사유가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361

8.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62

9.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63

10.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 ····· 364

11.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과거 함께 근무했을 수 있는 대법관들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365

12.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전관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366

13.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367

14.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68

15.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 369

16.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70

17.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7건 꼴로 대법서 심리 불속행이 기각 돼 당사자들이 이유도 모른채 상고를 기각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54.5%에 그치

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작년 70.5%로 10년 새 16%나 증가하였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371

18. 체액 테러 가해자에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73

19. 본 위원이 발의한 체액테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374

20. 현재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375

21.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여러번 낸 피고인에 대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음.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양형기준 및 관련 법 강화 등 법이 범죄 억제라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376

22. 개인회생에 대한 처분 기준이 지역 회생법원마다 상이해 채무자들이 관대한 처분을 하는 법원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법원에 따라 실무준칙이 모두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 378

2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79

24.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380

25. 법원행정처는 AI를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도입할 것이라 밝혀.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381

26. 법관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등 각종 성비리

를 저지르고도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82

27. 법원 내 연구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384

28. 법원 내 연구단체가 법조계 카르텔을 조장한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385

29.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 26건 중 절반 이상인 16건의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중 하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이 상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단형 범위와 선고형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 386

30. 최근 법원은 데이트 폭력으로 전 남친을 고소한 여성이 다시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음.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는"수사기관의 무고죄 인지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하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388

31. 사이버렉카,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적 제재가 횡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389

32. 법관들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물론,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소명감,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 390

33. 행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91

34. 윤석열 정부 2023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45만 7천여건으로 2021년 34만 7천여건보다 11만건이 증가했고, 2012년 12만 2천여건에 비하면 무려 3.7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지난 11년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 발부율은 최저 98.7%, 최고 99.2%를 기록하며 사실상 통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 392

35.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393

36. 검찰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초 사건과 관련없는 사안까지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394

37.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원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재판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395

38. 최근 마약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함. 그러나 법원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등 엄벌에 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96

39. 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97

40.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에 집중돼있는 사법기관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398

41. 장녀의 2022년 사업 수입/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 399

42. 장녀가 주식회사 스프링클라우드에 취업하게 된 경위와 맡은 역할은? 400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 ····· 403

1.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2년 6월부터 6개월 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한 이유는? ····· 403

2.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2년 6월부터 6개월 간 전입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소유자 및 세대주와의 관계는? ····· 404

3. 후보자의 장남이 2018년 1월부터 약 1년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주택으로 전입한 이유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세대주와의 관계는? ····· 405

4.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를 인적공제에 등재한 전체 기간은 얼마나 되고, 등재한 구체적 이유는? ····· 406

5.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407

6. 대법관 제청을 수락한 이유는? ····· 408

7. 소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409

8. 소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파장이 모두 해소됐다고 생각하는지? · 410

9. 현재의 대법원 판결이나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개선 과제 3가지를 뽑는다면? ····· 411

10. 광주 5.18민주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413

11.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그 국가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14

12.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결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415

13.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오랜 비판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17

14.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18

15. 소년범들의 흉악 범죄 증가에 따라 소년법 폐지 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19

16. 후보자의 판결 중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기억에 남는 3가지는? 420

17. 시대 변화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 간의 괴리로 고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 422

18.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전부)기각률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 424

19. 대법원이 재판 외에 등기 등 일반 행정에 속하는 업무까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425

20.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공적 증명나 장부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유독 대법원(법원행정처)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열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연간 약 7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음. 기실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발급 무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 등기사항의 열람'만이라도 무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26

2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위 '월권행위'처럼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지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위력과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오히려 직권남용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지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 427

22.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개선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29

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변론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변론은 인터넷을 통해 중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430

24.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포함 판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31

25. 도입 약 15년이 지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433

26. '법조일원화'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은? ····· 434

27.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법원의 지방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35

28.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도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이해충돌금지원칙'도 대표적인 내재적 한계라고 보는지? ····· 437

29. 동일 법원에 속한 재판부가 관련 사건에 대한 동일 심급에서 상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은? ····· 438

30. A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단정적인 예단을 갖고 있는 재판부에, 해당 판결이 유무죄 또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B피고인의 사건이 배당된다면,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나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은? ····· 439

31.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후보자가 담당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440

32.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상대방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42

33.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형사법원 판례와 달리, 본인이 참여한 대화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2013나8981)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444

34. 국민 다수가 본인 참여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민사상으로도)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고, IT 기술의 발달로 '자동녹음 기능' 등 대화와 통화 녹음이 일상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무차별 다수가 언제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와 완전히 동일한 행위에 대한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판단을 통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45

35. 제3자뇌물제공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0도12313 등)에 따르면,'부정한 청탁'이란 "직무집행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제3자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A구청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등의 직무집행을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할 경로당의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A구청장에게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임.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개발 이익의 공익 환원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억제하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446

36.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나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예결산 심사를 받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47

37. 국가 예산의 편성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만약 「국가재정법」의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A중앙관서의 장이 소관이 아닌 B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까지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대로 최종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해당 예산안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448

38. 만약 위와 같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의무와 절차를 위반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의결한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지? ····· 449

39.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대한 1심 판결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을 "쌍방울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시했으

나, 같은 수원지법의 형사 11부는 동일한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적시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음.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불과 1년 여만에 이처럼 완전히 상충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450

40.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이유가 없다면 재판의 이송과 변론 병합 등으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같이 재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51

41.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검찰의 병합 반대 의견서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명백히 '동시 심판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닌지? ····· 452

42.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사안에 대해 "기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관할 병합 이송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이라고 답했음에도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한 이상,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인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53

《유상범 위원 서면질의》 ····· 457

1.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 지명 이유 및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스스로에 대한 평가 ····· 457

2. 후보자의 좌우명 ····· 459

3. 존경하는 법조인 ····· 460

4. 가장 좋아하는 법언 ····· 461

5.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 462

6.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아쉽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 463

7. 법관 재직중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판결, 그 이유 ····· 464

8. 법관 재직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그 이유 ····· 466

9. 과거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 또는 동호회 ····· 467

10. 전관예우 관련 퇴직 후 거취에 대한 견해 ····· 468

11. 사형제에 대한 견해 ····· 469

12.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70

13.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71

14. 촉법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72

15.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16번 질의와 분리해서 답변할 것) ····· 473

16.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15번 질의와 분리해서 답변할 것) ····· 474

17. 2019년, 순천지원 민사2부에서 소수의견을 기재한 판결문이 나왔음(2018가합12187). 3심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하급심(1,2심)에서 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문이 작성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해당 질의는 관련 재판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하급심에서'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한 질의임) ····· 475

18.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476

19.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내는 일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78

20. 법조일원화 제도를 직접 경험한바, 해당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479

21.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후보자가 생각하는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 증가 원인 및 대책은 무엇인지? ····· 480

22. '변시 응시기간 5년 제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견해? ····· 481

23. 관행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82

24.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83

25. 법률의 한글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84

26.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85

27. '존엄사 등 적극적 안락사' 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486

28. 후일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관련해서 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487

29. 과거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법관들이 평생 법원에 남아 재판을 하며 재직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 비율이 매우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재직한바, 이런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488

30.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는 대법원 재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재판연구관으로 5년 재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489

31. 최근 탄핵안 발의 권한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90

32. 판사 증원 및 검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91

33. 사법부 당면 과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해소방안에 대해 장기적 법관 증원과 더불어 법률AI가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가운데 일명 'AI 판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우리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후보자는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한바, 법관 업무에 인공지능 활용이 접목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92

《곽규택 위원 서면질의》 ····· 497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97

2.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법언이나 좌우명 ····· 498

3.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판결, 이유 ····· 499

4.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이유 ····· 501

5. 판결 이외에 이제까지 법관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유 ····· 502

6. 기억에 남는 연구모임이나 동호회, 이유 ····· 503

7. 후보자가 집필한 저서, 논문, 판례평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유 ·· 504

8. 대법관으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 후에 하고 싶은 일, 이유 ····· 506

9. 후보자는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인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제47조)의 한계나 요건에 대한 견해

…… 507

10. 해사법원 설치여부, 설치지역, 해사민사사건의 사건관할에 대한 각 견해 …… 508

11. 현재 서울, 수원, 부산에 각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509

12. 회생법원의 사건수 대비 법관과 회생위원 등 관련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510

13.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올해까지 최소 법조경력 5년이상, 내년부터는 최소 법조경력 7년 이상 경력 법조인 중에 판사를 선발하게 되는데, 경력기간 확대에 대한 견해, 대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 …… 511

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당 청원이 국회법(제123조)과 청원법(제6조)에 따라 접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 513

15. 최근 사회 여러분야에서 'AI'(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일부 대형로펌에서도 초기 단계 'AI'를 도입하는 등 확대되는 분위기이고, 지난 1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에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 …… 514

16. 최근 일부에서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515

17.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서 합의재판부 담당 예외 사건으로 규정하여 단독재판부 관할로 두고 있고 재정합의에 따라 합의부가 재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수 희생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

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516

18. 사법부의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이유 ····· 518

《박준태 위원 서면질의》 ····· 523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23

2. 대법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524

3.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526

4.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은? ····· 527

5. 사법질서 확립에 대한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은? ····· 528

6. 법관의 거짓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무겁고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29

7. 역대 대법원장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던 사례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 530

8. 후보자의 신념과 가치관의 배경이 되는 법언은? ····· 531

9.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내린 판결 중 후회나 아쉬움이 남는 판결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 532

10.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으로 공익소송의 활성화가 어려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 533

11.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담긴 의미와 헌법정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34

12. 대법관 등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논란에 관련된 입장과 견해는? …· 535

13. 재판 지연현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견해는? …… 536

14. 법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37

15. 舊 '사법정책자문회의'가 사법개혁의 어떤 부분에 기여했는지? …… 538

16. '사법정책자문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 될 시 기대효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39

17. 대법관 또한 법관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라고 보는지? 아니라면 대법관이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어떤 근거로 조치하는지? …… 540

18. 올해 대법원 판례 중 성범죄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강조한 판례가 나왔지만, 최근 '동탄 경찰서 CCTV 사건'처럼 무고한 인원이 가해자처럼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 관련하여 후보자의 견해는? …… 541

19.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中 146위로 이는 군, 정부, 정치권보다 하위 수준임.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유와 개선대책은? …… 542

20. 형사재판 중 국선변호 사건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연체 등 처우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은? …… 544

21.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545

22. 지난 '95년 대대적인 비자금 수사 이후, '97년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비자금 관련 뇌물죄가 확정되었음. 그런데, 2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씨가 폭로한 전두환 비자금에 이어, 이번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통해서도 새롭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안방 비자금이 드러나, 당시 비자금에

관한 수사/판결이 충분했던 것인지 비판이 일고 있음. 대법원 판결 이후 범죄수익금인 비자금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546

23. 심급별 널뛰기 판결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547

24. 2018년 해군 미투 판결(1심 징역 10년, 2심 무죄), 2019년 전남지역 군수 3명 선거법 위반 판결(3명 모두 1,2심에서 당선무효형 판단이 모두 달라짐) 등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심급별 널뛰기 판결로 인해 국민 혼란 초래함. 특히, 가사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의 핵심요소인 재산분할대상, 기여도는 가사 비송사건에 해당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1심과 2심이 큰 차이를 보여 '원님재판'이라는 비판 있음.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548

25.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주요 사안의 판결에서 주취 사유나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판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특히, 주취감경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549

26. 주요 국보법 사건들 모두 1년 이상 재판 중.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전략과 관련해 형소법 20조의 적용 및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50

《조배숙 위원 서면질의》 ····· 553

1.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553

2. 대법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554

3.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3건 ····· 555

4.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이유와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557

5. 법조계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559

6.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 거취에 대한 견해는? ····· 560

7. 존엄사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 561

8. 사형제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2

9.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3

10. 소년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4

11.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5

12.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및 유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6

13.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정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567

14.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8

15.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9

16. 고법부장제, 법원장추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0

17.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사실상 법원장들의 사법행정권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최소한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위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1

18. 김명수 前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대법관회의 및 전국법원장회의가 유명무실

해지고 반면 전국법관회의가 사실상 사법부의 주요사항을 결정함.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 회의의 활성화 및 전국법관회의 기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2

19. 경력대등재판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3

20. 작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연대책임 제한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4

21.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5

22. 현직 판사가 SNS 상에 특정 정치성향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576

23.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7

24.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소위 거짓말 논란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8

25. 현재 특정 성향의 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주요 요직에 자리 했다는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9

26. 대법원(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80

27. 각급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후보자의 대처 방안은? ····· 581

28. 사건이 남아있더라도 오후 6시면 재판을 끝내는 이른바 '땡퇴근' 및 3·3·3캡(주3건씩 3주간 총9건 판결문 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82

29. 장기미제 사건 해소를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 584

30.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되었다는 소식을 최초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 받았는지? ····· 585

31.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대략 몇 건의 사건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판결은 어떤 사건인지? ····· 586

32.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대표 사건 3건의 사건 개요, 판결, 판결이유는? ····· 587

33. 헌재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결정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589

34. 22대 국회 이기헌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국조완박(국정원 조사권 완전박탈)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90

35.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관의 근로의욕 고취 및 인사 제도 개혁 방안은? 591

36. 강제징용 관련 제3자변제 공탁불수리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592

37.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11. 29. 1심이 선고되어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등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음. 문제는 1심 판결까지 3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송철호는 울산시장을,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93

38.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94

39.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장 가겠다", "비회기 중 영장청구하라"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처럼 형사사건 소환 조사 일시, 영장 청구일을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95

40.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596

41.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 597

42.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해임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98

43. 현행 판사연임심사제도에 대한 공정성 및 외부평가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599

44. 법관평정 결과 공개와 변호사단체 법관평가결과 반영 등 법관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00

45.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 여성, 노인, 성적 소수자 등을 위해 그동안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 601

46.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판결문은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전체의 1%도 채 안 돼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헌법 제109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04

47.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05

48. 고위직 판검사들의 퇴임 후 로펌 취업 후 고액 급여 수령에 대한 견해? ····· 606

49.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 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및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선출 및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한 기관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07

50.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08

5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역할 및 권한, 위상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609

52.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형'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바 후보자는 현재 양형기준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610

53.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 관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611

54.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대면 심리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612

55. 경력법관 임용 중 대형 로펌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후관예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안 및 입장은? ····· 613

56.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14

57.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615

5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지원한다며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616

59. 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신청·재판장고발 등 간첩사건 재판지연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617

60. 제주 ㅎㄱㅎ사건 관련, 직권보석·전자팔찌착용 면제·주거제한 일시 해제 등 간첩사건 피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18

61. 계속중인 형사 재판 피고인의 죄명과 형벌의 종류를 감경해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업무) 처리 절차 및 보고절차는? ····· 619

62. 특정 재판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피고인 면회(신청), 검찰청 연좌농성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20

63.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수사(재판)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법원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사법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21

64. 법원노조와 법원장의 교섭대상은 무엇이며 재판 시간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22

65.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상 지위와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후보자의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표결하도록 하는 양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23

66.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적(학연, 지연 등 친목 모임 등), 공적(법원 근무지, 학술연구모임 등) 인연은 어떠한가? ····· 624

67.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공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625

68.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사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626

69.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27. 6.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우려 내지 전반적인 견해는? ····· 627

70. 헌재의 결정 이후 발생한 낙태법 장기 공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28

71. 최근 '36주 낙태 브이로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바 해당 영상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에 대한 죄명은 무엇인가? ····· 629

72. 이적단체에서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 수차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안보사범이 현역 국회의원과 접촉하며 원내에 진입하려는 시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630

73.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하였을 때 헌법 및 국회법과 청원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631

74.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32

75. 선거사범은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길어져 '해당 조문의 사문화', '판사들의 위법'과 같이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33

76.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 중 가장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탄핵안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634

77. 최근 '유튜버 쯔양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 수익을 좇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이런 사이버 레커에 관한 건은 특별히 과중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35

78. 올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는데, 노동법원 설치를 통해 노동분쟁 및 구제 절차 지연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36

《박은정 위원 서면질의》 …… 639

1.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후보자 입장은? …… 639

2. 지난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한 청문회 일정을 19일과 26일로 의결하였음.

-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국회법 제65조 1항,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 실시의 건이 채택되었음. 이번 청문회가 탈헌법적, 탈법률적 청문회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41

3. 상고법원 도입 등 상고심 제도 개선과 현행 13인 체제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42

4.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관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후보자의 의견은? ····· 643

5.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은 6월 10일 사건 종결 처리되었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로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음.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부실한 절차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국민의 법 감정상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후보자의 입장은?

- 김건희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내용을 참모진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와 국민권익위의 직무 유기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 644

6. 지난 202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음.

- 첫 번째 직무집행 정지처분 인용 이후인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

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림.
-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0개월 만인 2021.1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음.
-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고 밝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윤석열 감찰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1심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세 개의 각각 혐의별 후보자의 법리적 의견이 어떠한지? ····· 645

7. 2023.2,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음.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위법을 파기 사유로 들었음.
-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감사징계법 17조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거나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를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했음. 또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요건을 미달했고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 쪽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한 것도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음.
-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원고(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음. ····· 647

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2024. 1,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가 최종 취소되었음. 현직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의 비위로 진행된 징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률심을 통해 법리상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음.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에 비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여 대통령을 구제하고, 법무부장관은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데뷔했던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통령의 중대 비위 의혹에 대해 법률심에서 위 사안을 다뤘어야 했다고 판단하는지? ····· 651

9. 오석준 현 대법관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재직하던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 마신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후 2022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 우려에 십분 공감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음.
- 미국의 피오렐로 라과디아(1882~1947) 판사는 뉴욕 치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1920년대 어느 겨울, 나흘을 굶고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10달러 정도의 빵을 훔친 혐의의 절도죄로 법정에 선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 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잘못에 대해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온 모든 참석자도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각기 5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라고 평결하였고 재판장에서 모은 57달러 50센트 중 벌금 1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노인에게 전달하였음. ····· 652

10. 소위 50억 클럽 논란으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2023. 2. 8,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

장판사 이준철, 배석판사 남민영·홍사빈)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의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뇌물 의심 되지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음.

- 50억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설명에 동의하는지?
-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55

11.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소위 사법농단(판사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변협회장 사찰 및 변협 외압행사, 민변 외압 행사, 재판 거래 등)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혐의에 대법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사법농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의 일원으로서 재발 방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양승태 사법농단의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음. 헌법상 최고법원의 일원으로서 후보자가 대법관에 지명된다면 사법농단 판결상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무엇이 있을지? 사법농단 각 혐의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656

12.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음. 또한 5월 22일 자로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출신 전·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 제출을 통보했음 ····· 658

1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배우 이선균 씨는 수사단계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찰관

등 다수의 공무원이 유출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과 범죄행위를 공표하였음.

- 위의 두 사례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의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 661

14.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는 등록의무자에게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의 배우자가 의무자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여 자녀에게 매수하게 한 뒤, 6년 만에 30배가 넘는 차익을 거둬들이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도덕적 잣대에 비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 663

15.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30배가 넘는 비상장주식 거래 차익을 통해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시내 지역의 다세대주택을 7.7억 원에 분양받았으며,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소위 갭투자를 실행하였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으로 확인되었음.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비상장주식의 거래 완료 후, 이를 한 번에 상환하였음.

-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 위 고위공직자가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면 공직자 후보자로서 처신이 적절했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664

16.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증권 및 주식도 등록대상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이균용 전 대법원장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사퇴한 바 있음. 국회의 임명동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사퇴해야 하는 게 맞는지?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징계 등을 사후에 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후보자의 견해는?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치는 게 적법한 판단일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65

17.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67

18. 고위공직자들의 자녀가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서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스펙 부풀리기에 사회적 비판이 있음. 일부 고위공직자의 자녀 또한 논문 대필을 통해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 논란이 되었음.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학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68

19.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퇴직자의 재직 당시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인 퇴직자와 피고인 주무부처 장관은 같은 기관에 소속하여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 해당 주무부처 장관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1심 변호사들을 교체하고, 상고를 포기하여 징계취소가 확정되었음. 이와 같이 재판의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나 친소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69

20. 현재 노랑봉투법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는 있는 법안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랑봉투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70

21. 최근 정부와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대치 국면에 서 있음. 최근 의료계 측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대법원은 최종 기각을 내림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또한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서울고법에 계류 중 인데 판결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 671

22. 방통위 위원장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이진숙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내며 언론노조 MBC본부 간부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동의하는지? 대법관 후보자로서 견해는? 또한 MBC,YTN 바이든-날보도에 따른 방심위의 법적제재가 있었음.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국민적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법적 견해와 의견은? ····· 672

23.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에 따른 근거 ····· 673

24.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주거공간 또는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의견은? ····· 674

25.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75

26.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따라

마련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본법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강행했으며, 특히 보도의 신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언론의 특성상 검찰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음. 일례로 뉴스타파 前 전문위원 신학림 씨는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음. ····· 676

27. 헌법에서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조직의 구성은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및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법무부의 외청 행정기관인 검찰청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을 구성하는 공무원들 역시 기존의 행정 공무원과 신분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특권을 누려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법원과 대등한 검찰의 각급 검찰청의 설치와 법관과의 직급체계의 유사성, 앞서 서술한 시행령과 검찰 예규를 통한 권한 통제의 비대칭성 등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넘나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검사가 행정부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80

28.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1)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조정하여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하게 하며 2)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며 3)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체계화 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설치하고 4)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소위 "공소청법" 제정안

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후보자는 공소청법 제정안의 위의 4개 주요 내용별로 각각 입장이 어떠한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682

29.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법"제정안은 1)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며 2)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됨. 3)직접 수사대상 또한 부패, 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마약범죄수사로 확대하고, 국가 반부패 수사에 대응토록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4)중수청을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게 함으로써 겸제와 감시의 균형으로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683

30.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아래 수사절차법 제정안에 대한 7개의 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수사 적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반영. 1)수사의 주체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관철, 관통되도록 함.
- 다만,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및 국회 입법에 의한 특별검사, 군검사의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함(법안 제2조). 2)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타건 수사 금지 규정 등 수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및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법안 제3조, 제4조). 3)형사소송법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의 편제와 나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춤. 4)피의자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 및 적법절차의 구현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법안 제34조 ~ 제42조). 5)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법안 제75조 제2항), 전자정보 압수수색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안을 입법으로 반영(법안 제82조). 6)수사 중 언론에 의한 명예형 인격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상세하게 입법(법안 제4장 제105조 ~ 제113조). 7)별건수사, 타건으로 본건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법안 제114조), 수사기밀 공개 내지 누설하는 경우/형사사건 관련하여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하는 경우(제115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증거기록 편철을 누락한 때(법안 제116조) 처벌하도록 함.
- 특히 상대방이 수사기밀을 누설받아 이를 공개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함(제115조 제2항).
- 누설받은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 ····· 685

31.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 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3개의 각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688

32. 언론에 보도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제7조 1항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바, 검찰의 예규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 권한 확대로 인해 그 외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있음. ····· 691

33.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됐던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업무방해방조죄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게 아닌지 우려가 있음. 업무방해 방조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93

박범계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범계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관은 법률적 쟁송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 법관으로서의 높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재판의 독립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가 스스로 대법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 로 부 한 사 이라는 을 고 있고, 자신이 대법관으로 적 자인지를 판 하는 은 어 니다. 다 , 어 이 로 제가 대법관으로 제청 는지 생각해 니다.

○ 는 신 한 재판을 위하여 사 에서 한 기 를 바탕으로 당사자들과 내 있 소통하여 도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력하 니다. 결과 신 하 행하 서도 한 재판을 대로 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 아 소수자 자를 하는 이 사법부의 요한 이자 역할로 생각하고, 부 하지 이를 위한 판결을 할 수 있 도 제가 이 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에 부 사정에 들 는 소신에 따 재판, 재판부 법원 구성원들과 의 는 소통, 법 분야의 전문성 등도 고 다고 생각하 니다.

○ 는 대법관 제청이 이 한 을 바탕으로 과 사회에 은 사를 하라는 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 니다.

3. 대법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3가지와 그 이유

○ 법원의 가 근 적인 재 의의는 하고도 신 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인의 해 리를 구제하는 이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니다. 따라서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여 제도적인 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관 재판 구 원 원, 전문법원의 신 , 전문법관 제도 확대를 통한 법관 전문 , 심 제도 합리 등 제도적인 원에서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 리 을 높일 수 있는 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법률심인 고심의 제도 어야 합니다. 하는 고 사 으로 인해 전원합의 가 성 지 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 을 생각하고 있 니다. 결 고심사제 도 등과 은 고 제도 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 으로, 등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고 합의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은 우리 라의 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하는 이 기적으로 사법부에 우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 제가 가 경하는 인물은 선 ( ) 니다.

○ 아 서는 생 생 을 하 고, 정 을 하신 사 일을 하 니다.

○ 아 서는 (唯德有隣 - 이 있어야 이 이 있다)을 가 으로 아 생 하 고, 부정한 재물을 하지 고 사 을 소 하 여기시는 선 은 일이 으 , 고 한 소로 자 의 을 해 니다.

○ 아 의 가 과 로 지 의 자리까지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5.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의미있거나 자랑스러운 판결 3건 및 그 이유

○ 경기대 대 조 기 제· 근로 사 (서 고법 2011 39419)

- 정규 전 을 회 하기 위하여 근로를 이용하여 기 제 근로와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을 기준으로 사용사 (법인)와 근로자(대 조) 사이의 시적 근로 관 성립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법이 용 지 을 명확 하 니다.

- 또한, 기 이 정 이 는 근로자 에도 사 서를 수리하는 식으로 리한 은 정당한 이 이 근로관 를 종 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 하여 이 한 식으로 근 를 종 시 는 관행에 제 을 니다.

○ 오거리 사 (고법 2013재 3)

- 고인은 시에 있는 오거리 으로 하 시 전기사인 해자를 식 로 해 다는 범 사 로 기 소 어 재심대 판결에서 역 10 을 선고 받 니다.

- 고인은 이 재심을 신청하 고, 자는 재심에서 고인 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 이 경찰의 행 등에 의한 으로 신 성을 인정하기 어 고, 고인이 범행에 사용 등 에서 이 출 지 은 사정 등을 고 하여 고인에 대

하여 를 선고하 니다. 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 이 범에 대한 기소가 이 어 고 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 니다.

- 이 사 에서 를 선고하여 범이 기소 수 있는 여 이 고, 에 따라 하 를 받은 고인과 인 해자의 이 위로를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 니다.

○ 인 시 사 (수원고법 2022 13080)

- 성시 지 원 경쟁 용시 에 원고는 인 전의 일한 필기 합 자로 을 니다. 최 에서 와 관 이 는 등에 대한 문을 받고 ‘ ’ 등 받 고, 이 가 에서도 ‘ ’을 받아 최종 하 니다.

- 이에 대하여 1심은 최 에서 에 대한 문을 한 은 행위에 해당하지 , 가 에서 시정 에 따라 하자가 치 다고 지 , 는 최 에서의 등 에 따라 가 대 자로 분 이 로 최 의 결과에 따 향이 있는 이고, 원고가 인 전 의 일한 합 자 사정을 고 하여 최 의 행위가 시정 다고 수 다고 판 하 니다.

6.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아쉬운 판결 3건과 및 그 이유

○ 법관으로 재 하 서 최선을 다해 기 을 하 고,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분한 소통을 하고자 력하 니다. 제 력에 따라 부 한 판결이 있을 수는 있지 , 성심을 다해서 재판을 하여 아 이 는 부분은 니다.

7. 법관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행에 있어서 헌법이 법률을 위 한 에는 심판의 대 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니다. 따라서 법관이 를 행하 서 헌법이 법률을 위 한 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 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의 신분 과 이 한 규정을 지에 기 헌법재판소 결정 를 고 하 , 법관의 사 는 을 정당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 헌법이 법률 위 이 있는 경우를 의 한다고 아야 하고, 위 이 대한지 여부는 법위 이 어 정도로 헌법 서에 부정적인 향을 치는지를 따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에 따라 법관에 대한 은 회에서 소 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는 사 으로서, 대법관 자로서 구 적인 의 을 기 어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8. 법관을 탄핵할만한 헌법, 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 제106조 제1 에서 '법관은 또는 고 이 의 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 아니하 , 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 ·감 기 리한 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행에 있어서 헌법이 법률을 위 한 에는 심판의 대 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니다.

○ 따라서 법관이 를 행하 서 헌법이 법률을 위 한 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 가 하다고 생각하고, 법관의 신분 과 이 한 규정을 지에 기 헌법재판소 결정 를 고하 , 법관의 사 는 을 정당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 헌법이 법률 위 이 있는 경우를 의 한다고 아야 하고, 위 이 대한지 여부는 법위 이 어 정도로 헌법 서에 부정적인 향을 치는지를 따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구 적인 사 를 제시하기 어 을 양해하여 시기 바니다.

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는 일부언론과 정치권의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법관이 정 구회에 소 어 있다는 사정 으로 법관이 정치적으로 향 어 있다고 정하는 은 지 다고 생각하고, 로 인하여 법원 내 갈등이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니다.

○ 다 , 정치적 향성이 있는 이라거 정 구회가 력 다는 우 가 있다는 으로도 사법신 , 재판결과의 등에 부정적인 향을 수 있으 로, 이 우 가 생하지 도 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니다.

10.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원은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 는 이해관 를 조정하고 통합 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 로, 이 한 관 에서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 해야 한다는 의 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사법적 쟁송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신 하고 정확한 사 의 해결이 조 는 재 에서, 오로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 를 위해 역 등을 기준으로 식적으로 근하기 다는, 사회를 바라 는 가치관과 등을 기준으로 적인 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할 수 있도 하는 도 필요하지 을까 생각합니다.

11. 민사본안 사건의 70%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음. 이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재 고에는 한 제한이 니다. 따라서 고가 제기 는 사 수가 우 고, 이를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은 역 이 고 있 니다.

○ 식적으로 생각하 고에 아 제한이 는 이 의 재판받을 리를 분 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 니다. 물론 는 이 있지 , 사법 자원은 한정적 니다. 한정적 자원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 이 지 하 , 전 로서 사 리가 지 거 필요한 사 에 역 이 지 하는 결과가 생할 수 에 고, 이는 의 재판받을 리 에 역행하 니다.

○ 인적으로는, 심리 행 제도가 지 다 대법원의 사 리는 당 지 수 에 고,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필요한 사 에 분한 역 을 하기 어 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대법원의 역할과 기 을 다할 수 있도 고심사제 등을 포 한 고제도 선이 필요하고, 이는 우리 라의 심 전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갈등이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 헌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의 헌법기관 니다. 헌법은 사법 과 명 ·규 , 분의 위헌·위법 심사 은 대법원에 부여하고, 법률의 위헌심사 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한과 기 을 분 하고 있 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 력,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 명 · 규 에 대한 위헌심사 등에 관하여 해의 이를 여 니다. 다 헌법이 헌법해 한을 양 기관에 분 한 은 과 제를 통하여 양 기관 헌법을 수 하고 기 을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 하기 위한 이라고 이해하고 있 니다.

○ 양 기관이 자신에 어 를 적 수행 으로 헌법이 부여한 의 기 이라는 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정부가 시행령 마련 시 상위법의 입법(개정)취지를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대법원은, 시행 등 하위 법 이 법률의 위 범위를 어 는지를 판 하는 기준에 대해 ① 법률의 위 규정 자 가 의 내용을 정확하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 의 한 를 분명 하고 있는데도 하위 법 이 문 적 의 의 한 를 어 다 지, ②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 를 어 범위를 확 하거 소 으로 위 내용을 구 하는 를 어 로 법을 한 으로 가할 수 있다 위 의 한 를 일 한 이 , 이를 판 할 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 다 규정과의 관 등을 종합적으로 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 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 23808 전원합의 판결).

○ 기 적으로 이 판 의 지에 감합니다. 다 , 정부가 시행 을 하 서 위법의 법(정) 지를 하지 은 이 위와 은 위 범위를 일 하 다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 적인 사 을 확인하지 고서는 리기 어 니다.

○ 법원의 구 적 사 에서 명 ·규 의 위헌·위법심사 대 이 기 전에 자가 이 이 의 인적인 의 을 리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4.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민간기업을 통한 피해 보상안(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원 판결을 하고 지에 행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정부의 해 이 지에 는지를 포 한 부분은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는 사 이고 이 부분이 사 수도 있으 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5.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관 자로서 정 판결의 결과에 대한 구 적인 해를 하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6.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 행 찰청법은, 제8조에서 법 부 관은 찰사 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 적으로 사를 지 · 감독하고 구 적 사 에 대하여는 찰 을 지 ·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찰 은 대 찰청의 사 를 아 리하고 찰사 를 하 찰청의 원을 지 ,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통 의 적인 수사 지 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은 으로 고 있 니다.

○ 결 법률의 해 을 통해 인정 여부를 아야 하는 문제로서, 정치적으로 쟁이 있을 수 있는 사 이고, 또한 구 적인 사 에서 법원의 재판 대 이 수도 있는 문제이 로 대법관 자로서 구 적인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7.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사 제도는 인 의 대적 가치인 생명을 대 으로 하는 이기 문에 우 조심 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 제 지를 하는 거로는, 지가 전 적인 이고, 한 행 결과를 이 수 으 , 제도의 범 지력도 적으로 바가 다는 등을 들 수 있 니다. 치를 하는 거로는, 인, 대규 인명 등 인 적 범 가 여전 재하고, 한 범 로부 전하다고 수 는 에서 의 법 감정, 으로서의 성 등을 들 수 있 니다.

○ 양 거 당한 이 있고, 행 헌법에도 사 제도가 있 을 전제로 한 규정(제110조)이 있어서 헌법에서 사 제를 용인하고 있다고 여지도 있 니다.

○ 결론적으로 사 제 여부는 인 의 과 가치, 생명 등 헌법 규정의 한 해 과 어 사 의 일 적 과, 의 법감정, 해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 법왜곡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법 는 판· 사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거 사 관 를 조 하거 , 적용 어야 할 법 을 적용하지 거 부당하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하는 로 고 있 니다.

○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기소를 한 사 판결을 한 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어 수사와 재판의 정성 적정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 , 법 가 도 경우 수사 재판 결과에 을 가 사 의 고소·고 이 하고, 수사기관이 법 의가 있다는 이 로 사법부에 대한 향력을 행사할 우 가 있으 로, 법 도 에는 당 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우리 사소송법은 사에 범위한 수사지 을 부여하 서 시에 기소독 의와 기소 의 의를 하고 있어 다 라들에 하여 사의 한이 지 치 다는 판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 의 의는, 범 자의 정 을 고 이 시 기소하여야 한다고 하 오 구 적 정의에 하거 사정 적 지에서도 적 치 기 문에 규정 으로 고 있 니다.

○ 다 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재 도 제한적인 은 아니고 로 합리적인 한 가 있어 자의적인 기소 분은 제한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 사소송법은 사의 기소 의 의에 대한 사법적 통제 치로 재정신청제도를 고 있는데, 아가 소 지 사제도 부 , 시 들이 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기소 분에 대한 당부를 사전에 심사 받는 제도 등에 대한 의도 있 으로 고 있 니다. 은 사회적 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견해

○ 우리 헌법 법치 의와 력분립의 원 에 의해 어 한 가 력도 제한적으로 한을 행사할 수는 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행사 고 용 어서 아니 는 내재적 한 를 는데, 이는 기적으로 대통 의 인사 행사도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은 대통 의 인사 행사와 관 하여 회의 의를 받 하거 , 대법관 명 시 대법원 의 제청 ,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회와 대법원 의 지명 등과 이 요 헌법기관을 구성할 다 가기관에 의한 제와 의 원리가 하도 으로 각 기관의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을 확 하고자 하고 있 니다.

○ 위와 은 헌법 의 에 의해 대통 의 인사 행사 에서도 력분립의 원리가 구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전관 우 관

-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의 전관 우에 대해 들의 우 가 다는 을 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의 신 에서 이 사 가 생하는 은 바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이를 제한적으로 제한하는 은 헌법 선 의 자 를 해할 여지가 있으 로, 인의 기 과 사법신 이라는 의 가치를 조 시 수 있는 지 로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 , 생법관제의 정 등은 대 로 으로의 이 등을 으로 전관 우의 우 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고위 법관이 분한 을 할 수 있는 제 여 을 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 우 관

- 법관 용자 에 대 로 출신이 다수 있 에 따라 이 바 관 우 생의 우 가 있 을 고 있 니다.

- 재 법관 용 는 라인 식으로 행 고 있

고, 부 인사 등의 여를 통해 명성과 정성을 확 하고 있 니다. 이 사소송법 법관은 소 하 로 사 을 2 지 하 어 있 니다.

- 이 한 에서 대 로 출신이 다는 이 로 판을 받는 부분은 니다. 에도 구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우 를 식시 기 위하여 자의 이해 지 법 회 의 를 고, 고관 재 당 제도 등을 용하고 있 니다.

- 으로도 이 한 제도가 지에 어 관 우 의 우 가 지 도 지 적으로 력하여야 할 니다.

22. 성범죄 방지를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성범 사 은 성 력범 의 등에 관한 법, 아 ·청소의 성 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이 제정 서 법정 이 대 높아 니다. 또한 에 어 양 기준도 어 니다.

○ 이 한 에서 성범 지를 위하여 법정 을 높이는 은 자 로 어 정도의 과가 있는지 명확하지 을 아니라 다 범 와의 이 생(를 들 , 인 의 하한은 5 인 수 은 법정 의 하한이 7 니다)하는 문제가 있니다.

○ 다 , 위와 은 의가 오는 이 는 성범 사 의 양 이 적정하지 다는 에서 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시대의 과 의 높이에 는 양 이 이 어 수 있도 지 적으로 구하고 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사 적시 명 관

- 헌법재판소는 사 적시 명 을 하는 헌법 제307조 제1 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 고, 대법원도 전원합의 판결(2020도5813)에서 한 사 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 행위에 대한 사 의 필요성은 여전 재한다는 지로 판 하 니다.

- 이에 대하여 한 사 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 로 하는 규정은 의 자 론·출판의 자 를 지 치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감하는 이 있 니다.

- 사 적시 명 을 할 인지 여부는 인의 명 와 인 , 론·출판의 자 , 의 리 등 하는 법 과 로 인해 해 거 제한 는 리를 종합적으로 고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 으로 생각합니다.

○ 관

- 헌법재판소는 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 고, 이 한 판 은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의 성립 범위가 지 치 범위하여 의 자 론·출판의 자 를 과도하 위 시 우 가 있다는

지적에 감하고, 사 에서 인정여부를 판 하는 경우 이 한 을 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 여부 또한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24.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최근 사 의 이도가 대 가하는 에서 법원을 신 하여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 으로 사 리 을 높이는 도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하 의 으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위원회와의 관 를 어 정할 인지 등 여 쟁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관 분야 전문가와 의 의 을 분 수 하여 신 하고 적인 분쟁해결 구조가 정립 기를 바 니다.

25.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적 해 제도는, 가해자에 제 해 다 은 수의 을 명 으로 위법행위를 지하고, 사전적으로 해 생을 일 수 있다는 정적인 이 있 니다.

○ 다 , 이 제도도 소송의 등을 한 부 용이 있을 수 있으로, 이 도 어 있는 하도 거 정 에 관한 법률이 인정 법 등의 사 등을 고하고, 문제 을 하 한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할 이고, 최종적으로 도 할 인지 여부는 법정 적 결정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26. 간통죄 폐지된 후에도 법원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과거의 관행대로 여전히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대기 회 의 이 사 에서 인정 위자 수가 기 의 이 사 들과 하여 우 높 인정 서, 재판부 사이의 를 여야 하는 이 아 지, 기 의 위자 자 가 적 은 아 지에 관한 문제제기 내지 의가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구 적인 은 재판부의 재판사 으로 사 관 에 따라 라 수 있으 , 통 가 지 시 에서 법원이 시대 를 하여 적 한 위자 정을 위한 기준을 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대법원이 도입을 검토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전 에는 인의 다양한 정 가 포 어 있 니다. 이에 대하여 선 적인 수수 을 하지 는다 수수 으로 인하여 사생 의 과 자 , 정 에 대한 자기결정 등이 해 우 가 당합니다.

○ 따라서 수수 범위에 대한 적 한 제한이 필요하고, 법관의 대 심문 등을 통하여 범위가 적정하 제한 수 있도 사전심문제도 도 의가 이 어 으로 기 하고 있 니다. 인적으로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심문제도의 도 으로 수사 행성이 해 고 수사가 지 수 있다는 론이 있으 , 수사의 행성이 해 지 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어야 하는 은 당 하다고 생각하고,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수사 행성을 해할 수 있는 식으로 이 어 으로 생각하지는 니다.

○ 관 법률이 22대 회에서 의 으로 고 있 니다. 회 원에서 분한 와 의 수 을 거 법적으로 해결 기를 합니다.

28.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 등 과잉 발부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수수 부 이 높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수 으로 인하여 의 사생 의 과 자 , 인정 자기결정 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을 고 있 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 심리를 통하여 수수 의 범위를 적 제한할 필요가 있 니다.

○ 다 , 수수 은 통 수사 기 에 거 확 를 위하여 이 어지고, 수사기관이 성한 서 를 바탕으로 판 할 수 에 어 재의 구조에서는 수수 청구를 기각하기 지 은 이 있 니다.

○ 따라서 법관의 대 심문 등 수수 범위를 적정하 제한하기 위한 제도 도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적정한 사법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수수 부 이 높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수 으로 인하여 의 사생 의 과 자 , 인정 자기결정 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을 고 있 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적정한 사법통제를 하지 하고 있다는 판을 아 생각합니다.

○ 법관의 대 심문 등 수수 범위를 적정하 제한하기 위한 제도 도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전 에 대하여는 어 제한 등 적 한 제한 법이 규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 특히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일부기각 등 적절한 통제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전 , 등 정 는 성 수대 정 와 지 은 정 가 여 있 니다. 이 한 대전 등을 수하는 경우에 통 대전 에 전자정 를 이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관한 다 등이 이 어지 로 사 가 한 어 기 에 제한이 어지 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수수 에 따 사생 의 과 자 의 해 우 가 생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에 대한 적 한 제한을 하기 위하여 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수수 은 통 수사 기 에 거 확 를 위하여 이 어지고, 수사기관이 성한 서 를 바탕으로 판 할 수 에 어 재의 구조에서는 수수 청구를 기각하기 지 은 이 있 니다.

○ 따라서 이 한 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의 대 심문, 대전 에 대한 어 제한 등이 규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형 조사기관들에 대하여 검찰, 경찰 수사와 같이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정거 위원회, 청, 감사원 등과 은 이 바 력 조사기관들의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근 적으로 성 을 리하는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으로 고 있 니다.

○ 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사자에 이 한 분을 내 수 있는 한을 가지고 있기 문에 행정조사 에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와 가지로 적법 원 은 준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니라 하 라도 가기관인 조사기관이 사인을 대로 시하는 조사에서 조사자와 조사자가 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수는 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조사자의 어 행사를 위하여, 리고 적이고 적인 조사를 위해서 일정 정도 인 조력 을 인정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기 문에, 회에서 심도 있는 와 적 감대를 바탕으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2.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데이 력

- 최근 데이 력 사 으로 인해 해자가 사 한 경우도 생하는 등 이에 대한 들의 우 가 아니라 가해자와 해자가 수한 관 을 고 해 도의 규 이 필요하다는 의 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행 력범 양 기준은 ·원한, 오감에서 범행을 지 경우를 ‘ 할 한 범행 기’로서 가 인자로 정하고 있으 로 이에 해당할 경우 양 에 할 수 있을 으로 니다.

- 사 을 당하는 법원이 한 양 심리를 통해 고인의 에 부합하는 바 양 을 할 으로 기대하고, 데이 력을 독립 가 사 로 명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 성범 관

- 지 성범 는 해자에 치는 해 의 정도가 우 범 로서, 고인의 에 는 정한 양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위원회에서 지 성범 의 심각성을 고 하여 양 기준을 향하 고, 2021. 1. 1.부 시행 으

로 고 있 니다.

- 지 성범 양 기준도 다 범 의 양 기준과 가지로 양 인자가 우 다양하 규정 어 있기 문에 감경인자가 가 인자 다 이 적용 다는 으로 재의 양 기준 자 가 합리하다고 기는 어 다고 생각합니다.

33. 후보자가 받은 국외 교육훈련을 통해 사법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이 있는지

○ 2003. 8. 16.부 2004. 8. 15.까지 1 위 바 대 으로 을 다 니다. 당시 우리 라에서 사법 을 위한 의가 행 고 있 니다. 이에 고가 수 있도 위의 심 제도를 구하여 고서를 성하 니다.

34.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소송이 있는지

○ 해당 사　　니다.

3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세금을 누락하여 신고한 적이 있는지

○ 해당 사　　니다.

36. 조희대 대법원장과 근무를 함께 하였거나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지

○ 제가 2011. 2.부 2016. 2.까지 서 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 하는데, 조 대 대법원 도 2006. 8.부 2012. 9.까지 서 고등법원에서 근 하신 으로 고 있 니다. 다 은 재판부에 근한 적은 고 인적인 분도 니다.

37.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적이 있는지와 그 이유는

○ 제가 제로 거 하지 는 에 소 은 적은 니다.

○ 다 2001. 2.경 제가 지원으로 받아 이 하 시기에, 우자 한 정도 기 에 거 하 아 의 은 지에 거 하는 니의 아 로 전 신고를 니다. 오 어서 사 는 도 우자도 기 하지 하고 있 니다.

○ 2002. 6.경 제가 지원에서 근 해서 가 이 에 거 이는데, 우자 6 지인의 아 로 소를 이전한 일이 있 니다. 아 도 지 근 를 치고 서 이 수도 으로 근 지를 기는 이 정 이어서, 우자가 에 대 하여 거지를 준 하거 와 결 을 고 가정 부로 생을 이어가 서 에서 사 등을 재 해 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이 어 이 아 가 하고 있 니다. 시일의 경과 등으로 한 경위를 리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8. 자녀의 재산축적 경위와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사　　니다.

39.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또는 소득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　　니다.

40. 후보자가 5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의미있었던 사건 및 그 이유

○ 제가 대법원 재판 구관으로 근 하 서 한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 판결 니다.

○ 위 판결은, ① 행정 인 재 조합을 대로 관리 분 에 대한 조합 회결의의 력 등을 다 는 소송은 행정 분에 이 는 적 요 의 부 력 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 분의 위법 여부에 향을 치는 법 법률관 에 관한 이 로, 이는 행정소송법 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② 이 한 소송은 관리 분 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용할 필요가 있으 아가 관리 분 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 관리 분 은 행정 분으로서 력이 생하 로, 회결의의 하자를 이 로 하여 행정 분의 력을 다 는 고소송의 법으로 관리 분 의 소 또는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와 도로 행정 분에 이 는 적 요 하 에 과한 회결의 부분 을 따로 어내어 력 를 다 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은 한 사정이 는 한 용 지 는다고 아야 한다. ③ 이를 다 는 소송은 행정 분에 이 는 적 요 의 부 력 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 분의 위법 여부에 향을 치는 법 법률관 에 관한 이 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는 이 내용이 니다.

○ 이 판결에서 도시정 법 각종 분쟁과 관 하여 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 하는 일 의 기준을 제시하 고, 구 적으로 도시정 법 의 여 분쟁들이 법 당사자소송 을 명확 한 의 가 있으 , 이 한 이 로 이 문이 가 기 에 니다.

41. 후보자의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시기 및 매매 경위, 손익

○ 우자가 2019 도에 도이치 식 200 를 3,107,700원에 수하 고, 2020 200 전부를 3,295,000원에 각하여 수 은 178,165원(용 제) 니다.

○ 한 정 사 가 있어 이를 수한 은 아니라고 합니다.

허영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허영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의 위상과 역할은?

○ 대법관은 법률적 쟁송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 법관으로서의 높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재판의 독립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께서 대법관에 임명되고자 하는 이유는?

○ 27 재판 을 당하 서 은 경 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을 통하여, 가 할 수 있는 정한 재판이 수 있도 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자를 하고 하 , 우리 사회가 대립 는 갈등을 극 하고 사회통합을 이 는 데 조 이 도 이 기 위 니다.

3. 대법관이 어떠한 위치라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대법관은 분쟁의 최종심 재판을 당하는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구 적인 사 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대법관은 의 리와 사회적 자를 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이 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적이고 정한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여 대립하는 이해관 를 조 해결할 수 있는 력을 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의 우명은 ‘ 용(中庸)’ 니다. 법관으로서 한 으로 치우치지 고 부 하지도 치지도 는 을 가 요한 가치로 고 아 니다.

○ 에 따라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향과 을 경 하 고, 감정적으로 사 을 대하지 도 력하 으 , 일 생 에서도 이를 하기 위하여 부 하지 력하여 니다.

5. 후보자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제가 가 경하는 인물은 선 ( ) 니다.

○ 아 서는 생 생 을 하 고, 정 을 하신 사 일을 하 니다.

○ 아 서는 (唯德有隣 - 이 있어야 이 이 있다)을 가 으로 아 생 하 고, 부정한 재물을 하지 고 사 을 소 하 여기시는 선 은 일이 으 , 고 한 소로 자 의 을 해 니다.

○ 아 의 가 과 로 지 의 자리까지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6. 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와 후회되는 일 3가지는 무엇인가?

○ 대법원 재판 구관을 지원하여 근 한 일 니다. 재판 구관으로 근 하 서 최 여부의 판 기준과 법, 조전 자의 조 수행과 재해 등 의 있는 사 을 하 고, 이 헌법행정조 구관으로 근 하 서 깊은 구와 치 한 론을 거 우리 사회에 요한 의 가 있는 대법원 판결을 는 에 을 다는 자부심을 가 수 있 니다.

○ 다 으로는, 수원고등법원이 원한 지 지 은 에서 수 부 판사를 으 법원을 정 시 일 니다. 수원에 고등법원 신 과 수원지 법원 이전이 시에 이 어 신경을 야 하는 부분이 지 , 법원구성원들과 분한 소통과 의 등을 통하여 문제 이 리하 고, 법원 구성원들이 근 여 과 생 에 하는 을 서 을 니다.

○ 지 으로, 오거리 재심사 에서 를 선고한 일 니다(고법 2013재 3). 재심대 판결에서 고인이 법정에서 자 한 사 이 있 지 다 여 정 을 고 하여 신 성을 하여 를 선고하 고, 판결이 선고 이 범에 대한 기소가 이 어 판결이 확정 니다. 이 사 에서 를 선고하여 범이 기소 수 있는 여 이 고, 에 따라 하 를 받은 고인과 인 해자의 이 위로를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 니다.

○ 법관으로 재 하 서 최선을 다해 기 을 하 고,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분한 소통을 하고자 력하 니다. 에 따라 법관으로 일하 서 회 는 부분은 니다.

7. 본인의 재판 중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 가 자 판결은 오거리 재심사 과 경기대 대 조 기 제· 근로 사 니다.

- 오거리 사 (고법 2013재 3): 고인은 시에 있는 오거리 으로 하 시 전기사인 해자를 식 로 해 다는 범 사 로 기소 어 재심대 판결에서 역 10 을 선고 받 니다. 고인은 이 재심을 신청하 고, 자는 재심에서 고인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 이 경찰의 행 등에 의한 으로 신 성을 인정하기 어 고, 고인이 범행에 사용 등에서 이 출 지 은 사정 등을 고 하여 고인에 대하여 를 선고하 니다. 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 이 범에 대한 기소가 이 어 고 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 니다. 이 사 에서 를 선고하여 범이 기소 수 있는 여 이 고, 에 따라 하 를 받은 고인과 인 해자의 이 위로를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 니다.

- 경기대 대 조 기 제· 근로 사 (서 고법 2011 39419): 정규 전 을 회 하기 위하여 근로를 이용하여 기 제근로와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을 기준으로

사용사 (법인)와 근로자(대 조) 사이의 시적 근로 관 성립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법이 용 지 을 명확 하 니다. 또한, 기 이 정 이 는 근로자에도 사 서를 수리하는 식으로 리한 은 정당한 이 이 근로관 를 종 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하여 이 한 식으로 근 를 종 시 는 관행에 제 을 니다.

○ 한 , 법관으로 재 하 서 최선을 다해 기 을 하 고,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분한 소통을 하고자 력하 니다. 제 력에 따라 부 한 판결이 있을 수는 있지 , 성심을 다해서 재판을 하여 아 이 는 부분은 니다.

8. 대법관 퇴임 후 계획은?

○ 경 과 전문지식을 용하여 대 등에서 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합니다.

9. 법원의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와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법원의 가 근 적인 재 의의는 하고도 신 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인의 해 리를 구제하는 이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니다. 따라서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여 제도적인 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관 재판 구 원 원, 전문법원의 신 , 전문법관 제도 확대를 통한 법관 전문 , 심 제도 합리 등 제도적인 원에서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 리 을 높일 수 있는 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법률심인 고심의 제도 어야 합니다. 하는 고 사 으로 인해 전원합의 가 성 지 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 을 생각하고 있 니다. 결 고심사제 도 등과 은 고 제도 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 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 으로, 등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고 합의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은 우리 라의 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하는 이 기적으로 사법부에 우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법원 개혁 우선순위 5건이 있다면?

○ 법원의 가 근 적인 재 의의는 하고도 신 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인의 해 리를 구제하는 이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니다. 따라서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여 제도적인 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관 등 원, 전문법원의 신 , 전문법관 제도 확대를 통한 법관 전문 , 심 제도 합리 등 제도적인 원에서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 리 을 높일 수 있는 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법률심인 고심의 제도 어야 합니다. 하는 고 사 으로 인해 전원합의 가 성 지 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 을 생각하고 있 니다. 결 고심사제 도 등과 은 고 제도 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등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고 합의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은 우리 라의 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하는 이 기적으로 사법부에 우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조일원 제도 시행에 따 법관 고 를 고 하고 경 과 경을 바탕으로 한 역 을 재판 행과 결론 도출에 적으로 할 수 있도 법관 수에 하는 정도의 대 적인 재판 구원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 사법부는 독립 성 이 니다. 법원조 법 제82조 제2 과 가재정법 제40조 제1 도 법원 등 독립기관의 성 시 독립성과 자 성을 최대한 하도 규정하고 있는데, 제 을 성할 이와 은 원 이 준수 고 있지는 한 으로 고 있 니다. 또한, 사법 수요는 가하고 있 에도 이에 대한 적 한 대 을 하지 한 결과 재판 지 이 생하 고, 이는 의 신 한 재판을 받을 리를 시 는 결과를 야기하 니다. 재판과 관 하여 하는 에 적으로 대 하기 위하여는 사법부가 대 의 가 수 에 니다. 결 , 헌법 독립기관인 사법부가 독립성과 자 성을 확 하고, 의 재판받을 리를 최대한 하기 위하여,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을 성하여 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 하는 향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상고심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는?

○ 재 고에는 한 제한이 니다. 따라서 고가 제기 는 사 수가 우 고, 이를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은 역 이 고 있 니다.

○ 식적으로 생각하 고에 아 제한이 는 이 의 재판받을 리를 분 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 니다. 물론 는 이 있지 , 사법 자원은 한정적 니다. 한정적 자원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 이 지 하 , 전 로서 사 리가 지 거 필요한 사 에 역 이 지 하는 결과가 생할 수 에 고, 이는 의 재판받을 리 에 역행하 니다.

○ 한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역할과 기 을 다 할 수 있고, 이 한 역할과 기 에 역 을 분 을 수 있도 대법관 원 다 우선하여 고심사제 고법원 도 등 고심 제도 선이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할 으로 생각합니다.

12. 평생법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제도 도입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한 견해는?

○ 법관으로 한 명 정 까지 사 하지 고 생법관으로서 를 수행하는 생법관제는 이 바 전관 우를 지할 수 있고, 재판경 이 은 원 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하여 의 사법 감과 신 를 높일 수 있는 으로서 시대적· 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 에도 원로법관 제도, 법원 제도, 전 법관제도 등 생법관제를 위한 여 들이 시행 어 으 , 최근에는 정 까지 근 하는 법관들도 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생법관제의 성 적 정 을 위해서는 재판 구원 등 분한 재판 조인력의 확 , 법관에 대한 우 , 시니어 판사 제도 등 의 사 를 조해서 여 제도적 기 에 대한 도 이 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의 신 는 사법부 립 근거이자 이 니다. 우리 라 사법이 성 에서는 우 높은 가를 받고 있는 으로 고 있는데, 의 은 에도 구하고 사법신 도가 아지고 있다는 에 대해 법관으로서 거 감을 니다.

○ 이 한 가의 원인은, 종 사법의 독립과 재판의 정에 대하여 의 을 일으 여 사 , 의 감대를 지 한 판결결과, 최근의 재판지 문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부적으로는 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적인 리를 바탕으로 한 판결 결과에 대한 과도한 판과 여론도 사법신 도 하에 어 정도 향을 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과 법원에 대한 의 신 는 결 사법부 의 인 재판에 으로 회 할 수 있다고 니다.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 분한 론의 기회를 제 하고, 를 명하 하 , 한 심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한다 사법에 대한 신 는 회 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도적으로도 심 제도 재판 의 선을 통해 재판의 성

을 제고할 아니라 우수한 법조인력 확 재판 조인력의 원을 통해 인적 자원을 분 출 필요가 있 니다.

○ 또한, 전문법관 전문법원 제도를 확대하여 법원의 전문 를 도 하고 사 리역 을 으로 신 한 재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법원의 가 근 적인 재 의의는 하고도 신 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인의 해 리를 구제하는 이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니다. 따라서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여 제도적인 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관 재판 구 원 원, 전문법원의 신 , 전문법관 제도 확대를 통한 법관 전문 , 심 제도 합리 등 제도적인 원에서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 리 을 높일 수 있는 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법률심인 고심의 제도 어야 합니다. 하는 고 사 으로 인해 전원합의 가 성 지 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 을 생각하고 있 니다. 결 고심사제 도 등과 은 고 제도 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 으로, 등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고 합의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은 우리 라의 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하는 이 기적으로 사법부에 우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5.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있다면 이를 해소할 방법, 없다면 국민의 인식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전관 우는 자가 관 기관에서 를 제 받는 으로서, 사법 에서의 전관 우 전 판, 사가 사로서 수사 재판과정 또는 결과에서 정한 를 제 받는 이라고 수 있 니다.

○ 이는 재판의 정성, 사법의 신 에 대한 문제로서 들의 우가 다는 을 고 있 니다. 제가 전관 우를 경 한 사 은지 , 제 재하는지 여부와 관 이 관이 의 까지 식시 수 있도 법원이 부 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사소송법, 법관 등의 사 분 사 당에 관한 규, 자의 이해 지법 등 관 규정에서 전관 우를 지하기 위하여 한 제 , 재 당, 신고 회 신청 제도를 분 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 , 생법관제의 정 등은 대 로 으로의 이 등을 으로 전관 우의 우 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고위 법관 등이 분한 을 할 수 있는 제 여 을 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법원, 검찰 등 법조계의 기수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개선 방향은?

○ 과거부 이어 성 심의 가부 적인 사회 문 와 대 문 등으로 인해 법조 에도 이 바 기수문 가 있 고 또한 이로 인해 법원의 관 가 해 다는 지적도 있 으로 고 있 니다.

○ 법원은 생적으로도, 당하는 의 성 으로도 수 적인 의사결정에 한 조 니다. 아니라 최근에는 고등법원 부 판사 제도 지, 경력법관제도, 생법관제, 법조일원제도 시행 등 일 의 선 과 법관을 해 여성 구성원의 가로 법원에 수 적인 문 가 자리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으로도 지 적으로 사법부 관 를 지하고 법관의 적 독립을 할 수 있는 선 을 시행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원인과 해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들에 에 대한 감을 으로부 재판에 대한 신 를 을 수 있으 로 사 심 가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법률분쟁이 해지고 이도가 높아 에 따라 한 심리에 어 이 고 이에 따라 재판이 기 고 있는 에 대한 우 의 목소리가 은 도 사 니다.

○ 1심에서부 당사자에 자신의 을 할 기회를 분 부여하고 심리시 을 확 하여 은 거조사가 이 어 수 있도 하여야 합니다. 이 한 한 거조사와 심리를 바탕으로 신 하 결론을 도출한다 재판 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니다.

○ 이를 위하여 거수 거조사 등 심리 의 제도적 선은 물론 법관 재판 구원 원, 전문법원의 신 등 제도적인 원에서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판의 독립을 확 하 , 사회 여 력으로부 이를 지 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사법부 원에서도 판결에 대한 과도한 에 대하여 정하 대 으로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할 수 있는 경을 해 어야 합니다.

○ 또한 사법부 성 의 독립 등 물적 여 을 확 하고, 법관이 정적인 경에서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 법관전 등 법관인 사제도도 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 , 법정에서 아니라 인적인 생 에서도 위 지에 각 의를 기 여야 하고, 인적인 으로 인해 정한 재판에 향을 수 있는 관을 들지 도 신 하 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법적 판단의 최종 권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과 헌재는 어떠한 관계이며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가?

○ 우리 헌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의 헌법기관 니다. 헌법은 사법 과 명 ·규 , 분의 위헌·위법 심사 은 대법원에 부여하고, 법률의 위헌심사 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한과 기 을 분 하고 있 니다. 따라서 법적 판 의 최종 한은 사법 을 가지는 대법원에 있다고 할 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 력,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 명 · 규 에 대한 위헌심사 등에 관하여 해의 이를 여 니다. 헌법이 헌법해 한을 양 기관에 분 한 은 과 제를 통하여 양 기관 헌법을 수 하고 기 을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 하기 위한 이라고 이해하고 있 니다.

○ 양 기관이 자신에 어 를 적 수행 으로 헌법이 부여한 의 기 이라는 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와 여전히 양립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전과 하여 이의 가, 양 경의 등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우 요한 문제가 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 경이 우리 라 출 을 지 적으로 어리는 이 하 을 부인할 수 니다.

○ 일과 가정이 양립하지 하는 근 적인 원인은, 가정 다 일을 시하는 과거 조 심의 문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서 가정 내 가사와 아 부 이 성 다 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원의 경우에는 분쟁의 다양 · , 구 심리 의 판 심 의의 , 가사·행정 사 각종 신청사 의 가 등을 포 한 다양한 이 로 판사의 부 자 가 가한 도 하 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관은 기 적으로 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에 하여야 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지는 요성을 고 하 전과 이 법관에 사명감 으로 야 일 근 를 요구할 수도 니다.

○ 법관 원, 재판 구원 원 등을 통하여 적정한 이 수 있도 하고, 사 관리 식을 적으로 선하는 등의 법으

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 한 여 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적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 어 인과 가 의 행 이 아니라, 조 구성원의 도도 향 어 궁극적으로는 일의 생 성과 성도 대 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인 아니라, 가 , 조 , 리고 우리 사회 전 에 향을 치는 문제이 로, 우리 사회 가 력 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그 사유에 대한 견해는?

○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는 사 이고 이 부분이 사
수 있으 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2.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전 사기범 로 인해 은 분들이 해를 은 에 대하여 의 한 사 으로서 대 생각합니다.

○ 전 사기 등 거 자들에 대한 사기범 는 헌법 기 인 의 거 을 해하는 대한 위법행위로서, 에 대한 를 요구하는 의 이 은 으로 고 있 니다.

○ 전 사기 해를 으 , 대 을 받지 하 는 을 할 수 있는 과적인 이 필요할 니다. 대 당시에 이와 관 정 , 를 들 대인의 여부, 목적 부 의 적정 시 , 대인 소 부 의 대 관 등을 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치가 어야 할 으로 생각 니다.

○ 한 대법원은 대인이 사 한 경우에도 인이 이하 등기명 의 신청을 할 수 있도 선 를 제정하 고, 신 하 등기를 할 수 있도 대 법이 정 에 따라 관 규정(등기명 에 관한 규)을 정 하여 시행하는 으로 고 있 니다.

○ 아가 신 제도를 용한 전 사기도 이 생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이와 관 하여서는 신 등기에 ‘ 대 을

결할 한을 가 자'와 은 요한 사 은 등기부에 시 수 있도 부 등기법을 정하는 하는 에 대해서도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사형제 존폐 및 사형 집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 제도의 치 제 행 여부는 인 의 대적 가치인 생명을 대 으로 하는 이기 문에 우 조심 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 제 지를 하는 거로는, 지가 전 적인 이고, 한 행 결과를 이 수 으 , 제도의 범 지력도 적으로 바가 다는 등을 들 수 있 니다. 치를 하는 거로는, 인, 대규 인명 등 인 적 범 가 여전 재하고, 한 범 로부 전하다고 수 는 에서 의 법 감정, 으로서의 성 등을 들 수 있 니다.

○ 양 거 당한 이 있고, 행 헌법에도 사 제도가 있 을 전제로 한 규정(제110조)이 있어서 헌법에서 사 제를 용인하고 있다고 여지도 있 니다.

○ 결론적으로 사 제 여부는 인 의 과 가치, 생명 등 헌법 규정의 한 해 과 어 사 의 일 적 과, 의 법감정, 해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4.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전 대법원에서 사 관 인 성 자에 대하여 부양자 자 을 인정하는 전원합의 판결이 있 으로 고 있 니다.

○ 법 내지 가 법 우자의 범위를 해 · 확정하는 문제와는 다 에서 의할 수 있다고 판시하 서 사회 역에서 부양자 제도의 지를 고 하여 판결한 으로 생각합니다.

○ 성에 대한 인의 정 성과 관하 인 은 인 으로서의 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 의 로서, 인의 자 와 리를 해하지 는 한 인 은 고 받아야 하 , 성소수자도 자신의 내 한 사적 역인 성적 정 성 또는 지향성과 관하 자신의 을 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행 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 , 인의 자 성 의 원을 어 법률적·제도적으로 어까지 성소수자의 리를 할 인가에 관한 문제는 행 헌법과 법률의 내용, 결 과 가 제도에 관한 의식, 성소수자의 행 구 을 요구하는 시대적 등 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회에서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판결과 관 사 이어서 대법관 자로서 이 이 의

구 적인의 을 리는 이적 하지 을양해하여 시
기 바 니다.

25.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한 시 에 대하여는 대한 시정부가 수립 1919 이라는 해, 대한 정부가 수립 1948 이라는 해 등 다양한 해가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시 에 대한 해들 의 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부 수립일로 아야 한다는 해는 대한 헌법 전문에 대한 시정부의 법통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을 요한 근거로, 대한 정부 수립일로 아야 한다는 해는 과 , 을 제법 가로 인정받은 을 요한 근거로 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 수 있는 사 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인적인 해를 명하는 이 조심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6. 사회적 약자를 위해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제가 법관으로 사회적 자를 위하여 한 일은 들을 위한 판결을 한 니다. 대 적인 판결은 아 와 니다.

- 경기대 대 조 기 제· 근로 사 (서 고법 2011 39419): 정규 전 을 회 하기 위하여 근로를 이용하여 기 제근로와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을 기준으로 사용사 (법인)와 근로자(대 조) 사이의 시적 근로 관 성립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법이 용 지 을 명확 하 니다. 또한, 기 이 정 이 는 근로자에도 사 서를 수리하는 식으로 리한 은 정당한 이 이 근로관 를 종 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하여 이 한 식으로 근 를 종 시 는 관행에 제 을 니다.

- 인 시 사 (수원고법 2022 13080): 성시 지 원 경쟁 용시 에 원고는 인 전 의 일한 필기 합 자로 을 니다. 최 에서 와 관 이 는 내용 등에 대한 문을 받고 ‘ ’ 등 받 고, 이 가 에서도 ‘ ’을 받아 최종 하 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최 에서 에 대한 문을 한 은 행위에 해당하지 , 가 에서 시정 에 따라

하자가 치 다고 지 , 는 최 에서의
등 에 따라 가 대 자로 분 이 로 최
의 결과에 따 향이 있는 이고, 원고가 인 전 의
일한 합 자 사정을 고 하여 최 의 행위가
시정 다고 수 다고 판 하 니다.

- 기 제 전 사 시정사 (서 고법 2013 51093): 자
전 원에서 기 제 전 사와 정규 전 사 사이에
여 등에 관한 이가 기 제법이 지하는 적 행위
인지, 기 이 종 한 기 제 전 사가 시정명 을 구할
이 이 있는 인지가 문제 사 니다. 1심에서는
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전에 기 이 을 이
로 적 우의 시정을 구할 이 이 소 하 다고 판 하
니다. 이에 대해 는 사사 과 행정사 (시정명)의
이 등을 고 하여 기 에도 시정명 을 구할
이 이 있다고 판 하 니다. 아가, 정규 전 사와
기 제 전 사의 등을 부적으로 ·분 하여
사이에 적인 이가 고, 정규 인지 여부의 이
는 이 기 , 근수당의 이에 어 있으 로,
여 이 지 , 가 , 경사 에 대한 은 기
제법 위 으로 판 하 니다.

○ 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사회적 자 다수를 기준으로 정

는 경우가 고, 이 한 이 적 정이 생합니다. 따라서 재의 통 적인 과 관 를 기준으로 다 사회적 자 소수자에 대한 정은 심 수 에 니다. 이 한 기준으로 이 어 결론은 정하지도, 구 적으로 당하지도 니다. 결 , 사회적 자와 다수가 지 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를 기 이고 들의 에서 생각해 는 이 법원의 이자 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7.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018. 1.부 종 인들의 종 에 따 는 소 에 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 고 있고, 최근에는 종 인 과 제도에 대해 정하고 명하 어야 한다는 도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이 제도의 도 과 시행 과정에서 은 론 과정을 거 으로 고 있는데, 적정한 과 기준 수의 법 등 제도의 에 관하여는, 종 의 자 와 종 의 수성, 조 에 대한 적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회에서 분한 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이라 보는가?

○ 의 자 는 헌법 기 으로서 인의 인 에 기여할 아니라 자 의 정치 서를 가 하 하는 필수 요소라는 에서 최대한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 사회 대의제 정치 제에서 의 자 는 의 의사를 정치에 하 하는 요한 수 이자 헌법 요한 기 으로서 최대한 범위하 인정 어야 합니다.

○ 다 , 다 기 과 가지로 제한으로 인정 수 있는 은 아니고 의 원 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은 가 한데, 정치적 이라고 하 라도 정한 선거를 해하고 대의 의의 을 할 우 가 있는 위 또는 사 에 기 한 은 제한이 정당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도 구 적인 사 에서 의 자 범위와 한 를 명 으로 규범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는 사 이 로, 이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0.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5·18 은 「5 18 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이 당시 신 부 인사들의 헌정 서 범 와 인도적 범 에 대 하여 시 들이 전 한 으로, 우리 라 역사에서 의 를 지 고한 시 이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 정은 적 합의 과정을 거 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을 지니고 있으 로, 5 18 을 헌법 전문에 수 하는 은 론 를 통한 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재 우리 사회에는 인, 성소수자, 아 , 이 , 등 여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인 문제가 있는데, 는 오 의 문제에 대해 시 해결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 은 자신의 생각과 다 가치관을 가 사 을 적대시하고 하여 의 가치에 대한 신을 일으 아니라 사회 구성원 의 갈등을 조 으로 를 근 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인 등에서 여성, 인, 인, 소 등 사회적 자 정 을 대로 이 어지는 오· 적 은 인의 명 리를 해하는 으로서 의 자 로 는 범위를 어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한 각종 과 오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 는 은 가적 과제로서, 오 에 대한 법적인 규제, 재판을 통한 으로는 근 적인 해소가 어 고, 결 다양성과 다 을 하는 문 가 성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도 구 적인 사 에서 의 자 범위와 한 를 명 으로 규범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정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경 수사 조정에 관한 사소송법, 찰청법 정 은 오기 회에서 치 한 의를 거 우여 에 법 니다. 재에도 여전 찰 수사 범위를 한 다양한 부분에서 은 쟁이 이 어지고 있 니다.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 하여 수사제도를 어 식으로 선할 인지 여부는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한 쟁이 고 있으 로, 이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고위 자범 수사 이 바 수 치에 대한 법 과정에서 회 내에서 다양한 의 제시 론을 시행하고 사회적 론 과정도 거 으로 고 있 니다. 아 헌법재판소에서도 수 제도의 근거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 으로 고 있 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 사 이고 사회적으로도 여 대는 의 이 하는 사 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구 적인 의 을 리기가 어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회에서 여 의 을 수 하여 적 하고 정한 사사법 를 구 하여 시 바 니다.

34. 공판중심주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판 심 의 사사 의 에 대한 · 의 심 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 을 하고, 이는 재판의 원 , 구 론 의, 심리 의 등과 은 판 의 기 원 들로 구 는 으로 고 있 니다. 이는 과거 이 바 '조서재판'에 대한 성적 고 에서 출 한 념으로, 헌법의 적법 원 , 정한 재판을 받을 리를 구 한 으로 요성이 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1 사소송법이 정 서 사 성 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 의하 거 력을 인정하지 는데, 이 또한 판 심 의 의 일 으로 이해 고 있 니다.

○ 이와 이 판 심 의는 고 있고 에 따라 사재판에 소요 는 시 도 가하고 있 니다. 따라서 인적으로는 사재판에서 판 심 의가 명 해 다는 지적에 의하기는 어 니다.

35. 대법원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의 대법원 구성이 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 어 구조라는 지적에는 의하기 어 우 , 대법원은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 는 이해관 를 조정하고 통합 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 로, 이 한 관 에서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 사법적 쟁송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신 하고 정확한 사 의 해결이 조 는 재 에서, 오로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 를 위해 역 등을 기준으로 식적으로 근하기 다는, 사회를 바라 는 가치관과 등을 기준으로 적인 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할 수 있도 하는 도 필요하지 을까 생각합니다.

○ 최근 여성 법조인의 이 당 높아 고, 적인 법조일원 제도가 시행 지 10 이 지 에 따라 법관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어 향 대법원의 사회적 다양성이 확 수 있을 으로 생각합니다.

36.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전 에는 인의 다양한 정 가 포 어 있 니다. 이에 대하여 선 적인 수수 을 하지 는다 수수 으로 인하여 사생 의 과 자 , 정 에 대한 자기결정 등이 해 우 가 당합니다.

○ 따라서 수수 범위에 대한 적 한 제한이 필요하고, 법관의 대 심문 등을 통하여 범위가 적정하 제한 수 있도 사전심문제도 도 의가 이 어 으로 기 하고 있 니다. 인적으로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심문제도의 도 으로 수사 행성이 해 고 수사가 지 수 있다는 론이 있으 , 수사의 행성이 해 지 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어야 하는 은 당 하다고 생각하고,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수사 행성을 해할 수 있는 식으로 이 어 으로 생각하지는 니다.

○ 관 법률이 22대 회에서 의 으로 고 있 니다. 회 원에서 분한 와 의 수 을 거 법적으로 해결 기를 합니다.

37. 조건부 구속 영장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구 이 청구 사 에서 구 과 구 의 경 에 있는 사 들이 다수 재합니다. 행 구 제도 하에서는 구 과 구 하 을 선 하여야 하고, 구 여부에 따라 의자는 대한 향을 받 니다.

○ 따라서 의자 내지 고인의 어 을 하 서도 구 사 인 거 인 내지 도 의 우 를 제할 수 있는 이 필요하고, 조 부 구 제도의 도 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재 법에서 심 에 따라 구 기 을 제한하고 있고, 한 사에서는 기 내에 심리를 치는 이 사 가 한 이 니다. 구 기 도과로 거인 이 도 를 한다고 하 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도 니다. 이 한 에서 조 부로 구 을 부할 경우 고인이 구 지 기 위하여 재판을 까지 거인 등을 하지 을 가 성이 당 높다고 생각합니다.

○ 법을 통하여 이 제도가 도 어 우리 라 사사법 전에 도 이 기를 합니다.

38.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통 의 재의요구 은 대통 제에서 회와 대통 의 제와 이라는 헌법 원리를 구 하기 위해 헌법이 대통 에 부여한 헌법 한 니다.

○ 따라서 대통 의 재의요구 은 위와 은 헌법 원리에 부합 행사 어야 하 , 에 부합하는 한 최대한 어야 할 이 , 이를 어 용어서는 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 의 재의요구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어서 대법관 자로서 이 이 의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 해 시 부 립니다.

39. 법관회의 활성화를 통한 법원 내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법관회의를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회의결과 및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전 법관대 회의는 지 2018 부 제도로서, 각 법원에서 선출 법관 대 들이 여 회의를 하고 사법행정 법관 독립에 관한 사 에 대해 의 을 명 으로 사법행정의 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 니다.

○ 명한 사법행정이 시대 이라 생각하고, 전 법관대 회의의 정적인 역할과 기 을 고 하여, 문제 으로 지적 는 부분이 있으 이를 하여 가는 향이 어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40. 법원의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 관점에서 노동법원, 환경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

- 최근 사 의 이도가 대 가하는 에서 법원을 신 하여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 으로 사 리 을 높이는 도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하 의 으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위원회와의 관 를 어 정할 인지 등 여 쟁 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관 분야 전문가와 의 의 을 분 수 하여 신 하고 적인 분쟁해결 구조가 정립 기를 바 니다.

○ 경법원

- 경소송은 소송 당사자 인의 이 구를 어 정 의 전이 경위기에 대한 인식 확 , 정부와 기 의 행 등 사회 를 이 어 갈 수 있으 로, 경법 분야에서 사법부 역할이 다고 생각합니다.

- 경사 은 이해관 자가 고, 재판 에 소 는 사회적 용도 , 사 의 규 가 범위하고 하다는 에서 경법원의 치가 필요하다는 의 도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내에서도 다양한 의 경소송이 제기 고 있는 사법부는 기 소송 등 경 관 소송에 관한 제적 향과 판 에 관심을 가지고 관 법리를 구하 역 을 어 갈 필요가 있 니다.

- 법원은 재 전문분야 니 를 통하여 경 관 법리를 심 적으로 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법관들이 법관 수를 통하여 경소송의 쟁 등에 관하여 론하는 시 을 가지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으로도 사법부가 이 한 력을 하여 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를 준 할 수 있는 관 을 판결을 내 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경법원의 치와 관 해서 재 사, 사, 행정사 으로 어 있는 경사 을 경사 이 아 사 과 명확하 분리하 서 하 의 관할로 하는 이 적으로 어 고, 경사 이 다 법원 등 다 전문법원에 하여 전문 가 필요한 역인가에 대한 이 도 은 , 기적인 관 에서 여 의 을 수 하고 의를 거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1.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파업이란 원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법원이 이를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이와 관 사 을 당할 수 있 수 있으 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42. 공익 소송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주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은?

○ 을 위하여 한 소송 에도 다 사 과 일하 소자에 소송 용을 부 시 다 , 경제적으로 어 들이 소를 제기할 수 고, 최종적으로는 소송 자 가 위 여지는 있 니다.

○ 다 , 소송의 념이 다소 명확한 등을 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 의 부 을 하 서도 이에 소하여 용을 지출한 대 당사자의 해 사이에 적 한 을 을 수 있는 이 신 하 어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43. 후보자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 법조일원 제도는 경 과 , 력과 인 을 법조인을 법관으로 용하기 위한 제도로, 사법부에 대한 의 신 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 으로 고 있고, 지에 감합니다.

○ 다 , 법조일원 제도 도 에 따라 제 사법부에 대한 의 신 가 제고 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는 사 이 아니라 이 원하는 한 인 과 자 을 사 이 법관으로 용 어야 합니다.

○ 따라서 법관 수를 하는 등 법관에 대한 우가 선 고 재판 구원 등이 분 확 지 는다 법조일원 제도 도 지는 각 고 재판지 등 부 용 생할 수 있 니다.

○ 따라서 기 의 시행 경과를 바탕으로 이 제도가 도 지에 어 목적을 성할 수 있도 은 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4.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수단 도입 등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전 에는 인의 다양한 정 가 포 어 있 니다. 이에 대하여 선 적인 수수 을 하지 는다 수수 으로 인하여 사생 의 과 자 , 정 에 대한 자기결정 등이 해 우 가 당합니다.

○ 따라서 수수 범위에 대한 적 한 제한이 필요하고, 법관의 대 심문 등을 통하여 범위가 적정하 제한 수 있도 사전심문제도 도 의가 이 어 으로 기 하고 있 니다. 인적으로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심문제도의 도 으로 수사 행성이 해 고 수사가 지 수 있다는 론이 있으 , 수사의 행성이 해 지 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어야 하는 은 당 하다고 생각하고,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수사 행성을 해할 수 있는 식으로 이 어 으로 생각하지는 니다.

○ 한 , 관 법률이 22대 회에서 의 으로 고 있 니다. 사전심문제도 도 을 법률에 의할 인지, 사소송규 으로 규정하는 이 가 한 인지 등에 대하여 분한 와 의 수 을 거 행 어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45.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입장은?

○ 우리 라의 역사적 경 과 재의 등을 고 할 , 가 법 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 이 있을 수 에 니다. 따라서 가 법의 여부는 회에서 분한 의와 의 수 을 거 법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6.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판결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성범 사 에서는 사 의 성 해자 의 신 성이 · 를 는 심적인 거가 는 경우가 고, 통 적으로 의 신 성을 판 하는 은 사 인정의 문제 니다.

○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판 는, 기 에 성범 해자, 아가 해자의 행 에 대한 ‘ ’이 재하 기 문에 을 기 위한 과정에서 으로 이해하고 있 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판 를 서 로도 한 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는 는지 다시 아 고, 이 한 원에서 우 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47.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며,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기각되고 있음. 증거와 정보의 구조적 편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실이나 결함,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 한 사 에서 해자가 확 할 수 있는 정 가 제한적이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기 어 아니라 기 에 생한 으로 원인을 기 지 은 경우가 니다. 따라서 이를 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하여 리 제도 도 을 정적으로 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 우리 라와 은 법 소송 구조에 당한 이가 있으 로, 분한 를 거 우리 에 도 어야 할 필요가 있 니다.

○ 에도 일 적인 해 사 과 하여 인과관 명 을 다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구 적으로는 사 에서 는 여 사정 등에 따라 여부 정도가 라 수 에 으 로, 대법관 자로서 이 이 의 구 적인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48.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제조사 책임 판례가 0건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구 적인 사 관 를 지 하는 에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관 사 을 하 다 이 한 을 분 념하도 하 니다.

49. 지난해 12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간을 넘어도 1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음. 극단적 초과 노동을 대법원이 허용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 판 을 하고, 이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구 적인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니다.

50.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권익위는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는 사 이 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51. 전세 사기에 대해 과감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경법이 개정돼야 함.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반대해 개정이 무산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정경제범 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여 범 가 '일 '의 관 에 있는 경우에 가 합니다. 결 다수 해자들을 대 으로 한 전 사기 범 와 이 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가 이 가 합니다.

○ 지 21대 회에서 종 사 수법의 범행에 관하여는 포 일 에 해당하지 는 경우에도 해 을 합 하여 가 할 수 있는 정경제범 가 등에 관한 법률 정 이 의 으로 고 있 니다.

○ 이 정 은 경합범 관 에 있는 수 를 일 로 하는 으로서 기 의 사법 이론 와 부합하는 고 기판력 범위에 대한 문제가 생할 수 있으 로, 신 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적으로는 가 을 위하여 법을 는 다는 법 에 규정 범 의 법정 한을 향하는 로 정하는 이 바 하다는 생각 니다.

52.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맡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규모 축소·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기 에 법원행정 판사 정 이 이 어 니다. 이는 사법행정 자가 법원행정 근 판사를 통해 각 법원의 재판에 하는 을 지하기 위한 목적이 고, 에 따라 법관의 관 선에 어 정도 기여한 으로 고 있 니다.

○ 에 재판을 경 하여 이해도가 가 높은 판사가 수행해야 할 재판지원 와 제도 선 의 역 이 당 어 일선 법원의 도 이 있 으로 고 있 니다.

○ 법원행정 의 적인 기 이 재판 지원인 과 들의 기대 수준에 부 하여 재판제도 전 에 대한 선이 필요한 을 고 하 , 법원행정 판사 정 은 한 가 있는 도 분명해 니다.

○ 인적으로는 법원행정 에 근 하는 법관 수에 을 기 다는, 사법행정 역과 재판사 을 분리하여 법원행정 가 각 법원의 구 적 재판에 하는 은 지하 서도 법원행정 의 재판지원 는 적 수행할 수 있는 사법행정 와 문 를 들어 가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3. 현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판결 연도와 사건의 범위가 아직 협소하며 접근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공적 자산인 판결문의 공개 확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013 부 법 정을 통하여 지 적으로 판결문 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고 있 니다.

○ 재 사소송법 사소송법에 따라 구 지 사, 행정, 사 의 확정 또는 확정 판결서와 사사 의 확정 판결서를 인 으로 사할 수 있도 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또한 대 판결서의 거의 100%를 인 으로 사할 수 있고, 40~50 의 판결서(하 심 포)가 인 으로 고 있어 판결문 수가 적다고 수는 다고 생각합니다.

○ 으로 판결서 는 적으로 확대 는 이 시대적 이라고 할 이지 , 소송관 인의 인정 사생 을 해하지 는 한도 내에서 이 어 야 할 니다.

○ 결 , 의 리와 인정 내지 사생 사이의

조 가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분한 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을 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노동계 지적과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재계 반응이 대립되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대재해 법에 관하여는, 사고에 적으로 관여하지 은 자에 대하여 의원 에 하여 과도한 이 이 어 다는 판이 있고, 법 시행 에도 사 에 대한 의 수위가 아 범 지 과가 다는 지의 대의 도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이 법률은 시행 지 2 에 지 지 아 아 판결 선고 수가 지 고, 위 법 시행으로 인한 과 선 에 대하여 다양한 구가 행 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다 , 은 쟁이 있고 향 당하 수 있는 사 이 로, 대법관 자로서 이에 대해 이 의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55. K-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수수 부 이 높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수 으로 인하여 의 사생 의 과 자 , 인정 자기결정 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을 고 있 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 심리를 통하여 수수 의 범위를 적 제한할 필요가 있 니다.

○ 다 , 수수 은 통 수사 기 에 거 확 를 위하여 이어지고, 수사기관이 성한 서 를 바탕으로 판 할 수 에 어 재의 구조에서는 수수 청구를 기각하기 지 은 이 있 니다.

○ 따라서 법관의 대 심문 등 수수 범위를 적정하 제한하기 위한 제도 도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6.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 중 어떤 견해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여기는지, 후보자의 견해는?

○ 사소송법은 의자에 대한 수사는 구 에서 이 원을 명시하고 있 니다. 따라서 법원이 요 을 해 할 필요가 있 니다.

○ 다 , 구 의 부여부는 사 에서 구 사 가 있는지를 하여 판 하는 으로 이와 관 이 있다고 이지는 니다.

57. 현재 검찰 구속수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사재판에서 가 요한 부분은 · 가 정해지는 재판니다. 에도 구하고 의자의 구 여부에 과 론 등의 관심이 과도하 어 있는 이 니다. 에 따라 수사기관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를 받아내는 다 의자의 구 에 은 역 을 하고 있는 이 가 문제 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 은 부 또는 기각 가 하다는 문제도 있 니다.

○ 따라서 의자 내지 고인의 어 을 하 서도 구 의 사인 거 인 내지 도 의 우 를 제할 수 있는 이 필요하고, 조 부 구 제도의 도 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재 법에서 심 에 따라 구 기 을 제한하고 있고, 한 사에서는 기 내에 심리를 치는 이 사 가 한 이 니다. 구 기 도과로 거인 이 도 를 한다고 하 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도 니다. 이 한 에서 조 부로 구 을 부할 경우 고인은 구 지 기 위하여 재판을 까지 거인 등을 하지 을 가 성이 당 높다고 생각합니다.

○ 법을 통하여 이 제도가 도 어 우리 라의 사사법 전에

도 이 기를 합니다.

58. 영장 발부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영장에도 항고제도를 도입해 수사기관이나 피의자가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사소송법 구 수사 원 이 명시 어 있고 구 이 기각 에서, 구 을 위하여 심의 판 을 받는 제도를 도 하는 이 적 한지 의문이 있 니다.

○ 관적인 구 기준의 확립을 이 로 고제도를 도 하 는 으로 고 있 니다. 제 구 여부는 사 의 내용 에도 수사의 행 경과 의자 도 등에 향을 받 는 이 고제도를 도 한다고 하여 목적을 성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 니다.

○ 아 사는 이 기각 는 경우 재청구할 수 있어 고제도의 이 다고 이지도 니다.

59.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구 이 청구 사 에서 구 과 구 의 경 에 있는 사 들이 다수 재합니다. 행 구 제도 하에서는 구 과 구 하 을 선 하여야 하고, 구 여부에 따라 의자는 대한 향을 받 니다.

○ 따라서 의자 내지 고인의 어 을 하 서도 구 사 인 거 인 내지 도 의 우 를 제할 수 있는 이 필요하고, 조 부 구 제도의 도 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재 법에서 심 에 따라 구 기 을 제한하고 있고, 한 사에서는 기 내에 심리를 치는 이 사 가 한 이 니다. 구 기 도과로 거인 이 도 를 한다고 하 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도 니다. 이 한 에서 조 부로 구 을 부할 경우 고인이 구 지 기 위하여 재판을 까지 거인 등을 하지 을 가 성이 당 높다고 생각합니다.

○ 법을 통하여 이 제도가 도 어 우리 라 사사법 전에 도 이 기를 합니다.

60.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 하여 수사제도를 어 식으로 선할 인지 여부는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한 쟁이 고 있으 로, 이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1.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입장과 설치 시 법원 및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는?

○ 수사제도를 어 식으로 선할 인지 여부는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한 쟁이 고 있으 로, 이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2. 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지 석달도 채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사면이 이뤄진 적이 있음.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는?

○ 대통 의 사 은 가이 과 통합이라는 제도의 지에 극 적으로 행사 어야 하고, 행사 는 경우에도 명한 를 거치는 이 바 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 , 대통 의 정 사 행사의 당부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니다.

63.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했음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수사범위를 넓힌 것과 관련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이는 행정부 행정 법의 적법성 또는 력과 관 내용으로서, 법규의 해 과 관 하여 은 이 있을 수 있으 로 대법관 자가 인적인 의 을 리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4. 후보자는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 있는지?

○ 구 청구에 대하여 부당한지 여부와 관하 구 사 가 으 기각하여 니다. 부당한 청구가 있 다고 기하는 사 는 니다.

65.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기각한 적이 있는지?

○ 소 용이 사 을경 한 적이 으로 기 합니다.

66.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후보자 입장 - 대법원은 지난 '23.1월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주요 내용은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 등임. 이중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24년 상반기(1월~5월)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72.3%에 달해 사실상 3심제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아래 내용을 질의함

○ 대법원에 수 는 사 수를 고 하 , 사 에 대하여 한 이 를 기재하도 하거 심리 행제도를 지할 경우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 과 정 법원으로서의 기 을 할 수 니다.

○ 근 적으로는 고제도 선과 어야 할 으로 이고, 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기 을 확 하는 등의 과가 있는 고이 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도 등의 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6-1. 가사 사건의 경우 '24년 상반기 82.3%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음(일반 민사 사건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재 고에는 한 제한이 니다. 따라서 고가 제기 는 사 수가 우 고, 이를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은 역 이 고 있 니다.

○ 식적으로 생각하 고에 아 제한이 는 이 의 재판받을 리를 분 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 니다. 물론 는 이 있지 , 사법 자원은 한정적 니다. 한정적 자원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 이 지 하 , 전 로서 사 리가 지 거 필요한 사 에 역 이 지 하는 결과가 생할 수 에 고, 이는 의 재판받을 리 에 역행하 니다.

○ 인적으로는, 심리 행 제도가 지 다 대법원의 사 리는 심각하 지 수 에 고,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필요한 사 에 분한 역 을 하기 어 다고 생각합니다.

○ 한 , 가사사 의 경우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하지 고 대 다수가 사 인정의 문제 니다. 인적으로는 이 한 에

서 사사 다 심리 행 이 대적으로 높지 을까 생각 합니다.

66-2. 심리불속행 제도는 사실상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상고허가제', '상고심사제' 기능을 수행. 현행법 체계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심사제처럼 운영하면 안되고 충실한 심리를 해야하는 것이고,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추진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재의 고제도는 제한이 이 고가 가 하고, 대법원에서는 기 을 (심사)하여 법이 정한 고이 에 해당하지 을 경우 이 심리를 행하지 고 심리 행을 합니다. 따라서 심사를 통하여 가가 사 에 대하여 심리가 이 어지는 고심사제와는 당한 이가 있 니다.

○ 한 , 재 고에는 한 제한이 니다. 따라서 고가 제기는 사 수가 우 고, 이를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은 역 이 고 있 니다.

○ 식적으로 생각하 고에 아 제한이 는 이 의 재판받을 리를 분 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 니다. 물론 는 이 있지 , 사법 자원은 한정적 니다. 한정적 자원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 이 지 하 , 전 로서 사리가 지 거 필요한 사 에 역 이 지 하는 결과가 생할 수 에 고, 이는 의 재판받을 리 에 역행하 니다.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역할과 기 을 다 할 수 있고, 이 한 역할과 기 에 역 을 분 을 수 있도 대법관 원 다 우선하여 고 가제(고심사제) 고법원 도 등 고심 제도 선이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할 으로 생각합니다.

67. 가사소송의 증거능력 문제 - 일반적으로 민사/가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 몰래 녹음한 통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을 깨고, 위법한 녹음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음 - 위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민사/가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조된 건은 아닌지, 작성자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출처를 신뢰할수 있는지, 위법한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해 엄격한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사 가사소송에서 문서의 정성립에 다 이 있는 경우에는 거신청인이 문서의 정성립을 명하도 하고 있 니다. 문서 성자를 한 관 자의 도 문서의 정성립 판 이 명 력 판 을 위한 한 법이 수 있지 , 에 문서감정이 등 여 가지 법을 통해 제출 거가 성자에 의하여 성 인지 신 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 하고 있 니다.

○ 이와 관 하여 문서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신 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에서는 부 문서감정인 도 가를 시하고 수를 시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이 한 력을 통하여 사/가사 소송에서의 거의 정성립이 신 성에 대한 조 정확한 판 이 가 해 으로 생각하고 있 니다.

○ 사사 가사사 에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거의 신 성과 거력을 조사·판 할 필요가 있다는 에 대하여는 감하고, 가적인 선 에 대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8. 후보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헌법 정은 적 합의를 필수적 전제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에 대한 의는 의 기 이라는 대적인 사명에 부합하는 향으로 이 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자로서 이 이 의 구 적인 의 을 는 은 적 하지 아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8-1. 필요하다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조항은 무엇인지?

○ 헌법 정은 적 합의를 필수적 전제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에 대한 의는 의 기 이라는 대적인 사명에 부합하는 향으로 이 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자로서 이 이 의 구 적인 의 을 는 은 적 하지 아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8-2.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헌법 정은 적 합의를 필수적 전제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에 대한 의는 의 기 이라는 대적인 사명에 부합하는 향으로 이 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자로서 이 이 의 구 적인 의 을 는 은 적 하지 아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8-3. 개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민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의 의사에 따라 결정 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 니다.

68-4. 개헌을 통해 대법관 임기를 없애고 외국처럼 정년만 남기고 대신 징계나 해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종신 으로 할 인지 여부는 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부분으로 생각 니다. 또한, 법관에 대한 는 당 가 하고, 재에도 정 의 가 가 합니다.

○ 다 , 행과 이 이 고 이 의 의 선고가 아 에 의하여 이 해 을 하 경우 신분 이 해 우 가 있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향을 수 있으 로 신 하 근할 필요가 있고, 의 법 도 정확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9. 사법부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 불신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줄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전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우리 사회에서 전 , 전 라는 아 있다는 은 부고 까 일 니다.

○ 다양한 원인이 있 지 , 들이 로 사사법에서 경제적 력에 따 이 재하는 이 아 가 하는 을 받고 있고, 한 의구심에 부합하는 한 사 들이 이따 생하기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이 한 이 사라지지 는 자 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사법 의 명성, 정성 확 를 위한 다양한 법으로 력할 필요가 있 니다.

70. 기후위기 대응이 엄중해진 시기, 환경법 판결 등에서 사법부가 취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관련하여 사법부가 보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 경소송은 소송 당사자 인의 이 구를 어 정 의 전이 경위기에 대한 인식 확 , 정부와 기 의 행 등 사회를 이 어 갈 수 있으 로, 경법 분야에서 사법부 역할이 다는 에 감합니다. 내에서도 다양한 의 경소송이 제기 고 있는 사법부는 기 소송 등 경 관 소송에 관한 제적 향과 판 에 관심을 가지고 관 법리를 구하 역을 어 갈 필요가 있 니다.

○ 이를 위하여는 관 제회의, 등에 법관이 할 필요가 있는데, 과 한 와 의 제 등으로 어 이 있 니다. 법관 원과 관 확 에 은 관심을 부 립니다.

71.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 뒤 법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가 잦아진데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지?

○ 법관의 재판 독립은 재판의 정성을 확 하고 재판에 대한 의 신 를 기 위해 법원이 시 지 야 할 요한 가치로서, 우리 라는 과거에 해 높은 수준으로 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최근에는 자신들의 이해관 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판과 을 제기하 서 법원의 판결이 향 다는 여론을 성하 는 경우가 종종 있 니다. 결 사법부가 각종 정치적 , 이해 , 리고 여론으로부 독립 는 이 요해지고 있 니다.

○ 사법부의 정치적 립성을 확 하 , 사회 여 력으로부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 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사법부 원에서도 판결에 대한 과도한 에 대하여 정하 대 으로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할 수 있는 경을 해 어야 합니다.

○ 또한 의 기 이라는 사법의 적인 사명에 하기 위해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 , 법정에서 아니라 인적인 생 에서도 각 의를 기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 의 우명은 ‘ 용(中庸)’ 니다. 법관으로서 한 으로 치우치지 고 부 하지도 치지도 는 을 가 요한 가치로 고 아 니다.

○ 에 따라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향과 을 경 하 고, 감정적으로 사 을 대하지 도 력하 으 , 일 생 에서도 이를 하기 위하여 부 하지 력하여 니다.

2.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 제가 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종대 니다. 최근과 이 우리 라의 문 가 성하여 적으로 행할 수 있는 원인 하가 바로 종대 이 제한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고 우기 한 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이 다양한 문 가 성하 전할 수 있 고 이로 인해 우리 라의 이 한 도 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과 하는 '여 '과 을 위하는 '위 '을 근 적인 정치이념으로 아 과 론을 거 합리적인 법으로 정사를 리 으로 , 정치, 경제, 사회, 문 의 에서 우리 과 라가 전할 수 있는 한 기 을 우신 을 경합니다.

3.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입니까?

○ 대 대법원 이 가인 로 선생 을 경합니다.

○ 일제 기에 다수의 독립 가를 심 하 고, 이 우리 라의 대 대법원 으로 이 대통 이 회 에서 법관들 이 에서 는 리를 행사한다고 하 사법부를 정 으로 판하자 '판결에 이의가 있으 소하 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일 와 이 어 정치적 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력하 고, 결과 사법부 독립의 이 다고 생각합니다.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법관은 누구입니까?

○ 전 헌법재판소 이 니다.

○ 2000 2 부 2001 2 까지 사이에 수원지 법원 성 지원에서 부 으로 고, 이 2006 에서 2007 경 제가 대법원 재판 구관으로 근 할 당시 대법원 선 재판 구관으로 다시 니다. 에 판사로서의 범을 여 고, 에 도 이는 은 조 을 해 으 , 를 법 전문가로 이 어 니다.

5.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 대법관 들 서 정한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시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에 대해 치 하 고 하 서 일하는 으로 고 있 니다. 한 분을 리기 다는 과거와 재의 대법관 들의 과 적을 경합니다.

6.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이 되고 싶으십니까?

○ 고심 재판을 당하는 법관으로서, 당사자를 포 한 사회 구성원 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하 서도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 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치 하 고 하고 론 으로 사회 구성원 가 감할 수 있는 정의 고 정한 판 을 하기 위해 력하 니다.

○ 다 으로 최근 은 들 서 하시는 사 리 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력하 니다. 사 심 를 통해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심리 의 제도적 선은 물론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을 구하는 데에도 을 다하 니다.

○ 또한 법원의 근 적인 인 의 기 과 사회적 자 를 위해 사법 에서 의 정당한 리가 고 소수자와 사회적 자의 적, 적 리가 분 받을 수 있도 제도적 선 에 대해 고 하 니다.

7. 법관과 대법관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양한 가치관을 가 인이 자 자신의 행 을 구하고 을 위해 가는 자 의 사회에서는, 필 적으로 사회 구성원 사이에 각자의 자 와 리가 서로 하는 문제가 생하 니다.

○ 법원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에 대해 다 구성원과 생하고 할 수 있는 경 를 선 으로 갈등과 분쟁을 최소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당해야 하고, 아가서는 의 기 을 하는 최 의 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법관은 사 에서 합리적인 법 해 적용을 통해 당사자의 리를 신 구제 으로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구 적인 판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은 분쟁의 최종심 재판을 당하는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구 적인 사 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정 법원으로서의 기 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 한 역할을 수행하여 의 리와 사회적 자를

하고, 사회 구성원이 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적이고 정한 기준과 가치를 제시 으로 , 대립하는 이해관 를 조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을 는 이 대법관의 이라고 생각합니다.

8. 법관과 비교하여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고 송사 한다’는 이 있 니다. 법관은 사 의 경을 가리지 고 사 에서 당사자인 의 이야기 하 하를 기 여 들어야 하고, 아가 한 에 치우 이 어야 합니다. 과정에서 구 적으로 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이 가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 기 적으로 대법관 또한 이와 다 지 다고 생각합니다 , 아가 식적인 등이 아니라 정한 기회가 고 적으로 등한 가가 수 있도 사회적 자 소수자의 관 에서 바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은 구 적인 사 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대법관은 우리 사회가 지 야 할 가치에 대한 깊은 고 과 통찰을 통해 정의를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본인이 대법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가 대법관이라는 고도 요한 을 기에 과 적합한가에 대해서 아 을 부 이 다는 사 을 인정합니다.

○ 다 는 지 27 법관으로 재 하 서 최선을 다해 기 을 하 고,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분한 소통을 하고자 력하니다. 제 력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 한 판결이 있을 수는 있지, 사 을 성심을 다해서 재판해 다고 생각합니다.

○ 의 우명은 ‘ 용(中庸)’ 니다. 법관으로서 한 으로 치우치지 고 부 하지도 치지도 는 을 가 요한 가치로 고 아 니다. 에 따라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향과 을 경 하 고, 감정적으로 사 을 대하지 도 력하 으 , 일 생 에서도 이를 하기 위하여 부 하지 력하여 니다.

○ 이 부 한 제가 대법관이라는 거 에 자로 지명은, 으로도 사 의 경 을 가리지 고 의 이야기 하 하를 기 여 고, 한 에 치우치지 는 용의 가 으로 우리 사회가 지 야 할 가치에 대해 고 하고 정의를 하는데 이바지하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 니다.

10.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 포리 라는 가의 ‘내 이 따 들(The Education of Little Tree)’이라는 니다. 부의 로 에서 로 인 소 이 조부 와 생 이야기를 은 자서전적 소 로서 는 내내 제 을 따 하 해 는 이 니다.

11. 후배 법관들에게 반드시 읽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 정 용의 '목 심서' 니다. 정과 청 , 사회와 에 대한 사 등 자가 어야 할 자 에 대한 가 을 는 기 서라고 생각합니다.

12. 후보자는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전적 의 대로 사 의 성이 인 적 가치, 적 등에 대한 에 대한 사회적 가를 의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로 생각하는 가치인 내부적 명 와 이에 대한 사회적 가인 부적 명 로 수 있고, 우리 법이 명 등으로 하고자 하는 법 은 부적 명 에 관한 으로 고 있 니다.

13.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에 따라 법원과 법관에 부여 적 사명인 정한 재판을 통한 의 리 구제를 위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에 대한 법관 자신의 가와 의 가가 법관으로서의 명 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의 독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자로서의 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 에 최선을 다하는 은 물론, 법정에서 아니라 인적인 생 에서도 위 지에 각 의 으로 법관으로서의 명 를 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가장 후회되는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 법관으로 재 하 서 최선을 다해 기 을 하 고,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분한 소통을 하고자 력하 니다. 에 따라 법관으로 일하 서 회 는 부분은 니다.

15.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법관으로 재 하 서 사 다 최선을 다해 재판하고자 력하기에, 명 가 다고 적은 니다.

16. 후보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의의 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 지 , 일 적으로는 인 에 지 야 할 도리이자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 가치를 의 할 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하는 대 의 사회에서는 정의의 념도 다양할 수 있기 문에 법관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인지에 대해 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한 관 에서 사법정의는 법의 해 을 통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과정에서 가 정하고 이를 통해 도출 결과가 정당하다 사법정의는 다고 생각합니다.

17. 후보자는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원 대 의 사회에서는 정의를 어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치관이 재하 지 , 적어도 법치 의가 확립 우리 사회에서는 의 의를 대 하는 회에서 제정한 법과 제도의 바 행을 통해 사회적인 정의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사법정의의 을 위해서는 부 력에 들리지 는 재판의 독립이 시 필요하고, 사회적 자가 사법 에 용이하 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 을 하는 도 요합니다.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할 사법정의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로 인해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정치 현실에서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정치 에서 적 에 따라 결정 어야 하는 정 적 사 이 사법 에서 쟁 이 거 사사 는 경우가 종종 있는 으로 니다. 또한 정치적인 쟁 에 대한 사법적 판도 결론에 의해 정한 정치적 의도로 오인 거 사법부의 립성에 오해를 일으 는 경우도 있는 으로 니다.

○ 정치적인 사 은 적 에 따라 정치의 역에서 분한 의와 론을 거 해결 는 이 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정치적 사 이 라도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청구 이 부인 다고 기는 어 우 로 일 법원에서 판 하 경우라 다 사 과 일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하고 립적이 독립적으로 판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에서의 정의는 에서 바와 이 법의 해 을 통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재판과정에서 가 정하고 이를 통해 도출 결과가 정당하다 사법정의는 다고 생각합니다.

○ 결 사법부는 정치적인 쟁 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사법부의 립성이 재판의 정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 지 도 ,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 적 리를 분 하고, 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으로 사법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후보자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양한 가치관을 가 인이 자 자신의 행 을 구하고 을 위해 가는 자 의 사회에서는, 필 적으로 사회 구성원 사이에 각자의 자 와 리가 서로 하는 문제가 생하 니다.

○ 법원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에 대해 다 구성원과 생하고 할 수 있는 경 를 선 으로 갈등과 분쟁을 최소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당해야 하고, 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 의 기 을 하는 최 의 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법관은 사 에서 합리적인 법 해 적용을 통해 당사자의 리를 신 구제 으로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구 적인 판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 법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8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 27 법관으로 재 하 서 최선을 다해 기 을 하 고,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분한 소통을 하고자 력하 니다. 제 력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 한 판결이 있을 수는 있지 , 사 을 성심을 다해서 재판해 다고 생각합니다.

○ 다 대법원 과 대법관 들을 해 기 의 하신 선 법관들의 인 과 식, 자로서 사명감, 재판에 대한 성심 등을 생각해 아 도 에 해서는 부 한 이 있어서 분들을 100 으로 다 는 80 정도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법원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7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로 신 수원고등법원의 수 부 판사로 근 하 서 구성원들과 분한 소통 의 을 통하여 부 하지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근 여 을 들 부분이 법원 행정사 와 관 해서 가 부분이 니다.

○ 다 법관으로 근 하 서 재판을 하 고 사법행정 전 한 경 은 니다. 아 도 재판 와 법리 구에 전념하다 니 법원 행정사 에 대한 경 은 지 기 문에 아 높은 수를 기는 어 다고 생각합니다.

22. 법원개혁으로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사법행정의 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의 사법행정기구를 치하고 구성의 일부분을 법원 부에 하여야 한다는 의의 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부분이 있 니다.

○ 사법행정기구는 법 부 등 행정부에서 사법행정을 당하는 가를 심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지 기 위한 의 하 로도 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의 사법행정기구는 의회, 제판사 회 등 다양한 제기구의 고에 따라 구성원의 과 수가 사법부 내부 인사로 원 고, 역할도 대부분 법관 인사, 등에 대해 행정부로부 독립 의 을 제시하는 정도인 으로 고 있 니다.

○ 이 제도의 지가 사법부의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을 확 하기 위한 인 , 우리 라의 법 와 등을 고 하여 신 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사법행정기구를 비법관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 서 바와 이 사법행정기구 도 의의 시 인 가에서는 법 부 등 행정부에서 사법행정을 당하기 문에 사법의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을 지 기 위한 의 하 로 사법부 내부 인사가 과 이 이 여하는 기구를 립한 으로 고 있 니다.

○ 따라서 사법행정기구를 오로지 법관으로 구성하는 은 사법의 독립성을 지 기 위한 제도의 도 지와는 사 지 는 향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사법행정과 관 일 의 일들로 인해 여 분 심 를 에 대해 법원 구성원의 한사 으로서 송구하 생각하고, 다시는 은 일이 지 도 법원 구성원 가 경 해야 할 니다.

24.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법원의 가 근 적인 재 의의는 하고도 신 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인의 해 리를 구제하는 이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니다. 따라서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여 제도적인 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법관 재판 구원 원, 전문법원의 신 , 전문법관 제도 확대를 통한 법관 전문 , 심 제도 합리 등 제도적인 원에서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 리 을 높일 수 있는 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적인 법관 용제도를 구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 하고, 용 에도 근 할 수 있는 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원 근 시 확대, 법관 사 분 의 등 합리적이고 적인 법관 근 시 인사제도 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구 재판 에 근하여 자신의 리를 받을 수 있도 사법 근성을 제고하는 선 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대법관은 분쟁의 최종심 재판을 당하는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구 적인 사 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 한 역할을 수행하여 의 리와 사회적 자를 하고, 사회 구성원이 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적이고 정한 기준과 가치를 제시 으로 , 대립하는 이해관 를 조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을 는 이 대법관의 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 법치 의에 대한 한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가치, 적 당성에 대해 깊 고 할 아니라 시각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에 대해 고찰하 , 사회적 자와 소수자의 기 을 하기 위해 이 력하는 이 대법관에 어 역할과 이라고 생각합니다.

26.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고심 재판을 당하는 법관으로서, 당사자를 포 한 사회 구성원 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하 서도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 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치 하 고 하고 론 으로 사회 구성원 가 감할 수 있는 정의 고 정한 판 을 하기 위해 력하 니다.

○ 다 으로 최근 은 들 서 하시는 사 리 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력하 니다. 사 심 를 통해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심리 의 제도적 선은 물론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을 구하는 데에도 을 다하 니다.

○ 또한 법원의 근 적인 인 의 기 과 사회적 자 를 위해 사법 에서 의 정당한 리가 고 소수자와 사회적 자의 적, 적 리가 분 받을 수 있도 제도적 선 에 대해 고 하 니다.

27.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와 아쉽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법관 자로서 대법관들이 치 한 의와 고 과정을 거 내 은 판결에 대하여 적인 가를 하는 이 조심 니다. 제가 인적으로 의 있다고 생각한 사 은 아 와 니다.

- ① 양심적 역거부, 역법 제88조 제1 의 정당한 사 , 정한 양심의 의 등에 대하여 시한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 판결

- ② 조합 관 조정법 근로자성이 인정 는 한 인인지 여부 자 의 에 따라 이는 다고 하여 자 는 인근로자의 조합 결성, 가 이 용 다고 판 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 4995 전원합의 판결

- ③ 도시 거 경정 법 재 정 사 조합이 수립한 관리 분 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에는 관리 분 의 소 또는 확인을 구하여야 할 이지 회결의의 하자 을 도로 다 수 고, 이 한 소는 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 한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 판결

28.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립은 과거에 해 높은 수준으로 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자신들의 이해관 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판과 을 제기하 서 법원의 판결이 향 다는 여론을 성하 는 경우가 종종 있 니다.

○ 사법부의 독립을 확 하 , 사회 여 력으로부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 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사법부 원에서도 판결에 대한 과도한 에 대하여 정하 대 으로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할 수 있는 경을 해 어야 합니다.

○ 또한 사법부 성 의 독립 등 물적 여 을 확 하고, 법관이 정적인 경에서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 법관전 등 법관인 사제도도 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 , 법정에서 아니라 인적인 생 에서도 위 지에 각 의를 기여야 하고, 인적인 으로 인해 정한 재판에 향을 수 있는 관을 들지 도 신 하 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 제도는 인 의 대적 가치인 생명을 대 으로 하는 이기 문에 우 조심 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 제 지를 하는 거로는, 지가 전 적인 이고, 한 행 결과를 이 수 으 , 제도의 범 지력도 적으로 바가 다는 등을 들 수 있 니다. 치를 하는 거로는, 인, 대규 인명 등 인 적 범 가 여전 재하고, 한 범 로부 전하다고 수 는 에서 의 법 감정, 으로서의 성 등을 들 수 있 니다.

○ 양 거 당한 이 있고, 행 헌법에도 사 제도가 있 을 전제로 한 규정(제110조)이 있어서 헌법에서 사 제를 용인하고 있다고 여지도 있 니다.

○ 결론적으로 사 제 여부는 인 의 과 가치, 생명 등 헌법 규정의 한 해 과 어 사 의 일 적 과, 의 법감정, 해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어 이에 인하고 심각한 범 를 지 는 사 가 론에 자
도 고 있 니다. 이에 소 법(소 분)을 지하여
사 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 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소 분 지의 경우에는 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
로 생 하여야 할 기 이 이 은 소 에 대하여 과 치
등을 포기하고 다 로 내 우 가 있으 로, 어 이의
소 들을 사 하여 을 수 있는 이 과 에 따 부 용을
하여 신 하 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정부에서 추진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어 이에 인하고 심각한 범 를 지 는 사 가 론에 자도 고 있 니다. 이에 사 성 자 하향하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 있 을 고 있 니다.

○ 이 한 의 도 경청할 필요가 있지 , 어 이의 소 들을 사하여 을 수 있는 이 과 에 따 부 용을 하하여 신 하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역할 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각각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우리 헌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의 헌법기관 니다. 헌법은 사법 과 명 ·규 , 분의 위헌·위법 심사 은 대법원에 부여하고, 법률의 위헌심사 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한과 기 을 분 하고 있 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 력,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 명 · 규 에 대한 위헌심사 등에 관하여 해의 이를 여 니다. 헌법이 헌법해 한을 양 기관에 분 한 은 과 제를 통하여 양 기관 헌법을 수 하고 기 을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 하기 위한 이라고 이해하고 있 니다.

○ 양 기관이 자신에 어 를 적 수행 으로 헌법이 부여한 의 기 이라는 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101조에 사법 은 법관으로 구성 법원에 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 적 법 해 ·적용 한은 사법 의 적인 부분이라고 할 니다.

○ 한 , 헌법 제111조 제1 제1 는 '법률이 헌법에 위 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 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 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 은 회가 제정한 '법률'이 로, 구 적인 사 에서 법률 해 내지 한 법률 해 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 등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 이 수 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사법부가 이를 할 필요성은 있으 ,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의 한 범위를 어서는 인 이 결정의 기 력을 인정하기는 어 다고 생각합니다.

34.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법부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을 다 해 하는 경우가 있고, 결정의 력이 재판소원에 대하여는 지 적인 의 대립이 있니다.

○ 이로 인한 해는 에 아 다는 지적을 받아들 니다.

○ 헌법은 과 제를 통하여 양 기관 헌법을 수 하고 기 을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 하 으 로, 양 기관이 자신에 어 를 적 이행 으로 헌법이 부여한 의 기 이라는 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분한 사회적, 적 합의를 통하여 이 부분을 명확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5. 위와 같이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가 일치하지 고, 해 이가 오기 지 고 있는 어 한 기관이 해를 경하지는 을 으로 니다. 지 에도 구하고 의 리구제를 위하여 기관이 리를 대고 해결 을 하는 력이 우선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근 적으로는 기관의 한범위에 관한 헌법이 법률의 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니다. 다 , 이는 최고법원의 한범위에 관한 이 로 분한 사회적, 적 합의를 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6.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의 독립은 과거에 해 높은 수준으로 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자신들의 이해관 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판과 을 제기하 서 법원의 판결이 향 다는 여론을 성하 는 경우가 종종 있 니다.

○ 사법부의 독립을 확 하 , 사회 여 력으로부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 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사법부 원에서도 판결에 대한 과도한 에 대하여 하 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사법부 성 의 독립 등 물적 여 을 확 하고, 법관이 정적인 경에서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 법관전 등 법관인 사제도도 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7.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헌법에 규정 최고법원이자 최종적 법률심으로서, 의 리를 구제하여 기 을 하는 근 적인 역할을 수행 과 시에 사회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역할, 법적 쟁 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구 적인 사 에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 으로 의 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할 아니라, 요한 가·사회적 문제에 관한 법률적 쟁 에 대해 가치 기준을 제시 으로 사회 통합을 이 어 가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 우리 사회에는 인, 성소수자, 아 , 이 , 등 여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인 문제가 있는데, 는 오 의 문제에 대해 시 해결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 은 자신의 생각과 다 가치관을 가 사 을 적대시하고 하여 의 가치에 대한 신을 일으 아니라 사회 구성원 의 갈등을 조 으로 를 근 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인 등에서 여성, 인, 인, 소 등 사회적 자 정 을 대로 이 어지는 오· 적 은 인의 명 리를 해하는 으로서 의 자 로 는 범위를 어 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한 각종 과 오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 는 은 가적 과제로서, 오 에 대한 법적인 규제, 재판을 통한 으로는 근 적인 해소가 어 고, 결 다양성과 다 을 하는 문 가 성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도 구 적인 사 에서 의 자 범위와 한 를 명 으로 규범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 검사장,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 기업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조 고위 자가의 전관 우에 대해 들의 우 가 다는 을 고 있 니다. 사회에 대한 의 신 에서 이 사 가 생하는 은 바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이를 제한적으로 제한하는 은 헌법 선 의 자 를 해할 여지가 있으 로, 인의 기 과 사법신 이라는 의 가치를 조 시 수 있는 지 로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국민들은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굉장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음. 후보자님은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관 우는 자가 관 기관에서 를 제 받는 으로서, 사법 에서의 전관 우 전 판, 사가 사로서 수사 재판과정 또는 결과에서 정한 를 제 받는 이라고 수 있 니다.

○ 이는 재판의 정성, 사법의 신 에 대한 문제로서 들의 우 가 다는 을 고 있 니다.

○ 제가 전관 우를 경 한 사 은 지 , 제 재하는지 여부와 관 이 관이 의 까지 식시 수 있도 법원이 부 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 , 생법관제의 정 등은 대 로 으로의 이 등을 으로 전관 우의 우 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고위 법관 등이 분한 을 할 수 있는 제 여 을 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전관 우를 지하기 위하여 재 당 제도 등을 고 있으 이으로는 부 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관 우를 지하는 가 과적인 수 은 생 법관으로 근 한다 하고, 에 사로 하지 는 니다. 이를 위하여는 법원에 정 까지 근 할 수 있는 인 과 정 이 에 사를 하지 고도 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 부여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법관으로 정 을 하는 이 통 적인 이 도 법관에 대한 우 선, 재판 구원 등 조인력 확 이 대적으로 필요하고, 아가 시니어판사 제도도 적극 할 수 있도 하니다.

43. 법조일원화로 인해 숙련된 변호사가 판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펌에 근무한 변호사에서 판사가 될 경우, 해당 로펌에서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관 용자 에 대 로 출신이 다수 있 에 따라 이 바 관 우 생의 우 가 있 을 고 있 니다.

○ 재 법관 용 는 라인 식으로 행 고 있고, 부 인사 등의 여를 통해 명성과 정성을 확 하고 있 니다.

○ 이 사소송법 법관은 소 하 로 사 을 2 지 하 어 있 니다. 이 한 에서 로 출신이 다는 이 로 판을 받는 부분은 니다.

○ 에도 구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우 를 식시 기 위하여 자의 이해 지법 회 의 를 고, 고관 재 당 제도 등을 용하고 있 니다.

44. 대법관이 된다면, 43번 우려를 해소하고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 이 바 관 우의 우 를 해소와 관 하여, 43 에서 한 기 제도 이 에 로 을 가지고 있지는 니다.

○ 다 , 기 의 제도가 지에 어 관 우의 우 가 지 도 의 깊 도 하 니다.

45. 43번 우려가 가시화 될 경우, 사법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이 바 관 우에 해당할 수 있는 사 이 생한다 사법 신 에 당한 향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 바와 이 여 지 을 하고 있으 로, 이 제도가 지에 어 관 우의 우 가 지 도 지 적으로 력하고, 심한 의를 기 여 적 한 대 을 할 수 있어야 할 니다.

46.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이 법률에 명시 지 은 역에서 을 포 적으로 지하는 지법의 도 지와 필요성에는 기 적으로 감합니다.

○ 지법의 제정 여부는 다양한 의 을 수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 이라 생각합니다.

47.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11조는 구 지 성 , 종 ,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역에 있어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 법률에서 각 역 로 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니다.

- 「 인 지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 지 고 자고용 에 관한 법률」, 「 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 등기 법」 등

○ 에도 구하고 헌법이 법률에 명시 지 은 역에서 을 포 적으로 지하는 지법의 도 지와 필요성에 감합니다.

○ 다 , 부 용에 대한 우 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 고 있으로, 회에서 다양한 해와 가치를 하여 사회통합을 이어내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 니다.

48.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이 법률에 명시 지 은 역에서 을 포 적으로 지하는 지법의 도 지와 필요성에 감합니다.

○ 다 , 지법이 성소수자를 조 하는 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4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법관을 포 하여 법관은 오 헌법과 법률의 해 에 의하여 판 을 내리는 이 로, 판결의 결과 에 법관의 출신 이 성 , 력, 지역, , 아 이력 등을 바탕으로 수, 도, 등으로 구분하는 은 바 하지 으 , 또한 한 구분이 제 재판결과와 어 관관 가 있다고 확 하기 어 니다.

○ 다 ,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해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이 전 향을 치지 을 이라고 정할 수도 니다. 재판결과에 대하여 심의 판 을 받도 하는 심 제도가 이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 , 결 법관 로 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립성을 지하 는 력을 기 이 서, 시에 다양한 가치관과 경을 가 법관을 고 용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 법원에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해소되고 대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조 대 대법원 사법 신 도가 하고 있 을 확인 할 수 있는 자 는 지 합니다.

○ 다 , 인적으로는 조 대 대법원 의 이 에 사법 신 도가 선 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신 한 재판을 위한 력, 전원합의 판결 성 등에 따 으로 생각합니다.

51.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증원에 동의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역할과 기 을 다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니다. 이 한 역할과 기 에 역 을 분 을 수 있도 대법관 원 다 우선하여 고심사제 고 법원 도 등 고심 제도 선이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원도 고제도 선 하 로 할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지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하는 하 의 전원합의 를 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2. 51번 질문에 대해, 동의·비동의를 택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사법부에 대한 체계·근본적 고민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 해당 에서 고심사제 도 이 가 바 하다는 을 니다.

53. 현재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대법원은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 는 이해관 를 조정하고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 로, 이 한 관 에서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 해야 한다는 의 에 의합니다.

○ 한 , 사법적 쟁송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신 하고 정확한 사 의 해결이 조 는 재 에서, 오로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 를 위해 역 등을 기준으로 식적으로 근하기 다는, 사회를 바라 는 가치관과 등을 기준으로 적인 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할 수 있도 하는 도 필요하지 을까 생각합니다.

54. 대법원이 위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 는 이해관 를 조정하고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 로, 이 한 관 에서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 해야 한다는 의 에 의합니다.

○ 한 , 사법적 쟁송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신 하고 정확한 사 의 해결이 조 는 재 에서, 오로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 를 위해 역 등을 기준으로 식적으로 근하기 다는, 사회를 바라 는 가치관과 등을 기준으로 적인 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할 수 있도 하는 도 필요하지 을까 생각합니다.

○ 재 명 에 의하 라도 이 대법관 자의 거 과정 등에 여할 수 있으 , 분한 다양성을 확 하기 위하여 제청 과정에서 은 의 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를 하는 도 하 의 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5.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법원의 다양성(성별, 나이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에 '판사 용에 있어 성 , , 법조경력의 종 기 , 전문분야 등 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 하기 위한 사 을 적극 '하도 하는 내용의 법원조 법 조 이 신 으로 고 있 니다. 과정에서 법원도 다양한 경력을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선 하고 있고, 법관 용 선 등을 통해 법관의 다양성을 확 하기 위한 여 력도 기 이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법률서 성 가 부 의 , 법관 용 의 소 , 법조경력 가 등을 통해 법관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 하기 위한 력을 지 해 으로 고 있고, 으로도 와 은 력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다양한 경과 경력을 우수한 법조인들의 법관 지원을 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 은 아 지 고 있 니다. 법관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 법원 판결에 수 있도 법관 용 선과 우수한 법조인들의 법관 지원을 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여 을 기 위하여 력할 필요가 있 니다.

56.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 이 는 적인 인물에 대한 의 리 의 자 와 인 의 과 가치, 행 구의 기 가 는 사생 의 는 헌법이 하는 요한 기 으로서, 기 어 하 의 력이 우위에 있다거 우선한다고 할 수 니다.

57.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 에서 일 당사자가 적인 인물인 경우, 헌법재판소 판 에 따 의 자 와 리의 대 이 는 사 이 적인 관심 사 에 관한 인지, 수한 사적인 역에 하는 으로서 받아야 하는 사생 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하여 판 해야 하고, 다 적인 인물 내지 적인 관심 사 에 관한 이라 할지라도 일 적인 수준으로 용 는 과 의 범위를 어서는 명 한 위사 로서 인에 대한 의적이거 당성을 은 은 제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8. 검찰의 공소장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 제도는, 재판의 원 내지 의 리 과 정의 원 , 고인의 어 사이에서 하는 이 있 니다.

59. 일각에서는 공판개시 전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소 가 의사 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 대 자의 지위(적 인물인지 여부), 구 적인 사 (적 관심사에 관한 인지, 적인 와 관 인지 등)에 따라서 리 판 수 에 다고 생각합니다.

60. 기성세대가 일으킨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경 과 기 는 인 의 과 가치에 결 는 요한 문제 니다. 최근 기 가 의 기 을 위 하는 에 이 고, 우리 라에서도 다양한 의 경소송이 제기 고 있는 재의 기 위기가 대의 행 구 을 해하고 있다는 의 에 감하는 부분이 있 니다.

○ 해 에서는 기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 위기에 대한 정부 기 의 을 인정하고 가와 기 에 기 위기에 대 하기 위한 의 를 부여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 오고 있는 , 법원도 의 헌법적 리인 경 을 적으로 하기 위한 구와 력을 하여 경 관 법리를 확립해 갈 필요가 있을 니다.

○ 이를 위하여는 관 제회의, 등에 법관이 할 필요가 있는데, 과 한 와 의 제 등으로 어 이 있 니다. 법관 원과 관 확 에 은 관심을 부 립니다.

61.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재기 위기 에 대한 들의 우 와 에 감합니다. 적한 경은 인 의 과 가치와 결 는 가치이 , 인 의 과 문 적인 생 의 향 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에서 가는 과 경 를 최우선 과제로 아 들의 을 해소할 수 있는 력을 기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정부의 정 은 사회·경제·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다각적인 분 과 종합적인 가를 거 정 는 사 이 로, 대법관 자로서 이에 관한 구 적인 의 을 리기에 적 치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2.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었을 경우, 타 국의 사례를 수용·비교하며 재판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 대법관이 어 관 사 을 다 다 라의 법 , 사 등을 분하 하고, 우리 라의 법 내지 경과 통 과 이 을 구 적으로 ·분 하여 재판을 행할 수 있도 하니다.

63. 후보자는 존엄사를 찬성/반대하는지? 찬성/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회생 가 성이 고, 치 에도 구하고 회 지 아니하 도로 이 어 사 에 한 에 있는 자에 대한 명의 결정 등 사 에 관하여「 의 종과정에 있는 자의 명의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어 시행 니다.

○ 재, 이 바 적극적 사는 용 지 고, 생명 지에 필요한 물 여 등을 하는 의 소극적 사 용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사 등 적극적 사의 용 여부 범위는 인 의 생명 과 결부 문제이 로, 은 사회적 의와 의 수 을 거 적 감대가 성 필요가 있는 역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는 사 이고 이 부분이 사 수 있으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4. 각급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만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기 제 사 의 근 적인 원인은 사 수가 고 이도가 대 가하 에 하여 법관의 수가 부 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조일원 로 인하여 법관이 고 에도 재판을 조할 수 있는 인력(재판 구원 등)이 부 한 도 요한 원인 하 라고 생각합니다.

○ 재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법원 의 재판, 법관 사 분 기 , 기 제의 요 원인 하 인 의 감정 의 선, 판결서 적정 , 적인 재판을 위한 심리 선 등이 재판지 해소를 위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 기 제 사 을 해소할 수 있는 근 적인 법은 법관을 원하는 이고,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으로 용 수 있도 법관의 우를 선할 필요성이 있 니다. 재판 구원 원도 신 하 서도 한 재판을 위하여 시 필요한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65.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특정 이념에 기반을 두어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니다.

66.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경기대 대 조 기 제· 근로 사 (서 고법 2011 39419)

- 정규 전 을 회 하기 위하여 근로를 이용하여 기 제 근로와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을 기준으로 사용사 (법인)와 근로자(대 조) 사이의 시적 근로 관 성립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법이 용 지 을 명확 하 니다.

- 또한, 기 이 정 이 는 근로자 에도 사 서를 수리하는 식으로 리한 은 정당한 이 이 근로관 를 종 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 하여 이 한 식으로 근 를 종 시 는 관행에 제 을 니다.

○ 인 시 사 (수원고법 2022 13080)

- 성시 지 원 경쟁 용시 에 원고는 인 전 의 일한 필기 합 자로 을 니다. 최 에서 와 관 이 는 등에 대한 문을 받고 ‘ ’ 등 받 고, 이 가 에서도 ‘ ’을 받아 최종 하 니다.

- 이에 대하여 1심은 최 에서 에 대한 문을 한 은 행위에 해당하지 , 가 에서 시정 에 따라 하

자가 치 다고 지 , 는 최 에서의 등
에 따라 가 대 자로 분 이 로 최 의
결과에 따 향이 있는 이고, 원고가 인 전 의 일
한 합 자 사정을 고 하여 최 의 행위가 시
정 다고 수 다고 판 하 니다.

○ 기 제 전 사 시정사 (서 고법 2013 51093)

- 자 전 원에서 기 제 전 사와 정규 전 사 사이
에 여 등에 관한 이가 기 제법이 지하는 적 행
위인지, 기 이 종 한 기 제 전 사가 시정명 을 구
할 이 이 있는 인지가 문제 사 니다.

- 1심에서는 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전에 기 이
을 이 로 적 우의 시정을 구할 이 이 소 하
다고 판 하 니다.

- 이에 대해 는 사사 과 행정사 (시정명)의 이 등을
고 하여 기 에도 시정명 을 구할 이 이 있다
고 판 하 니다. 아가, 정규 전 사와 기 제 전
사의 등을 부적으로 ·분 하여 사이에
적인 이가 고, 정규 인지 여부의 이는 이 기
, 근수당의 이에 어 있으 로, 여 이
지 , 가 , 경사 에 대한 은 기 제법 위 으로 판
하 니다.

67. 후보자는 현 대법관의 구성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구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대법관 구성이 이 바 서오 을 하지 하 다는 판에 경청할 부분이 있 니다.

○ 사법적 쟁송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신 하고 정확한 사 의 해결이 조 는 재 에서, 오로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 를 위해 출신 , 이 등을 기준으로 식적으로 근하기 다는, 사회를 바라 는 가치관과 등을 기준으로 적인 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할 수 있도 하는 도 필요하지 을까 생각합니다.

○ 최근 여성 법조인의 이 당 높아 고, 출신 이의 구성도 다양해 으 , 법조일원 제도가 시행 지 10 이 지 에 따라 법관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어 향 대법원의 사회적 다양성이 확 수 있을 으로 생각합니다.

68. 후보자는 사법부에 필요한 '외적 다양성'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다양성에는 법관의 출신이 성 , 력, 지역, , 아 이력 등이 포 수 있을 니다.

○ 사법적 쟁송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신 하고 정확한 사 의 해결이 조 는 재 에서, 법원의 다양성을 식적으로 근하기 다는, 사회를 바라 는 가치관과 등을 기준으로 적인 에서 바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조일원 제도가 도 서 기 다 다양한 경력을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선 하고 있고, 법관 용 선 등을 통해 법관의 다양성을 확 하기 위한 여 력도 기 이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으로도 법관의 용 과정에서 다양성을 확 할 수 있는 에 대한 는 와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9.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 는 이해관 를 조정하고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 로, 이 한 관 에서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 해야 한다는 의 에 의합니다.

○ 대법관의 자 요 을 하는 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 를 재판에 하는 데 도 이 으로 정하기는 어 다고 생각합니다. 재의 고심 구조에서는 다양성과 자에 대법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 이 필요하기 문 니다.

○ 따라서 이 부분은 분한 의와 적 합의를 거 결정 어야 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70.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위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의 신 는 사법부 립 근거이자 이니다. 우리 라 사법이 성 에서는 우 높은 가를 받고 있는 으로 고 있는데, 의 은 에도 구하고 사법신도가 아지고 있다는 에 대해 법관으로서 거 감을 니다.

○ 이 한 가의 원인은, 종 사법의 독립과 재판의 정에 대하여 의 을 일으 여 사 , 의 감대를 지 한 판결결과, 최근의 재판지 문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부적으로는 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적인 리를 바탕으로 한 판결 결과에 대한 과도한 판과 여론도 사법신도 하에 어 정도 향을 다고 생각합니다.

7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판과 법원에 대한 의 신 는 결 사법부 의 인 재판에 으로 회 할 수 있다고 니다.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 분한 론의 기회를 제 하고, 를 명하 하 , 한 심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한다 사법에 대한 신 는 회 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도적으로도 심 제도 재판 의 선을 통해 재판의 성을 제고할 아니라 우수한 법조인력 확 재판 조인력의 원을 통해 인적 자원을 분 출 필요가 있 니다.

○ 또한, 전문법관 전문법원 제도를 확대하여 법원의 전문 를 도 하고 사 리역 을 으로 신 한 재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72. 법관은 다른 어떠한 자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 하지만 각종 비리·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매우 경미한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이 제106조 제1 에서 명문으로 '법관은 또는 고 이의 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 아니하 , 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 ·감 기 리한 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해 의 가 가 하지 은 으로 이해하고 있 니다. 어 까지 재판의 독립을 하기 위한 수 인 이지 법관에 를 제 하기 위한 이 아은 자명합니다.

○ 대부분의 법관은 의 높이에 는 도 성을 고 청 한 생 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법관의 일 행위가 근 지 은 에 관하여 생각하고, 위 법관에 대한 가 경 하다는 지적도 인식하고 있 니다.

○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하는 에 하여 법관은 다 일 원에 해 높은 과 리의식을 가 야 한다고 생각하 , 최근에는 과거에 하여 청구가 적극적으로 이 어지고 수위도 고 있는 로 고 있 니다.

○ 위 법관에 대한 정한 를 시하고 법관 전 에 대한 리 을 하는 등 사법부 신 회 을 위한 지 적인 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3.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일부 법관 동료, 선·후배들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부분의 법관은 의 높이에 는 도 성을 고 청 한 생 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법관의 일 행위가 근 지 은 에 관하여 생각하고, 위 법관에 대한 가 경 하다는 지적도 인식하고 있 니다.

○ 법관 로 법관이라는 자리가 는 의 를 다시 한 아 고 의 기대에 부 할 수 있도 력하여야 할 니다. 또한, 위 법관에 대한 정한 를 시하고 법관 전 에 대한 리 을 하는 등 사법부 신 회 을 위한 지 적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4. 후보자께서는 퇴임 후에 어떠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 과 전문지식을 용하여 대 등에서 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합니다.

75.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사 적시 명 을 하는 헌법 제307조 제1 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 고, 대법원도 전원합의 판결(2020도 5813)에서 한 사 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 행위에 대한 사 의 필요성은 여전 재한다는 지로 판 하 니다.

○ 이에 대하여 한 사 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 로 하는 규정은 의 자 론·출판의 자 를 지 치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감하는 이 있 니다.

○ 사 적시 명 을 할 인지 여부는 인의 명 와 인 , 론·출판의 자 , 의 리 등 하는 법 과 로 인해 해 거 제한 는 리를 종합적으로 고 하여 법 정 적으로 결정할 사 으로 생각합니다.

7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 사 적시 명 를 할 인지 여부는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 이 , 행법은 이를 하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 니다.

○ 결 행법 하에서는 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 인정 범위로 조 시 수 에 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 한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 판결에서 " 한 사 의 적시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의 의 이 도 다 인정 어야 한다.

의 이 관 성 념이 시대에 따라 하고 의 관심사 역시 에 따라 이 바 고 있다는 을 고 하 , 적인 인물, 제도 정 등에 관한 을 의 이 관 성으로 한정할 은 아니다. 따라서 사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 의 일부 이에 관 사 이라도 다 일 인과의 생 에 관 사 이라 성을 지 다고 할 이고, 이에 아가 인에 관한 사 이 라도 이 의 이 과 관 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한 경우라 적으로 가·사회 일 의 이 이 정한 사회 에 관한 이 아니라는 이 으로 법 제310조의 적용을 제할 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가 관 하는 사회적 의 성 과 사회에 향을 아 의 이 에 관 는지 판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는바 위 판결의 기준이 기

을 조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77. 모욕죄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처벌 대상의 행위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 고, 이 한 판 은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의 성립 범위가 지 치 범위하여 의 자 론·출판의 자 를 과도하 위 시 우 가 있다는 지적에 감하고, 사 에서 인정여부를 판 하는 경우 이 한 을 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8.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는 소수자 자를 하는 이 사법부의 요한 이자 역할로 생각하여 니다.

○ 부 하지 경기대 대 조 기 제· 근로 사 (서 고법 2011 39419), 인 시 사 (수원고법 2022 13080), 기 제 전 사 시정사 (서 고법 2013 51093) 등에서 사회적 자와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하 니다.

○ 이 부 하지 대법관이 다 기 의 최 로서 소 명을 다하 니다.

79.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경 보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법관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인식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관은 법률적 쟁송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에 대해 다 구성원과 생하고 할 수 있는 경 를 선 으로 갈등과 분쟁을 최소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당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 법관으로서의 높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수탁받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제32조) 법무부의 관장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6조제1항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과 제32조제1항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는 행정부 행정 법의 적법성 또는 력과 관 내용으로서, 법규의 해 과 관 하여 은 이 있을 수 있으 로 대법관 자가 인적인 의 을 리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81. 행정 각부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 절차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 우려되고,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다음의 상급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에 둔 입법취지도 훼손된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따른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사정 관리 이 수행하는 구 적인 의 범위 내용을 확인하기 어 에서 이에 관한 구 적인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다 , 재 대법원 이 대법관 제청 을 행사하는 데에 법 부 인사정 관리 이 인사 기 을 수행하고 있지 은 으로 고 있 니다.

82.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가요?

○ 대법관 자로서 대법원에서 치 한 의와 고 에 내 판결은 하고, 이에 대한 가를 내리기 어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83.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 양심적 역거부, 역법 제88조 제1 의 정당한 사 , 정한 양심의 의 등에 대하여 시한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 판결 니다.

8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 에 등하 법을 적용하는 은 법치 의 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가 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는 소수자 우리 사회의 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하여 식적 등이 아 적 등을 위해 력할 필요가 있 니다.

○ 아가 사법부는 력이 부에 의하여 법이 등적으로 적용 다는 오해를 받지 도 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5. 후보자에게 사회적 약자의 기준과 정의는 무엇인지요?

○ 일 적으로 사회적 자는 신 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문 적으로 소 거 한 위치에 있어 인 으로서 당 야 할 성이 기 리를 분 리지 하거 인 다 을 위하는 데 어 을 는 인이 을 가리 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 여성, 성소수자, 인, 아 , 이 등이 사회적으로 한 구성원으로서 받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 자의 념은 대적이 로, 대적 자의 지위에 있는 사 들이 대적 자의 지위에 있는 사 에 자신의 리를 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성 수 있도 사법부는 지 적으로 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6.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에서 전 , 전 라는 아 있다는 은 부 고 까 일 니다.

○ 다양한 원인이 있 지 , 들이 로 사사법에서 경제적 력에 따 이 재하는 이 아 가 하는 을 받고 있고, 한 의구심에 부합하는 한 사 들이 이따 생하기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이 한 이 사라지지 는 자 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사법 의 명성, 정성 확 를 위한 다양한 법으로 력할 필요가 있 니다.

87.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 우리 사회에는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의 이로 등이 심고 있는 이 아 가 하는 우 가 있 니다.

○ 법원은 이 한 자 를 시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자의 과 을 분 고 하여 정하 서도 구 적으로 당한 결론을 내 수 있도 력해야 할 니다.

88.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원의 가 근 적인 재 의의는 하고도 신 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인의 해 리를 구제하는 이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니다. 따라서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여 제도적인 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관 재판 구 원 원, 전문법원의 신 , 전문법관 제도 확대를 통한 법관 전문 , 심 제도 합리 등 제도적인 원에서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 리 을 높일 수 있는 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법률심인 고심의 제도 어야 합니다. 하는 고 사 으로 인해 전원합의 가 성 지 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 을 생각하고 있 니다. 결 고심사제 도 등과 은 고 제도 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 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 으로, 등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고 합의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은 우리 라의 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하는 이 기적으로 사법부에 우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9.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부실 판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허가제와 대법관의 증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안들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 고에는 한 제한이 니다. 따라서 고가 제기 는 사 수가 우 고, 이를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은 역 이 고 있 니다.

○ 식적으로 생각하 고에 아 제한이 는 이 의 재판받을 리를 분 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 니다. 물론 는 이 있지 , 사법 자원은 한정적 니다. 한정적 자원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 이 지 하 , 전 로서 사 리가 지 거 필요한 사 에 역 이 지 하는 결과가 생할 수 에 고, 이는 의 재판받을 리 에 역행하 니다.

○ 한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역할과 기 을 다 할 수 있고, 이 한 역할과 기 에 역 을 분 을 수 있도 대법관 원 다 우선하여 고 가제(고심사제) 고법원 도 등 고심 제도 선이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할 으로 생각합니다.

90. 동성결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전 대법원에서 사 관 인 성 자에 대하여 부양자 자 을 인정하는 전원합의 판결이 있 으로 고 있 니다.

○ 법 내지 가 법 우자의 범위를 해 · 확정하는 문제와는 다 에서 의할 수 있다고 판시하 서 사회 역에서 부양자 제도의 지를 고 하여 판결한 으로 생각합니다.

○ 성에 대한 인의 정 성과 관하 인 은 인 으로서의 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 의 로서, 인의 자 와 리를 해하지 는 한 인 은 고 받아야 하 , 성소수자도 자신의 내 한 사적 역인 성적 정 성 또는 지향성과 관하 자신의 을 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행 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 , 인의 자 성 의 원을 어 법률적·제도적으로 어까지 성소수자의 리를 할 인가에 관한 문제는 행 헌법과 법률의 내용, 결 과 가 제도에 관한 의식, 성소수자의 행 구 을 요구하는 시대적 등 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회에서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판결과 관 사 이어서 대법관 자로서 이 이 의

구 적인의 을 리는 이적 하지 을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91.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범 사 은 성 력범 의 등에 관한 법, 아 ·청소 의 성 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이 제정 서 법정 이 대 높아 니다. 또한 에 어 양 기준도 어 니다.

○ 이 한 에서 성범 지를 위하여 법정 을 높이는 은 자 로 어 정도의 과가 있는지 명확하지 을 아니라 다 범 와의 이 생(를 들 , 인 의 하한은 5 인 수 은 법정 의 하한이 7 니다)하는 문제가 있니다.

○ 다 , 위와 은 의가 오는 이 는 성범 사 의 양 이 적정하지 다는 에서 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시대의 과 의 높이에 는 양 이 이 어 수 있도 지 적으로 구하고 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2. 하급심보다 상급심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2015 경 사 소심의 사 심적 성 등을 고 하여 양 조 에 가 고 1심 양 이 재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를 하는 이 당하다는 시를 한 바 있고, 최근 소심에서 1심 양 을 하는 판결이 이 선고 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다 , 고인에 대한 을 가 할 로 사 (양 조)는 통 1심에서 제출 어 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 해자와 합의, 해자의 원 의사 시 등 고인의 을 감경할 로 사 (양 조)가 생한 경우는 종종 있 니다. 에 따라 소심에서는 가 은 지 고 감 는 경우가 다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 이 한 의가 있는 근 적인 이 는 범 행위에 하는 이 이 어지지 한다는 생각이 있기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이 사는 아니라고 하 라도, 법관은 시대의 과 의 법 감정을 할 수 있도 이 력하여야 할 니다.

93.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2015 경 사 소심의 사 심적 성 등을 고 하여 양 조 에 가 고 1심 양 이 재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를 하는 이 당하다는 시를 한 바 있고, 최근 소심에서 1심 양 을 하는 판결이 이 선고 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다 , 고인에 대한 을 가 할 로 사 (양 조)는 통 1심에서 제출 어 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 해자와 합의, 해자의 원 의사 시 등 고인의 을 감경할 로 사 (양 조)가 생한 경우는 종종 있 니다. 에 따라 소심에서는 가 은 지 고 감 는 경우가 다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 이 한 의가 있는 근 적인 이 는 범 행위에 하는 이 이 어지지 한다는 생각이 있기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이 사는 아니라고 하 라도, 법관은 시대의 과 의 법 감정을 할 수 있도 이 력하여야 할 니다.

94.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경우 법관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2015 경 사 소심의 사 심적 성 등을 고 하여 양 조 에 가 고 1심 양 이 재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를 하는 이 당하다는 시를 한 바 있고, 최근 소심에서 1심 양 을 하는 판결이 이 선고 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다 , 고인에 대한 을 가 할 로 사 (양 조)는 통 1심에서 제출 어 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 해자와 합의, 해자의 원 의사 시 등 고인의 을 감경할 로 사 (양 조)가 생한 경우는 종종 있 니다. 에 따라 소심에서는 가 은 지 고 감 는 경우가 다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 이 한 의가 있는 근 적인 이 는 범 행위에 하는 이 이 어지지 한다는 생각이 있기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이 사는 아니라고 하 라도, 법관은 시대의 과 의 법 감정을 할 수 있도 이 력하여야 할 니다.

95. 최근 법관들이 사회적 이슈 내지 법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개인 SNS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관은 법정에서 아니라 인적인 생 에서도 위 지에 각 의를 기 여야 하고, SNS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쟁 에 관하여 의 을 명하는 경우에도 자기 제와 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위를 지해야 하 , 이로 인해 정한 재판에 향을 수 있는 관을 들지 도 신 하 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자 리위원회는 위와 은 내용으로 고의 제7 를 하여 법관이 SNS를 사용하여 의사소통과 다양한 인적 관 를 성할 수 있 을 전제로 과정에서의 의할 사 등을 제시한 으로 고 있 니다.

○ 관 하여, 2023. 12. 전 법관대 회의에서도 '법관은 SNS를 이용할 법관으로서의 정성에 의심을 일으 한 관을 들거 법관으로서의 위를 하지 도 의해야 한다.'는 고의 을 내기도 하 으로 고 있 니다.

○ 으로도 법관의 합리적인 SNS 이용 에 관하여 지 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6.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의 정치 중립'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 중립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이며, 사법부의 정치 중립에 찬성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의 정치적 립은 각 재판의 당하는 법관의 정치적 립과 다 지 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법관의 정치적 립은 사법의 독립과 재판의 신 확 에 필수 니다.

○ 법원조 법 제49조 제3 가 법관은 재 정치 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다고 규정하고, 법관 리 제7조가 "① 법관은 를 수행 에 있어 정치적 립을 지 다. ② 법관은 정치 을 목적으로 하는 의 원이 구성원이 지 아니하 , 선거 등 정치적 립성을 해치는 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 법관의 정치적 립성을 과 아 이를 확하기 위한 니다.

○ 법관은 제로 정치적 립을 지 를 수행하여야 은 물론, 으로도 정치적 립에 대한 의심을 받지 도 념할 필요가 있 니다. 또한, 사회 여 력으로부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 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7.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 독립'의 취지, 목적, 방향,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기관이 여하의 가기관이 정치 력, 여론 등으로부 향을 받지 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 하기 위한 요 으로, 목적은 정한 재판 니다.

○ 이 한 사법의 독립은 부로부 의 독립 으로 분치 으 , 내부로부 도 전 독립 어야 합니다. , 부로부 사법부의 독립을 고 하는 한 사법부 내부로부 의 법관이 독립 어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법부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에서 한 가 있 니다. 사법부는 재판 와 사법행정 역 에서 명하 하고 이를 에 으로 의 통제를 받아야 하 , 의 높이에 따 전한 판을 수용하고 적 감대를 는 재판을 하기 위해 지 적으로 력해야 합니다.

○ 한 , 사법의 독립을 구 하고 재판지원과 을 하는 등 사법의 기 을 제고하는 시에 사법에 대한 적 통제를 하는 은 결 과제가 아 니다. 법관 등 재판인력과 재판 조인력의 원, 분한 과 사법부의 의 독립 등이 바탕이 어야 가 한 일이 로 이에 대하여 회와 행정부 을

아 시기를 부 립니다.

98. 우리사회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대해 '특정이념'을 가진 법관들이라며 이들을 마치 일반 판사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법관이 정 구회에 소 어 있다는 사정 으로 법관이 정치적으로 향 어 있다고 정하는 은 지 다고 생각하고, 로 인하여 법원 내 갈등이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니다.

○ 다 , 정치적 향성이 있는 이라거 정 구회가 력 다는 우 가 있다는 으로도 사법신 , 재판결과의 등에 부정적인 향을 수 있으 로, 이 우 가 생하지 도 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니다.

9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법관을 포 하여 법관은 오 헌법과 법률의 해 에 의하여 판 을 내리는 이 로, 판결의 결과 에 법관의 출신 이 성 , 력, 지역, , 아 이력 등을 바탕으로 수, 도, 등으로 구분하는 은 바 하지 으 , 또한 한 구분이 제 재판결과와 어 관관 가 있다고 확 하기 어 니다.

○ 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해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이 전 향을 치지 을 이라고 정할 수도 니다. 재판결과에 대하여 심의 판 을 받도 하는 심 제도가 이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 , 결 법관 로 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립성을 지하 는 력을 기 이 서, 시에 다양한 가치관과 경을 가 법관을 고 용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행정 용 사 와 관 하여 재 관 사 들에 대한 재판 이 소심에 인 이 있으 로, 대법관 자로서 에 대한 구 적인 가를 리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다 ,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의 목적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의 일들로 인해 여 분 심 를 에 대해 법원 구성원의 한사 으로서 송구하 생각하고, 다시는 은 일이 지 도 법원 구성원 가 경 해야 할 니다.

101.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이 잘못되었다고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행정 용 사 와 관 하여 재 관 사 들에 대한 재판이 소심에 인 이 있으 로, 대법관 자로서 에 대한 구 적인 가를 리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다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의 목적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의 일들로 인해 여 분 심 를 에 대해 법원 구성원의 한사 으로서 송구하 생각하고, 다시는 은 일이 지 도 법원 구성원 가 경 해야 할 니다.

102.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기소된 재판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행정 용 사 와 관 하여 재 관 사 들에 대한 재판이 소심에 인 이 있으 로, 대법관 자로서 에 대한 구 적인 가를 리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03. 대부분 재판관이 무죄가 나옴에 따라,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행정 용사 와관 하여 재관 사 들에 대한 재판 이 소심에 인 이 있으 로, 대법관 자로서 에 대한 구 적인 가를 리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04. 후보자는 법원이 밝힌 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에 속해있습니까? 속해있다면, 어디·누구에게로부터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 는 해당사 이 니다.

105.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여러 법관 엘리트들이 도운 조직적인 사건이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관들이 다수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징계는 불복소송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사법행정 용 사 와 관 하여 여 분 심 를
에 대해 법원구성원으로서 심으로 송구하고, 다시는 이
와 은 일이 지 도 경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 행 인 사 이 있으 로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06.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 방향, 활동,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 하고 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제도 선 법관이 기 근 할 수 있도 우 선, 재판 구원 원, 인사제도 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고, 이에 대해 사법정 자문위원회를 통해 부 의 의 을 청 한다는 에서 기 적으로 대법원 의 향과 에 의합니다.

○ 다 , 이 한 이 제 성과를 거 기 위하여는 법률 정, 의 성과 인 등이 수 어야 합니다.

○ 사법부 독립을 고하 하고 사법부에 대한 의 기대를 시 을 위한 사법부가 수 있도 은 관심과 지원을 부 립니다.

107.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어 제도가 는 경우 이에 의하는 사 과 지 은 사 이 있을 수 에 니다. 다 , 재 사법부가 한 에서 대법원 의 제도 선 에 대하여 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는 하는 내용이 을 위한 향이 서도 사법부 구성원을 위한 향이기 문 니다.

108.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당 행위를 처벌할 '직권남용'이란 법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커다랗게 남겨놓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직권남용을 형식적 논리로 엄격히 해석하면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법왜곡죄'로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떠한 입장입니까?

○ 대법원은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 판결에서 "
용 리행사 해 는 원이 일 적 한에 하는 사
에 관하여 을 행사하는 으로 적, 구 적으로 위법·부
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용이 원이 일 적
한에 하는 사 에 관하여 한을 위법·부당하 행사
하는 을 한다"고 판시한 바 있 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을 하고, 재 행 인 사 과 관
사 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
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09. 위 107번의 직권남용의 판결로 인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 대부분이 무죄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을 하고, 재 행 인 사 과 관 사 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10. 사법농단에 관여한 재판관이 퇴직 후, 로펌 등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행정 용 사 와 관 일 의 사 들은 아 재판이 에 있고, 에 관한 사 관 가 아 확정 지 은 사 도 니다. 이 한 에서 대법관 자로서 이에 대해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11.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처리가 된 변희수 하사는 재입대를 희망하였습니다. 과거, 국내 한 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학내반발과 인신공격등으로 등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당사자들이 실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법의 판단과 결정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데 일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소수자 역시 헌법 인 으로서의 과 가치를 리고 성적 지향이 의 이 가 수 은 명 합니다. 서로 다 가치관을 가 수 있는 은 당 하 로 다 에 대하여 갈등과 오를 출하기 다는 이해와 포용이 선행 는 이 바 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하여 을 지하고 어 한 법률적 · 제도적 을 할 인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해와 가치에 대한 분한 의 수 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이 바 할 니다. 다양성이 하 서도 조 를 이 는 사회가 기를 바라 ,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 최선을 다하 니다.

112. 해외 여러 국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오랜 사회적 논쟁과 많은 진통 속에서 얻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법과 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규범이 할 법원은 정하 서도 있고 통일 법해 을 통하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는 이해관 의 통합을 이 어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한 에서 법관의 역할이 요하다는 에 감합니다.

○ 사법부는 다수결의 원 이 지 하는 의 사회에서 다수의 목소리에 기 어 소수자와 사회적 자의 목소리에 를 기 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들의 정당한 을 하는 한 , 우리 사회 내의 구조적인 등을 해소 또는 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의 인 전을 위한 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이 법을 기 적· 식적으로 적용하는 이 아니라 감각과 포용력, 소수자와 자의 아 에 감하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기 이 적인 법치 의를 할 사회 내 갈등과 등을 해소하고 의 기 을 정으로

는 사회가 구 이라 생각합니다.

113.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명칭, 소득세 대상 여부 등 세법 개정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 암호화폐 시장의 산업발전과 국제 추세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문제제기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인이 재 적 가치가 있는 의 재 에 해당한다는 이 로 수의 대 이 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 에도 사기 의 인 재 이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하 니다.

○ 이 한 대법원 판결에도 구하고 의 명 부 법적 성 , 부과 여부 등에 이 기까지 는 여전 사회적 의 심에 있는 이 사 니다.

○ 따라서 의 기 적, 재 적 성을 고 하여 기 법 와 조 를 이 수 있는 법률이 제정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문가의 구, 와 범위한 의 수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4. 2009년 야간집회시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내린바 있음. (2014년 한정위헌 판례 中"'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중 '한정위헌' 결정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2009년에 진행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시위 헌법불합치 결정만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00시~06시까지만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법은 대법원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률이 헌법에 위 는지에 대한 판 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로, 대법관 자로서 이에 대하여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15. SK최태원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 따르면, 노태우의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을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음. 불법으로 승계된 범죄수익이 재산으로 인정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재 행 인 사 과 관 어 있어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16.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비자금 등 불법 승계되어 형성된 수익을 환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행법 으로는 소제기가 는 경우 법수 등을 수 할 수가 는 으로 고 있 니다. 따라서 소시 가 지 에서는 도의 제도가 지 아니한 이 수 을 수하기 어니다.

○ 행법과 지 는 부분이 있고 위 제도가 도 경우 생할 수 있는 우 등을 하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 사으로 생각합니다.

117.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생략되기도 함. 민사/가사 사건에서도 제출된 증거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작성자에 의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문서의 정성립에 다 이 있는 경우에는 거신청인이 문서의 정성립을 명하도 하고 있 니다. 문서 성자를 한 관자의 도 문서의 정성립 판 이 명력 판 을 위한 한 법이 수 있지 , 에 문서감정이 등 여 가지 법을 통해 제출 거가 성자에 의하여 성 인지 신 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 하고 있 니다.

○ 이와 관 하여 문서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신 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에서는 부 문서감정인 도 가를 시하고 수를 시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이 한 력을 통하여 사/가사 소송에서의 거의 정성립이 신 성에 대한 조 정확한 판 이 가 해 으로 생각하고 있 니다.

○ 사사 가사사 에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거의 신 성과 거력을 조사·판 할 필요가 있다는 에 대하여는 감하고, 가적인 선 에 대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8. 117번 주장과 관련, 법조인이자 재판관으로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리 라에서 거의 재에 따 등이 있고, 사회가 고 하 에 따라 정도가 심 고 있어 이를 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우리 라와 은 법 소송 구조에 당한 이가 있으 로, 분한 를 거 우리 에 도 어야 할 필요가 있 니다.

119. 최근 5년간('19년~'23년)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약 4천건에 달한다고 함. 단순 오류의 경우 경정 대상이나, 판결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법원 신뢰도 저하 초래, 판결문 작성 여건 등을 점검해 제도/시스템적으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판결의 경정이 판결내용을 적으로 경하지 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이 기재, 에 이와 한 이 있이 분명한 에 판결법원이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을 바로 는 을 합니다(사소송법 제211조). 따라서 판결의 심 내용을 적으로 경하는 경우라 판결 경정의 대 이 다고 기 어 고, 통 이 한 경우에 판결 경정을 하지 는 으로 고 있 니다. 우리 법은 소제도를 통해 판결의 심 내용의 대한 오 를 수정하도 하고 있 니다.

○ 다 판결의 사소한 오 등이라도 소송관 인에 대하여 재판 결과의 신 도를 하시 우 가 있으 로, 판결문에 오 를 일 수 있는 시 이 제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의합니다. 또한, 제도 시 에 관한 선 이 기 전이라도 각 재판부 판결이 선고 기 전까지 판결에 오 가 는지 확인하는 데에 분한 력을 다해야 할 니다.

○ 판결의 오 를 이는 제도 시 선을 위해서는 재판인력의 원 에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 로, 이에 대하여 회에서도 관심을 가 시기를 부 립니다.

120. 판결문의 경정오류를 집계(통계화)시켜 공개하는 것이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적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도 경정결정의 일부 수에 대해서는 통 로 하여 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다 경정을 포 한 일부에 대해서는 통 가 지 고 있는 한 가 있다고 고 있니다.

○ 판결 경정의 을 하여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감하고 있 니다. 다 재 기 적인 제 으로 경정사 자 를 하기 어 사정이 있는 으로 고 있고, 또한 판결 경정 사 은 판결내용을 적으로 경하지 는 범위 내의 경 한 오 에 대한 으로, 부당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 을 받은 당사자가 시 고를 통해 다시 다 기회가 있어(사소송법 제211조 제3), 도로 을 할 이 지 다고 생각합니다.

121. 판결문의 경정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사유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동의한다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것입니까?

○ 판결의 경 한 오 에 대해서 경정을 할 수 있을 대한 오에 대해서는 경정의 대 이 수 고 소제도를 통하여 수정 , 판결 경정 자 에 오 로 인하여 이 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시 고 등으로 다 수 있 니다(사소송법 제211조 제3).

○ 따라서 이 한 경정 결정에 대하여 인용/기각 사 를 구 적으로 기재하여 하도 하는 은 법관이라는 한정 사법자원을 지 치 적으로 사용하 우 가 있 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신 하 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2.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인 위원회의 고결정에 법적 구 력은 다고 하 라도 립 목적 지 등에 어 가 적 결정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3.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권고결정을 위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위 재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인 위원회의 고결정에 법적 구 력은 다고 하 라도 립 목적 지 등에 어 가 적 결정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결정에 법적 구 력이 는 이 이에 따 지 다는 사정 으로 재판 등의 정당성이 부정 는 으로 기는 어 다고 생각합니다.

124.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결에 대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인 위원회 고결정을 따 지 은 재판이 경우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부정적인 향이 치는 경우도 있 지 , 이는 해당 고결정의 내용, 확인 사 관 의 정도, 문제 등에 따라 다양하 로 일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 다고 생각합니다.

125.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이 형해화 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판결과 가인 위원회의 결정은 를 목적과 지에 당한 이가 있고, 가인 위원회의 고결정은 재판 와 은 한 명 등을 전제로 하는 이 아니 , 가인 위원회는 재판과 관한 다양한 분야에도 고결정을 하고 있는 이 , 해당 고결정에 따 지 다는 사정 으로 가인 위원회 고결정이 해 다고 생각하지는 니다.

○ 다 , 가인 위원회의 고결정에 법적 구 력은 다고 하 라도 립 목적 지 등에 어 가 적 결정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판사 직권심판은 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 후보자는 위 직권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소송법 제364조 제1 은 원 적으로 소이 서에 포 사에 관하여 판 하도 하 서도, 제2 에서 판결에 향을 사 에 관하여는 소이 서에 포 지 는 사 이라도 으로 심판할 수 있도 하고 있 니다. 소심의 사 심적인 성을 하는 소이 서 제도를 하 서도 위와 은 규정을 은, 가기관의 적 판 인 원심판결에 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는 은 당사자의 이 라도 당 이행 어야 할 적인 요청이기 문 을 고 한 으로 이해하고 있 니다.

○ 대법원도 사소송법 제364조 제2 의 지와 관 하여 " 사소송법이 소이 를 제한하고 소정기 내에 소이 서를 제출하도 하는 등 소 를 제한하고 있기 문에 당사자가 생각지 하고 또는 적 하 소이 서에서 지적하지 한 사도 있을 이 로 적 의 과 당사자의 이 을 하기 위한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역시 위 대법원 판 의 지에 감합니다.

○ 따라서 법관으로서는 소송 의 성을 도 하 서도 의 과 당사자의 이 , 법규의 정한 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 는 경우에는 위 조 을 적 하 용하여 판결의 적정을 기하고 당사자의 리 구제를 도 하여야 할 니다.

12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은 언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 과 이 법관으로서는 소송 의 성을 도하 서도 의 과 당사자의 이 , 법규의 정한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는 경우에는 위 조 을 적하 용하여 판결의 적정을 기하고 당사자의 리 구제를 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128.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수사기관의 수사로, 아동을 수사하는 과정에 보호자에게 즉각 알리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 수사로 보십니까?

○ 아 리 제9조는 부 로부 분리가 아 의 최 의 이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 하고, 아 은 부 로부 분리 지 아야 하 , 분리 경우 부 와 을 지 할 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니다.

○ 우리 라가 이 을 준하 으 로, 이 은 헌법 제6조에 따라 내법과 일한 력이 있 니다. 따라서 구 적인 사 관 를 아야 하 지 자에 리지 고 아 을 수사하는 은 아 리 에 하는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9.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애인과 아동에 대해 수감 중이지 않은 장애인 및 아동에 비해 그 권리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지? 제한할 수 있다면 일반 수감자와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치소에 수감 인 사 은 인과 아 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 정하는 대로 기 의 일부가 제한 니다.

○ 인과 아 의 성을 고 하 이들이 수감 인 경우에는 성이 수 에 니다. 따라서 이들의 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 한 사정을 고 하여 심하 신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수 부 이 높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수 으로 인하여 의 사생 의 과 자 , 인정 자기결정 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을 고 있 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 심리를 통하여 수수 의 범위를 적 제한할 필요가 있 니다.

○ 다 , 수수 은 통 수사 기 에 거 확 를 위하여 이 어지고, 수사기관이 성한 서 를 바탕으로 판 할 수 에 어 재의 구조에서는 수수 청구를 기각하기 지 은 이 있 니다.

○ 따라서 법관의 대 심문 등 수수 범위를 적정하 제한하기 위한 제도 도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수 을 법원이 적 하 통제하지 한다 로 인하여 의자를 포 한 의 사생 의 과 자 , 인정 자기결정 이 해 우 가 다는 에 의합니다.

132.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 에는 인의 다양한 정 가 포 어 있 니다. 이에 대하여 선 적인 수수 을 하지 는다 수수 으로 인하여 사생 의 과 자 , 정 에 대한 자기결정 등이 해 우 가 당합니다.

○ 따라서 수수 범위에 대한 적 한 제한이 필요하고, 법관의 대 심문 등을 통하여 범위가 적정하 제한 수 있도 사전심문제도 도 의가 이 어 으로 기 하고 있 니다. 인적으로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심문제도의 도 으로 수사 행성이 해 고 수사가 지 수 있다는 론이 있으 , 수사의 행성이 해 지 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어야 하는 은 당 하다고 생각하고,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수사 행성을 해할 수 있는 식으로 이 어 으로 생각하지는 니다.

○ 관 법률이 22대 회에서 의 으로 고 있 니다. 회 원에서 분한 와 의 수 을 거 법적으로 해결 기를 합니다.

133. 수사기관이 휴대폰, 노트북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 , 등 정 는 인의 다양한 정 가 포 어 있고, 에 따라 수대 정 와 지 은 정 가 여 있 니다. 이 한 대전 등을 수하는 경우에 통 대전 에 전자정 를 이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관한 다 등이 이 어지 로 사 가 한 어 기 에 제한 이 어지 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수수 에 따 사생 의 과 자 의 해 우 가 생합니다.

○ 법원에서 수수 이 부 이 행과 이 의 리 등에 관하여는 수수 으로 한 정 등이 재판 에서 거로 제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하여 거 력에 대한 판 을 할 수 있을 이 에는 정 의 범위 기 여부 등에 대하여는 수 니다.

○ 따라서 수수 사전심문제도를 도 하고, 어 대 기 등 행 을 명시하도 하는 등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4. 위 133번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대전 , 등 정 는 인의 다양한 정 가 포 어 있고, 에 따라 수대 정 와 지 은 정 가 여 있 니다. 이 한 대전 등을 수하는 경우에 통 대전 에 전자정 를 이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관한 다 등이 이 어지 로 사 가 한 어 기 에 제한 이 어지 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수수 에 따 사생 의 과 자 의 해 우 가 생합니다.

○ 다 , 경우에 기 해가 는 으로 정하기는 어 고, 관 분쟁이 생 수 있으 로 이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35.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침해기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 자료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목록제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소송의 소 이 높지 은 이 는 해행위 해 정에 관한 거자 가 대부분 해자에 있어 리자가 해에 대한 거를 확 하지 해 에 어 을 기 문 니다.

○ 전문가 사 조사제도가 도 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대 당사자의 사 , 등에 출 하여 문, 자 , 치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거를 확 할 수 있 로 해소송에서의 거 을 해소할 수 있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 목 제출제도 역시 해 자 를 정하기 어 자 제출신청이 기각 어 문제를 해결하고, 자 제출명 제도의 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이라 로, 이 한 제도의 도 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6.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에서 징벌적손해배액에 인정에 대해 보수적 입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할 정도의 위하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적 해 제도가 지와 목적에 용 어야 할 필요성이 있 에는 의하지 , 구 적인 해 정은 재판사 이 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 규 이 가이 라인을 는 은 어 다고 생각합니다.

137.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근로자의 행 은 헌법이 한 기 이지 , 다 기 을 해하지 는 범위 내에서 행사 어야 하는 한 가 있 니다.

조합 관 조정법 제37조에서 쟁의행위는 목적· 법· 에서 법 기 사회 서에 위 어서는 아니 고, 조합원은 조합에 의하여 도 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다고 규정하여 이를 구 한 으로 수 있 니다.

○ 다 , 일 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하여 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으 로, 사회적 자인 근로자가 행 을 행사하는 경우에 리가 부당하 해 는 일이 도 법원이 심한 신경을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이 위력에 의한 해 의 성립 범위를 대적으로 해 하고 있는 도 은 에서 이 어 으로 생각하고, 이 한 대법원의 해 을 하고 의합니다.

138. 포괄일죄 법리에 의하면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시효 계산은 마지막 범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검찰의 포괄일죄 주장을 일부만 인용한 것이 포괄일죄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구 적인 사 관 를 지 하는 에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39.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이 미국 등에서 판례 법리로 정립되어 있는데, 우리 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독 삼성 관련 사건에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른 특별한 논리들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우리 법원은 1983 전원합의 판결 이 일관 와 회사는 서로 다 법인 을 가 이고, 이사는 위 의 대인 회사에 대하여 의 를 부과할 에 대하여 선관의의 또는 의 를 부 하지 는다는 지의 판시를 하여고, 이 한 법리가 정 기 과 관 사 에 대해서 하 적용 은 아니라고 고 있 니다.

○ 을 한 에서는 이사가 회사와 에 의를 부 하도 규정을 거 해 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라에서도 관 법률 이 제출 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의 사 와 우리 법의 기 법리를 바탕으로 분한 의를 거 법적으로 해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 재벌총수 재판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3.5정찰제'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는 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재 수의 · 등의 범 에 관한 법원의 양 에 관하여 의 전한 식에 부합하지 고 정하지 하다는 판이 있 으로 고 있 니다.

○ 재 · , · , 조 범 등 대 적 경제범 에 관하여 관적이고 정한 양 기준이 정 어 시행 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재 수에 대해서 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 하여 를 기 위해 감 을 하는 으로 이지는 고, 오 경제범 에 대한 양 기준을 향하여 을 한 이 재 수에 대하여 이 선고 는 사 가 다수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기 인이라는 사정 으로 합리적 이 이 가 을 받아서도 으 , 경 자 인의 과 기 에 대한 가치 가는 분리 어야 한다는 의 지적은 당하다고 생각하고, 다 사 들 과 가지로 에 하는 적정한 양 이 이 어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명하고 정한 를 통하여 의 전한 식을 한 적정한 양 기준의 수립, 바 한 양 에 대한 지 적인 의와 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1. 2016년 12월 사법정책연구원에서에 발표한 학술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법원의 불리한 보도를 취재 및 게재했다는 이유로 취재원 색출시도가 있었다고 함. 이와 같은 법원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 적인 사 관 에 대하여 정확 하지 하고 있는 에서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다 , 론의 자 는 헌법이 한 의 자 에 하 로, 재원 은 론의 자 를 하기 위한 요한 리이자 수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이 론의 자 를 하고 궁극적으로 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 재원 의 행사요 과 한 에 관한 구 적인 기준이 기를 기대합니다.

142. 141번과 같은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 적인 사 관 를 지 하는 에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43. 후보자는 이러한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입니까?

○ 일 적으로 재원 출을 시도하는 은 바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다 , 구 적인 사 관 를 지 하는 에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어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44. 대법관이 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시도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 사법행정은 재판지원과 재판제도 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하거 사법부가 일 이 기에 적 하지 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일을 하여서는 니다.

○ 다 , 구 적인 사 관 를 지 하는 에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이 어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 는 이해관 를 조정하고 통합 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 로, 이 한 관 에서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 해야 한다는 의 에 의합니다.

○ 한 , 사법적 쟁송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신 하고 정확한 사 의 해결이 조 는 재 에서, 오로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 를 위해 역 등을 기준으로 식적으로 근하기 다는, 사회를 바라 는 가치관과 등을 기준으로 적인 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할 수 있도 하는 도 필요하지 을까 생각합니다.

○ 최근 여성 법조인의 이 당 높아 고, 적인 법조일원 제도가 시행 지 10 이 지 에 따라 법관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어 향 대법원의 사회적 다양성이 확 수 있을 으로 생각합니다.

2. 일본은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직역할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원 인사가 없거나 과반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바람직한 대법원 구성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법원 의 대법관 제청 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 어 있 니다. 대법원 의 이 한 제청 은 사법부의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 확 리고 요한 헌법기관을 구성할 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 제와 의 원리가 용할 수 있도 하기 위한 으로 이해하고 있 니다.

○ 관 하여, 재 대법관 위원회 위원 10명 7명이 부인사로 어 있고, 다양한 역의 위원이 여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또한, 대법관 과정의 당 부분은 부에 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법관대 회의에서 한 위원 1인을 포 시 으로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명성 정성을 높일 수 있도 하고 있 니다.

○ 따라서 대법원 구성의 적 정당성 를 위한 선 은 지 적으로 어야 하 , 사법부의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에 향이 는 범위 내에서 이 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와 이 정치의 사법 경향이 가 는 에서는 요 할 니다.

3.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립은 과거에 해 높은 수준으로 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자신들의 이해관 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판과 을 제기하 서 법원의 판결이 향 다는 여론을 성하 는 경우가 종종 있 니다.

○ 사법부의 독립을 확 하 , 사회 여 력으로부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 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사법부 원에서도 판결에 대한 과도한 에 대하여 정하 대 으로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할 수 있는 경을 해 어야 합니다.

○ 또한 사법부 성 의 독립 등 물적 여 을 확 하고, 법관이 정적인 경에서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 법관전 등 법관인 사제도도 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 , 법정에서 아니라 인적인 생 에서도 위 지에 각 의를 기여야 하고, 인적인 으로 인해 정한 재판에 향을 수 있는 관을 들지 도 신 하 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특정 판결에 대해 해당 판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적으로 법원의 판 을 판하거 , 결과가 인들의 이해관 에 치 는 경우 원 적인 을 사용하 법관 인을 하는 사 가 종종 있 니다.

○ 이는 사 에 대한 구 적인 사 관 를 지 한 에서 판결 내용에 대한 신 한 이 이 어지는 경우가 니다. 에 따라 재판의 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 를 할 우가 있고, 판사 인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 으로 용할 수 있 니다.

○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립성은 사법부가 의 기 이라는 사명을 하 이행할 수 있 하는 전제로, 위와 은 행위는 자제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 과도한 으로부 법관 인을 할 수 있는 치를 하고, 사법부도 한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도 최근 이 한 을 고 하여 '법관에 대한 대 적 부 요인 분 과 법관의 '이라는 제로 정 구용역을 시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5. 손해배상 시효 범위를 3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 판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 대상이 된 판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의 법행위로 인한 해 청구 은 해 가해자를 로부 3 또는 행위일로부 5 행사하지 아니하 시로 소 합니다.

○ 가의 위법행위로 사 판결까지 받은 해자가 해 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재심 판결이 확정 까지는 해자가 해 청구를 할 을 기대할 수 는 사 의 사가 있고 가의 소 시 은 리 용에 해당하는 으로 판하고 있 니다.

○ 이 경우에 당사자는 재심 판결 확정일로부 당한 기 내에 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 당한 기 '을 법 시 정지에 준하여 기 인 6 로 해 하 서도, 사 에서 우 수한 사정이 있어 기 을 하는 도 가 하 법 제766조 제1 이 규정한 기소 시 기 인 3 을 을 수 다고 판시한 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대법원 판결을 합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 법원의 가 근 적인 재 의의는 하고도 신 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인의 해 리를 구제하는 이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니다. 따라서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여 제도적인 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관 재판 구원 원, 전문법원의 신 , 전문법관 제도 확대를 통한 법관 전문 , 심 제도 합리 등 제도적인 원에서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 리 을 높일 수 있는 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법률심인 고심의 제도 어야 합니다. 하는 고 사 으로 인해 전원합의 가 성 지 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 을 생각하고 있 니다. 결 고심사제 도 등과 은 고 제도 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 으로, 등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고 합의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은 우리 라의 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하는 이 기적으로 사법부에 우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 조일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법조일원 제도는 경 과 , 력과 인 을 법조인을 법관으로 용하기 위한 제도로, 사법부에 대한 의 신 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 으로 고 있 니다.

○ 다 , 법조일원 제도 도 에 따라 제 사법부에 대한 의 신 가 제고 기 위하여는 경력이 있는 사 이 아니라 이 원하는 한 인 과 자 을 사 이 법관으로 용 어야 합니다.

○ 따라서 법관 수를 하는 등 법관에 대한 우가 선 고 재판 구원 등이 분 확 지 는다 법조일원 제도 도 지는 각 고 재판지 등 부 용 생할 수 있 니다.

○ 따라서 기 의 시행 경과를 바탕으로 이 제도가 도 지에 어 목적을 성할 수 있도 은 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현 법관임용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관 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 이 향 서, 인의 역에서 력을 인정받는 법조인이 법관으로 지원하지 하는 경우가 은 으로 고 있 니다. 아 도 자신이 은 경력과 지위, 수를 포기해야 하고, 지 근 를 해야 하는 사정 등에 기인한 으로 생각 니다. 결 우수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지원하도 하기 위해서는 수 등 우를 선하고, 재판 구원 등 재판 조인력을 분 확 하 , 과 한 법관 부 을 적정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우리 라는 등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 니다. 이 한 구조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법조경력이 은 은 합의부 내의 다양성을 확 할 수 있고, 다양한 대의 관 에서 의 이 가 하다는 도 있 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 으로, 법조일원 제도 지에 부합하는 법관을 선 하기 위하여는 필기시 성적 다 지원자의 경력, 역 , 인 등에 을 필요가 있 니다. 이에 대한 관적이고 정한 기준을 들

기 어 다는 이 로 필기시 을 지하는 은 바 하지 다고 생각하고, 우수한 법조인의 지원을 높일 수 있는 향으로 제도를 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 후보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관을 탄핵할만한 '헌법·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65조 제1 은 '대통 · 리· 위원·행정각부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 ·감사위원 기 법률이 정한 원이 행에 있어서 헌법이 법률을 위 한 에는 심판의 대 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니다.

○ 헌법에 이 규정을 지와 기 헌법재판소의 결정 를 고 하 , 사 는 을 정당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 헌법이 법률 위 이 있는 경우를 의 하고, 위 이 대한지 여부는 법위 이 어 정도로 헌법 서에 부정적인 향을 치는지를 따 결정해야 하는 으로 수 있 니다.

○ 구 적인 사 는 에 관한 기 헌법재판소 결정 를 고할 수 에 을 으로 생각 고, 회에서 소 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는 사 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구 적인 의 을 기 어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0.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관이 정 구회에 소 어 있다는 사정 으로 법관이 정치적으로 향 어 있다고 정하는 은 지 다고 생각하고, 로 인하여 법원 내 갈등이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니다.

○ 다 , 정치적 향성이 있는 이라거 정 구회가 력 다는 우 가 있다는 으로도 사법신 , 재판결과의 등에 부정적인 향을 수 있으 로, 이 우 가 생하지 도 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니다.

11. 과거 아우디,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증명이 어려운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법상 개별적 분쟁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도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소송제도가 도 다수의 해를 구제하는 데는 과 적인 이 있지 , '제 신고'를 하지 으 대 당사자가 행한 판결의 력이 전 해자에 치 는 으로 고 있니다. 따라서 소송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 에 따 문제가 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적 해 제도는, 가해자에 제 해 다 은 수의 을 명 으로 위법행위를 지하고, 사전적으로 해 생을 일 수 있다는 정적인 이 있 니다. 다 , 이 제도도 소송의 등을 한 부 용이 있을 수 있으 로, 이 도 어 있는 하도 거 정 에 관한 법률이 인정 법 등의 사 등을 고하고, 문제 을 하 한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할 니다.

○ 다 , 제도 최종적으로는 법정 적 결정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1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검찰은 내부 규정을 들어 변호사의 발언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소송법은 '정당한 사 가 는 한'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인이 의자에 대한 신문에 여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니다(제243조의2 제1). 이는 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의자 사이에 당사자 대등을 확 으로 헌법 적법 의 원 을 준수하고 인의 조력 을 적으로 하기 위한 니다. 따라서 인의 여 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 ' 는 하 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도 은 지에서 의자가 인의 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 하 시하 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 이 인을 여하 하지 아니한 의자를 신문하여 성한 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거 력을 부인하 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 의자와 신 관 에 있으 서 수사기관과 대등한 정도의 법률전문가인 인으로 하여 의자신문 과정에 여하여 의자를 으로 수사 에서 생하기 인 해를 지하고, 우리 헌법 사소송법에서 하고 있는 의자의 다양한 리들이 어야 할 니다.

○ 수사기관이 어 경우에 인의 여 을 제한할 수 있는 인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명확하고 관적인 규정을 는 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고 편파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행 사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 은 헌법이 대통 에 부여한 고 한으로 의 합을 구 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 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치 의가 확립 대사회에 시 필요한 인지, 행사에 관한 구 적인 기준은 인지에 대해 판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사 은 서로 다 이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 을 경하는 제도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 , 적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을 위하여 력하는 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이 가이 과 통합을 위해 대통 에 사 을 부여한 근 지를 고 하여, 법 의 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지 도 적정하고 명한 를 거 적· 적으로 행사 는 이 바 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 , 대통 의 구 적인 사 행사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4. 대학교수, 변호사 등 일반 국민이 판결 정보, 특히 하급심판결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이 의 리 을 위하여 에 하여야 하는 판결문의 범위는 사소송법과 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니다.

○ 법에 의하 2013. 1. 1. 이 확정 사 판결문, 2015. 1. 1. 이 확정 거 2023. 1. 1. 이 선고 사 확정 판결문이 에 해야 하는 판결문에 해당하고, 제 하고 있니다.

○ 판결문 는 일 의 리를 하는 정적인 과와 한 으로는 소송당사자의 명시적 의 이 판결 내용을 부에 하여 소송당사자의 인정 자기결정 이 해 우 도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이 , 소 등 은 인정 와 사 관 가 기재 어 있어 아 리 인정 를 명 한다고 하 라도 기재 사 관 를 하여 당사자를 정하거 사생 내지 이 출 여지도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판결서 로 인한 들의 인정 해 우 가 다는 을 고 하 , 적 한 판결서 의 범위에 관하여는 범위한 사회

적 의 수 을 바탕으로 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선 제도는 헌법 제12조 제4 (구 지 포 또는 구 을 당한 에는 시 인의 조력을 받을 리를 가 다. 다 , 사 고인이 로 인을 구할 수 을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가 인을 인다)에 따라 필수적으로 는 으로, 이를 통해 사재판을 받 는 의 어 을 적으로 하 니다.

○ 법원은 2006 부 ‘ 선전 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 선전 사 제도’를 통해 선 의 적 수준이 향 고, 고인들의 도도 당 높은 으로 고 있 니다.

○ 다 , 법원이 선전 인을 선정, 관리, 가하는 행 제에 대하여 선전 인이 법원의 치를 지 고 고인의 이 을 제대로 론하기 어 이 아니 는 우 가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선전 사 제도는 용 가 ‘ 구인지’ 다는 ‘ 의자 또는 고인이 이 이 인으로부 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 ’가 심이 어야 할 으로 생각 니다.

○ 이와 은 관 하에서 제도의 선 의는 '한정 자원과 내에서 어 하 을 위하여 적이 서도 하 할 인지'를 심으로 이 어 필요가 있 니다.

16. (1) 재판헌법소원, (2) 변형결정의 기속력, (3)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련, (4) 관습법 등과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우리 헌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의 헌법기관 니다. 헌법은 사법 과 명 ·규 , 분의 위헌·위법심사 은 대법원에 부여하고, 법률의 위헌심사 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한과 기 을 분 하고 있 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 력,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 명 ·규 에 대한 위헌심사 등에 관하여 해의 이를 여 니다. 다 헌법이 헌법해 한을 양 기관에 분 한 은 과 제를 통하여 양 기관 헌법을 수 하고 기 을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 하기 위한 이라고 이해하고 있 니다.

○ 양 기관이 자신에 어 를 적 수행 으로 헌법이 부여한 의 기 이라는 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 사법부는 독립 성 이 니다. 법원조 법 제82조 제2 과 가재정법 제40조 제1 도 법원 등 독립기관의 성 시 독립성과 자 성을 최대한 하도 규정하고 있는데, 제 을 성할 이와 은 원 이 준수 고 있지는 한 으로 고 있 니다.

○ 또한, 사법 수요는 가하고 있 에도 이에 대한 적 한 대 을 하지 한 결과 재판 지 이 생하 고, 이는 의 신 한 재판을 받을 리를 시 는 결과를 야기하 니다. 재판과 관 하여 하는 에 적으로 대 하기 위하여는 사법부가 대 의 가 수 에 니다.

○ 결 , 헌법 독립기관인 사법부가 독립성과 자 성을 확 하고, 의 재판받을 리를 최대한 하기 위하여,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을 성하여 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 하는 향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사법부에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에서 재판제도 선 등을 위하여 정 을 수립하여 하는 과정에서 법률 제출 이 어 어 을 는 경우가 니다. 사법부는 회의원을 통한 의원 이 법 부를 통한 정부 으로 하고자 하는 법률 을 의할 수 에 니다. 과정에서 원하는 향으로 정 을 하지 하거 경우에 따라서는 바 하지 은 법을 사용하 다고 받기도 합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에 부정적인 향을 수 있 니다. 따라서 재판제도와 관 하여서는 사법부의 법률 제출 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라에서 사법부에 법률 제출 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정이 필요한 으로 고 있 니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의가 이 어 야 할 으로 생각 니다.

○ 한 , 사법부가 법률 제출 을 가지는 라는 라 , 시아, 우 등이 있는 으로 하고 있 니다. 과 는 사법부가 법률제정과정에서 회에 의 을 제시할 수 있도 하고 있 니다. 의 경우 대법원 이 의회에 법에 관한 고사 을 제출할 수 있고, 의 경우 최고법원이 정부에 법률 의를 제 할 수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19.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재판 제도는 사법부에 대한 의 신 를 제고하고, 양 을 한 일 의 생각이 법 감정을 확인하는 데 은 도 이 로 지 다 성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재판은 기일이 적 기 에 적으로 이 어 판 심 의 정 에 도 이 는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행의 여재판은 고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니다. 따라서 인 와 은 일정한 대 범 에 대한 필수적 여재판을 적극 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가 재는 지 법원 원에서 여재판을 시하여 지원에서 신청할 경우 원으로 이송하여 리하고 있는데, 일정 규 이 의 지원에서 시할 수 있도 선할 필요도 있 니다. 다 , 이를 위하여는 지원에 여재판을 위한 법정과 인력 등이 구 어야 하 로, 등에 대하여도 은 신경을 시 부 립니다.

20.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상 평결에 구속력이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배심원의 평결을 판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여재판 제도 도 지를 고 하여, 대부분의 사 에서 심원 의 을 하여 선고가 이 어지고 있는 으로 고 있고, 바 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 , 헌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리를 하고 있으 로 심원 결에 기 력을 부여하는 은 행 헌법 어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여재판 제도 도 지를 고 하여, 대부분의 사 에서 심원 의 을 하여 선고하는 이 바 하다고 생각하고, 제 대부분의 사 에서 심원 의 이 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다 , 헌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리를 하고 있으 로 심원 결에 기 력을 부여하는 은 행 헌법 어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라 사법제도에서 심원의 결에 기 력을 부여하는 의 정적·부정적 과와 사회에 향을 하 하여 이에 대한 적인 합의가 이 어 다 헌법 정 시 이를 할 수 있을 으로 생각합니다.

22. 전자소송 현황 및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023 도 사 1심사 99.5%가 전자적으로 수 고 있고, 소심의 경우 99.9%까지 전자사 으로 리 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에도 전자소송 이지의 정성, 부할 수 있는 일 용의 제한, 사용자 의 기 부재 등 들 에서 사용 의 여 이 있 으로 고 있 니다.

○ 법원행정 는 2023 1 경 전자소송 이지에서 부할 수 있는 일 용 을 부 일 1 당 기 25MB에서 50MB로 고, 를 하는 등 전자소송 시 의 의성과 정성 확 에 력하고 있 니다.

○ 재 사법부는 전자소송 시 을 전 하는 대 전자소송시 구 사 을 행하고 있는데, 2025 기 위 시 이 통 들에 다 정적이 서도 리한 전자소송 서 를 제 할 수 있을 으로 기대합니다.

23.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법관 기피신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재판 의 최고가치인 정성을 확 하기 위해 사소송법, 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 제도가 적 하 용 필요가 있다는 에 대하여는 감합니다.

○ 다 , 행 에서 법관이 당사자 사 에 관해 제 사 가 있거 에 정한 재판을 하기 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로 사 을 회 하거 재 당을 요청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또한, 법조일원 제도를 통해 경력법관이 용 서 사소송법 기 사 가 가 고, 자의 이해 지법이 시행 서 이해관 자가 기 를 신청할 수 있는 사 의 범위가 가 에 따라 재판의 정성 또는 이해 이 문제 는 사 에서의 기 제도의 적정한 용 필요성이 가하 다고 생각합니다.

○ 으로도 재판의 신 확 를 위한 위와 은 제도가 적정하 용 수 있도 지 적으로 관심을 기 이 니다.

24.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상고심 사건이 많습니다. 상고 사건이 증가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관 1인당 리 수는 2021 3,665 , 2022 4,038 , 2023 3,305 등 3,000 내지 4,000 에 이 고 있 니다.

○ 고사 이 가하는 원인은 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원인이 합적으로 용하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적으로 법원에 수 는 사 의 수가 당하고, 하 심을 거치 서 분쟁이 조기에 해결 지 한 고심까지 오는 사 의 수도 니다. 고심은 기 적으로 법률심이고 고이 가 법정 어 있 에도 대법원의 판 까지 받아 다는 당사자의 심리도 용하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심이 의 기 을 회 할 수 있도 1심에서 분한 심리를 거 당사자의 적 에 분쟁이 조기에 종결 수 있도 하고, 심에서는 하 심의 판 을 하는 가 성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도 고심제도 선 이 조기를 합니다.

25. 매년 증가하는 재판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재보다 몇 명(또는 몇 배)을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분쟁의 다양 · , 구 심리 의 판 심 의의 , 가사·행정 사 각종 신청사 의 가 등을 포 한 다양한 이 로 판사의 부 은 가하고 있는 니다. 따라서 의 신 하고 정한 재판을 받을 리의 적 을 위하여 법관의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재 사 이 이 적 어 심리가 지 고 있는 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 원은 필수적이고, 21대 회에서의 정원(370명) 이 의 원이 필요합니다.

○ 다 , 기적으로는 법관의 지 적 원 다는, 법조일원 제도 시행에 따 법관 고 를 고 하고 경 과 경 을 바탕으로 한 역 을 재판 행과 결론 도출에 적으로 할 수 있도 법관 수에 하는 정도의 대 적인 재판 구원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역할과 기 을 다 할 수 있 니다. 이 한 역할과 기 에 역 을 분 을 수 있도 대법관 원 다 우선하여 고심사제 고법원 도

등 고심 제도 선이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원도 고제도 선 하 로 할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지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하는 하 의 전원합의 를 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도입되어야 할 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재 고에는 한 제한이 니다. 따라서 고가 제기 는 사 수가 우 고, 이를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은 역 이 고 있 니다.

○ 식적으로 생각하 고에 아 제한이 는 이 의 재판받을 리를 분 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 니다. 물론 는 이 있지 , 사법 자원은 한정적 니다. 한정적 자원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 이 지 하 , 전 로서 사 리가 지 거 필요한 사 에 역 이 지 하는 결과가 생할 수 에 고, 이는 의 재판받을 리 에 역행하 니다.

○ 한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역할과 기 을 다 할 수 있고, 이 한 역할과 기 에 역 을 분 을 수 있도 대법관 원 다 우선하여 고심사제 고법원 도 등 고심 제도 선이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할 으로 생각합니다.

27. 장기미제사건의 신속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기 제 사 의 근 적인 원인은 사 수가 고 이도가 대 가하 에 하여 법관의 수가 부 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조일원 로 인하여 법관이 고 에도 재판을 조할 수 있는 인력(재판 구원 등)이 부 한 도 요한 원인 하 라고 생각합니다.

○ 재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법원 의 재판, 법관 사 분 기 , 기 제의 요 원인 하 인 의 감정 의 선, 판결서 적정 , 적인 재판을 위한 심리 선 등이 재판지 해소를 위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 기 제 사 을 해소할 수 있는 근 적인 법은 법관을 원하는 이고,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으로 용 수 있도 법관의 우를 선할 필요성이 있 니다. 재판 구원 원도 신 하 서도 한 재판을 위하여 시 필요한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28.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전 적 소송은 ‘ 적 의제에 관한 판이 대 여론을 위시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 , 원고가 소판결을 받는 이 아니라 대 에 법적 대 에 필요한 용을 지 하 하고, 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을 하 하는 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이해하고 있 니다.

○ 이를 위해 ‘일 이 제출한 자 ’를 바탕으로 한 명이 아 ‘소명’ 을 요구하는 가 를 용하는 은 적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가 의 성 신청인이 제출한 자 으로 전 적 소송인지 판 하는 이 지 아 이지 , 법원은 가 가 이를 위하여 용 는 은 아 지 념하 판 할 필요가 있 니다.

29. 과거사 관련, 국가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해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인 6월을 적용하여 과거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가의 법행위로 인한 해 청구 은 해 가해자를 로부 3 또는 행위일로부 5 행사하지 아니하 시로 소 합니다.

○ 가의 위법행위로 사 판결까지 받은 해자가 해 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재심 판결이 확정 까지는 해자가 해 청구를 할 을 기대할 수 는 사 의 사가 있고 가의 소 시 은 리 용에 해당하는 으로 판하고 있 니다.

○ 이 경우에 당사자는 재심 판결 확정일로부 당한 기 내에 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 당한 기 ’을 법 시정지에 준하여 기 인 6 로 해 하 서도, 사 에서 우 수한 사정이 있어 기 을 하는 도 가 하 법 제766조 제1 이 규정한 기소 시 기 인 3 을 을 수 다고 판시한 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대법원 판결을 합니다.

30. 일부에서는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 은 적인 사 에 따라 생각이 다 경우가 대부분 니다. 따라서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사 과 관하 ' 수, 도, '로 구분하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후보자는 2014년 9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정규직 강사와 달리 비정규직 강사에게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서울고법 2013누51093)”, 1심 판결을 취소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나아가 2012년 11월, “학교법인(대학교)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대학조교로 하여금 여러 해에 걸쳐 서로 다른 파견사업주들과 계약직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법인과 대학조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학조교는 이미 기간제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고(서울고법 2011누39419)”, 1심 판결을 취소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에서 근로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니까?

○ 기 제근로자 등에 대한 합리한 을 시정하고 근로조 를 하기 위하여 「기 제 시 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이 2006 제정 고 시행 지 15 이 이 경과하 니다. 이 법에서는 적 우의 지를 명시하고 있 에도 근로 에서는 적 우가 여전 다는 이야기를 이 론

등을 통하여 고 있 니다.

○ 법관으로서 이 한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인 선 을 제시하기는 어 우 , 사 에서 적 우에 해당하는지, 적 우를 지하는 조 을 하기 위한 은 아 지 아고, 으로도 이를 심 사회적 자 소수자가 합리한 을 받는 일이 도 최선을 다하 니다.

32. 후보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국토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법령이 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했고(수원고법 2021누1604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해 확정되었다. 최근 국회에서 시행령으로 법률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의 기 을 제한하는 법은 법률 의 원 이 적용 어야 합니다. , 들에 어 한 리를 부여(수 적 행정행위)하거 가기관의 한관 등에 관하여는 법률 의 원 이 다소 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사 에서 법률 의 원 이 적용 는지, 적용 다고 하 라도 위 법이 가 한 범위가 어 까지인지 등은 구 적인 사 관에 따라 라 수 에 니다.

○ 대법관 자로서 이 한 일 적인 사 에 구 적 사 에 대하여 의 을 는 이 어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3. 후보자는 행정법 전문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21누65721)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이 재판부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최종심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적으로 쟁 은 사 에 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이에 대해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백혜련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백혜련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은 법률적 쟁송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 법관으로서의 높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재판의 독립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관으로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과 원칙은?

○ 대법관은 분쟁의 최종심 재판을 담하는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구 적인 사 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대법관은 의 리와 사회적 자를 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이 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적이고 정한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여 대립하는 이해관 를 조 해결할 수 있는 력을 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했던 판결 중 가장 좋은 판결 5건과 가장 아쉬운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대법관 자로서 대법관들이 치 한 의와 고 과정을 거 내 은 판결에 대하여 적인 가를 하는 이 조심 니다. 제가 인적으로 의 있다고 생각한 사 은 아 와 니다.

- ① 양심적 역거부, 역법 제88조 제1 의 정당한 사 , 정한 양심의 의 등에 대하여 시한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 판결

- ② 조합 관 조정법 근로자성이 인정 는 한 인인지 여부 자 의 에 따라 이는 다고 하여 자 는 인근로자의 조합 결성, 가 이 용 다고 판 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 4995 전원합의 판결

- ③ 재 분할제도의 지 등을 고 하여 여 에 대한 재 분할을 인정한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 2250 전원합의 판결

- ④ 도시 거 경정 법 재 정 사 조합이 수립한 관리 분 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에는 관리 분 의 소 또는 확인을 구하여야 할

이지 회결의의 하자 을 도로 다 수 고, 이 한 소는 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 한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 판결

- ⑤ 적법 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 한 거를 기 로 한 2 거의 거 력을 부인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 판결

3-1. 후보자의 판결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법관으로 재 하 서 최선을 다해 기 을 하 고,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분한 소통을 하고자 력하 니다. 제 력에 따라 부 한 판결이 있을 수는 있지 , 성심을 다해서 재판을 하여 기 할 정도로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는 판결은 니다.

4. 검찰의 악의적 분리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의 법관 사건배당 예규에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사실심선고 이후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분리기소를 재배당 사유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대법관 자로서 재 재판이 행 인 구 적 사 과 관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다 일 론으로 범으로 수사 받 의자들이 분리 어 기소 해당 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선고까지 이 어 다 , 재판을 당 재판부는 해당 사 에 대한 심 이 어 정도 성 어 있는 이 로 다 고인 사 이 당 어서는 고, 당이 이 어 라도 재 당해야 한다는 의 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이 한 에 경청할 한 부분은 있 니다.

○ 다 , 합의부가 2 이 있는 법원이 지 은 각 법원의 여 적으로 고인 1인에 대한 선고가 있다는 사정 으로 관 사 을 재 당하는 은 어 이 있 니다. 아 가 고인 1인에 대한 선고가 있는 경우에 자 사 이 쟁 이 다 사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시 행 사 을 재 당할 필 적인 이 가 있다고 기는 어 니다.

○ 결 사 에 따라서 행 기 , 회 제도 「법관 등의 사 분

사 당에 관한 규」에 따 재 당 제도를 력적으로 용하여 부 용을 최소 하는 력이 필요하고, 필요하다 규를 적 정하는 도 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중대비위를 저지른 판검사, 기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르고 퇴직을 했음에도 변호사법 8조상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적용에 협회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행 사법은 원 재 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소 또는 분을 받거 위법행위와 관 하여 한 자로서 사 를 수행하는 이 부적당할 경우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사 등 을 거부할 수 있는 으로 규정하고 있 니다.

○ 대한 사 회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등 심사위원회가 해당 법조 을 어 한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기 어 고, 또한 대법관 자로서 다 기관의 에 대해 구 적으로 하는 이 적 치 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 초범, 반성, 음주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범죄자 형량 감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직접적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이 감형요소에 포함된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법 제51조는 범인의 , 성행, 지 과 경, 해자에 대한 관 , 범행의 기, 수 과 결과, 범행 의 정 을 하여 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범 행위가 아 '행위자'에 관한 인자 역시 양 에 하도 하고 있 니다.

○ 또한 법원조 법 제81조의6 제2 제3 은 양 위원회가 양 기준을 정· 경할 준수하여야 할 원 과 고 하여야 할 사정에 관하여 규정하 서, '범 의 일 과 고인의 재범 지 사회 ', '범 전력'도 고 하도 하고 있 니다.

○ ' 범'과 관 하여, 범 를 지 고인을 범행을 한 고인과 다 하는 은 일 의 법 감정에도 어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 지한 성'의 경우, 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행 의 정 '에 해당 아니라 법원조 법 제81조의6에 따 범 의 일 에서도 양 에서 고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범행을 부인하 서 까지 성하지 는 고인과 구 하여 성

을 감경요소로 하는 은 식적인 판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용을 기 위해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해 회 또는 재범 지를 위한 자 적 력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의 경우, 양 기준에서는 법 제10조 제2 에 따라 ‘심신 ’을 감경인자로 고 있을 , 를 감경사 로 하지 는 으로 고 있 니다. 오 인, 력, 성범 등 일부 범 의 양 기준에서는 ‘ 또는 물로 인한 에서 범 를 범한 경우’에 관한 서 식 기준을 어 ‘심신 ’ 감경인자가 용 지 도 하고 있고, 사 에 따라서는 이 가 수 있다고 고 있 니다.

○ 제 사 을 당하는 재판부는 범, 성, 사 에 대해 법과 양 기준의 지를 고 하여 한 양 심리를 거 여부 정도를 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습공탁으로 인해 가해자가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음. 공탁이 감경사유가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사재판에서 제도는 고인의 감 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해자의 해를 적으로 전하 는 데 목적이 있 니다. 이 한 제도의 지를 고 하 사 을 양 에 할 경우에는 해자의 의사를 요한 요소로 고 해야 하고, 법원은 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적 한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고인의 일 적인 에 대해서는 해자의 의사, 고인의 지한 성과 적극적인 해회 력 등을 고 하여 ‘ 당성’을 경우에 감 요소로 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 기 으로 인한 문제를 이기 위하여 2024. 1.경부 소가 찰에 사 사 통지서 원 을 우 으로 송부하기 전 신 를 통하여 송부하도 식을 선한 으로 고 있 니다. 이 한 조치 으로는 부 한 이 있으로, 이를 선하기 위한 지 적인 구·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어 이에 인하고 심각한 범 를 지 는 사 가 론에 자
도 고 있 니다. 이에 법소 의 하향을 통해 사
의 대 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 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의 도 경청할 필요가 있지 , 어 이의 소 들을 사
하여 을 수 있는 이 과 에 따 부 용을 하
하여 신 하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사 은 헌법이 대통 에 부여한 고 한으로 의 합을 구 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 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치 의가 확립 대사회에 시 필요한 인지, 행사에 관한 구 적인 기준은 인지에 대해 판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사 은 서로 다 이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 을 경하는 제도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 , 적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을 위하여 력하는 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 행사가 사법부 독립과 적인 관은 으 , 사 은 사법 를 통하여 판 을 받은 사 에 대하여 행사하는 이 로 법 의 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지 도 적정하고 명한 를 거 적· 적으로 행사 는 이 바 하다고 생각합니다.

10.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

○ 다수결이 지 하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 시 이 는 사회적 자의 정당한 리가 당하지 도 의를 기 여야 합니다.

○ 법치 의의 확립을 통해 의 기 적 리를 하는 을 사명으로 하는 법원은, 사회적 자가 재판을 통해 자신의 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시 이 구 어 있는지 심하 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은 재판 행 과정에서 자에 도 한 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법원은 사회적 자의 사법 근성 향 을 위해 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와 다 다거 다수와 다 다는 이로 합리적 근거 이 소수를 하지 도 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는 재 우리의 사법제도가 사회적 자의 리를 하기에 부 이 는지, 선을 위해 을 해야 하는지 니다. 리고 재판을 하 서도 소수자의 관 에서 소수자의 아과 어 을 감하기 위해 력할 아니라, 합리적인 법해 을 통해 소수자의 리도 할 수 있는 은 는지 깊 고 하 니다.

11.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과거 함께 근무했을 수 있는 대법관들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의 재판 에서 전관 우 등의 정한 를 는 이 가 하다고 생각하지 니다. 전 대법관이 사로서 고심 재판을 수 하는 경우에도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이 한 에 고심 사 을 수 하는 은 재판의 정성에 대한 의 신 확 라는 에서 바 하지는 다고 생각합니다.

○ 재 대법원 내규 등에 의하여 고이 서에 대한 서 제출기한이 지 심 당을 시하고 있고, 전 대법관이 고심 사 의 소송대리인, 인인 경우 와 근 대법관은 심이 수 도 하는 등 분을 이용한 수 을 기 위해 제도적 치를 해 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 , 생법관제의 정 등은 대 로 으로의 이 등을 으로 전관 우의 우 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고위 법관이 분한 을 할 수 있는 제 여 을 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전관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전관 우는 자가 관 기관에서 를 제 받는 으로서, 사법 에서의 전관 우 전 판, 사가 사로서 수사 재판과정 또는 결과에서 정한 를 제 받는 이라고 수 있 니다.

○ 이는 재판의 정성, 사법의 신 에 대한 문제로서 들의 우 가 다는 을 고 있 니다. 제 재하는지 여부와 관 이 관이 의 까지 식시 수 있도 법원이 부 력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과 관 하여서는 사소송법, 법관 등의 사 분 사 당에 관한 규, 자의 이해 지법 등 관 규정에서 전관 우를 지하기 위하여 한 제 , 재 당, 신고 회 신청 제도를 분 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의 경우, 법관에 대한 우 ,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 , 생법관제의 정 등 전관 우 우 를 식시 수 있는 여 제도 적 치를 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사 제도는 인 의 대적 가치인 생명을 대 으로 하는 이기 문에 우 조심 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 제 지를 하는 거로는, 지가 전 적인 이고, 한 행 결과를 이 수 으 , 제도의 범 지력도 적으로 바가 다는 등을 들 수 있 니다. 치를 하는 거로는, 인, 대규 인명 등 인 적 범 가 여전 재하고, 한 범 로부 전하다고 수 는 에서 의 법 감정, 으로서의 성 등을 들 수 있 니다.

○ 양 거 당한 이 있고, 행 헌법에도 사 제도가 있 을 전제로 한 규정(제110조)이 있어서 헌법에서 사 제를 용인하고 있다고 여지도 있 니다.

○ 결론적으로 사 제 여부는 인 의 과 가치, 생명 등 헌법 규정의 한 해 과 어 사 의 일 적 과, 의 법감정, 해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소송제도가 도 다수의 해를 구제하는 데는 과적인 이 있지 , '제 신고'를 하지 으 대 당사자가 행한 판결의 력이 전 해자에 판결의 력이 치 는 으로 고 있 니다.

○ 따라서 소송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은 감하 , 이를 위하여는 제도 도 에 따 문제가 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 우리 이 사법부에 대하여 는 가 신은 재판의 정성에 대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관 우의 인식은 물론 ‘ 전 전 ’의 법감정도 범위하 있 니다.

○ 의 사법신 를 제고하 적으로 정한 재판 은 물론이고, 관 으로도 정한 재판 을 해야 합니다.

○ 전관 우의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력을 지 해야 하고, 재판하는 법관의 관적인 이념이 성향이 판결에 향을 치고 있다는 오해를 식시 기 위한 력도 필요합니다.

○ 재판당사자의 재판 여를 해야 할 필요도 있 니다. 사재판의 경우에는 최 에서 분 할 기회를 하고, 사재판에서는 당사자 인신문을 확대하는 등 재판당사자의 이야기에 은 시 을 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이해관 를 리하는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전한 판을 어 과도한 을 하는 사 가 종종 있 니다. 이 한 들이 정치재판에 대한 오해를 양 하고, 판결을 신하 는 원인이 수 있는 재판결과를 하는 정치문의 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의 관 , 분 등을 포 한 구 적인 사 관 에 따라 이는 있 지 , 기 적으로 인사청 을 위하여 물 등을 받아서는 다고 할 니다.

17.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7건 꼴로 대법서 심리 불속행이 기각돼 당사자들이 이유도 모른채 상고를 기각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54.5%에 그치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작년 70.5%로 10년 새 16%나 증가하였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재 고에는 한 제한이 니다. 따라서 고가 제기 는 사 수가 우 고, 이를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은 역 이 고 있 니다.

○ 식적으로 생각하 고에 아 제한이 는 이 의 재판받을 리를 분 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 니다. 물론 는 이 있지 , 사법 자원은 한정적 니다. 한정적 자원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 이 지 하 , 전 로서 사 리가 지 거 필요한 사 에 역 이 지 하는 결과가 생할 수 에 고, 이는 의 재판받을 리 에 역행하 니다.

○ 인적으로는, 심리 행 제도가 지 다 대법원의 사 리는 당 지 수 에 고,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필요한 사 에 분한 역 을 하기 어 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대법원의 역할과 기 을 다할 수 있도 고심사제 등을

포 한 고제도 선이 필요하고,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체액 테러 가해자에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재 를 가하는 경우 통 재물 가 적용 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성범 로 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한 , 양 은 사 에서 행위 당시의 과 구 적인 행위 양 등을 고 하여 정하여 지는 으로, 대법관 자로서 이에 대해 구 적인 의 을 리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9. 본 위원이 발의한 체액테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원 서 대 의하신 「성 력범 의 등에 관한 법 일부 정법률 」(의 2200607)은 신 이 라도 행위자가 성적 오감을 일으 는 물 을 대 에 전 하는 등 '물 을 이용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이하의 역 또는 2 원 이하의 에 하는 조 을 신 하는 내용 니다.

○ 최근 론에서 도 바와 이 에서 당사자 에 을 는 등 행법으로 하기 어 우 가 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 으로 범 를 하고 재적 해자를 하기 위한 법 지에 감합니다.

○ 회에서 범 의 필요성, 구 적인 구성요 과 의 여론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 으로 생각합니다.

20. 현재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사회적으로 은 문제가 고 있는 전 등에 대하여 정한 양 이 이 어 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감합니다.

○ 양 위원회는 전이 하 어야 한다는 적인 요구에 따라 2023. 4. 24. 전 정거부 등 에 대하여 양 기준을 신 하는 통범 수정 양 기준을 의결하 는데 (2023. 7. 시행), 전이 도의 으로 신 으로 전이 결합 통범 의 고 범위가 전 적으로 향 으로 고 있 니다.

○ 이를 통해 전 사 에서 고인의 에 부합하는 적 한 양 이 이 어 수 있을 으로 기대하고 있 니다.

21.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여러번 낸 피고인에 대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음.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양형기준 및 관련 법 강화 등 법이 범죄 억제라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전과 전으로 인하여 해자를 사 에 이 한 사 에 대하여 의 높이에 에 하는 정한 양 이 이 어 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깊이 감합니다. 양 기준 신 또는 재 와 법정 향 등 전을 제하기 위한 다양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 위원회는 전이 하 어야 한다는 적인 요구에 따라 2023. 4. 24. 전 정거부 등 에 대하여 양 기준을 신 하는 통범 수정 양 기준을 의결하 는데(2023. 7. 시행), 전이 도의 으로 신 으로 전이 결합 통범 의 고 범위가 전 적으로 향 으로 고 있 니다.

○ 로 양 기준으로 인해 전 사 에서 고인의 에 부합하는 양 이 이 어 수 있을 으로 기대합니다. 전 기회를 원 적으로 한다는 에서 2024. 10. 25.부 시행 정인 전 지 치 부 조 부 전 제도(도로 통법

제80조의2)도 의 하다고 생각합니다.

22. 개인회생에 대한 처분 기준이 지역 회생법원마다 상이해 채무자들이 관대한 처분을 하는 법원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법원에 따라 실무준칙이 모두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 서 회생법원이 2017 3 , 수원회생법원과 부 회생법원이 2023 3 각각 원한 이 각 회생법원은 인회생 에서의 생 정기준, 식 또는 가 자 의 리 등과 관 한 내용을 포 한 준 을 정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다 이 한 사 은 구 적· 적 사 에서 청 가치 정에 관한 판 등 기 적으로 재판사 에 관한 니다.

○ 청 가치 정 등 재판사 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할 우 가 있어 신 한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 , 법원은 도 사 의 통일적 리를 도 할 필요가 있고, 회생법원 의회를 하여 회생법원 도 사 관 정 , 제도 선 사 을 포 한 의를 지 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2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판결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인적인 해를 는 이 적 하지 은 이 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4.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대법관 자로서 적인 사 에 대한 구 적 의 을 는 은 적 하지 아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5. 법원행정처는 AI를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도입할 것이라 밝혀.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법원은 인 지 기 을 용 으로 재판 의 성을 대 시 수 있고, 지 다 신 하고 정확한 원 서 를 제 할 수 있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 에서는 자 의 조사, 제출 문 의 내용 정리 등 기 을 인 지 이 수행할 수 있다 의 성을 대 대시 수 있고, 또한 법관이 이 에 하 력과 시 을 판결문 성과 은 다 요한 에 사용할 수 있 어 신 하고 한 재판에 도 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AI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명확하 지 고, 정 에 따라 향 등이 생 수 있으 , 소수자 사회적 자의 가 고 기 이 는 의 판 을 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가 판사(재판)를 대 하기는 어 고, 와 은 향이 바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AI는 재판지 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의 를 일 수 있는 향으로 용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법관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등 각종 성비리를 저지르고도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이 제106조 제1 에서 명문으로 '법관은 또는 고 이 의 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 아니하 , 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 ·감 기 리한 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해 의 가 가 하지 은 으로 이해하고 있 니다. 어 까지 재판의 독립을 하기 위한 수 인 이지 법관에 를 제 하기 위한 이 아은 자명합니다.

○ 대부분의 법관은 의 높이에 는 도 성을 고 청 한 생 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법관의 일 행위가 근 지 은 에 관하여 생각하고, 위 법관에 대한 가 경 하다는 지적도 인식하고 있 니다.

○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하는 에 하여 법관은 다 일 원에 해 높은 과 리의식을 가 야 한다고 생각하 , 최근에는 과거에 하여 청구가 적극적으로 이 어지고 수위도 고 있는 로 고 있 니다.

○ 위 법관에 대한 정한 를 시하고 법관 전 에 대한

리 을 하는 등 사법부 신 회 을 위한 지 적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 법원 내 연구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재 사법부에는 전문법률분야의 구를 위해 다수의 법관 구회가 구성 어 있고, 분야는 제거 법, 제인 법, 기 법, 법, 도 법, 론법, 의 법, 사 행법, 법, 법, 조 법, 지적재 법, 헌법행정법, 경법, 사법정 , 인 지 등 우 다양합니다. 법관은 구회를 통해 자신이 당하거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해 자 , 관 정 등을 을 수 있고, 재판 와 관 한 다양한 의 도 들을 수 있 니다.

○ 법원 내 구회와 관 하여 한 역기 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니다.

○ 법관이 정 구회에 소 어 있다는 사정 으로 법관이 정치적으로 향 어 있다는 해가 있는 으로 고 있는데, 와 이 정하는 은 지 고, 로 인하여 법원 내 갈등이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니다.

○ 다 , 정치적 향성이 있는 이라거 정 구회가 력 다는 우 가 있다는 으로도 사법신 , 재판결과의 등에 부정적인 향을 수 있으 로, 이 우 가 생하지 도 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니다.

28. 법원 내 연구단체가 법조계 카르텔을 조장한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법관이 정 구회에 소 어 있다는 사정 으로 법관이 정치적으로 향 어 있다는 해가 있는 으로 고 있는데, 와 이 정하는 은 지 고, 로 인하여 법원 내 갈등이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니다.

○ 다 , 정치적 향성이 있는 이라거 정 구회가 력 다는 우 가 있다는 으로도 사법신 , 재판결과의 등에 부정적인 향을 수 있으 로, 이 우 가 생하지 도 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니다.

29.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 26건 중 절반 이상인 16건의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중 하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이 상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단형 범위와 선고형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 다수가 합 하여 성 자를 대 으로 범한 성 력사 은 사회가 하여야 할 성 기의 해자에 회 하기 어 극심한 신 적, 정신적 고통을 하고, 해자가 이를 극 하기 위하여 당한 시 과 력이 필요하다는 에서 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 위원회는 2009 최 로 성범 양 기준을 한 이 기준을 하는 향으로 여 수정· 하 고, 성범 사 의 양 은 대부분 양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 어지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다 , 에도 성범 , 성 자 대 성범 의 양 이 의 높이에 부합하지 는다는 판에 대하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 니다.

○ 사재판에서 정하는 양 이 의 정의 관념과 높이에 부합하는지 고 하고, 해자 의 분한 , 양 조사관을 통한

양 조사 등을 통한 한 양 심리를 통해 적 한 양 이 이
어 수 있도 이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 최근 법원은 데이트 폭력으로 전 남친을 고소한 여성이 다시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음.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는"수사기관의 무고죄 인지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하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대법관 자로서 해당 재판부의 판 을 하 구 적 사 에 대하여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니다.

○ 다 , 고 는 가의 심판기 해자의 정당한 고소·고 , 해자가 한 사정 등을 고 하여 적정하 용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 사이버렉카,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적 제재가 횡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최근 법정 의 향, 양 기준 향 정 등을 바탕으로 이전 다 정한 양 이 이 어지고 있 에도 여전 의 높 이에 부합하지 는 이 있고, 다양한 사적 제재가 결 법원의 은 양 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이 한 판 의 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가 아 생각합니다.

○ 법원이 에 하는 양 을 통해 적 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 기준이 적시에 수 있도 력하고, 양 심리의 , 한 양 조사, 법관의 양 론 등 다양한 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법관들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물론,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소명감,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 전적으로 의합니다.

33. 행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이는 행정부 행정 법의 적법성 또는 력과 관 내용으로서, 법규의 해 과 관 하여 은 이 있을 수 있으 로 대법관 자가 인적인 의 을 리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4. 윤석열 정부 2023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45만 7천여건으로 2021년 34만 7천여건보다 11만건이 증가했고, 2012년 12만 2천여건에 비하면 무려 3.7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지난 11년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 발부율은 최저 98.7%, 최고 99.2%를 기록하며 사실상 통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 수수 부 이 높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수 으로 인하여 의 사생 의 과 자 , 인정 자기결정 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을 고 있 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 심리를 통하여 수수 의 범위를 적 제한할 필요가 있 니다.

○ 다 , 수수 은 통 수사 기 에 거 확 를 위하여 이어지고, 수사기관이 성한 서 를 바탕으로 판 할 수 에 어 재의 구조에서는 수수 청구를 기각하기 지 은 이 있 니다.

○ 따라서 법관의 대 심문이 어 대 기 등 행 을 명시하도 하는 등 법으로 수수 범위를 적정하 제한하기 위한 제도 도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5.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수수 부 이 높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수 으로 인하여 의 사생 의 과 자 , 인정 자기결정 이 해우 가 다는 지적을 고 있 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 심리를 통하여 수수 의 범위를 적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법관의 대 심문 도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대전 , 등 정 는 성 수대 정 와 지 은 정 가 여 있 니다. 이 한 대전 등을 수하는 경우에 통 대전 에 전자정 를 이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관한 다 등이 이 어지 로 사 가 한 어 기 에 제한이 어지 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수수 에 따 사생 의 과 자 의 해 우 가 생합니다. 따라서 어 대 기 등 행 을 명시하도 할 필요성이 있 니다.

36. 검찰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초 사건과 관련없는 사안까지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수사의 우 는 대전 에 대한 수수 과 관 어 있는 경우가 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등에 대한 수수 이 대전 에 있는 정 전 를 이 하는 식으로 행 는 경우가 고, 대전 에는 사용자의 사생 과 관 거의 정 가 포 어 있기 문 니다.

○ 법원은 대전 등에 대한 수수 을 부할 범 의 와 관 정 이 수수 의 대 이 수 있도 범위를 적 제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대 심문을 도 하고 어 대 기 등 행 을 명시하도 하는 등 선이 이 어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아가 재판과정에서는 위법한 수사로 한 거의 거 력을 아야 할 니다.

○ 다 , 제 어 한 식으로 행 고 있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는 으 로, 수 전자정 의 관리 기에 대한 사법적 통제 등에 대한 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원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재판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재판과정에서 거조사를 위하여 지 등을 재생하는 경우 심리 결정을 하여 2 해가 생하지 도 의할 필요가 있 니다. 필요한 경우 이 한 거에 대한 거조사의 를 법적으로 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8. 최근 마약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함. 그러나 법원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등 엄벌에 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범 를 이기 위하여 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있고, 가 범 를 제하는 에 일부 도 이 수 있 니다. 관 하여, 최근 성 자에 대한 범 , 대 범, 대 관 범 등에 대한 양 기준이 으로 고 있 니다.

○ 의 독성으로 인하여 사범의 재범률은 우 높고, 인의 력 으로 에서 어 기 이 사 니다.

○ 따라서 사범에 대하여는 와 시에 사범의 재 에 도 이 수 있는 치 로 의 등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9. 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인사청문회를 지를 고 하 청문회 대 자인 위원 자는 자 제출 요구에 최대한 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구 적으로 요구하는 인정 에 따라 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법관 자로서 구 적인 사 에 대하여 하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40.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에 집중돼있는 사법기관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사법기관 대법원을 기준으로 , 대법원의 지 이전과 관하여 가 해야 할 은 대법원의 기 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률심을 관 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요한 이가 는 사 의 최종심을 당하고 있기 문에 물리적 소재지는 의 사법 근성과도 하 관 어 있 니다.

○ 또한 법원조 법에 따라 법원의 사법행정사 를 당하는 법원행정 도 대법원에 어야 하는데, 법원행정 가 당하는 는 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헌법기관 다 행정부 와도 한 관 이 있기 문에 대법원의 물리적 소재지를 정하는 데에 법원행정 의 기 도 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가지는 사회적 의 와 요성 에서는 대법원이 지 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전에 은 향을 치는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이전을 위해서는 부지 확 를 한 물적 시 의 준 , 근 자의 이전 문제 등 당한 용이 소요 수 있으 로, 범위 한 의 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에서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41. 장녀의 2022년 사업 수입/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 어 사 과 이라는 회사에서 아 바이 를 한 니다.
가 2021 2 아 바이 를 한 식회사 라우 와 일 종의 회사로, 라우 의 소 로 이 회사에서도 정도 일을 하 니다. 사 이 거리를 회하 은 사 들 사 을 제거하고 위로 사 을 바 고 은 사 을 고 는 을 하 는데, 이 회사에서 근로소 이 아니라 사 소 을 신고하여 와 은 기 이 아 있 니다.

42. 장녀가 주식회사 스프링클라우드에 취업하게 된 경위와 맡은 역할은?

○ 가 지인 소 로 아 바이 를 한 으로 고 있 니다. 자 행 관 회사로 사 이 거리를 회하 은 사 들 사 을 제거하고 위로 사 을 바 고 은 사 을 고 는 을 하 다고 들 니다. 2021 11 과 12 에 각각 25일 근 하고 각각 200 원 합 400 원의 여를 받은 으로 고 있 니다.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2년 6월부터 6개월 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한 이유는?

○ 2002. 6.경 제가 지원에서 근 해서 가 이 에 거 이는데, 우자 6 지인의 아 로 소를 이전한 일이 있 니다. 아 도 지 근 를 치고 서 이 수도 으로 근 지를 기는 이 정 이어서, 우자가 에 대 하여 거지를 준 하거 와 결 을 고 가정 부로 생을 이어가 서 에서 사 등을 재 해 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이 어 이 아 가 하고 있 니다. 시일의 경과 등으로 한 경위를 리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2년 6월부터 6개월 간 전입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소유자 및 세대주와의 관계는?

○ 자의 우자와 위 소지 아 의 소 자 사이에 한 관
는 고, 지인도 아 니다. 대 와는 구 니다.

3. 후보자의 장남이 2018년 1월부터 약 1년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주택으로 전입한 이유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세대주와의 관계는?

○ 당시 인이 재 인 대 근 의 에 로 한
니다. 과 해당 소 자는 일 적인 자와 인의 관
로서 한 관 가 있지 니다.

4.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를 인적공제에 등재한 전체 기간은 얼마나 되고, 등재한 구체적 이유는?

○ 제 인과 를 소 · 제신고 시 인적 제에 등재한 기
은 신고 도 기준 2020 부 2024 까지 4 이고, 분
이 70대 이 으로서 인적 제 등재 요 에 해당하는 으로
고 있 니다.

5.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법관은 법률적 쟁송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 법관으로서의 높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재판의 독립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대법관 제청을 수락한 이유는?

○ 는 부 한 이 은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도 구하고 어 이 로 제가 대법관으로 제청 는지 생각해 니다.

- 는 신 한 재판을 위하여 사 에서 한 기를 바탕으로 당사자들과 내 있 소통하여 도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력하 니다. 결과 신 하 행하서도 한 재판을 대로 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 아 소수자 자를 하는 이 사법부의 요한 이자 역할로 생각하고, 부 하지 이를 위한 판결을 할 수 있 도 제가 이 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에 부 사정에 들 는 소신에 따 재판, 재판부 법원 구성원들과 의 는 소통, 법 분야의 전문성 등도 고 다고 생각하 니다.

○ 는 대법관 제청이 이 한 을 바탕으로 과 사회에 은 사를 하라는 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 니다.

7. 소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사법행정 용 사 와 관 하여 재 관 사 들에 대한 재판 이 소심에 인 이 있으 로, 대법관 자로서 에 대한 구 적인 가를 리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다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의 목적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의 일들로 인해 여 분 심 를 에 대해 법원 구성원의 한사 으로서 송구하 생각하고, 다시는 은 일이 지 도 법원 구성원 가 경 해야 할 니다.

8. 소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파장이 모두 해소됐다고 생각하는지?

○ 사법행정 용 사 와 관 하여 재 관 사 들에 대한 재판이 소심에 인 이 있으 로, 대법관 자로서 에 대한 구 적인 가를 리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9. 현재의 대법원 판결이나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개선 과제 3가지를 뽑는다면?

○ 대법원은 헌법에 규정 최고법원이자 최종적 법률심으로서, 의 리를 구제하여 기 을 하는 근 적인 역할을 수행 과 시에 사회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역할, 법적 쟁 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재 대법원은 과 한 사 부 으로 인하여 이 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 니다.

○ 우선, 고제도를 선하는 이 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 적인 법 니다. 재 고에는 한 제한이 니다. 따라서 고가 제기 는 사 수가 우 고, 이를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은 역 이 고 있 니다. 식적으로 생각하 고에 아 제한이 는 이 의 재판받을 리를 분 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 니다. 물론 는 이 있지 , 사법 자원은 한정적 니다. 한정적 자원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 이 지 하 , 전 로서 사 리가 지 거 필요한 사 에 역 이 지 하는 결과가 생할 수 에 고, 이는 의 재판받을 리 에 역행하 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사제 고법원 도 등 고심 제도 선이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으로, 대법원에 수 는 사 수가 당 은 을 고 하

, 사 에 대하여 한 이 를 기재하는 은 적으로 어 니다. 또한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 과 정 법원으로서의 기 을 할 수 있도 하 , 심리 행제도를 지하는 은 가 한 이 있 니다. 다 , 심리 행제도에 대한 부의 여 판이 있는 심리 행제도를 합리적으로 용할 수 있는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 으로 대법원 재판 구관의 근 여 을 선할 필요가 있 니다. 최근 대법원 재판 구관이 도 사 하는 경우가 생하고 있는데, 대법원 재판 구관의 부 을 하거 근 경을 선하는 한 , 근 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을 할 필요가 있 니다.

10. 광주 5.18민주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5·18 은 「5 18 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이 당시 신 부 인사들의 헌정 서 범 와 인도적 범 에 대 하여 시 들이 전 한 으로, 우리 라 역사에서 의 를 지 고한 시 이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 정은 적 합의 과정을 거 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을 지니고 있으 로, 5 18 을 헌법 전문에 수 하는 은 론 를 통한 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그 국가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성 력범 의 등에 관한 법 아 ·청소 의 성 에 관한 법률에서 인 와 13 아 인에 대한 ·준 등에 대한 소시 의 적용이 제 고, 사소송법도 사 을 해한 범 로 사 에 해당하는 범 에 대하여는 소시 의 적용을 제하는 내용의 정이 이 어 으로 고 있 니다.

○ 인도적, 인 적 범 가 구 적으로 어 한 범 를 하는 인지 기는 어 지 , 소시 의 제 여부는 법정 적 결정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12.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결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여재판 범위 확대

- , 「 의 사재판 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 제4 에서는 ‘ 에 여재판으로 행하는 이 적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는 경우’에 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 규정하고 있 니다. 이에 대하여 포 적인 제 사 를 으로 여재판 성 에 가 다는 판이 있으 , 제사 를 적으로 정할 수는 으 로 이 한 규정은 가 한 이 있 니다.

- 제 여재판 성 에 가 정도의 범위한 제결정이 있는지 여부는 지 하고, 제사 해당 여부는 구 적인 사 관 를 고 하여 판 할 재판사 이 로 이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구 적인 의 을 제시하는 은 적 하지 은 이 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관 하여, 행의 여재판은 고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 니다. 따라서 인 와 은 일정한 대 범 에 대하여는 필수적 여재판을 도 하는 을 적극 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 력

- 여재판 제도 도 지를 고 하여, 대부분의 사 에서 심원 의 을 하여 선고가 이 어지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다 , 헌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리를 하고 있으로 심원 결에 기 력을 부여하는 은 행 헌법 어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오랜 비판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전과 전으로 인하여 해자를 사 에 이 한 사 에 대하여 의 높이에 에 하는 정한 양 이 이 어 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깊이 감합니다. 양 기준 신 또는 재 와 법정 향 등 전을 제하기 위한 다양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 위원회는 전이 하 어야 한다는 적인 요구에 따라 2023. 4. 24. 전 정거부 등 에 대하여 양 기준을 신 하는 통범 수정 양 기준을 의결하 는데(2023. 7. 시행), 전이 도의 으로 신 으로 전이 결합 통범 의 고 범위가 전 적으로 향 으로 고 있 니다.

○ 로 양 기준으로 인해 전 사 에서 고인의 에 부합하는 양 이 이 어 수 있을 으로 기대합니다. 전 기회를 원 적으로 한다는 에서 2024. 10. 25.부 시행 정인 전 지 치 부 조 부 전 제도(도로 통법 제80조의2)도 의 하다고 생각합니다.

14.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사 제도는 인 의 대적 가치인 생명을 대 으로 하는 이기 문에 우 조심 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 제 지를 하는 거로는, 지가 전 적인 이고, 한 행 결과를 이 수 으 , 제도의 범 지력도 적으로 바가 다는 등을 들 수 있 니다. 치를 하는 거로는, 인, 대규 인명 등 인 적 범 가 여전 재하고, 한 범 로부 전하다고 수 는 에서 의 법 감정, 으로서의 성 등을 들 수 있 니다.

○ 양 거 당한 이 있고, 행 헌법에도 사 제도가 있 을 전제로 한 규정(제110조)이 있어서 헌법에서 사 제를 용인하고 있다고 여지도 있 니다.

○ 결론적으로 사 제 지 여부는 인 의 과 가치, 생명 등 헌법 규정의 한 해 과 어 사 의 일 적 과, 의 법감정, 해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 소년범들의 흉악 범죄 증가에 따라 소년법 폐지 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어 이에 인하고 심각한 범 를 지 는 사 가 론에 자 도 고 있 니다. 이에 법소 의 을 하향하고 소 분을 지하여 사 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 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의 도 경청할 필요가 있지 , 어 이의 소 들을 사 하여 을 수 있는 이 과 에 따 부 용에 대한 한 가 선행 어야 합니다.

○ 소 분 지의 경우에는 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 하여야 할 기 이 이 은 소 에 대하여 과 치 등을 포기하고 다 로 내 우 가 있으 로 신 하 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후보자의 판결 중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기억에 남는 3가지는?

○ 경기대 대 조 기 제· 근로 사 (서 고법 2011 39419)

- 정규 전 을 회 하기 위하여 근로를 이용하여 기 제 근로와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을 기준으로 사용사 (법인)와 근로자(대 조) 사이의 시적 근로 관 성립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법이 용 지 을 명확 하 니다. 또한, 기 이 정 이 는 근로자 에도 사 서를 수리하는 식으로 리한 은 정당한 이 이 근로관 를 종 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 하 니다.

○ 인 시 사 (수원고법 2022 13080)

- 성시 지 원 경쟁 용시 에 원고는 인 전 의 일한 필기 합 자로 을 니다. 최 에서 와 관 이 는 등에 대한 문을 받고 ‘ ’ 등 받 고, 이 가 에서도 ‘ ’을 받아 최종 하 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최 에서 에 대한 문을 한 은 행위에 해당하지 , 가 에서 시정 에 따라 하자가 치 다고 지 , 는 최 에서의 등 에 따라 가 대 자로 분 이 로 최 의 결과에 따 향이 있는 이고, 원고가

인 전 의 일한 합 자 사정을 고 하여 최
의 행위가 시정 다고 수 다고 판 하 니다.

○ 기 제 전 사 시정사 (서 고법 2013 51093)

- 자 전 원에서 기 제 전 사와 정규 전 사 사
이에 여 등에 관한 이가 기 제법이 지하는 적
행위인지, 기 이 종 한 기 제 전 사가 시정명 을
구할 이 이 있는 인지가 문제 사 니다. 1심에서는
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전에 기 이 을
이 로 적 우의 시정을 구할 이 이 소 하 다고 판
하 니다. 이에 대해 는 사사 과 행정사 (시정명)
의 이 등을 고 하여 기 에도 시정명 을 구
할 이 이 있다고 판 하 니다. 아가, 정규 전 사
와 기 제 전 사의 등을 부적으로 ·분 하여
사이에 적인 이가 고, 정규 인지 여부의
이는 이 기 , 근수당의 이에 어 있으 로,
여 이 지 , 가 , 경사 에 대한 은 기
제법 위 으로 판 하 니다.

17. 시대 변화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 간의 괴리로 고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 최근과 이 각종 과 기 이 하 에 따라 사회의 양 이 하 가 다 하고 분쟁 사 도 이 다양해지고 해지고 있 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과 제도로 규 하기 지 은 로 분야가 등 하고 있 니다.

○ 데 사법 용은 적으로 이 생한 분쟁을 기 에 제정 법률에 근거하여 판 하는 수 성과 사 통제적 성 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분쟁 해결을 통해 재의 법 서를 지하 는 지적 성 도 고 있다고 수 있 니다.

○ 따라서 법원이 하여 로 판 기준을 제시하는 은 가 하지도 을 법적 정성 에서 바 하지도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의 법감정과 시대 의 에 따라 고심 에 기 의 와 리 판결을 한 사 은, 이 하역 사고로 해를 은 이 물 전기사의 일 수 을 정할 , 은 종 종사자의 가 한을 60 로 인정하 원심 기 의 와 리 원고의 가 한을 65 로 인정하여 해를 정한 고등법원 2018 20124 해 사 을 들 수 있 니다.

○ 이 사 에서 원고의 가 한을 정하 서, 과거에 해 기대수명

이 어 , 은 종 종사자의 이 거의 50 에 해 과거에 해 이 높아지고 60 이 종사자의 도 18% 정도인 , 정 이 는 등을 이 로 가 한을 65 로 인정하여 원고의 해를 정하 니다.

18.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전부)기각률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 수수 부 이 높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수 으로 인하여 의 사생 의 과 자 , 인정 자기결정 이 해 우 가 다는 지적을 고 있 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 심리를 통하여 수수 의 범위를 적 제한할 필요가 있 니다.

○ 다 , 수수 은 통 수사 기 에 거 확 를 위하여 이 어지고, 수사기관이 성한 서 를 바탕으로 판 할 수 에 어 재의 구조에서는 수수 청구를 기각하기 지 은 이 있 니다.

○ 따라서 법관의 대 심문이 어 대 기 등 행 을 명시하도 하는 등 법으로 수수 범위를 적정하 제한하기 위한 제도 도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대법원이 재판 외에 등기 등 일반 행정에 속하는 업무까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1949. 9. 26. 법원조 법 제정 이 재까지 법원에서 등기에 관한 사 를 관 하고 있 니다. 일 은 등기 사 를 법원의 로 인식하고 있고 정한 기관인 법원에서 등기 사 를 관 한다는 사 자 로 에 신 를 고 있 니다.

○ 등기는 적으로 의 재 을 하는 으로서 법에 따라 신 하고 정확한 리가 요구 니다. 이 한 관 에서 관 법 을 하고 정확하 해 ·적용하는 법원 원(등기관)이 를 리하는 이 바 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법원은 등기 에 관한 인적 물적 를 분 구 하고 있으 로 법원에서 등기 를 관 하는 이 가 경제적으로도 적일 니다.

20.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공적 증명나 장부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유독 대법원(법원행정처)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열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연간 약 7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음. 기실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발급 무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 등기사항의 열람'만이라도 무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등기는 거 관 자가 이용하는 제도로서 등기기 의 이 명서의 용은 제도를 이용하는 거 당사자가 부 하는 이 수 자 부 의 관 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 에 의한 부 등기사 의 용은 대법원의 수 이 아 고에 으로 는 으로 수수 전 으로 인한 감소분을 다 일 들이 대신 부 하 수 있 니다.

○ 다 , 법원은 2023. 12. 1.부 전자등기사 명서 (전송) 시 '소 의 등기명의인'인 경우 수수 를 제하고 있 니다. 위원 서 제 해 신 에 대하여도 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위 '월권행위'처럼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지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위력과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오히려 직권남용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지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 대법원은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 판결에서 "용 리행사 해 는 원이 일 적 한에 하는 사에 관하여 을 행사하는 으로 적, 구 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용이 원이 일 적 한에 하는 사 에 관하여 한을 위법·부당하 행사하는 을 한다"고 판시한 바 있 니다.

○ 대법원의 위와 은 해 에 의하 용 리행사 해 의 인정범위가 지 치 아지 로 행위 지위를 용한 경우 등도 용 리행사 해 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

는 으로 고 있 니다.

○ 법정 의 원 이 기 법리 성 과정을 고 할 행법을 대로 에서 용 리행사 해 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은 어 으로 판 니다. 어 한 행위를 범 로 규정하여 할 인가의 문제는 법정 적 결정사 에 해당하로, 행위 등도 범위에 포 하도 해당 조 을 정할지 여부 구 적인 내용은 법률조 의 문 , 법 목적, 법 , 의 법 감정, 해 사 , 법률의 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2.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개선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전관 우는 자가 관 기관에서 를 제 받는 으로서, 사법 에서의 전관 우 전 판, 사가 사로서 수사 재판과정 또는 결과에서 정한 를 제 받는 이라고 수 있 니다.

○ 이는 재판의 정성, 사법의 신 에 대한 문제로서 들의 우 가 다는 을 고 있 니다. 제가 전관 우를 경 한 사 은 지 , 제 재하는지 여부와 관 이 관이 의 까지 식시 수 있도 법원이 부 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사소송법, 법관 등의 사 분 사 당에 관한 규, 자의 이해 지법 등 관 규정에서 전관 우를 지하기 위하여 한 제 , 재 당, 신고 회 신청 제도를 분 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에 대한 우 ,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 , 생법관제의 정 등 전관 우 우 를 식시 수 있는 여 제도적 치를 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변론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변론은 인터넷을 통해 중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재판 송은 사법부의 심 역할인 재판 과정을 에 있는 대로 명하 으로 재판에 대한 의 신 를 높일 수 있는 가 적이고 과적인 법 하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2013 3 부 재까지 20 론을 인 을 통해 한 으로 고 있 니다.

○ 다 재판 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심리적 감을 여지가 있고, 여론 등에 의하여 재판의 정성에 향을 가 성도 지 으 , 소송에 여하는 당사자, 청인 등의 해 문제도 제기 수 있 니다. 대사회에서 정 의 도 등을 감 하 치 한 해가 생할 여지도 있 니다.

○ 이와 은 을 종합적으로 고 하 론의 인 을 통한 의 는 분한 의를 거 시행 여부를 판 하는 이 바 하다고 생각합니다.

24.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포함 판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분쟁의 다양 · , 구 심리 의 판 심 의의 , 가사·행정 사 각종 신청사 의 가 등을 포 한 다양한 이 로 판사의 부 은 가하고 있는 니다. 따라서 의 신 하고 정한 재판을 받을 리의 적 을 위하여 법관의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재 사 이 이 적 어 심리가 지 고 있는 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 원은 필수적이고, 21대 회에서 의 정원(370명) 이 의 원이 필요합니다.

○ 다 , 기적으로는 법관의 지 적 원 다는, 법조일원 제도 시행에 따 법관 고 를 고 하고 경 과 경 을 바탕으로 한 역 을 재판 행과 결론 도출에 적으로 할 수 있도 법관 수에 하는 정도의 대 적인 재판 구원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역할과 기 을 다 할 수 있 니다. 이 한 역할과 기 에 역 을 분 을 수 있도 대법관 원 다 우선하여 고심사제 고법원 도 등 고심 제도 선이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원도 고제도 선 하 로 할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지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하는 하 의 전원합의 를 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 도입 약 15년이 지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재의 로 제도는 기 다양한 의를 거 2007 부 시행 어 15 이 경과하 고 우리 사회에 자리를 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서는 로 제도의 지 다는 이를 하여 로 제도 도 지를 수 있는 향에서 근하는 이 필요하다는 니다.

○ 재 로 을 사시 에 시할 자 을 고 시 을 통과하기 위한 수 으로 는 경우가 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 니다. 다양한 전 지식과 사회· 경 을 가 사 들이 로 에 하고, 기 의 지식과 경 을 분야의 전문성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 도 지에 수 있도 하는 이 가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6. '법조일원화'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은?

○ 법조일원 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 과 하여 다 로 경과 경력을 가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용 고 있고, 에 따라 다양한 경 과 시각을 가 법관이 가하 다는 에서 정적인 이 있 니다.

○ 다 , 법조일원 제도 도 이 용 법관이 전 적으로 고 어 리의 성이 어지고, 기 의 합의부와 할 (대)의 다양성이 다소 하여 은 대의 시각과 을 에 다소 제 이 있다는 아 이 있 니다.

○ 한 , 법관 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 이 향 서, 인의 역에서 력을 인정받는 법조인이 법관으로 지원하지 하는 경우가 은 으로 고 있 니다. 아 도 자신이 은 경력과 지위, 수를 포기해야 하고, 지 근 를 해야 하는 사정 등에 기인한 으로 생각 니다. 결 우수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지원하도 하기 위하여는 수 등 우를 선하고, 재판 구원 등 재판 조인력을 분 확 하 , 과 한 법관 부 을 적정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법원의 지방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 대법원 소재지는 법원조 법 제12조 규정사 으로서 대법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회의 법이 필요한 사 니다. 다 인적으로 대법원의 지 이전과 관 하여 가 해야 할 은 대법원의 기 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률심을 관 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요한 이 가 는 사 의 최종심을 당하고 있기 문에 물리적 소재지는 의 사법 근성과도 하 관 어 있 니다.

○ 또한 법원조 법에 따라 법원의 사법행정사 를 당하는 법원행정 도 대법원에 어야 하는데, 법원행정 가 당하는 는 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헌법기관 다 행정부 와도 한 관 이 있기 문에 대법원의 물리적 소재지를 정하는 데에 법원행정 의 기 도 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가지는 사회적 의 와 요성 에서는 대법원이 지 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전에 은 향을 치는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이전을 위해서는 부지 확 를 한 물적 시 의 준 , 근 자의 거이전 문제 등 당한 용이 소요 수 있으 로, 범위한 의 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에서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28.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도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이해충돌금지원칙'도 대표적인 내재적 한계라고 보는지?

○ 한의 행사는 헌법 법치 의와 력분립의 원 에 부합하여야 하고 한을 용하는 은 용 지 니다.

○ 헌법 제53조 제2 은 "법률 에 이의가 있을 에는 대통 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여 회로 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서 대통 의 재의요구 의 적 요 을 정하고 있을 행사요 을 정하고 있지 으 로, 재의요구 의 행사요 은 해 에 의 할 수 에 니다. 이 문에 종 부 헌법 에서 대통 의 재의요구 의 행사요 에 대한 해가 대립 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다 , 대통 의 재의요구 행사가 행사요 이 한 를 일 하 는지 등은 사 에서 사법 를 통하여 수 에 고, 대법관 자로서 구 적으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9. 동일 법원에 속한 재판부가 관련 사건에 대한 동일 심급에서 상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은?

○ 일 법원에 한 재판부가 관 사 에 대한 일 심 에서 하는 판결을 내 경우 법원에 대한 신 도에 부정적인 향을 다는 판에 감 는 은 있 니다.

○ , 사한 사 관 에 대하여 법원에서 은 판 이 다 소수자 사회적 자를 위한 전향적인 판 은 오기 어 니다.

○ 따라서 사한 사 에 대해 판 이 라 다 이는 심 을 통해 해결 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사전에 일한 결론을 하도 제하는 은 재판 독립의 해로 이어 가 성이 다고 생각합니다.

30. A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단정적인 예단을 갖고 있는 재판부에, 해당 판결이 유무죄 또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B피고인의 사건이 배당된다면,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나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은?

○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고, 향 구 적인 사 이 수 있는 사 에 관하여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1.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후보자가 담당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자등은 관 여부 기부 원 여 등 명목에 관 이 일인으로부 1회에 100 원 또는 회 도에 300 원을 과하는 등을 받거 요구 또는 해서는 아니 니다(부정청 등 수수의 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또한 자등은 와 관 하여 대가성 여부를 문하고 위 이하의 등을 받거 요구 또는 해서는 아니 니다(은 법 제8조 제2). 다 , 부 의 등에 관한 사 또는 은 법 제8조 제3 각 에서 규정하는 등의 경우 위 지규정의 에 해당합니다.

○ 자등의 우자는 자등의 와 관 하여 위 제8조 제1 또는 제2 에 따라 자등이 받는 이 지 는 등을 받거 요구하거 제 받기로 해서는 아니 니다(은 법 제8조 제4).

○ 대법관 자로서 일 적인 사 에 대하여 관 성 법 제8조 제3 각 의 사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 이 구 적인 가를 내리기는 어 이 있 니다. 다 ,「부정청 등 수수의 지에 관한 법률」에 위 지 는다고 하 라도 법관은 재판의 정성에 관한 의심을 할 가 있

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 을 받지 는다고 규정한 법관 리 제6조에 어 사회통념 당하지 아니한 정도에 이 는 선물 은 는 이 바 하다고 할 니다.

32.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상대방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통신 법' 제14조 제1 은 지 은 인 의 대 를 하거 청 하지 하도 규정하고 있으 , 대법원은 인이 여한 대 통 는 " 인 의 대 "에 해당하지 으 로 대 의 의 이 하 라도 사 할 수 다는 니다.

○ 대 당사자의 이라고 하 라도 대 의 의사에 하여 사생 의 등을 해할 수 있으 로, 이를 적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에 대하여는 분 감합니다. 다 이 한 행위의 에 대한 들의 감대가 성 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분 확인할 필요가 있으 로, 한 조사와 론 가 선행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향 회에서 다양한 을 하고 법률전문가와 들의 의 을 분 수 하여 지 로 결론을 도출해 시기를 기대합니다.

33.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형사법원 판례와 달리, 본인이 참여한 대화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2013나8981)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위원 서 하신 수원지 법원 2013. 8. 22. 선고 2013 8981 판결은 자의 의 이 전 통 대 의 통 내용을 리에 하고 이를 재생하여 서를 성하는 은 한 사정이 는 한 헌법이 하는 성 사생 의 과 자 를 부당하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지의 하 심 판결로, 해당 판결은 소심에서 확정 으로 고 있 니다.

○ 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대 이 는지와 관 이 구 적 사 법행위의 요 에 따라 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4. 국민 다수가 본인 참여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민사상으로도)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고, IT 기술의 발달로 '자동녹음 기능' 등 대화와 통화 녹음이 일상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무차별 다수가 언제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와 완전히 동일한 행위에 대한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판단을 통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사법과 사법은 규 의 목적과 원리가 다 로 분야의 판 이 통일 지 는 역도 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 사 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 의 정도가 가 행사가 필요한 정도에 이 지 는 경우 범 로 지는 경우가 재하는 니다.

○ 다 ,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가 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 법의 요한 역할이라는 을 감 하 , 대 당사자 의 여부에 관하여도 법률로 명확 규정하는 이 바 하다고 생각합니다.

35. 제3자뇌물제공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0도12313 등)에 따르면,'부정한 청탁'이란 "직무집행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제3자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A구청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등의 직무집행을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할 경로당의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A구청장에게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임.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개발 이익의 공익 환원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억제하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기 대법원의 판결을 하고, 재판의 대 이 수 있는 사 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6.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나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예결산 심사를 받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회는 을 대 하여 의정 을 하는 이 로 헌법기관인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회에 을 고하거 ·결 심사를 받는 자 는 의 통제를 위한 로 의 와 분립을 심적인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한 내에 있고, 한 자 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한다고 기는 어 니다.

○ 다 , 이 한 가 각 가기관 사이의 적 한 제와 을 이 수 있도 해당 기관의 위 과 위를 하는 식으로 이 어지는 이 바 하고, 사법부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 을 가지고 정치적 립성을 고 하기 위해서는 성의 독립이 어야 할 필요성이 다고 생각합니다.

37. 국가 예산의 편성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만약 「국가재정법」의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A중앙관서의 장이 소관이 아닌 B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까지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대로 최종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해당 예산안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가재정법은 '각 관서의 은 요구서를 기 재정부 관에 제출하여야 하 , 이 법에서 관서라 은 헌법 또는 정부조 법 의 법률에 따라 치 행정기관을 하 , 법원 행정 은 이 법을 적용할 관서의 으로 다'고 규정하고 있 니다.(제6조, 제31조)

○ 구 적인 사 관 를 지 하는 이고 판 의 대 이 수 있는 사 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8. 만약 위와 같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의무와 절차를 위반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의결한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지?

○ 구 적인 사 관 를 지 하는 이고 판 의 대 이
수 있는 사 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9.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대한 1심 판결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을 "쌍방울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시했으나, 같은 수원지법의 형사 11부는 동일한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적시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음.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불과 1년 여만에 이처럼 완전히 상충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한 사 에 대해 판 이 라 다 이는 심 을 통해 해결 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 향 당하 수 있는 사 에 관하여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40.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이유가 없다면 재판의 이송과 변론 병합 등으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같이 재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일한 고인에 대한 여 사 이 지관할을 리하는 여 재판부에 어 있는 경우, 이를 합하여 심리할 인지 여부는 지관할 합심리 신청 사 을 당하는 재판부에서 각 소사 의 내용, 고인 , 는 심리 향 등을 한 사 의 성, 적인 심리 가 성, 고인의 시 심판의 이 등 제 사정을 분 고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검찰의 병합 반대 의견서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명백히 '동시 심판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닌지?

○ 구 적인 사 관 를 지 하는 에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42.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사안에 대해 "기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관할 병합 이송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이라고 답했음에도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한 이상,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인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향 법원의 판 대 이 수 있는 사 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니다.

유상범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유상범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 지명 이유 및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스스로에 대한 평가

○ 대법관은 법률적 쟁송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 법관으로서의 높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의 독립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한 기준으로 로를 부 한 이 은 사 이라는 생각을 하 니다. 에도 구하고 어 이 로 제가 대법관으로 제청 는지 생각해 니다.

- 는 신 한 재판을 위하여 사 에서 한 기를 바탕으로 당사자들과 내 있 소통하여 도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력하 니다. 결과 신 하 행하

서도 한 재판을 대로 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 아 소수자 자를 하는 이 사법부의 요한 이자 역할로 생각하고, 부 하지 이를 위한 판결을 할 수 있 도 제가 이 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에 부 사정에 들 는 소신에 따 재판, 재판부 법원 구성원들과 의 는 소통, 법 분야의 전문성 등 도 고 다고 생각하 니다.

○ 는 대법관 제청이 이 한 을 바탕으로 과 사회에 은 사를 하라는 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 니다.

2. 후보자의 좌우명

○ 의 우명은 ‘ 용(中庸)’ 니다. 법관으로서 한 으로 치우치지 고 부 하지도 치지도 는 을 가 요한 가치로 고 아 니다.

○ 에 따라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향과 을 경 하 고, 감정적으로 사 을 대하지 도 력하 으 , 일 생 에서도 이를 하기 위하여 부 하지 력하여 니다.

3. 존경하는 법조인

○ 대 대법원 이 가인 로 선생 을 경합니다.

○ 일제 기에 다수의 독립 가를 심 하 고, 이 우리 라의 대 대법원 으로 이 대통 이 회 에서 법관들 이 에서 는 리를 행사한다고 하 사법부를 정 으로 판하자 '판결에 이의가 있으 소하 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일 와 이 어 정치적 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력하 고, 결과 사법부 독립의 이 다고 생각합니다.

4. 가장 좋아하는 법언

○ 재판은 대립하는 당사자들의 과 거 등을 관적이고 정한 시각에서 하 하고 대조하는 의 니다.

○ , 일 당사자의 이 에 을 가지고 사 을 바라고 행한다 정한 재판을 할 수 고, 아가 사 에 부합하지는 재판을 할 가 성이 높 니다.

○ 우리 에 '한 고 송사 한다'는 이 있 니다.
한 내용이지 , 법관으로 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가 기적이 서도 요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5.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 대법원 재판 구관을 지원하여 근 한 일 니다. 재판 구관으로 근 하 서 최 여부의 판 기준과 법, 조전 자의 조 수행과 재해 등 의 있는 사 을 하 고, 이 헌법행정조 구관으로 근 하 서 깊은 구와 치 한 론을 거 우리 사회에 요한 의 가 있는 대법원 판결을 는 에 을 다는 자부심을 가 수 있 니다.

○ 다 으로는, 수원고등법원이 원한 지 지 은 에서 수 부 판사를 으 법원을 정 시 일 니다. 수원에 고등법원 신 과 수원지 법원 이전이 시에 이 어 신경을 야 하는 부분이 지 , 법원구성원들과 분한 소통과 의 등을 통하여 문제 이 리하 고, 법원 구성원들이 근 여 과 생 에 하는 을 서 을 니다.

○ 지 으로, 오거리 재심사 에서 를 선고한 일 니다(고법 2013재 3). 재심대 판결에서 고인이 법정에서 자 한 사 이 있 지 다 여 정 을 고 하여 신 성을 하여 를 선고하 고, 판결이 선고 이 범에 대한 기소가 이 어 판결이 확정 니다. 이 사 에서 를 선고하여 범이 기소 수 있는 여 이 고, 에 따라 하 를 받은 고인과 인 해자의 이 위로를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 니다.

6.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아쉽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 재판을 하 서 당사자들이 한 내용을 이 하고 법정에서 분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이 력하 고, 소신을 가지고 하지 으 재판하 니다. 과정에서 다거 아 다는 생각이 는 일은 니다.

7. 법관 재직중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판결, 그 이유

○ 경기대 대 조 기 제· 근로 사 (서 고법 2011 39419)

- 정규 전 을 회 하기 위하여 근로를 이용하여 기 제 근로와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을 기준으로 사용사 (법인)와 근로자(대 조) 사이의 시적 근로 관 성립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법이 용 지 을 명확 하 니다.

- 또한, 기 이 정 이 는 근로자 에도 사 서를 수리하는 식으로 리한 은 정당한 이 이 근로관 를 종 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 하여 이 한 식으로 근 를 종 시 는 관행에 제 을 니다.

○ 오거리 사 (고법 2013재 3)

- 고인은 시에 있는 오거리 으로 하 시 전기사인 해자를 식 로 해 다는 범 사 로 기소 어 재심대 판결에서 역 10 을 선고 받 니다.

- 고인은 이 재심을 신청하 고, 자는 재심에서 고인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 이 경찰의 행 등에 의한 으로 신 성을 인정하기 어 고, 고인이 범행에 사용 등에서 이 출 지 은 사정 등을 고 하여 고인에 대하여 를 선고하 니다. 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

이 범에 대한 기소가 이 어 고 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 니다.

- 이 사 에서 를 선고하여 범이 기소 수 있는 여 이 고, 에 따라 하 를 받은 고인과 인 해자의 이 위로를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 니다.

○ 인 시 사 (수원고법 2022 13080)

- 성시 지 원 경쟁 용시 에 원고는 인 전의 일한 필기 합 자로 을 니다. 최 에서 와 관 이 는 등에 대한 문을 받고 ‘ ’ 등 받 고, 이 가 에서도 ‘ ’을 받아 최종 하 니다.

- 이에 대하여 1심은 최 에서 에 대한 문을 한 은 행위에 해당하지 , 가 에서 시정 에 따라 하자가 치 다고 지 , 는 최 에서의 등에 따라 가 대 자로 분 이 로 최 의 결과에 따 향이 있는 이고, 원고가 인 전 의 일한 합 자 사정을 고 하여 최 의 행위가 시정 다고 수 다고 판 하 니다.

8. 법관 재직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그 이유

○ 법관으로 재 하 서 최선을 다해 기 을 하 고,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분한 소통을 하고자 력하 니다. 제 력에 따라 부 한 판결이 있을 수는 있지 , 성심을 다해서 재판을 하여 아 이 는 부분은 니다.

9. 과거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 또는 동호회

○ 사 법인 한 행정판 구회에 여하 고, 회 등 법원 내부 회 을 한 사 이 있 니다.

○ 법원 내의 구회 가 내역은 아 와 니다.

커뮤니티 명칭	가입일	구분
기업법분야연구회	2014-02-28	정회원
서울고법 행정재판연구회	2013-04-24	정회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2018-03-09	정회원
형사법연구회	2011-03-22	정회원
환경법분야연구회	2005-03-25	정회원

10. 전관예우 관련 퇴직 후 거취에 대한 견해

○ 경 과 전문지식을 용하여 대 등에서 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합니다.

11. 사형제에 대한 견해

○ 사 제도는 인 의 대적 가치인 생명을 대 으로 하는 이기 문에 우 조심 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 제 지를 하는 거로는, 지가 전 적인 이고, 한 행 결과를 이 수 으 , 제도의 범 지력도 적으로 바가 다는 등을 들 수 있 니다. 치를 하는 거로는, 인, 대규 인명 등 인 적 범 가 여전 재하고, 한 범 로부 전하다고 수 는 에서 의 법 감정, 으로서의 성 등을 들 수 있 니다.

○ 양 거 당한 이 있고, 행 헌법에도 사 제도가 있 을 전제로 한 규정(제110조)이 있어서 헌법에서 사 제를 용인하고 있다고 여지도 있 니다.

○ 결론적으로 사 제 여부는 인 의 과 가치, 생명 등 헌법 규정의 한 해 과 어 사 의 일 적 과, 의 법감정, 해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사 제도는 인 의 대적 가치인 생명을 대 으로 하는 이고, 일 행이 에는 사 오판이 있 다 하 라도 수 기 문에, 대 수 으로 가 는 종신 을 도 하자는 의가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이와 관 하여 적으로 사 이 행 지 고 있으 로 가 는 종신 을 도 하여 기 역이 가지고 있는 한 를 극 하여야 한다는 의 도 있고, 대로 가 는 종신 자 에 대한 위헌성 , 사 제를 치하 서 가 는 종신 을 도 할 경우의 부 용 등에 대해 신 한 가 필요하다는 의 도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결 가 는 종신 제도의 도 은, 사정 적으로 적 한 수 인지, 사 제 지를 전제로 의할 인지 등 제 문제에 대해 해 법 와 제도 등에 대한 한 구와 의 의 수 론 를 거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13.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리바 (제도)을 도 하여 다수의 사 은 이한 로 리하고, 를 다 는 사 에 적인 역 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 있 니다.

○ 제도를 도 할 경우 을 수 있는 에는 의하지 , 수사가 자 에 의 하는 로 아갈 우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 이 수사기관의 에 따라 당 부분 결정 어 우리 들의 법 감정과 치 우 도 있 니다.

○ 이 한 과 수사 에서 인이 선 지 은 경우가 은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신 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촉법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어 이에 인하고 심각한 범 를 지 는 사 가 론에 자 도 고 있 니다. 이에 법소 의 을 하향하고 을 해야 한다는 의 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의 도 경청할 필요가 있지 , 어 이의 소 들에 대한 확대 를 통하여 을 수 있는 이 과 에 따 부 용을 하 하여 신 하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16번 질의와 분리해서 답변할 것)

○ 적 에 따라 결정 어야 하는 정 적 사 이 사법 에서 쟁 이 거 사사 는 경우가 종종 있는 으로 니다.

○ 정치적 사 이 라도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청구 이 부인 다고 기는 어 우 로 일 법원에서 판 하 경우라 다 사 과 일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하고 립적이 독립적으로 판 할 수 에 니다. 이 은 바 하지 니다.

○ 정치적인 사 은 적 에 따라 정치의 역에서 분한 의와 론을 거 해결 어야 할 이고, 이 정치의 가 요하고 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6.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15번 질의와 분리해서 답변할 것)

○ 정 사 에 대하여 판사 다 이해하거 받아들이는 내용에 이 가 있을 수는 있으 , 이는 사법의 정치 와는 다 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의 정치 는 결 정치적인 에 어 재판을 하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인데, 사법부의 립성과 독립성을 고 할 대 있어서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 다 , 정치적인 쟁 에 대한 사법적 판 도 결론에 의해 정한 정치적 의도로 오인 거 사법부의 립성에 오해를 일으는 경우도 있어 생각합니다.

○ 정치적인 쟁 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사법부의 립성이 재판의 정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 지 도 ,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 적 리를 분 하고, 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다 위와 은 오해를 식시 수 있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17. 2019년, 순천지원 민사2부에서 소수의견을 기재한 판결문이 나왔음(2018가합12187). 3심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하급심(1,2심)에서 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문이 작성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해당 질의는 관련 재판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하급심에서'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한 질의임)

○ 법원조 법 제65조에서는 '심판의 합의는 하지 아니 한다'를, 제15조에서는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 을 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니다.

○ 하 심 판결문에 소수의 을 기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⑴ 법관 사이의 의 일치를 부에 명 으로 재판의 위가 수 있고, 소수의 기재 시 재판에 대한 이 심 수 있다는 에서 대하는 과, ⑵ 명시적으로 지하는 규정이 고, 재판 의 원 에 부합하 , 한 합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 로 성하는 이 있 니다.

○ 1심 판결문에 소수의 을 기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분한 의 수 을 거 필요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재판사 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8.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법원의 가 근 적인 재 의의는 하고도 신 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인의 해 리를 구제하는 이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니다. 따라서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여 제도적인 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관 재판 구 원 원, 전문법원의 신 , 전문법관 제도 확대를 통한 법관 전문 , 심 제도 합리 등 제도적인 원에서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 리 을 높일 수 있는 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법률심인 고심의 제도 어야 합니다. 하는 고 사 으로 인해 전원합의 가 성 지 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 을 생각하고 있 니다. 결 고심사제 도 등과 은 고 제도 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 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 으로, 등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고 합의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은 우리 라의 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하는 이 기적으로 사법부에 우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내는 일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관은 법정에서 아니라 인적인 생 에서도 위 지에 각 의를 기 여야 하고, SNS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쟁 에 관하여 의 을 명하는 경우에도 자기 제와 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위를 지해야 하 , 이로 인해 정한 재판에 향을 수 있는 관을 들지 도 신 하 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자 리위원회는 위와 은 내용으로 고의 제7 를 하여 법관이 SNS를 사용하여 의사소통과 다양한 인적 관 를 성할 수 있 을 전제로 과정에서의 의할 사 등을 제시한 으로 고 있 니다.

○ 관 하여, 2023. 12. 전 법관대 회의에서도 '법관은 SNS를 이용할 법관으로서의 정성에 의심을 일으 한 관을 들거 법관으로서의 위를 하지 도 의해야 한다.'는 고의 을 내기도 하 으로 고 있 니다.

○ 으로도 법관의 합리적인 SNS 이용 에 관하여 지 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법조일원화 제도를 직접 경험한바, 해당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법조일원 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 과 하여 다 로 경과 경력을 가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용 고 있고, 에 따라 다양한 경 과 시각을 가 법관이 가하 다는 에서 정적인 이 있 니다.

○ 다 , 법조일원 제도 도 이 용 법관이 전 적으로 고 어 리의 성이 어지고, 기 의 합의부와 할 (대)의 다양성이 다소 하여 은 대의 시각과 을 에 다소 제 이 있다는 아 이 있 니다.

21.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후보자가 생각하는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 증가 원인 및 대책은 무엇인지?

○ 고등법원 판사 자 가에는 도 당시의 과 다 은 근 , 기 는 고 도 , 부 한 기부여, 대적으로 부 한 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등법원 판사의 근 의 을 고 시 기 위해 우 선이 필요하고, 지 근 도 가 한 범위에서는 최소 할 필요가 있 니다.

○ 근 의 고 우 선을 위하여는 사법부의 확 가 받 어야 하 로, 사법부 에 대한 은 관심과 지원을 부 립니다.

22. ‘변시 응시기간 5년 제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견해?

○ 사시 의 시기 시 수를 제한한 사시 법 규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하여 은 의가 있는 으로 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여 있 으로 고 있 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고, 대법관 자로서 이에 대해 의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3. 관행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하신 관행은 대법관 위의 성 등을 고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립성 독립성 과 선거관리 정성 등을 위한 조치 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를 으로 에 따라 생하는 문제 에 대한 이 필요하다는 에 감합니다.

○ 다 , 로 식의 선출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립성이 독립성을 해하고 선거의 신 를 어 우 도 있으 로, 하고 신 하 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시행 출생통 제는 의 기관에서 출생한 아 에 대한 출생 신고가 이 어지지 아니하 시· · 의 이 최고한 감독법원의 가를 받아 으로 출생 기 을 하 는 으로 고 있 니다.

○ 관 하여, 출생통 제에 따라 출 사 이 는 을 리는 여성의 의 기관 이용이 제한 다는 지적이 있 고, 이를 위하여 ‘ 출 제’가 도 어 최근 시행 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제도의 도 은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로 인하여 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사전에 신 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 법률의 한글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은 법률이 어 한자어로 구성 어 있고, 어법에 지 는 , 일 식 등도 다수 있 니다. 따라서 법률의 한 에 감하고, 이는 들이 법률을 조 이해하는 데 도 이 으로 생각합니다.

○ 다 , 을 한 로 할 경우 법률이 하고 오 이해하기 어 지는 경우도 있으 로, 다양한 을 하여 고 결하 서도 가 정확하 의 를 전 할 수 있는 향이 어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26.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법률적 쟁송의 최종심으로서,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법 해 의 통일을 기하는 역할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정 법원의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재 하는 고 사 으로 인해 대법원이 위와 은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하고 있어 고제도를 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니다.

○ 고법원 도 은 정 법원 기 을 대법원에, 리구제 기 을 고법원에 분 으로 대법원이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 제시라는 요한 역할과 기 을 회 하고, 시에 의 리구제 에서도 3심을 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고법원의 판 에 하는 경우 4심제로 수 있고, 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리를 제한한다는 판도 있 으로 고 있 니다.

○ 고제도 선은 우리 라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존엄사 등 적극적 안락사' 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회생 가 성이 고, 치 에도 구하고 회 지 아니하 도로 이 어 사 에 한 에 있는 자에 대한 명의 결정 등 사 에 관하여 「 의 종과정에 있는 자의 명의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어 시행 니다.

○ 재, 이 바 적극적 사는 용 지 고, 생명 지에 필요한 물 여 등을 하는 의 소극적 사 용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사 등 적극적 사의 용 여부 범위는 인 의 생명 과 결부 문제이 로, 은 사회적 의와 의 수 을 거 적 감대가 성 필요가 있는 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8. 후일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관련해서 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사법부와 관 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적으로 수 있도 , 사법제도 선이 사법행정에 관한 법률 을 독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 하는 에 대한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 과거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법관들이 평생 법원에 남아 재판을 하며 재직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 비율이 매우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재직한바, 이런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법원 재판 구관으로 재 법관들의 가에는 은 지 근 , 기 는 고 도 재판 , 부 한 기부여, 대적으로 부 한 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관의 근 의 을 고 시 기 위해 우선이 필요하고, 지 근 도 가 한 범위에서는 최소 할 필요가 있으 , 생법관제에 따 법관의 고 에 재판 구원의 분한 원이 이 어 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 근 의 고 우 선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확 가 받 어야 하 로, 사법부 에 대한 은 관심과 지원을 부 립니다.

30.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는 대법원 재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재판연구관으로 5년 재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재 하는 고사 을 신 하고 정하 리하기 위하여 은 수의 재판 구관이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고, 당수는 10 이 의 경력을 가 법관으로 고 있 니다. 이는 사 심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어 적 하지 다고 생각하고, 들의 경력이 전 법관수 대 규 등을 고 할 와 은 인력이 사 심에 경우 법원의 재판 역 은 수 있을 으로 니다.

○ 재 대법원의 사 수의 규 등을 고 할 고제도가 적으로 선 지 는 한 재의 재판 구관 규 를 소하는 은 사 어 다고 생각합니다. 결 재판 구관 제도의 선 은 고제도 선 의와 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다 , 고제도 선은 심 전 과 의 리구제에 적인 향을 치 로, 구 적인 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최근 탄핵안 발의 권한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는 사 이 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2. 판사 증원 및 검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 사 원 필요성은 회에서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 일 아니라 찰의 구 적인 이 사정을 지 하는 에서 대법관 자로서 이에 대해 의 을 명하는 이 적 하지 아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다 으로, 분쟁의 다양 · , 구 심리 의 판 심 의 의 , 가사·행정 사 각종 신청사 의 가 등을 포 한 다양한 이 로 판사의 부 은 가하고 있는 니다. 따라서 의 신 하고 정한 재판을 받을 리가 적 기 위하여 법관의 원은 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 사법부 당면 과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해소방안에 대해 장기적 법관 증원과 더불어 법률AI가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가운데 일명 'AI 판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우리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후보자는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한바, 법관 업무에 인공지능 활용이 접목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법원은 인 지 기 을 용 으로 재판 의 성을 대 시 수 있고, 지 다 신 하고 정확한 원 서 를 제 할 수 있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 에서는 자 의 조사, 제출 문 의 내용 정리 등 기 을 인 지 이 수행할 수 있다 의 성을 대 대시 수 있고, 또한 법관이 이 에 하 력과 시 을 판결문 성과 은 다 요한 에 사용할 수 있 어 신 하고 한 재판에 도 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AI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명확하 지 고, 정 에 따라 향 등이 생 수 있으 , 소수자 자의 가 고 기 이 는 의 판 을 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가 판사(재판)를 대 하기는 어 고, 와 은 향이 바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AI는 재판지 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의 를

일 수 있는 향으로 용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곽규택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관은 법률적 쟁송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 법관으로서의 높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재판의 독립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법언이나 좌우명

○ 는 법관으로서 한 으로 치우치지 고 부 하지도 치지도 는 을 가 요한 가치로 고 아 고, 이 이 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가 기 적이 서도 요한 내용으로 생각하여, ‘ 용(中庸)’과 ‘한 고 송사 한다.’는 을 에 고 아 니다.

○ 에 따라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향과 을 경 하 고, 감정적으로 사 을 대하지 도 력하 으 , 일 생 에서도 이를 하기 위하여 부 하지 력하여 니다.

3.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판결, 이유

○ 경기대 대 조 기 제· 근로 사 (서 고법 2011 39419)

- 정규 전 을 회 하기 위하여 근로를 이용하여 기 제 근로와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을 기준으로 사용사 (법인)와 근로자(대 조) 사이의 시적 근로 관 성립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법이 용 지 을 명확 하 니다.

- 또한, 기 이 정 이 는 근로자 에도 사 서를 수리하는 식으로 리한 은 정당한 이 이 근로관 를 종 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 하여 이 한 식으로 근 를 종 시 는 관행에 제 을 니다.

○ 오거리 사 (고법 2013재 3)

- 고인은 시에 있는 오거리 으로 하 시 전기사인 해자를 식 로 해 다는 범 사 로 기소 어 재심대 판결에서 역 10 을 선고 받 니다.

- 고인은 이 재심을 신청하 고, 자는 재심에서 고인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 이 경찰의 행 등에 의한 으로 신 성을 인정하기 어 고, 고인이 범행에 사용 등에서 이 출 지 은 사정 등을 고 하여 고인에 대하여 를 선고하 니다. 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

이 범에 대한 기소가 이 어 고 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 니다.

- 이 사 에서 를 선고하여 범이 기소 수 있는 여 이 고, 에 따라 하 를 받은 고인과 인 해자의 이 위로를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 니다.

4.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이유

○ 법관으로 재 하 서 최선을 다해 기 을 하 고,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분한 소통을 하고자 력하 니다. 제 력에 따라 부 한 판결이 있을 수는 있지 , 성심을 다해서 재판을 하여 아 이 는 부분은 니다.

5. 판결 이외에 이제까지 법관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유

○ 5 대법원의 헌법행정조 재판 구관으로 근 하 서 심 적인 구가 필요한 헌법행정 사 에 대해 하여 고하 으 , 2 재판 구관으로 근 할 에는 대법원에 고 는 행정사 (1 당 50 내)에 대해 신 서를 성 하여 고 으로 대법관 들의 신 하고도 도 있는 사 심리에 기여하 다고 생각합니다.

6. 기억에 남는 연구모임이나 동호회, 이유

○ 법관으로 재 하 서 회 등 법원 내 여 회 을 하고 소 법원의 구 이 정 법률 분야 구 니도 하 니다. 또한 사 법인 한 행정판 구회에 여하 는데, 행정법 등 법 분야에 관심이 아서 다 법관이 구자들과 이에 대해 의 을 는 이 니다.

7. 후보자가 집필한 저서, 논문, 판례평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유

○ ‘관리 분 회결의 확인소송의 법적 ’이라는 문이 가 기 에 니다.

○ 제가 대법원 재판 구관으로 근 하 서 해당 쟁 에 대하여 하 고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 판결이 선고 니다.

○ 위 판결은, ① 행정 인 재 조합을 대로 관리 분 에 대한 조합 회결의의 력 등을 다 는 소송은 행정 분에 이는 적 요 의 부 력 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 분의 위법 여부에 향을 치는 법 법률관 에 관한 이 로, 이는 행정소송법 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② 이 한 소송은 관리 분 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용할 필요가 있으 아가 관리 분 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 관리 분 은 행정 분으로서 력이 생하 로, 회결의의 하자를 이 로 하여 행정 분의 력을 다 는 고소송의 법으로 관리 분 의 소 또는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와 도로 행정 분에 이 는 적 요 하 에 과한 회결의 부분 을 따로 어내어 력 를 다 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은 한 사정이 는 한 용 지 는다고 아야 한다. ③ 이를 다 는 소송은

행정 분에 이 는 적 요 의 부 력 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 분의 위법 여부에 향을 치는 법 법률관 에 관한 이 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이 내용이 니다.

○ 이 판결에서 도시정 법 각종 분쟁과 관 하여 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 하는 일 의 기준을 제시하 고, 구 적으로 도시정 법 의 여 분쟁들이 법 당사자소송 을 명확 한 의 가 있으 , 이 한 이 로 이 문이 가 기 에 니다.

8. 대법관으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 후에 하고 싶은 일, 이유

○ 경 과 전문지식을 용하여 대 등에서 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합니다.

9. 후보자는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인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제47조)의 한계나 요건에 대한 견해

○ '사회기 시 에 대한 자법' 제47조에 따라 ' 을 위한 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 (의 이 등 제1 각 에서 정한 요 , 제1 서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심의, 제2 에서 정한)을 준수하여야 할 니다. 위 규정은 헌법 제23조가 하는 재 에 대한 제한을 정한 이 로, 일 정한 분이 위 요 을 하 는지를 판 할 에는 과 지원 , 의 원 , 재 의 적 내용 해 지원 , 정당한 등 헌법 제23조에 따 재 제한의 요 과 한 를 준수하 는지를 고 하여야 할 니다.

○ 다 , 관 사 (대법원 2024 47531)이 대법원에 이 로 대법관 자로서 구 적인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0. 해사법원 설치여부, 설치지역, 해사민사사건의 사건관할에 대한 각 견해

○ 최근 사 의 이도가 대 가하는 에서 전문법원을 신 하여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 으로 사 리 을 높이는 도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하 의 으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해사법원의 관할을 어 범위로 할 인지, 해사법원을 어에 치할 인지에 대하여는 은 의 이 있는 으로 고 있니다. 회에서 여 의 을 분 수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 으로 생각합니다.

11. 현재 서울, 수원, 부산에 각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최근 사 의 이도가 대 가하는 에서 전문법원을 신 하여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 으로 사 리 을 높이는 도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하 의 으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 회생법원이 서 , 수원, 부 에 치 어 있 니다. 전문성 제고 사 리 향 과 통일적인 사법서 제 을 위하여 회생법원 확대 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고등법원 역 로는 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회생법원의 사건수 대비 법관과 회생위원 등 관련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로 19 여 , 물가 리인 등으로 2019 이 감소하 전 도 사 수 수가 2022 가 로 전 하 고, 2023 에는 전 도 사 이 전 대 18% 이 가하 으 , 전 사 에 가 를 이고 있 니다. 2024 5 기준 전 도 사 수 수는 90,292 으로 2023 5 (84,871) 대 6% 이 가하 고, 으로도 지 적으로 가할 으로 니다. 이는 재정적 의 한 치에 한 자의 도 이용이 가 에 따 으로 니다.

○ 따라서 회생법원에 근 하는 법관, 회생위원 등 원을 원하는 이 바 합니다. 법관은 법관 정원에 따 한 가, 회생위원 관 원의 원은 기 재정부와 제 의가 이 어 야 한다는 한 가 있 니다.

○ 지 21대 회에서 「각 법원 판사 정원법」 정 이 의 으 , 아 도 기 로 기 으로 고 있 니다. 조 한 시일 내에 법관 정원이 적 원 어 전문성을 지 판사의 수가 원 수 있도 신경 시고, 기 재정부와 원 한 제 의가 어 회생위원 등도 분 원 수 있도 은 지원 부 리 니다.

13.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올해까지 최소 법조경력 5년이상, 내년부터는 최소 법조경력 7년 이상 경력 법조인 중에 판사를 선발하게 되는데, 경력기간 확대에 대한 견해, 대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

○ 법관 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 이 향 서, 인의 역에서 력을 인정받는 법조인이 법관으로 지원하지 하는 경우가 은 으로 고 있 니다. 아 도 자신이 은 경력과 지위, 수를 포기해야 하고, 지 근 를 해야 하는 사정 등에 기인한 으로 생각 니다. 결 우수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지원하도 하 수 등 우를 선하고, 재판 구원 등 재판 조인력을 분 확 하 , 과 한 법관 부 을 적정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 우리 라는 등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 니다. 1심 재판이 독으로 행 다 법관 용경력을 높이는 이 문제 다고 이지 지 , 재와 은 구조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사의 법조경력이 은 은 합의부 내의 다양성을 확 할 수 있고, 다양한 대의 관 에서 의 이 가 하다는 도 있 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당 청원이 국회법(제123조)과 청원법(제6조)에 따라 접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 회법 제123조 제4 , 청원법 제6조는 청원을 수하지 거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하신 사 은 관 법률의 해 ·적용이 문제 으로 생각 니다.

○ 다 ,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는 사 이고, 아가 정한 청원 내용이 관 법률에 따라 수대 인지 여부는 해당 법률의 해 에 관한 사 으로 이 부분이 사 수 있으 로, 이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5. 최근 사회 여러분야에서 'AI'(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일부 대형로펌에서도 초기 단계 'AI'를 도입하는 등 확대되는 분위기이고, 지난 1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에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

○ 법원은 인 지 기 을 용 으로 재판 의 성을 대 시 수 있고, 지 다 신 하고 정확한 원 서 를 제 할 수 있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 에서는 자 의 조사, 제출 문 의 내용 정리 등 기 을 인 지 이 수행할 수 있다 의 성을 대 대시 수 있고, 또한 법관이 이 에 하 력과 시 을 판결문 성과 은 다 요한 에 사용할 수 있 어 신 하고 한 재판에 도 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AI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명확하 지 고, 정 에 따라 향 등이 생 수 있으 , 소수자 사회적 자의 가 고 기 이 는 의 판 을 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가 판사(재판)를 대 하기는 어 고, 와 은 향이 바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AI는 재판지 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의 를 일 수 있는 향으로 용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최근 일부에서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법 제622조의 는 이사 등이 에 위 한 행위로 재 의 이 을 하거 제 자로 하여 이를 하 하여 회사에 해를 가한 역 또는 에 하는 규정으로, 최근 리아 (한 시의 가)를 해결하기 위한 으로 이사회 의 대 에 를 가하 (법)를 하거 지할 필요성이 으로 고 있 니다.

○ 와 관 하여서는 기 의 명성 제고와 정성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과 명확한 요 과 높은 법정 으로 기 에 어 을 하는 등 문제가 있으 로 지하여야 한다는 의 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지 여부는 위와 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하여 신 하 하여야 하고, 를 지할 경우 에 따라 생할 수 있는 문제 을 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이 어야 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17.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서 합의재판부 담당 예외 사건으로 규정하여 단독재판부 관할로 두고 있고 재정합의에 따라 합의부가 재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수 희생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법원조 법 제32조는 사 , 기 또는 기 1 이 의 역 또는 고에 해당하는 사 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 규정하 서, 「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의 '사 와 경 자등의 전 확 의 ' 또는 '도 , 용역, 위 등 관 에서의 전 확 의 '를 위 하여 사 자가 생한 사 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 에서 제 하고 있 니다.

○ 이에 관하여, 이 법의 법 지를 고 할 합의부에서 심리하도 해야 한다는 판이 있는 을 고 있 니다.

○ 최 대재해 법 법원조 법의 정 과정에서 이를 독재판부의 관할로 정한 은, ① 대재해 법 제정 당시 사한 의 범 , 대 과 치사, 전 법위 등의 사 을 독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 , ② 법원조 법에 따라 법정 으로 사물관할을 다 대 재해의 경우 법 제6조 제1 에 따라 '치사' 사 은 합의재판부, 법 제6조 제2 에 따라 '치 ' 사 은 독재판부가 심리하 는데, 경우에 따라

서는 치사 사 이 력 률이 해의 정도 등에 대한 심리 부 이 적은 경우가 은 등을 감 하여, 원 적으로 대재해 법위 사 의 사물관할을 독재판부 관할로 정하 사 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을 통하여 하 합의재판부가 심리하는 이 적 할 수 있 을 고 한 으로 고 있 니다.

○ 사재판에서 사물관할 경은 법률 정이 필요한 사 니다. 회에서 분한 의를 거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 으로 생각합니다.

18. 사법부의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이유

○ 법원의 가 근 적인 재 의의는 하고도 신 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인의 해 리를 구제하는 이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니다. 따라서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여 제도적인 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관 재판 구 원 원, 전문법원의 신 , 전문법관 제도 확대를 통한 법관 전문 , 심 제도 합리 등 제도적인 원에서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 리 을 높일 수 있는 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법률심인 고심의 제도 어야 합니다. 하는 고 사 으로 인해 전원합의 가 성 지 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 을 생각하고 있 니다. 결 고심사제 도 등과 은 고 제도 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 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 으로, 등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고 합의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은 우리 라의 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하는 이 기적으로 사법부에 우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준태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은 법률적 쟁송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 법관으로서의 높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재판의 독립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법원의 가 근 적인 재 의의는 하고도 신 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인의 해 리를 구제하는 이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니다. 따라서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여 제도적인 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관 재판 구 원 원, 전문법원의 신 , 전문법관 제도 확대를 통한 법관 전문 , 심 제도 합리 등 제도적인 원에서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 리 을 높일 수 있는 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법률심인 고심의 제도 어야 합니다. 하는 고 사 으로 인해 전원합의 가 성 지 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 을 생각하고 있 니다. 결 고심사제 도 등과 은 고 제도 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 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신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 으로, 등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고 합의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은 우리 라의 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하는 이 기적으로 사법부에 우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법적 정성을 확 하기 위하여는 한 사 에 할 수 있는 시 이 분해야 합니다. 서도 재판이 지 지 고 신 하 이 어지기 위해서는 재판을 당할 분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신 하 리를 구제하 서도 법적 정성을 확 하기 위하여 가 필요한 은 법관을 원하고, 법관 수에 하는 정도의 재판 구원이 확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은?

○ 법원 제는 대법원 에 인사 을 분 하고, 법원 에 소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으로 각 법원의 사법행정에 적인 요소를 도 하기 위해 으로 고 있 니다.

○ 2019 에 도 어 시범 시 기 을 거 2023 에 전 적으로 시 는데, 이를 통해 대법원 의 인사 문제와 법관의 관 문제가 어 정도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 제가 일종의 '인기 '가 고 있고, 있는 사법행정 행사가 지 아 오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지지 다는 판이 있는 도 인식하고 있 니다.

○ 법원 제의 성과와 한 를 하여 사법행정의 적 한 행사를 통해 하고 신 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사법질서 확립에 대한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은?

○ 법원의 재판도 가 용이 로 에 대한 판과 은 지 용 어야 하고 법관에 대한 판도 이 가 있다 수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정한 이념 또는 이해관 에 기 하여 합리적 이 이 법원의 재판과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을 하 서 법원의 판결이 향 다는 여론을 성하거 자신들의 을 관 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재판 결과에 대한 이 법관 인에 대한 인신 성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고 있는데, 이와 은 이 해 경우 법관들은 위 수 에 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 의는 위 로 지 니다.

○ 법치 의와 의에 대한 적 감대를 고, 과 생의 문 가 성 수 있도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법관의 거짓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무겁고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관이 거 을 할 경우 재판의 신 에 부정적인 향을 다는 에서 일 다 의하고 행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역대 대법원장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던 사례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 대법원 들 서 시대의 사법부에 선이 필요한 부분이 인지 고 하고 하여 의 신 를 받기 위하여 력하고, 선고한 판결, 한 정 에는 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정하고 신 한 재판의 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사명을 하고 수 은 사법 의 과제를 성하기 위해 를 포 한 법원 구성원 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후보자의 신념과 가치관의 배경이 되는 법언은?

○ 재판은 대립하는 당사자들의 과 거 등을 관적이고 정한 시각에서 하 하고 대조하는 의 니다.

○ , 일 당사자의 이 에 을 가지고 사 을 바라고 행한다 정한 재판을 할 수 고, 아가 사 에 부합하지는 재판을 할 가 성이 높 니다.

○ 우리 에 '한 고 송사 한다'는 이 있 니다.
한 내용이지 , 법관으로 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가 기적이 서도 요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9.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내린 판결 중 후회나 아쉬움이 남는 판결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 법관으로 재 하 서 최선을 다해 기 을 하 고,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분한 소통을 하고자 력하 니다. 제 력에 따라 부 한 판결이 있을 수는 있지 , 성심을 다해서 재판을 하여 회 아 이 는 부분은 니다.

10.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으로 공익소송의 활성화가 어려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 을 위하여 한 소송 에도 다 사 과 일하 소자에 소송 용을 부 시 다 , 경제적으로 어 들이 소를 제기할 수 고, 최종적으로는 소송 자 가 위 여지는 있 니다.

○ 다 , 소송의 념이 다소 명확한 등을 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 의 부 을 하 서도 이에 소하여 용을 지출한 대 당사자의 해 사이에 적 한 을 을 수 있는 이 신 하 어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 재, 사소송법에서 소송 용 소자부 의를 원 으로 하고 있지 를 인정할 수도 있으 로, 구 적으로 소송 용을 구에 부 시 인지는 재판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11.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담긴 의미와 헌법정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통 의 재의요구 은 대통 제에서 회와 대통 의 제와 이라는 헌법 원리를 구 하기 위해 헌법이 대통 에 부여한 헌법 한 니다.

○ 따라서 대통 의 재의요구 은 위와 은 헌법 원리에 부합 행사 어야 하 , 에 부합하는 한 최대한 어야 할 이 , 이를 어 용 는 은 용 수 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 의 재의요구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어서 대법관 자로서 이 이 의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 해 시 부 립니다.

12. 대법관 등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논란에 관련된 입장과 견해는?

○ 전관 우는 자가 관 기관에서 를 제 받는 으로서, 사법 에서의 전관 우 전 판, 사가 사로서 수사 재판과정 또는 결과에서 정한 를 제 받는 이라고 수 있 니다.

○ 이는 재판의 정성, 사법의 신 에 대한 문제로서 들의 우 가 다는 을 고 있 니다. 제 재하는지 여부와 관 이 관이 의 까지 식시 수 있도 법원이 부 력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사소송법, 법관 등의 사 분 사 당에 관한 규, 자의 이해 지법 등 관 규정에서 전관 우를 지하기 위하여 한 제 , 재 당, 신고 회 신청 제도도 분 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재판 지연현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견해는?

○ 재판 지 의 근 적인 원인은 사 수가 고 이도가 대 가 하 에 하여 법관의 수가 부 하기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조일원 로 인하여 법관이 고 에도 재판을 조할 수 있는 인력(재판 구원 등)이 부 한 도 요한 원인 하 라고 생각합니다.

○ 재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법원 의 재판, 법관 사 분 기 , 기 제의 요 원인 하 인 의 감정 의 선, 판결서 적정 , 적인 재판을 위한 심리 선 등이 재판지 해소를 위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지 을 해결할 수 있는 근 적인 법은 법관을 원하는 이고,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으로 용 수 있도 법관의 우를 선할 필요성이 있 니다. 재판 구원 원도 신 하 서도 한 재판을 위하여 시 필요한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14. 법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분쟁의 다양 · , 구 심리 의 판 심 의의 , 가사·행정 사 각종 신청사 의 가 등을 포 한 다양한 이 로 판사의 부 은 가하고 있는 니다. 따라서 의 신 하고 정한 재판을 받을 리의 적 을 위하여 법관의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재 사 이 이 적 어 심리가 지 고 있는 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 원은 필수적이고, 21대 회에서 의 정원(370명) 이 의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 舊 '사법정책자문회의'가 사법개혁의 어떤 부분에 기여했는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요한 사법행정사 에 관하여 법관과 부 전문가들이 대법원 의 자문에 으로 대법원 의 한을 분 하고 사법행정의 명성과 성을 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헌법 법률 근거 이 다는 판과 요 사법행정사 의 소재가 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의 성이 어 다는 판도 제기 으로 고 있 니다.

○ 지 6 에 사법정 자문위원회가 출범하 으 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성과와 문제 을 하여 적인 행을 통해 명성을 확 하 서도 적이고 있는 사법행정 이 기를 기대하고 있 니다.

16. '사법정책자문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 될 시 기대효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재판지 문제 해결 등 적한 사법행정 을 해결하고 이 사법부에 부여한 를 다하기 위해 법원조 법 제25조에 규정 사법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 으로 고 있 니다.

○ 과거에 사법정 자문위원회를 다시 하는 에 대해 법원행정 가 사법행정을 도하 과거로 회 하는 이 아니는 판도 있는 으로 고 있고 이 은 의해야 할 의 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에 출범한 사법정 자문위원회는 사회 각 의 인사로 구성을 다양 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할 수 있도 하 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원으로 하는 전문위원 구 도 구성하여 전문성을 리 서도 적인 의 행이 가 하 한 으로 고 있 니다.

○ 출범한 사법정 자문위원회가 기 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성과와 문제 을 하여 적인 행을 통해 명성을 확 하 서도 적이고 있는 사법행정을 구 하기를 기대하고 있 니다.

17. 대법관 또한 법관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라고 보는지? 아니라면 대법관이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어떤 근거로 조치하는지?

○ 대법관이 대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어서 명확한 법률적인 을 리기는 어 니다 , 헌법과 법원조 법의 법관에 대한 규정과 법관 법의 지를 고 하 대법관도 포 다고 해 할 수도 있지 을까 생각합니다.

○ 법관의 위행위 등은 의 재판에 대한 신 와 결 는 법관 리 위 행위로 인하여 사 가 있다고 인정 에는 신 하고 정한 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 올해 대법원 판례 중 성범죄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강조한 판례가 나왔지만, 최근 '동탄 경찰서 CCTV 사건'처럼 무고한 인원이 가해자처럼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 관련하여 후보자의 견해는?

○ 일 론으로 리 , 고범 는 인에 사 분이 분을 받 할 위 을 생기 하고, 이에 대 하기 위하여 인으로 하여 시 과 용을 지출하 하 심각한 정신적 를 수 있 니다.

○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은 에 지를 하 어 가 원의 사사법 역 을 어 리는 문제도 있 니다. 따라서 고한 사 이 해를 받지 도 사사법 가 정확하고 적으로 하여 하 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고 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경우 정당한 고소·고행사가 위 여지도 있으 로, 적 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자로서 사 에 관하여 이 이 의 구 적인 해를 리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9.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中 146위로 이는 군, 정부, 정치권보다 하위 수준임.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유와 개선대책은?

○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의 신 는 사법부 립 근거이자 이 니다. 우리 라 사법이 성 에서는 우 높은 가를 받고 있는 으로 고 있는데, 의 은 에도 구하고 사법신 도가 아지고 있다는 에 대해 법관으로서 거 감을 니다.

○ 이 한 가의 원인은, 종 사법의 독립과 재판의 정에 대하여 의 을 일으 여 사 , 의 감대를 지 한 판결결과, 최근의 재판지 문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부적으로는 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적인 리를 바탕으로 한 판결 결과에 대한 과도한 판과 여론도 사법신 도 하에 어 정도 향을 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과 법원에 대한 의 신 는 결 사법부 의 인 재판에 으로 회 할 수 있다고 니다.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 분한 론의 기회를 제 하고, 를 명하 하 , 한 심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한다 사법에 대한 신 는 회 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도적으로도 심 제도 재판 의 선을 통해 재판의 성

을 제고할 아니라 우수한 법조인력 확 재판 조인력의 원을 통해 인적 자원을 분 출 필요가 있 니다.

○ 또한, 전문법관 전문법원 제도를 확대하여 법원의 전문 를 도 하고 사 리역 을 으로 신 한 재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형사재판 중 국선변호 사건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연체 등 처우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은?

○ 들이 인의 조력을 받을 리를 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선 제도가 필수적 니다.

○ 다 최근 선 사 의 가로 선 인에 대한 수 등 문제가 제기 고 있고, 선전 사 지원자가 감소하는 라는 을 고 있으 , 우수한 선 인의 치를 위하여 우 선이 필요하다는 지에 감하고 있 니다.

○ 법원은 선 인 수의 를 지 적으로 요구하여 선 인의 기 수가 2022 사 당 45 원에서, 2023 50 원, 2024 55 원으로 어 고, 또한 소송구조 확대를 위한 확 를 위해서도 지 적으로 력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에도 여전 우수 선 인 확 를 위한 이 부 하다고 생각합니다. 관 확 를 위해 회에서 은 도 을 시 부 립니다.

21.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행법 재심사 는 제한하고 있 니다(사소송법 제451조, 사소송법 제420조). 이 는 로 거 사 관 가 다는 이 으로 재심을 인정할 경우 법적 정성을 해하고 분쟁이 종 적으로 해결 지 기 문 니다.

○ 로 사 관 에 어 수인할 수 을 정도로 정의에 하고, 이 재심사 에 포 는 으로 해 는 경우에는 재심이 가 하 으 , 대법원 판결이 확정 이 로 사 관 가 등 한다는 이 으로 기 판결의 력을 사리 부인할 수는 다고 생각합니다.

22. 지난 '95년 대대적인 비자금 수사 이후, '97년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비자금 관련 뇌물죄가 확정되었음. 그런데, 2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씨가 폭로한 전두환 비자금에 이어, 이번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통해서도 새롭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안방 비자금이 드러나, 당시 비자금에 관한 수사/판결이 충분했던 것인지 비판이 일고 있음. 대법원 판결 이후 범죄 수익금인 비자금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행법 으로는 소제기가 는 경우 법수 등을 수할 수가 는 으로 고 있 니다. 따라서 소시 가 지 에서는 도의 제도가 지 아니한 이 수 을 수하기 어 니다.

○ 행법과 지 는 부분이 있고 위 제도가 도 경우 생할 수 있는 우 등을 하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 사 으로 생각합니다.

23. 심급별 널뛰기 판결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심 기 판결은 아 도 사사 에서 심 에 따라 양 의 이가 다는 지적에 관한 으로 생각 니다. 일한 사 에 대한 판 에도 심 로 이 판결 결과에 이가 있을 의 높이에서 하기 어 은 분 이해합니다.

○ 각 심 의 재판과정에서 양 이 재판결과에 향을 치는 여 요소들이 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분 심리에 내리는 사 판 이 심 로 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 과 사 판 의 오 등을 해소하는 이 소제도의 지 하 이 로 심 로 양 이 판결 결과가 라지는 은 우리 법 가 정한 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다 , 양 조 등에 가 에도 양 에 이가 생기는 은 바 하지 으 로, 법원 내부적으로 양 에 대한 은 의 을 하고 양 기준을 준수하는 등 력을 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 2018년 해군 미투 판결(1심 징역 10년, 2심 무죄), 2019년 전남 지역 군수 3명 선거법 위반 판결(3명 모두 1,2심에서 당선무효형 판단이 모두 달라짐) 등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심급별 널뛰기 판결로 인해 국민 혼란 초래함. 특히, 가사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의 핵심요소인 재산분할대상, 기여도는 가사 비송사건에 해당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1심과 2심이 큰 차이를 보여 '원님 재판'이라는 비판 있음.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일한 사 에 대한 판 에도 심 로 판 내용에 이가 있을 의 높이에서 하기 어 은 분 이해합니다.

○ 이 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심 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에 니다 , 이 한 사 가 이 생하는 은 바 하지 은 이 있 을 인정합니다.

○ 이를 최소 할 수 있도 법원 내에서도 깊은 구와 은 의 등을 하도 지 적으로 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주요 사안의 판결에서 주취 사유나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판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특히, 주취감경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로 인한 심신 을 이 로 을 감경 에는 우 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자의 의사는 을 정하는 데 당 요하 고 할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자가 고인에 대한 선 를 원하는 경우에는 양 에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해자에 대하여 전적인 이 있 다는 이 로 조 감 을 하여서는 이지 해의 내용(재 적 범)이 해회 의 정도에 따라서 이 필요한 사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주요 국보법 사건들 모두 1년 이상 재판 중.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전략과 관련해 형소법 20조의 적용 및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고인의 여재판 신청, 기 신청, 관할이전 신청 이에 대한 고 등이 재판지 의 전 으로 용 다는 지적을 고 있 니다. 이 한 리를 재판지 의 수 으로 용하는 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 가 있 지 법원으로서는 적 한 소송지 행사 등으로 지 을 지하기 위하여 력할 필요가 있 니다.

○ 다 , 이 한 행위가 사소송법 제20조의 해당 요 을 하는지 여부는 구 적인 사 관 에 따라 라 수 에 고, 이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조배숙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조배숙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법관은 법률적 쟁송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 법관으로서의 높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재판의 독립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법원의 가 근 적인 재 의의는 하고도 신 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인의 해 리를 구제하는 이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니다. 따라서 하고 신 한 재판이 이 어 수 있도 여 제도적인 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근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관의 원이 필수적 니다.

○ 또한 법조일원 제도의 지에 판사의 경 과 경 을 재판 행과 판 에 할 수 있도 재판 조인력의 확 가 필수 니다. 이에 따라 판사 수에 하는 정도의 재판 구원을 확 하는 이 시 합니다.

○ 지 으로, 과 리 합의부 재판 이 당 높고 합의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은 우리 라의 에서, 법관 용경력을 높이 법관의 고 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신 한 재판에 당한 가 생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라 사법의 구조와 등을 고 하여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 을 5 으로 지하는 이 기적인 에서 사법부에 가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3건

○ 경기대 대 조 기 제· 근로 사 (서 고법 2011 39419)

- 정규 전 을 회 하기 위하여 근로를 이용하여 기 제 근로와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을 기준으로 사용사 (법인)와 근로자(대 조) 사이의 시적 근로 관 성립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법이 용 지 을 명확 하 니다.

- 또한, 기 이 정 이 는 근로자 에도 사 서를 수리하는 식으로 리한 은 정당한 이 이 근로관 를 종 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 하여 이 한 식으로 근 를 종 시 는 관행에 제 을 니다.

○ 오거리 사 (고법 2013재 3)

- 고인은 시에 있는 오거리 으로 하 시 전기사인 해자를 식 로 해 다는 범 사 로 기소 어 재심대 판결에서 역 10 을 선고 받 니다.

- 고인은 이 재심을 신청하 고, 자는 재심에서 고인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 이 경찰의 행 등에 의한 으로 신 성을 인정하기 어 고, 고인이 범행에 사용 등에서 이 출 지 은 사정 등을 고 하여 고인에 대하여 를 선고하 니다. 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

이 범에 대한 기소가 이 어 고 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 니다.

- 이 사 에서 를 선고하여 범이 기소 수 있는 여 이 고, 에 따라 하 를 받은 고인과 인 해자의 이 위로를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 니다.

○ 인 시 사 (수원고법 2022 13080)

- 성시 지 원 경쟁 용시 에 원고는 인 전의 일한 필기 합 자로 을 니다. 최 에서 와 관 이 는 등에 대한 문을 받고 ‘ ’ 등 받 고, 이 가 에서도 ‘ ’을 받아 최종 하 니다.

- 이에 대하여 1심은 최 에서 에 대한 문을 한 은 행위에 해당하지 , 가 에서 시정 에 따라 하자가 치 다고 지 , 는 최 에서의 등 에 따라 가 대 자로 분 이 로 최 의 결과에 따 향이 있는 이고, 원고가 인 전 의 일한 합 자 사정을 고 하여 최 의 행위가 시정 다고 수 다고 판 하 니다.

4.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이유와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의 신 는 사법부 립 근거이자 이 니다. 우리 라 사법이 성 에서는 우 높은 가를 받고 있는 으로 고 있는데, 의 은 에도 구하고 사법신 도가 아지고 있다는 에 대해 법관으로서 거 감을 니다.

○ 이 한 가의 원인은, 종 사법의 독립과 재판의 정에 대하여 의 을 일으 여 사 , 의 감대를 지 한 판결결과, 최근의 재판지 문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부적으로는 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적인 리를 바탕으로 한 판결 결과에 대한 과도한 판과 여론도 사법신 도 하에 어 정도 향을 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과 법원에 대한 의 신 는 결 사법부 의 인 재판에 으로 회 할 수 있다고 니다.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 분한 론의 기회를 제 하고, 를 명하 하 , 한 심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한다 사법에 대한 신 는 회 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도적으로도 심 제도 재판 의 선을 통해 재판의 성을 제고할 아니라 우수한 법조인력 확 재판 조인력의

원을 통해 인적 자원을 분 출 필요가 있 니다.

○ 또한, 전문법관 전문법원 제도를 확대하여 법원의 전문 를 도 하고 사 리역 을 으로 신 한 재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법조계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전관 우는 자가 관 기관에서 를 제 받는 으로서, 사법 에서의 전관 우 전 판, 사가 사로서 수사 재판과정 또는 결과에서 정한 를 제 받는 이라고 수 있 니다.

○ 이는 재판의 정성, 사법의 신 에 대한 문제로서 들의 우가 다는 을 고 있 니다. 제가 전관 우를 경 한 사 은 지 , 제 재하는지 여부와 관 이 관이 의 까지 식시 수 있도 법원이 부 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사소송법, 법관 등의 사 분 사 당에 관한 규, 자의 이해 지법 등 관 규정에서 전관 우를 지하기 위하여 한 제 , 재 당, 신고 회 신청 제도를 분 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에 대한 우 ,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 , 생법관제의 정 등 전관 우 우 를 식시 수 있는 여 제도적 치를 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 거취에 대한 견해는?

○ 경 과 전문지식을 용하여 대 등에서 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합니다.

7. 존엄사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회생 가 성이 고, 치 에도 구하고 회 지 아니하
도로 이 어 사 에 한 에 있는 자에 대한
명의 결정 등 사 에 관하여 「 의
종과정에 있는 자의 명의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어
시행 니다.

○ 재, 이 바 적극적 사는 용 지 고, 생명 지에 필요한
물 여 등을 하는 의 소극적 사 용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사 용 여부 범위는 인 의 생명 과 결부 문제이 로,
은 사회적 의와 의 수 을 거 적 감대가 성
필요가 있는 역이라고 생각합니다.

8. 사형제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 제도는 인 의 대적 가치인 생명을 대 으로 하는 이기 문에 우 조심 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 제 지를 하는 거로는, 지가 전 적인 이고, 한 행 결과를 이 수 으 , 제도의 범 지력도 적으로 바가 다는 등을 들 수 있 니다. 치를 하는 거로는, 인, 대규 인명 등 인 적 범 가 여전 재하고, 한 범 로부 전하다고 수 는 에서 의 법 감정, 으로서의 성 등을 들 수 있 니다.

○ 양 거 당한 이 있고, 행 헌법에도 사 제도가 있 을 전제로 한 규정(제110조)이 있어서 헌법에서 사 제를 용인하고 있다고 여지도 있 니다.

○ 결론적으로 사 제 여부는 인 의 과 가치, 생명 등 헌법 규정의 한 해 과 어 사 의 일 적 과, 의 법감정, 해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 제도는 인 의 대적 가치인 생명을 대 으로 하는 이고, 일 행이 에는 사 오판이 있 다 하 라도 수 기 문에, 대 수 으로 가 는 종신 을 도 하자는 의가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이와 관 하여 적으로 사 이 행 지 고 있으 로 가 는 종신 을 도 하여 기 역이 가지고 있는 한 를 극 하여야 한다는 의 도 있고, 대로 가 는 종신 자 에 대한 위헌성 , 사 제를 치하 서 가 는 종신 을 도 할 경우의 부 용 등에 대해 신 한 가 필요하다는 의 도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결 가 는 종신 제도의 도 은, 사정 적으로 적 한 수 인지, 사 제 지를 전제로 의할 인지 등 제 문제에 대해 해 법 와 제도 등에 대한 한 구와 의 의 수 론 를 거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소년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어 이에 인하고 심각한 범 를 지 는 사 가 론에 자 도 고 있 니다. 이에 법소 의 을 하향하고 소 분을 지하여 사 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 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의 도 경청할 필요가 있지 , 어 이의 소 들을 사 하여 을 수 있는 이 과 에 따 부 용에 대한 한 가 선행 어야 합니다.

○ 소 분 지의 경우에는 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 하여야 할 기 이 이 은 소 에 대하여 과 치 등을 포기하고 다 로 내 우 가 있으 로 신 하 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 라의 역사적 경 과 재의 등을 고 할 , 가
법 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 이 있을 수 에 니다.
따라서 가 법의 여부는 회에서 분한 의와 의 수
을 거 법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및 유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인 으로서의 과 가치는 자신이 한 사회 제의 와 관
이 인 이라 야 할 기 적이고 적인 리이
기 문에, 한 들이 기 적인 인 을 향 하지 하고 있는
에 대해 아 생각합니다.

○ 인 이사회는 2003 부 한인 결의를 통해 한과
등 제사회에 한인 선을 위한 력을 구하고 있고,
회도 2005 부 회 결의를 통해 한 내의 인
해·식 위기 등 인도적 에 대해 한의 선 력을 구하
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내에서도 2016. 9.부 한 의 인 을 위한
한인 법이 시행 고 있는데, 한 들의 인 에 대한
위 법률과 제사회의 깊은 우 에 감하 , 한 의 인 문
제 해결을 위해 제사회와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정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11조는 구 지 성 , 종 ,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역에 있어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 법률에서 각 역 로 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니다.

- 「 인 지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 지 고 자고용 에 관한 법률」, 「 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 등기 법」 등

○ 에도 구하고 헌법이 법률에 명시 지 은 역에서 을 포 적으로 지하는 지법의 도 지에는 기 적으로 감합니다.

○ 다 , 지법이 성소수자 인정법 인지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4.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법률적 쟁송의 최종심으로서,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법 해 의 통일을 기하는 역할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정 법원의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재 하는 고 사 으로 인해 대법원이 위와 은 최고법원, 정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하고 있어 고제도를 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니다.

○ 대법관 원도 고제도 선 하 로 할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지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하는 하 의 전원합의 를 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제도 선은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각 의 의 수 을 거 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 고에는 한 제한이 니다. 따라서 고가 제기 는 사 수가 우 고, 이를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은 역 이 고 있 니다.

○ 식적으로 생각하 고에 아 제한이 는 이 의 재판받을 리를 분 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 니다. 물론 는 이 있지 , 사법 자원은 한정적 니다. 한정적 자원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 이 지 하 , 전 로서 사 리가 지 거 필요한 사 에 역 이 지 하는 결과가 생할 수 에 고, 이는 의 재판받을 리 에 역행하 니다.

○ 한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역할과 기 을 다 할 수 있고, 이 한 역할과 기 에 역 을 분 을 수 있도 대법관 원 다 우선하여 고 가제(고심사제) 고법원 도 등 고심 제도 선이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이는 우리 라의 심 전 에 향을 치는 요한 사 으로서, 의 결과를 대로 각 의 의 수 을 거 할 으로 생각합니다.

16. 고법부장제, 법원장추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고등법원 부 판사 제도의 지로 법관들의 기 부여가 사라다는 지적을 고 있 니다. 물론 수 이 가는 도 있으 , 법관의 관 를 부 기고 에서 제 법관들이 대규 로 사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오 기 분한 의를 거 지으로 고 있 니다. 따라서 에서 부 시 는 은 적으로 어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 제는 적·수 적 사법행정 구 이라는 정적인 이 있으 , 법원 이 오 재판 지원이라는 의 역할을 하 수행하기 어 여 이 다는 판도 있니다. 법원 인사와 관 하여서는 법원 제의 성과와 한를 하 하고, 구성원들의 의 을 분 들어 바 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사실상 법원장들의 사법행정권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최소한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위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각 법원의 사법행정 기 이 어 이 어지고 있는지 일률적으로 판 하기는 어 니다 , 사법부의 전 적인 재판지원 역 이 고 이로 인해 재판지 문제가 대 어 의 사법신에 향을 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신 하고 한 재판을 통한 의 리 은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사명이 로, 이를 위한 사법행정 한이 적정하 행사고 있는지, 이를 위해 규범을 제정하는 이 적 한 인지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사법행정이 구 적인 재판에 하거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일이 생하지 도 의를 기 여야 하고, 규범 제정에 관하여 분한 의와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 김명수 前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대법관회의 및 전국법원장회의가 유명무실해지고 반면 전국법관회의가 사실상 사법부의 주요사항을 결정함.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 회의의 활성화 및 전국법관회의 기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회의, 전 법원 회의, 전 법관대 회의는 과 립 근거를 해 각 회의의 구성과 역할, 목적도 다 기 문에 전 법관회의가 사 사법부의 요사 을 결정한다거 , 대법관회의, 전 법원 회의가 명 해 다는 의 에 대해서는 의하기가 어 니다.

○ 대법관회의는 의 리의 에 향을 치는 대법원 규 을 제· 정하는 등 사법부의 요사 을 결정하는 역할을 고 있고, 전 법원 회의는 사법행정을 당하는 법원행정 과 법원들이 사법행정사 에 관한 에 대해 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 , 전 법관대 회의는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 법관 대 들이 여서 사법행정 법관 독립에 관한 사 에 대해 의 을 명하거 의하는 역할을 당하고 있어 각각의 목적에 따 한 을 통해 사법부의 전에 헌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 와 을 통해 적정하 용 어 사법부 전과 사법서 수준의 향 을 위한 향이 어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19. 경력대등재판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지 법원 경력대등재판부는 2019 시범 시 이 로 재까지 지 적으로 재판부 수가 어 고 있으 , 경 과 이 부하고, 지위, 기수, 경력 등이 대등한 부 판사 3인으로 구성 어 적인 합의 재판을 구 하고 재판의 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하여 경력대등재판부가 심인 부 판사 인의 의 에 따라 재판이 이 어 다는 우 가 있다는 도 고 있 니다.

○ 경력대등재판부의 을 리 서 와 은 우 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기 적으로는, 경 이 부한 법관(부 판사)들이 판결 서 성이 아 기 에 은 시 을 으로 법정에서의 재판 행과 치 한 합의에 역 을 다 할 수 있도 재판 구원을 분 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 구원을 치 으로 은 대의 가치관이 시각도 판결에 할 수 있고, 한 사 을 판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 을 고 할 수 있는 도 있기 문 니다.

20. 작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연대책임 제한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이 판결은 법 행위를 한 조합원의 해 이 인정는 사 에서, 조합원의 제한 정도는 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여 경위 정도, 해 생에 대한 기여 정도, 적인 수준과 해 청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판 하여야 한다는 지 니다.

○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기 에 하 심리하여 판 한 으로, 어야 한다는 생각 니다.

21.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법행정의 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의 사법행정기구를 치하고 구성을 일부분 법원 부에 하여야 한다는 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부분이 있 니다.

○ 사법행정기구는 법 부 등 행정부에서 사법행정을 당하는 가를 심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지 기 위한 의 하 로도 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의 사법행정기구는 의회, 제판사 회 등 다양한 제기구의 고에 따라 구성원의 과 수가 사법부 내부 인사로 원 고, 역할도 대부분 법관 인사, 등에 대해 행정부로부 독립 의 을 제시하는 정도인 으로 고 있 니다.

○ 이 제도의 지가 사법부의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을 확 하기 위한 인 , 우리 라의 법 와 등을 고 하여 신 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현직 판사가 SNS 상에 특정 정치성향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관은 법정에서 아니라 인적인 생 에서도 위 지에 각 의를 기 여야 하고, SNS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쟁 에 관하여 의 을 명하는 경우에도 자기 제와 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위를 지해야 하 , 이로 인해 정한 재판에 향을 수 있는 관을 들지 도 신 하 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자 리위원회는 위와 은 내용으로 고의 제7 를 하여 법관이 SNS를 사용하여 의사소통과 다양한 인적 관 를 성할 수 있 을 전제로 과정에서의 의할 사 등을 제시한 으로 고 있 니다.

○ 또한 2023. 12. 전 법관대 회의에서도 '법관은 SNS를 이용할 법관으로서의 정성에 의심을 일으 한 관을 들거 법관으로서의 위를 하지 도 의해야 한다.'는 고의 을 내기도 하 으로 고 있 니다.

○ 으로도 법관의 합리적인 SNS 이용 에 관하여 지 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명수 전 대법원 당시 , 의 사법 근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범위 확대, 인에 대한 사법지원 재판 확대 등은 정적인 성과를 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지원 심의 수 적, 적 사법행정의 확립을 위하여 력한 도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로 19의 향, 법관 용 인사 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전 적인 사 리가 지 는 양 을 인 은 아 이라고 생각합니다.

○ 역대 대법원에서 해 사법정 들 하여야 할 부분과 선해야 할 부분을 적 선 하여 사법부에 대한 의 신를 제고하는 데 력을 기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소위 거짓말 논란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 과 고위 법관 사이에 위와 은 이 생한 에 대하여 까 니다.

○ 해당 사 의 구 적 사 관 등에 대하여 정확 지 하는 자가 이에 대해 의 을 명하는 은 적 하지 아니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5. 현재 특정 성향의 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주요 요직에 자리 했다는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정한 재판을 위한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은 사법부의 립 근거이자 재 이 로서, 법관은 와 수라는 정한 이념에 지 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 으로 은 소 을 다하기 위해 력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법관이 정 구회에 소 어 있다는 사정 으로 법관이 정치적으로 향 어 있다고 정하는 은 지 다고 생각하고, 로 인하여 법원 내 갈등이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니다.

○ 다 , 정치적 향성이 있는 이라거 정 구회가 력 다는 우 가 있다는 으로도 사법신 , 재판결과의 등에 부정적인 향을 수 있으 로, 이 우 가 생하지 도 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니다.

26. 대법원(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 는 이해관 를 조정하고 통합 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 로, 이 한 관 에서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 해야 한다는 의 에 의합니다.

○ 한 , 사법적 쟁송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어 신 하고 정확한 사 의 해결이 조 는 재 에서, 오로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 를 위해 역 등을 기준으로 식적으로 근하기 다는, 사회를 바라 는 가치관과 등을 기준으로 적인 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할 수 있도 하는 도 필요하지 을까 생각합니다.

○ 최근 여성 법조인의 이 당 높아 고, 적인 법조 일원 제도가 시행 지 10 이 지 에 따라 법관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어 향 대법원의 사회적 다양성이 확 수 있을 으로 생각합니다.

27. 각급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후보자의 대처 방안은?

○ 사 리 지 의 근 적인 원인은 사 수가 고 이도가 대 가하 에 하여 법관의 수가 부 하기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조일원 로 인하여 법관이 고 에도 재판을 조할 수 있는 인력(재판 구원 등)이 부 한 도 요한 원인 하 라고 생각합니다.

○ 재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법원 의 재판, 법관 사 분 기 , 기 제의 요 원인 하 인 의 감정 의 선, 판결서 적정 , 적인 재판을 위한 심리 선 등이 사 리 지 해소를 위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 리 지 을 해결할 수 있는 근 적인 법은 법관을 원하는 이고,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으로 용 수 있도 법관의 우를 선할 필요성이 있 니다. 재판 구원 원도 신 하 서도 한 재판을 위하여 시 필요한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28. 사건이 남아있더라도 오후 6시면 재판을 끝내는 이른바 '땡퇴근' 및 3·3·3캡(주3건씩 3주간 총9건 판결문 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판이 6시 다 다고 해도 당사자의 의를 위하여 재판을 하여 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에 감합니다. 다 , 대부분의 재판부에는 자 를 양 하는 판사 원이 있고, 기자의 다수는 이 니다. 이 한 경우에 일과시 이 에 재판이 행 아이들 하원 등에 당한 지 을 는 경우가 생 수 있 니다. 여기에 재 우리 라는 심각한 출 문제를 고 있는 과 자 대의 문 는 제가 아 과 이가 있는 등을 고 하여 합리적인 해결 을 지 적으로 기 위한 력을 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 이 바 3·3·3 의 경우 이를 재판지 의 근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니다. 데 종 사합의부 소가가 2 원 과일 와 리 2022 부 사합의부 소가가 5 원 과로 향 어 사 의 이도가 하고 기 수도 적으로 가하 기 문에, 1 3 선고가 적은 이라고 수 는 도 있 니다. 제가 2011 부 하여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 서 사 의 이도 기 의 양이 지 적으로 가하고 있 을 감하 니다. 결 재판지 의 해소는 적 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하여 이 어 야 할 이고, 에서도 법관 재판 구원의 원

이 필수적이라고 할 니다.

29. 장기미제 사건 해소를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 기 제 사 의 근 적인 원인은 사 수가 고 이도가 대 가하 에 하여 법관의 수가 부 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조일원 로 인하여 법관이 고 에도 재판을 조할 수 있는 인력(재판 구원 등)이 부 한 도 요한 원인 하 라고 생각합니다.

○ 재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법원 의 재판, 법관 사 분 기 , 기 제의 요 원인 하 인 의 감정 의 선, 판결서 적정 , 적인 재판을 위한 심리 선 등이 재판지 해소를 위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 기 제 사 을 해소할 수 있는 근 적인 법은 법관을 원하는 이고,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으로 용 수 있도 법관의 우를 선할 필요성이 있 니다. 재판 구원 원도 신 하 서도 한 재판을 위하여 시 필요한 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30.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되었다는 소식을 최초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 받았는지?

○ 2024 6 27일 16:25경 조 대 대법원 으로부 전 를 받아 니다.

31.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대략 몇 건의 사건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판결은 어떤 사건인지?

○ 재까지 대 의 사 을 리하 는지는 확인하지 하니다.

○ 가 판결을 내리기 어 사 은 도에서 생한 성범 사 니다. 해당 사 에 대하여는 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이 어 있는 으로 고 있으 로, 2 해를 지하기 위하여 자 하 하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니다.

32.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대표 사건 3건의 사건 개요, 판결, 판결이유는?

○ 은수 성 시 이 2016. 6. 15.부 2017. 5. 25.까지 A법인이 와 등을 지 하는 최OO이 전하는 을 95회 이용으로 , A법인으로부 수 의 정치자 을 기부받 과 시에 정치자 법에 정하지 아니한 법으로 수 의 통 당의 정치자 을 기부받 다는 의로 기소 선거법위 사 (수원고법 2019 391) 니다.

- 1심에서는 93회의 이용에 대하여 정치자 법에 정하지 아니한 법으로 수 통 당의 정치자 을 기부받 은 으로 인정하여 90 원을 선고하 니다.

○ 는 이 사 의 재판 을 아, 사 오인(판)에 대하여는 사와 고인의 소를 기각하 으 , 양 과 관 하여, ① 전 를 제 받 경위 기 , 로 인해 경제적 이 규 등에 어 , 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전한 전에 기여할 정치 과 관 정성·청 성에 대한 의 신 를 일 아니라, 을 기는 정치인의 기 자 를 각한 으로서 가 성이 우 , ② 정치자 을 부정하 수수하 는지 여부는 정당의 자 과정에서 을 제할 한 요 사 일 아니라, 자들의 과정에서도 선거 자의

자 과 적합성을 판 하는 데 우 요한 요소인 , ③ 이 한 행위는 정당의 지 자들의 의사 결정에 대한 향을 등을 고 하여 당선 에 해당하는 300 원을 선고하 니다.

○ 고인이 고하 고, 대법원(2020도2795)은 소이 서에 '법인으로부 자 수수 부분이 로 인정 다 , 법정 정치자 수수의 에 관하여서 90 원을 선고한 원심은 양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기재 어 있는데, 이는 부분이 로 인정 을 전제로 한 양 부당 일 부분에 대한 양 부당에 관하여는 구 적인 이 가 기재 어 있지 에도 양 부당으로 기하는 은 소심의 심판범위와 이 경 지원 등에 위 다는 이 로 기 송하 니다.

○ 해당 사 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합니다. 다 , 사가 소이 로 '사 오인' 을 하 는데 소심에서 부분을 로 기하는 경우 양 부당을 기재하지 라도 높은 을 선고하 로, 소이 로 사 오인과 양 부당을 기재하 다 · 에 관하여 1심과 일한 판 한 지 는 경우에는 양 부당을 판 하여 라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사 은 이 한 해 을 바탕으로 판 하 니다.

33. 헌재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결정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관 법률은 회에서 기 의를 거 법 고, 법률 이 통과 는 과정에서도 은 이 있 니다. 헌법이 규정한 사의 청구 을 해하지 는 범위 내라 , 수사기관 의 한 분은 법정 적 결정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 , 이 한 법률 정은 을 위한 향으로 이 어 야 할 니다. 관 법률이 시행 이 정 이 등을 바 한 향으로 선해 가 기대합니다.

34. 22대 국회 이기헌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국조완박(국정원 조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의하신 사 이 이 의 어 회에서 의 인 법률 에 관한 이고,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는 사 이 로, 대법관 자로서 인적인 해를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5.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관의 근로의욕 고취 및 인사 제도 개혁 방안은?

○ 고등법원 부 판사 제도의 지로 법관들의 기 부여가 사라다는 지적이 있 을 고 있 니다. 물론 수 이 가는 도 있으 , 법관의 관 를 부 기고 에서 제 법관들이대규로 사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오 기 분한 의를 거 지으로 고 있 니다.

○ 법관이 자 심을 가지고 를 할 수 있는 경 조성, 법관의 과 한 조정, 한 경력의 사와 할 부 한 수 등 우 선이 이 어 법관이 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으로 생각합니다. 해 수 구법관 제도의 확대도 시 필요합니다.

○ 아가 법관인사도 으로 법관의 근 의 을 고 하기 위한 향으로 재 어야 하고, 다양한 에서 심하 필요가 있 니다.

36. 강제징용 관련 제3자변제 공탁불수리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최근 정부의 제3자 제 을 기 로 한 신청에 대해 관의 수리 분이 있 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고 가 행 인 으로 고 있 니다.

○ 대법관 자로서 재 행 인 사 과 관 하여 구 적인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7.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11. 29. 1심이 선고되어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등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음. 문제는 1심 판결까지 3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송철호는 울산시장을,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으로 리기한을 선거법의 지와 지 으로 생하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고 하 , 선거법위 사 이 가 적 기 내에 리 어야 한다는 에 의합니다.

○ 다 , 기 을 준수하지 하는 은 재판부의 재판 지 다는 로, 제한 사합의부 수, 기 이 대하고 쟁 이 한 사 의 가, 한 사 에서 찰 의 기 · 사 지 에 따 기일 전, 고인 인의 어 에 따라 일 정 야 정의 제한 등에 기인한 으로 생각합니다.

○ 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분한 재판부 확 를 위한 법관 원, 신 한 · 사를 위한 찰의 조치, 판준 를 통한 심리 등 다양한 에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8.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회법은 회의 소 에 관한 사 을 규정하고 있니다. 하신 사 은 재 정치적 이 하 대립하고 있는 부분으로, 대법관 자로서 인적인 해를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9.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장 가겠다", "비회기 중 영장청구 하라"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처럼 형사사건 소환 조사 일시, 영장 청구일을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소송법 제200조는 ‘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에는 의자의 출 을 요구하여 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니다.

○ 구 적인 사 과 관 하여 정 정치인이 행한 에 대해 대법 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40.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립은 과거에 해 높은 수준으로 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자신들의 이해관 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판과 을 제기하 서 법원의 판결이 향 다는 여론을 성하 는 경우가 종종 있 니다.

○ 사법부의 독립을 확 하 , 사회 여 력으로부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 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사법부 원에서도 판결에 대한 과도한 에 대하여 정하 대 으로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할 수 있는 경을 해 어야 합니다.

○ 또한 사법부 성 의 독립 등 물적 여 을 확 하고, 법관이 정적인 경에서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 법관전 등 법관인 사제도도 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 , 법정에서 아니라 인적인 생 에서도 위 지에 각 의를 기여야 하고, 인적인 으로 인해 정한 재판에 향을 수 있는 관을 들지 도 신 하 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 가기관은 의 과 리 을 위해 재하는 , 기관의 종 여하를 론하고 시적으로 이 한 근 적 가치의 에 부 하거 이 는지 아 고 이 제도의 력을 할 의 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찰 역시 가지로, 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정하고 립적이 독립적 위치에서 합리적이 적정하 수사를 으로 법과 정의를 바로 우고 의 인 을 하 해야 한다는 에서 한 제도 의 력을 을리 해서는 다고 생각합니다.

○ 제도의 선은 기 적으로 찰 의 행사를 다 기관이 적 통제하는 향으로 이 어 야 할 필요가 있을 니다.

○ 다 , 범 자들에 대한 수사 과 의 정한 에 대한 들의 한 요구를 고 할 , 찰의 한 용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가 전 의 수사 소 역 이 지 치 지 을 수 있도 제도를 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해임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106조 제1 은 법관은 또는 고 이 의 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 아니하고, 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 ·감 기 리한 분을 받지 는다고 규정하고 있니다.

○ 이는 헌법이 법관의 신분과 분의 한 를 규정 으로 헌법에 해 정이 용이한 법률 정을 통해 과거 신헌법과 이 으로 법관을 할 수 있도 할 가 성을 고자 하는 성적 고 에서 으로 고 있 니다.

○ 따라서 법률에 해 제를 규정할 경우에는 관 헌법 규정과의 조 여부, 재판 독립 해 가 성 등 부 용에 관한 분한 가 이 어 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 다 , 헌법이 명문으로 법관의 신분을 하고 분의 한 를 규정한 은 어 까지 재판의 독립을 하기 위한 수 인 이지 법관에 를 제 하기 위한 이 아 은 자명합니다.

○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하는 에 하여 법관은 다 일 원에 해 높은 과 리의식을 아야 한다고 생각하 , 법관의 위 생 시 정한 리가 필요하다는 의 에 감합니다.

43. 현행 판사연임심사제도에 대한 공정성 및 외부평가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헌법은 법관의 기제와 제를 규정하고 있 니다. 이는 법관의 신분을 하 서도 법관이 수행하는 의 대성을 고 하여 정 적인 를 수행하지 하는 법관을 에서 제 할 수 있도 하는 니다.

○ 심사를 통해 정 적인 수행이 어 다고 판 는 법관을 가 내어야 할 이지 , 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해 지 도 적정한 심사가 이 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 법관인사위원회에서 판사에 대한 여부를 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11명 9명이 심사에 관여하는데, 위 9명 2/3에 해당하는 6명이 부위원이고, 부위원 에 2명은 법조인 위원으로 고 있 니다. 법조 역과 일 을 대 하는 다수의 부위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하여 하 심사가 이 어 다고 할 수 있 니다.

○ 재판의 독립을 해하지 으 서도 법관이 의 높이에 는 성과 력을 출 수 있는 향으로 적정한 심사가 이 수 있도 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 법관평정 결과 공개와 변호사단체 법관평가결과 반영 등 법관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관 정 결과 는 내부적으로 법관의 사기를 어 수 있을 아니라 필요한 오해와 을 야기할 우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 사 의 법관 가결과는 재판받는 당사자를 대리하거 고인을 하는 사가 가한 으로, 한 가 결과에 관성과 정성이 는 인지, 이로 인하여 재판독립이 는 등 문제는 는지 등을 신 하 하여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45.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 여성, 노인, 성적 소수자 등을 위해 그동안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 제가 법관으로 사회적 자를 위하여 한 일은 들을 위한 판결을 한 니다. 대 적인 판결은 아 와 니다.

- 경기대 대 조 기 제· 근로 사 (서 고법 2011 39419): 정규 전 을 회 하기 위하여 근로를 이용하여 기 제근로와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을 기준으로 사용사 (법인)와 근로자(대 조) 사이의 시적 근로 관 성립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법이 용 지 을 명확 하 니다. 또한, 기 이 정 이 는 근로자에도 사 서를 수리하는 식으로 리한 은 정당한 이 이 근로관 를 종 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하여 이 한 식으로 근 를 종 시 는 관행에 제 을 니다.

- 인 시 사 (수원고법 2022 13080): 성시 지 원 경쟁 용시 에 원고는 인 전 의 일한 필기 합 자로 을 니다. 최 에서 와 관 이 는 내용 등에 대한 문을 받고 ‘ ’ 등 받 고, 이 가 에서도 ‘ ’을 받아 최종 하 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최 에서 에 대한 문을 한

은 행위에 해당하지 , 가 에서 시정 에 따라 하자가 치 다고 지 , 는 최 에서의 등 에 따라 가 대 자로 분 이 로 최 의 결과에 따 향이 있는 이고, 원고가 인 전 의 일한 합 자 사정을 고 하여 최 의 행위가 시정 다고 수 다고 판 하 니다.

- 기 제 전 사 시정사 (서 고법 2013 51093): 자 전 원에서 기 제 전 사와 정규 전 사 사이에 여 등에 관한 이가 기 제법이 지하는 적 행위인지, 기 이 종 한 기 제 전 사가 시정명 을 구할 이 이 있는 인지가 문제 사 니다. 1심에서는 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전에 기 이 을 이로 적 우의 시정을 구할 이 이 소 하 다고 판 하 니다. 이에 대해 는 사사 과 행정사 (시정명)의 이 등을 고 하여 기 에도 시정명 을 구할 이 이 있다고 판 하 니다. 아가, 정규 전 사와 기 제 전 사의 등을 부적으로 ·분 하여 사이에 적인 이가 고, 정규 인지 여부의 이는 이 기 , 근수당의 이에 어 있으 로, 여 이 지 , 가 , 경사 에 대한 은 기 제법 위 으로 판 하 니다.

○ 한 , 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사회적 자 다수를 기준으로 정 는 경우가 고, 이 한 이 적 정이 생합니다. 따라서 재의 통 적인 과 관 를 기준으로 다 사회적 자 소수자에 대한 정은 심 수 에 니다. 이 한 기준으로 한 결론은 정하지도, 구 적으로 당하지도 니다. 결 , 사회적 자와 다수가 지 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를 기 이고 들의 에서 생각해 는 이 대법원의 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46.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판결문은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전체의 1%도 채 안 돼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헌법 제109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 이지 '종합법률정 '를 통한 판결문 가 제한적이라는 판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종합법률정 '는 로 선 적 가치를 고 하여 선정 판결을 제 하는 으로 고 있 니다.

○ , 사소송법, 사소송법에 따 대 인 판결서의 일 를 위한 '판결서 인 ' 시 이 도로 있고, 사소송법 정으로 2023 부 사사 의 경우 ' 확정 판결서' 또한 사를 할 수 있는 으로 하고 있 니다.

○ 으로 판결서 는 적으로 확대 는 이 시대적 이라고 할 이지 , 소송관 인의 인정 사생 을 해하지 는 한도 내 이 어 야 할 니다. 결 , 의 리와 인정 내지 사생 사이의 조 가 필요하다고 생각 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분한 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을 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여재판 제도는 사법부에 대한 의 신 를 제고하고, 양 을 한 일 의 생각이 법 감정을 확인하는 데 은 도 이 로 지 다 성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의 여재판은 고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 니다. 따라서 인 와 은 일정한 대 범 에 대한 필수적 여재판을 적극 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가 재는 지 법원 원에서 여재판을 시하여 지원에서 신청할 경우 원으로 이송하여 리하고 있는데, 일정 규 이 의 지원에서 시할 수 있도 선할 필요도 있 니다.

○ 다 , 여재판을 시하는 경우 법원의 은 인력이 니다. 성 를 위하여는 분한 인적·물적 여 의 구 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8. 고위직 판검사들의 퇴임 후 로펌 취업 후 고액 급여 수령에 대한 견해?

○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의 전관 우에 대해 들의 우 가 다는 을 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의 신 에서 고위 법관이 로 에 하는 사 가 생하는 은 바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이를 제한적으로 제한하는 은 헌법 선 의 자 를 해할 여지가 있으 로, 인의 기 과 사법신 이라는 의 가치를 조 시 수 있는 지 로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 , 생법관제의 정 등은 로 으로의 이 을 을 수 있는 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고위 법관이 분한 을 할 수 있는 제 여 을 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9.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 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및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선출 및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한 기관 구성 하자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 의 대법관 제청 과 헌법재판관 지명 은 헌법에, 대법관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 어 있 니다.

○ 대법원 의 이 한 제청 지명 은 사법부의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 확 리고 요한 헌법기관을 구성할 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 제와 의 원리가 용하도 으로 , 각 기관의 정치적 립성과 독립성을 확 하 는 지로 고 있 니다.

○ 대통 대법원 의 한을 소하고, 회 선출 위원회 을 통하여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식의 경은, 적 정당성 확 원에서는 의 가 있으 력분립 제와 의 에서는 우 할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와 은 경은 헌법 또는 법률 정이 필요한 역으로 이로, 제도의 · 에 관한 한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행 헌법은 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 이 명하는 3인, 대법원이 지명하는 3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하도 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력분립의 원 을 하여 력 제와 의 원리를 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한 구성 식은 위헌법률심판을 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정 정치적 이 아 립적인 자 를 지하 서 오로지 헌법에 따라 판 할 수 있도 하고, 아 사회적 자와 소수자의 도 할 수 있도 한 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 위원회 내규를 제정하여 대 수, 여성, 법률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여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위원회를 하고 있 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 의 정성과 명성이 확 고 있고, 적정한 헌법재판소 구성도 어 정도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역할 및 권한, 위상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우리 헌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의 헌법기관 니다. 헌법은 사법 과 명 ·규 , 분의 위헌·위법 심사 은 대법원에 부여하고, 법률의 위헌심사 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한과 기 을 분 하고 있 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 력,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 명 · 규 에 대한 위헌심사 등에 관하여 해의 이를 여 니다. 다 헌법이 헌법해 한을 양 기관에 분 한 은 과 제를 통하여 양 기관 헌법을 수 하고 기 을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 하기 위한 이라고 이해하고 있 니다.

○ 양 기관이 자신에 어 를 적 수행 으로 헌법이 부여한 의 기 이라는 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2.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형'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바 후보자는 현재 양형기준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법원조 법은 제81조의2 제1 에서 ' 을 정할 의 전한 식을 하고 이 신 할 수 있는 정하고 관적인 양 을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 위원회를 다.'고 규정하고 있 니다.

○ 이에 따라 양 위원회는 2007 치 이 지 까지 46 범 에 관한 양 기준을 하 고, 법관들의 양 기준 준수 도 90%를 회하는 우 높은 수준으로 고 있 니다. 양 기준은 합리한 양 를 이고 의 법 감정에 는 합리적인 양 를 성하는 데에 은 기여를 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양 위원회는 양 기준 정 시 관 기관 의 조회, 청회 심포지 최 등 다양한 의 수 를 거 합리적이고 관적이 , 의 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는 양 기준을 정하기 위해 력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양 위원회가 지 과 이 지 적으로 의 다양한 의사를 하여 의 높이에 는 합리적인 양 기준을 해 기를 바 니다.

53.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 관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와 관 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적으로 수 있도 , 사법제도 선이 사법행정에 관한 법률 을 독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 하는 에 대한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4.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대면 심리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대전 에는 인의 다양한 정 가 포 어 있 니다. 이에 대하여 선 적인 수수 을 하지 는다 수수 으로 인하여 사생 의 과 자 , 정 에 대한 자기결정 등이 해 우 가 당합니다.

○ 따라서 수수 범위에 대한 적 한 제한이 필요하고, 법관의 대 심문 등을 통하여 범위가 적정하 제한 수 있도 사전심문제도 도 의가 이 어 으로 기 하고 있 니다. 인적으로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심문제도의 도 으로 수사 행성이 해 고 수사가 지 수 있다는 론이 있으 , 수사의 행성이 해 지 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어야 하는 은 당 하다고 생각하고,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수사 행성을 해할 수 있는 식으로 이 어 으로 생각하지는 니다.

○ 관 법률이 22대 회에서 의 으로 고 있 니다. 회 원에서 분한 와 의 수 을 거 법적으로 해결 기를 합니다.

55. 경력법관 임용 중 대형 로펌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후관예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안 및 입장은?

○ 법관 용자 에 대 로 출신이 다수 있 에 따라 이 바 관우 생의 우 가 있 을 고 있 니다.

○ 재 법관 용 는 라인 식으로 행 고 있고, 부 인사 등의 여를 통해 명성과 정성을 확 하고 있 니다.

○ 이 사소송법 법관은 소 하 로 사 을 2 지 하 어 있 니다. 이 한 에서 대 로 출신이 다는 이 로 판을 받는 부분은 니다.

○ 에도 구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우 를 식시 기 위하여 자의 이해 지법 회 의 를 고, 고관 재 당 제도 등을 용하고 있 니다.

○ 으로도 이 한 제도가 지에 어 관 우의 우가 지 도 지 적으로 력하여야 할 니다.

56.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어 이에 인하고 심각한 범 를 지 는 사 가 론에 자
도 고 있 니다. 이에 법소 의 하향을 통해 사
의 대 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 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의 도 경청할 필요가 있지 , 어 이의 소 들을 사
하여 을 수 있는 이 과 에 따 부 용을 하
하여 신 하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7.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전 법관대 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 대 들로 구성 어 있으 로, 전 법관대 회의가 대법관 위원회 위원을 하는 은 사법부 내부적으로 대법관 과정의 성과 명성을 제고하는 데 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위원은 전 에 있는 판사들의 다양한 의 을 수 하여 회의에 전 하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5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지원한다며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전 법관대 회의가 자 적으로 '지원 '을 구성한 지는, 대법관 위원회에 여하는 법관 1인 으로는 분한 정 에 기 한 성 있는 의 이 어 문제가 있으 로, 이를 하기 위한 으로 고 있 니다.

○ 자 적으로 지원 을 구성한 지에 대해서는 감하지 독립적으로 하여야 하는 위원에 력을 행사하여 위원의 독립성이 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지원 구성의 필요성과 우 를 고 하여 조 은 향으로 아갈 수 있도 전 법관대 회의에서 분한 의가 이 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9. 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신청·재판장고발 등 간첩사건 재판지연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고인의 여재판 신청, 기 신청, 관할이전 신청 이에 대한 고 등이 재판지 의 전 으로 용 다는 지적을 고 있니다. 이 한 리를 재판지 의 수 으로 용하는 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 가 있 지 법원으로서는 적 한 소송지 행사 등으로 지 을 지하기 위하여 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하기 위한 에 대한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 제주 ㅎㄱㅎ사건 관련, 직권보석·전자팔찌착용 면제·주거제한 일시 해제 등 간첩사건 피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재 행 인사 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1. 계속중인 형사 재판 피고인의 죄명과 형벌의 종류를 감경해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업무) 처리 절차 및 보고절차는?

○ 법원행정 각 법원은 수 원에 대하여「법원 원 리 내규」에 따라 리하고 있 니다.

○ 원 리내규 제28조 제4 은‘ 원사 이 행 인 재판의 론, 거, 양 등에 관한 인 에는 사법 용에 해당 어 판 리할 수 다는 지 등의 내로 리결과의 통지에 갈 할 수 있도 ’ 규정하고 있 니다.

○ 하신 부분이 원에 해당한다 위 규정에 따라 리할 수 다는 내로 통지에 갈 니다.

62. 특정 재판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피고인 면회(신청), 검찰청 연좌농성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구 적인 사 과 관 한 사 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3.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수사(재판)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법원장·대법관·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사법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인사청문회의 대 인 대법관 자가 이에 대해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4. 법원노조와 법원장의 교섭대상은 무엇이며 재판 시간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은 관 법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에 관한 사 또는 조합원의 수· 지, 에 근 조 에 관한 사 을 대 으로 하는 으로 고 있 니다.

○ 재판기일 지정 은 재판 의 고 한으로 의 대 이 수 다고 생각합니다.

65.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상 지위와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후보자의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표결하도록 하는 양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자로서 정 정당이 회의원의 정치 의 당부에 대하여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니다.

66.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적(학연, 지연 등 친목 모임 등), 공적(법원 근무지, 학술연구모임 등) 인연은 어떠한가?

○ 제가 2011. 2.부 2016. 2.까지 서 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 하는데, 조 대 대법원 도 2006. 8.부 2012. 9.까지 서 고등법원 부 판사로 근 하신 으로 고 있 니다. 다 은 재판부에 근 한 적은 고 인적인 분도 니다.

67.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공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2024 5 대법원 이 전 법원 문의 일 으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문하 을 도 회 자로서 니다.

68.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사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사적 을 가 적은 니다.

69.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27. 6.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우려 내지 전반적인 견해는?

○ 역사적으로는 대 대법원 이 가인 로 선생을 하여 조 , 기, 이일규 전 대법원 등이 정 으로 헌법 정해 기를 우지 하고 한 으로 고 있 니다.

○ 대법원 에 어 기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정하고 신 한 재판의 이라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대법원 자서 은 사법 의 과제를 성할 수 있을 이라고 생각하지 니다. 를 포 한 법원 구성원들도 한 데 을 아서 에 신 받는 사법부를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 헌재의 결정 이후 발생한 낙태법 장기 공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사 에서 ‘ 신한 여성의 자기 를 하는 법 제269조 제1 자기 조 은 아의 생명을 하기 위한 수 이지 , 자 법에서 정한 사 에 해당하지 는다 이 전 적, 일률적으로 신의 지 출 을 제하고 있으 로 과 지원 에 위 하여 신한 여성의 자기결정 을 해한다’는 이 로 헌법 합치 결정을 하 고, 자는 결정을 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2020. 12. 31.까지 선 법이 이 어지지 아 재 조 은 력을 한 인데, 이 한 법률적 으로 인하여 여성이 전한 법으로 신 지를 선 하는 경우도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향 회에서 은 의 수 과 론을 통해 부의 자기결정 과 아의 생명 이 조 를 이 는 대 법이 이 어지기를 기대합니다.

71. 최근 '36주 낙태 브이로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바 해당 영상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에 대한 죄명은 무엇인가?

○ 관 당 에서 이 바 '36 이로 ' 관 당사자에 대하여 인 로 수사 의 를 한 으로 고 있 니다. 향 사 가 수 있는 구 적인 사 에 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72. 이적단체에서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 수차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안보사범이 현역 국회의원과 접촉하며 원내에 진입하려는 시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구 적인 사 관 를 지 하는 에서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73.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하였을 때 헌법 및 국회법과 청원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헌법 제26조는 의 청원 가의 청원 심사 의 를 규정하고 있 니다. 회법 제37조 제1 제2 사목은 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 에 관한 사 을 소관하도 규정하고 있고, 청원법 제4조 제1 , 제5조는 이 회의 한에 하는 사 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 규정하고 있 니다.

○ 대법관 자로서 회 등 다 기관의 사 리에 관한 사 에 대하여 구 적인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74.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자로서 회에서 의 고 있는 사 에 관하여 구 적으로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니다.

75. 선거사범은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길어져 '해당 조문의 사문화', '판사들의 위법'과 같이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으로 리기한을 선거법의 지와 지 으로 생하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고 하 , 선거법위 사 이 가 적 기 내에 리 어야 한다는 에 의합니다.

○ 다 , 기 을 준수하지 하는 은 재판부의 재판 지 다는 로, 제한 사합의부 수, 기 이 대하고 쟁 이 한 사 의 가, 한 사 에서 찰 의 기 · 사 지 에 따 기일 전, 고인 인의 어 에 따라 일 정 야 정의 제한 등에 기인한 으로 생각합니다.

○ 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분한 재판부 확 를 위한 법관 원, 신 한 · 사를 위한 찰의 조치, 판준 를 통한 심리 등 다양한 에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6.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 중 가장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탄핵안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소 의결이 헌법재판소에서 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77. 최근 '유튜버 쯔양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 수익을 좇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이런 사이버 레커에 관한 건은 특별히 과중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이 바 '사이 ' 문제에 대하여는 론을 통해 니다. 다 , 구 적인 사 관 를 지 하는 이고 재판의 대 이 수 있는 사 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78. 올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는데, 노동법원 설치를 통해 노동분쟁 및 구제 절차 지연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사 의 이도가 대 가하는 에서 법원을 신 하여 법원의 재판 역 과 전문성을 제고 으로 사 리 을 높이는 도 사법에 대한 의 신 를 확 하는 하 의 으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위원회와의 관 를 어 정할 인지 등 여 쟁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관 분야 전문가와 의 의 을 분 수 하여 신 하고 적인 분쟁해결 구조가 정립 기를 바 니다.

박은정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은정 위원 서면질의》

1.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후보자 입장은?

○ 사 제 지

- 사 제도는 인 의 대적 가치인 생명을 대 으로 하는 이기 문에 우 조심 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 제 지를 하는 거로는, 지가 전 적인 이고, 한 행 결과를 이 수 으 , 제도의 범 지력도 적으로 바가 다는 등을 들 수 있 니다. 치를 하는 거로는, 인, 대규 인명 등 인 적 범 가 여전 재하고, 한 범 로부 전하다고 수 는 에서 의 법 감정, 으로서의 성 등을 들 수 있 니다.

- 양 거 당한 이 있고, 행 헌법에도 사 제도가 있 을 전제로 한 규정(제110조)이 있어서 헌법에서 사 제를 용인하고 있다고 여지도 있 니다.

- 결론적으로 사 제 여부는 인 의 과 가치, 생명 등 헌법 규정의 한 해 과 어 사 의 일 적 과, 의 법감정, 해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가 법 지

- 우리 라의 역사적 경 과 재의 등을 고 할 , 가 법 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 이 있을 수 에 니다. 따라서 가 법의 여부는 회에서 분한 의와 의 수 을 거 법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지난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한 청문회 일정을 19일과 26일로 의결하였음. -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국회법 제65조 1항,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 실시의 건이 채택되었음. 이번 청문회가 탈헌법적, 탈법률적 청문회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는 사 으로, 대법관 자로서 이에 대해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니다.

3. 상고법원 도입 등 상고심 제도 개선과 현행 13인 체제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 고에는 한 제한이 니다. 따라서 고가 제기 는 사 수가 우 고, 이를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은 역 이 고 있 니다.

○ 식적으로 생각하 고에 아 제한이 는 이 의 재판받을 리를 분 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 니다. 물론 는 이 있지 , 사법 자원은 한정적 니다. 한정적 자원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 이 지 하 , 전 로서 사 리가 지 거 필요한 사 에 역 이 지 하는 결과가 생할 수 에 고, 이는 의 재판받을 리 에 역행하 니다.

○ 한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역할과 기을 다 할 수 있고, 이 한 역할과 기 에 역 을 분 을 수 있도 대법관 원 다 우선하여 고심사제 고법원 도 등 고심 제도 선이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관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후보자의 의견은?

○ 고심 적 와 대법원 재판 지 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이 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도 을 포 하여 선을 지 적으로 할 필요가 있 니다.

○ 다 , 이는 고에 아 제한이 는 에서는 근 적인 해결 이 수 니다.

○ 법 자원은 한정적이 로 이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 이 지 하 , 전 로서 사 리가 지 거 필요한 사 에 역 이 지 하는 결과가 생할 수 에 고, 이는 의 재판받을 리 에 역행하 니다.

○ 한 ,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 가 심이 어야 역할과 기 을 다 할 수 있고, 이 한 역할과 기 에 역 을 분 을 수 있도 대법관 원 다 우선하여 고심사제 고법원 도 등 고심 제도 선이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은 6월 10일 사건 종결 처리되었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로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음.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부실한 절차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국민의 법 감정상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후보자의 입장은?

- 김건희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내용을 참모진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와 국민권익위의 직무 유기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 대법관 자로서 정치적으로 은 쟁이 있는 사 에 관하여 구 적인 해를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6. 지난 202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음.

- 첫 번째 직무집행 정지처분 인용 이후인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림.

-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0개월 만인 2021.1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음.

-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고 밝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윤석열 감찰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1심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세 개의 각각 혐의별 후보자의 법리적 의견이 어떠한지?

○ 대법관 자로서 각 법원의 판 에 대하여 구 적인 의 을

는 은 적 하지 다는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7. 2023.2,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음. 재판부는 징계절차의 위법을 파기 사유로 들었음.

-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감사징계법 17조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거나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를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했음. 또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요건을 미달했고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 쪽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한 것도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음.

-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원고(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음.

7-1. 징계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징계 절차의 위법성만 강조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 하 을 이라 생각하 ,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인적인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7-2.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대거 해촉하고 교체한 징계 취소 소송의 피고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소위 "패소할 결심"이 논란을 낳기도 했음. 현직 대통령과 검사 재직시절부터 특수 관계를 형성해 온 한 전 장관이 선임한 변호인단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신문이 부실하다는 질책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하였음. 항소심 변론을 부실하게 진행한 피고인측 변호인단의 소극적인 변론으로 인해 판결이 뒤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구 적 사 관 에 대하여 지 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쟁이 은 사 에 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7-3. 현직 대통령에게 임면 권한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고위공직 당사자(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하고 항소심 변론을 부실하게 진행한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떠한 입장인지?

○ 구 적 사 관 에 대하여 지 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쟁
은 사 에 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이에 대해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2024. 1,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가 최종 취소되었음. 현직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의 비위로 진행된 징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률심을 통해 법리상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음.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에 비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여 대통령을 구제하고, 법무부장관은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데뷔했던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통령의 중대 비위 의혹에 대해 법률심에서 위 사안을 다뤘어야 했다고 판단하는지?

○ 대법관 자로서 법 부 고포기의 당부 재판의 대 이 구 적인 사 에 대하여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9. 오석준 현 대법관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재직하던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 마신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후 2022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 우려에 십분 공감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음.

- 미국의 피오렐로 라과디아(1882~1947) 판사는 뉴욕 치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1920년대 어느 겨울, 나흘을 굶고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10달러 정도의 빵을 훔친 혐의의 절도죄로 법정에 선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 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잘못에 대해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온 모든 참석자도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각기 5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라고 평결하였고 재판장에서 모은 57달러 50센트 중 벌금 1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노인에게 전달하였음.

9-1. 오석준 대법관과 라과디아 판사의 평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인적인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다 , 사회적 자를 최대한 하고, 으로부 신 받을 수 있는 법원을 들 수 있도 이 력하 니다.

9-2. 평생을 법관에 봉직해 온 사회지도층으로서, 평소 후보자가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의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경력 또는 이력이 있는지?

○ 성 하고 있는 자 로 신 하고 정한 재판을 하고자 력하 으 , 소수자와 사회적 자의 정당한 리를 해야 이 사법부의 을 지 고 하고자 하 니다.

10. 소위 50억 클럽 논란으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2023. 2. 8,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배석판사 남민영·홍사빈)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의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뇌물 의심 되지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음.

- 50억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설명에 동의하는지?

-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 관 사재판이 으로 고 있어, 대법관 자로서 이에 대한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1.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소위 사법농단(판사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변협회장 사찰 및 변협 외압행사, 민변 외압 행사, 재판 거래 등)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혐의에 대법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사법농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의 일원으로서 재발 방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양승태 사법농단의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음. 헌법상 최고법원의 일원으로서 후보자가 대법관에 지명된다면 사법농단 판결상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무엇이 있을지? 사법농단 각 혐의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재판의 대 이 구 적인 사 과 쟁 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해를 리는 이 적 치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 관 하여, 이 로 사법행정 역에서 재판사 에 대한 관여로 어 수 있는 행위조 생하지 도 각 한 의를 기 이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의 목적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의 일들로 인해 여 분 심 를

에 대해 법원 구성원의 한사 으로서 송구하 생각하고,
은 일이 다시는 지 도 이 제도 선을 위해
력하고, 법원 구성원 가 지 적으로 의를 기 여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12.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음. 또한 5월 22일 자로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출신 전·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 제출을 통보했음

12-1.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라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직무감찰 대상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법원 내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법원의 에 대하여는 감사원법 감찰대 이 아 니다. 다 , 감사원은 법원에 대한 회 사 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법 제27조 감사원 감사사 리규 제16조에 따라 관 자 또는 감사사 과 관 이 있다고 인정 자의 출 · 을 요구할 수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법원 조합 전 자 여 지 을 위한 감사원 감사는 조합 전· 부가 근 지에 출근하여 제로 수행을 는지 여부에 대한 사 관 를 확인하고, 적정하 여가 지 는지를 사하기 위한 으로 고 있 니다.

○ 재 조사가 행 인 사 에 대하여 대법관 자가 의 을

는 이 어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2-2. 감사원의 사실상의 직무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행정처는 법원 소속 공무원의 평정비율 개정, 초과근무수당 삭감 등 법원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법원의 일 원과 관 하여, 고 , 적 대 , 우수한 성과를 거 어도 기수를 어 어 하는 이 가 한 이 생하고 있는데, 원인 하 가 과도하 높은 경력 정 로 지목 니다. 2020 7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2 회의에서 정 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 고, 다 시 시행 시 생할 등을 고 하여 2021 하 기부 2024 까지는 근 성적 정 을 60%, 경력 정 을 40%로 정하고, 의 근 성적 정 향은 결정하기로 정한 으로 고 있 니다.

○ 과근 수당과 관 하여서는 기 에 하여 이 으 은 과근 로 인하여 문제가 으로 고 있 니다. 과근 를 하 서도 수당을 받지 하는 일이 생 서는 니다. 관 을 분 확 할 수 있도 회 원에서 은 관심을 가 시 부 립니다.

1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배우 이선균 씨는 수사단계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찰관 등 다수의 공무원이 유출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과 범죄행위를 공표하였음.

- 위의 두 사례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의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의사 행위는 원 적으로 일 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 이 는 사 에 관하여 관적이고도 분한 거 자 를 바탕으로 한 사 에 한정 어야 하고, 이를 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 결과를 할 수 있는 한을 가 자에 의하여 식의 에 따라 행하여 야

하 , 정의 원 에 하여 를 하 할 우 가 있는 이 또는 을 일으 우 가 있는 을 하는 등 내용이 법에 대하여도 념하여야 하 , 아가 의사 과 가분의 관 라는 등의 한 사정이 는 한 수사기관이 '범 를 구성하지 는 사 관 '까지 의사 에 포 시 수사 결과로서 하는 은 원 적으로 용 수 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고 판시한 바 있 니다.

○ , 수사과정에서 수사기 을 출한 과 식적인 포 의 이 제출 에 따라 범 사 이 을 은 선 에 고 수는 지 , 의사 가 범위하 이 어 경우의 문제을 인식하고, 의 사 에서 의 리 과 정 의 원 , 의자의 어 사이의 이 이 어 수 있도 하여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14.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는 등록의무자에게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의 배우자가 의무자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여 자녀에게 매수하게 한 뒤, 6년 만에 30배가 넘는 차익을 거둬들이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도덕적 잣대에 비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 자가 식 등에 자한다는 이 자 로 받는 은 당 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식 자 과정에서 들의 자에 대한 신 를 시 우 가 있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30배가 넘는 비상장주식 거래 차익을 통해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시내 지역의 다세대주택을 7.7억 원에 분양받았으며,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소위 갭투자를 실행하였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으로 확인되었음.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비상장주식의 거래 완료 후, 이를 한 번에 상환하였음.

-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 위 고위공직자가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면 공직자 후보자로서 처신이 적절했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자가 부 등을 수한다는 이 자 로 받는 은 당하지 다고 생각합니다.

○ 다 , 부 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도 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증권 및 주식도 등록대상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이균용 전 대법원장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사퇴한 바 있음. 국회의 임명동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사퇴해야 하는 게 맞는지?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징계 등을 사후에 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후보자의 견해는?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치는 게 적법한 판단일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들이 자에 대하여 가지는 도 성이 청 성 등에 대한 신 에 향을 는 자 리법 위 사 에 대하여는 에 대한 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 리법에 따 , 자 리위원회는 등 사 의 심사 결과 등 대 재 을 대한 과 로 리거 기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시정조치,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자 리법 제8조의2 제1 , 제2), 자 리위

원회는 재 등 사 의 심사와 결과의 리에 따 결정사 이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 어지지 아니한 요한 거가 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 수가 재심사할

의 필요가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 결정이 있은 로부 3 이내, 재심사 사 가 있 을 로부 6 이내에 으로 재심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니다(은 법 제9조의2).

○ 따라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 리법 위 내역이 다고 하 라도 자 리위원회에서 자 리법에 따 재심사 사 에 해당한다고 판 한다 심사하여 조치할 수 있을 니다.

○ 다 , 대법관 자로서 독립적으로 는 자 리위원회에 관하여 이 의 구 적인 의 을 하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7.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어 이에 인하고 심각한 범 를 지 는 사 가 론에 자
도 고 있 니다. 이에 법소 의 하향을 통해 사
의 대 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 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이 한 의 도 경청할 필요가 있지 , 어 이의 소 들을 사
하여 을 수 있는 이 과 에 따 부 용을 하
하여 신 하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고위공직자들의 자녀가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서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스펙 부풀리기에 사회적 비판이 있음. 일부 고위공직자의 자녀 또한 논문 대필을 통해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 논란이 되었음.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학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자 의 대 을 위하여 부 리기를 하는 은 고위 자로서 바 하지 다고 생각하고, 문을 대필하여 는 행위를 하여서도 다고 생각합니다.

○ 다 , 구 적인 사 관 가 확인 지 은 내용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이 이 의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19.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퇴직자의 재직 당시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인 퇴직자와 피고인 주무부처 장관은 같은 기관에 소속하여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 해당 주무부처 장관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1심 변호사들을 교체하고, 상고를 포기하여 징계취소가 확정되었음. 이와 같이 재판의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나 친소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구 적 사 관 에 대하여 지 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쟁
은 사 에 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은 적 하
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0. 현재 노랑봉투법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는 있는 법안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랑봉투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 조합 관 조정법」 일부 정법률 과 관 하여 22 대 회에도 일한 법률 이 의 어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재 법이 고 있는 법률이고, 향 관 사 을 당하 수 있으 로, 이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1. 최근 정부와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대치 국면에 서 있음. 최근 의료계 측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대법원은 최종 기각을 내림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또한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서울고법에 계류 중 인데 판결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 대법원에서 판 한 내용을 하고, 향 당하 수 있는 사 에 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2. 방통위 위원장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이진숙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내며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동의하는지? 대법관 후보자로서 견해는? 또한 MBC,YTN 바이든-날보도에 따른 방심위의 법적제재가 있었음.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국민적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법적 견해와 의견은?

○ 확정 대법원 판결은 합니다. 또한, 구 적 사 관 를 지 하고 정치적으로 쟁 은 사 에 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3.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에 따른 근거

○ 사 식은 회에서 법정 적으로 결정할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24.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주거공간 또는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의견은?

○ 재 행 이거 사 수 있으 로, 이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5.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최근 이 , 전 사기 등으로 사기범 에 대한 요구가 높은 으로 고 있 니다. 사기범 양 기준도 2011 정, 시행 이 고 범위가 수정 지 아 의 사회·경제적 에 따 범 양 이 인식의 를 적 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관 하여, 양 위원회가 2023. 6. 12. 전 회의에서 사기범 양 기준 전 을 정 하기로 의결하고, 2024. 6. 24. '사기범 와 양 ' 이라는 제로 심포지 을 최한 으로 고 있 니다.

○ 양 위원회에서 이 한 의와 기 양 에 대한 조사 분 을 바탕으로 의 전한 법 감정을 하여 사기범 양 기준을 적 하 하여 으로 기대합니다.

26.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따라 마련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본법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강행했으며, 특히 보도의 신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언론의 특성상 검찰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음. 일례로 뉴스타파 前 전문위원 신학림 씨는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음.

26-1.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검찰 내부지침인 예규로 검찰 수사권을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 행 인사 에 대하여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6-2. 현재 대법원의 위헌명령, 규칙, 처분심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 사법부는 이 한을 신 하고 적정하 행사하기 위해 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대법관이 다 이 부분에 대한 부 은 는지 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지 적인 구와 론을 통해 이 한을 적정하 행사할 수 있는 을 할 수 있도 력하니다.

26-3. 검찰의 과도한 영장 행사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와 수색을 제한하고 사전심문제를 도입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제안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거지 등에 대한 수수 은 인의 내 한 사적 에 대한 제수사로 선 적인 수수 을 하지 는다 수수 으로 인하여 사생 의 과 자 , 정 에 대한 자기결정 등이 해 우 가 높 니다. 인의 사생 정 가 대부분 들어 있는 대전 에 대한 수수 경우에도 일한 문제가 있니다.

○ 따라서 수수 범위에 대한 적 한 제한이 필요하고, 법관의 대심문 등을 통하여 범위가 적정하 제한 수 있도 사전심문제도 도 의가 이 어 으로 기 하고 있 니다. 인적으로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심문제도의 도 으로 수사 행성이 해 고 수사가 지 수 있다는 론이 있으 , 수사의 행성이 해 지 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어야 하는 은 당 하다고 생각하고, 사전심문제도의 도 이 수사 행성을 해할 수 있는 식으로 이 어 으로 생각하지는 니다.

○ 관 법률이 22대 회에서 의 으로 고 있 니다. 회

원에서 분한 와 의 수 을 거 법적으로 해결 기를 합니다.

27. 헌법에서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조직의 구성은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및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법무부의 외청 행정기관인 검찰청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을 구성하는 공무원들 역시 기존의 행정 공무원과 신분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특권을 누려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법원과 대등한 검찰의 각급 검찰청의 설치와 법관과의 직급체계의 유사성, 앞서 서술한 시행령과 검찰 예규를 통한 권한 통제의 비대칭성 등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넘나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검사가 행정부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가기관은 의 과 리 을 위해 재하는 , 기관의 종 여하를 론하고 시적으로 이 한 근 적 가치의 에 부 하거 이 는지 아 고 이 제도 을 위해 력할 의 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찰 역시 가지로, 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정하고 립적이 독립적 위치에서 합리적이 적정하 수사를 으로 법과 정의를 바로 우고 의 인 을 하 해야 한다는

에서 한 제도 의 력을 을리 해서는 다고 생각합니다.

○ 찰의 한 용에 의하여 의 기 이 부당하 해 거 사사법의 정, 아가 정치적 립성이 해 서는 다는 에 깊이 감하 , 제도의 선은 기 적으로 찰의 한 용을 다 기관이 적 통제하는 향으로 이 어 야 할 필요가 있을 니다. 에도 범 자들에 대한 수사 과 의 정한 에 대한 들의 한 요구를 고 할 , 찰의 한 용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가 전 의 수사 소 역 이 지 치 지 을 수 있도 제도를 하 하여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1)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조정하여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하게 하며 2)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며 3)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체계화 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설치하고 4)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소위 "공소청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후보자는 공소청법 제정안의 위의 4개 주요 내용별로 각각 입장이 어떠한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고위 자범 수사 의 도 , ·경 수사 조정 등에 관하여 회 등에서 치 한 의가 이 어 법이 이 어 고, 찰 4법과 관 하여서도 은 의가 이 어지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수사제도를 어 식으로 선할 인지 여부는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한 쟁이 고 있으 로, 이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29.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법"제정안은 1)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며 2)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됨. 3)직접수사대상 또한 부패, 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로 확대하고, 국가 반부패 수사에 대응토록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4)중수청을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게 함으로써 겸제와 감시의 균형으로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29-1.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한 위 4개 주요사항별 각각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 이관에 그치지 않고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 ·경 수사 조정, 고위 자범 수사 도 을 포 하여 수사 기소를 어 기관에서 당할 인지에 관하여 회 등에서 치 한 의가 이 어 고, 대범 수사청법 제정 과 관 하여 서도 은 의가 이 어지고 있는 으로 고 있 니다.

○ 관 제도를 어 식으로 선할 인지 여부는 법정 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한 쟁이 고 있으 로, 이에

대해 대법관 자로서 의 을 는 이 적 하지 을 양
해하여 시기 바 니다.

30.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아래 수사절차법 제정안에 대한 7개의 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수사 적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반영.

1)수사의 주체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관철, 관통되도록 함.

- 다만,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및 국회 입법에 의한 특별검사, 군검사의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함(법안 제2조).

2)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타건 수사 금지 규정 등 수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및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법안 제3조, 제4조).

3)형사소송법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의 편제와 나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춤.

4)피의자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 및 적법절차의 구현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법안 제34조 ~ 제42조).

5)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법안 제75조

제2항), 전자정보 압수수색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안을 입법으로 반영(법안 제82조).

6)수사 중 언론에 의한 명예형 인격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상세하게 입법(법안 제4장 제105조 ~ 제113조).

7)별건수사, 타건으로 본건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법안 제114조), 수사기밀 공개 내지 누설하는 경우/형사사건 관련하여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하는 경우(제115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증거기록 편철을 누락한 때(법안 제116조) 처벌하도록 함.

- 특히 상대방이 수사기밀을 누설받아 이를 공개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함(제115조 제2항).

- 누설받은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

○ 재 의 인 수사 법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 지 하여 구 적인 을 리기는 어 지 , 문 사 에 어 해당 법률은 찰의 수사 한을 적 통제 으로 일 의 기 을 도 하고 수사 의 명성과 관성을 하고자 하는 지로 이는바, 감 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 , 정 내용은 가의 사사법제도 전 에 향을 수

있는 부분이 로, 회에서 분한 의와 의 수 을 통하여 결정 어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

31.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 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3개의 각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31-1. 1)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수사편을 분리 독립

○ 수사와 재판을 도의 법률로 정할 인지 여부는 법정 적 결정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 사소송법에서 수사와 재판 부분이 각종 준용 규정을 통하여 기적으로 규 어 있는 을 고 하여 도의 법률로 정 에 따라 규정의 이 생기지 도 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니다.

31-2. 2)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정비

○ 구 적인 정 내용을 기 어 우 정 법률에서 정한 경 수사 에 관한 규정 내용과 는 부분이 있다 이를 정합성 있 정 할 필요는 있을 으로 생각 니다.

31-3. 3)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를 실효성 높게 개정

-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 필요적 심문 및 필요적 증거조사 도입, 2. 3개월 시한 폐지, 3. 심리 공개를 규정하여 재정신청이 활성화, 신속화할 수 있도록 함.

- 준항고 제도의 활성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적 심문 제도 및 심문 종료 후 2주 내 결정을 하도록 함.

○ 재정신청 제도 성 를 통하여 사의 기소 한을 적 통제하고, 준 고 제도 성 를 통하여 사의 수사 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법목적에는 감합니다.

○ 다 , 구 적 당성을 고 하지 은 일률적으로 행 식을 정하여 이를 제하는 은 심리의 성이 한정 사 법자원의 과적인 분의 에서 합리한 이 있을 수 있으 로, 정 의 각종 부 용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가 선행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 언론에 보도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제7조 1항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바, 검찰의 예규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 권한 확대로 인해 그 외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있음.

32-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7월 12일, "검사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정보공개를 판결하였음. 행정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취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견해는?

○ 대법관 자로서 각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구 적인 의 을 는 은 적 하지 다는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2-2. 비공개된 대검찰청 예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결책은?

○ 가의 행정은 들이 법 행에 대한 가 성을 제고할 수 있는 향으로 이 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 대법관 자로서 구 적인 사 에 대해 해를 는 은 적 하지 을 양해하여 시기 바 니다.

33.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됐던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업무방해방조죄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게 아닌지 우려가 있음. 업무방해 방조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해 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한 정을 서 쟁의행위의 행을 용이하 한 경우에는 해 조 가 성립할 수 있으 , 헌법 제33조 제1 이 규정하고 있는 3 을 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조합이 3 을 행사할 제3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 할 필요가 있고, 아가 근로자 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 의 자 헌법 제10조에 내재 일 적 행 의 자 를 가지고 있으 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해 조에 해당하는지 판 할 는 헌법이 하는 위와 은 기 이 위 지 도 해 조 의 성립 범위를 신 하 판 하여야 한다'고 시한 바 있 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 는 이 한 대법원 판 의 지에 감하고, 해 조 적용범위가 부당하 확대 어 헌법 리인 3 이 의 자 등이 위 는 일이 도 사 에서 심하 야 할 으로 생각합니다.